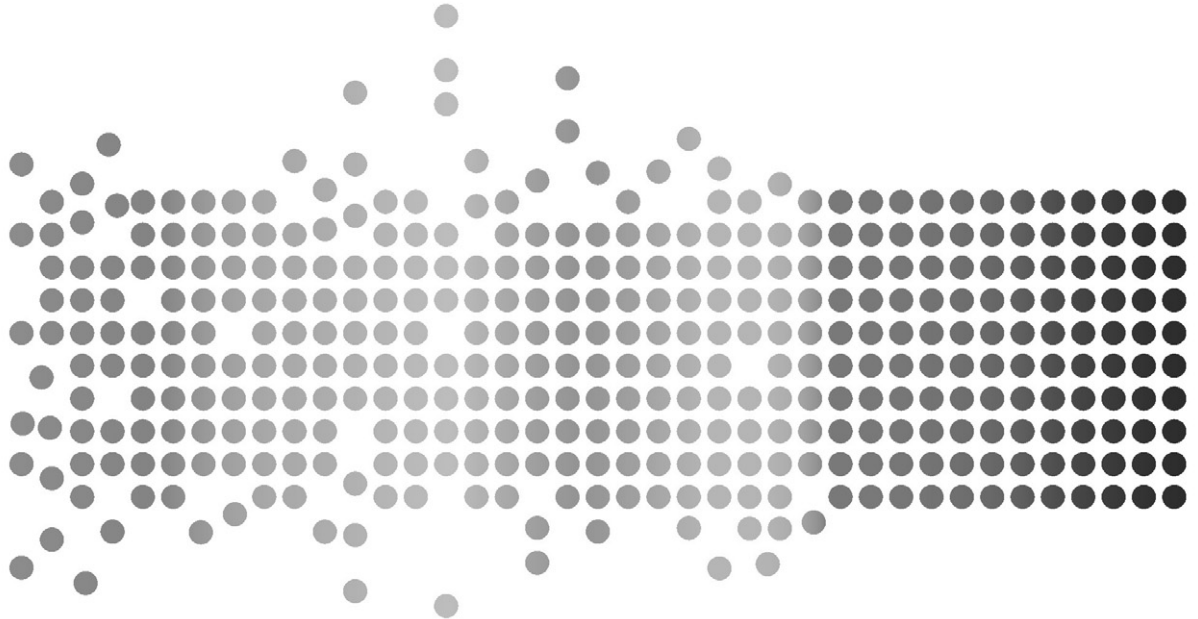


저출산 고령화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연구

A Study of the Living Status of the Self-Employed to Respond to Low Fertility and Aging

박종서 · 이상영 · 이삼식 · 손창균 · 신현웅 · 정홍원
박수지 · 신화연 · 김지연 · 윤여원 · 이소정 · 홍인정



연구보고서 2012-47-31

저출산·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발행일	2012년
저자	박종서 외
발행인	최병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가격	10,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ISBN 978-89-8187-911-2 93510



머리말

최근 우리 사회의 주요한 쟁점 중 하나는 자영업 부문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자영업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도 자영업 부문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일 것이다. 우리나라 자영업 노동시장은 그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크고, 산업 직종 규모 등에서 다양하기 때문에 향후의 변화과정도 그만큼 다양할 뿐만 아니라 변화의 방향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비중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8.8%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국가이다. 자영업자의 비중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 30%수준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점차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2003년에는 신용대란으로 인한 내수경기 위축과 함께 자영업 부문의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고, 2006년 이후부터는 더욱 가파르게 축소되고 있다.

자영업 종사자는 점차 고령화되고 있고, 서비스업 중심으로 여성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인적자본 또한 취약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이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영업 부문의 규모는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 중이지만, 자영업 노동시장의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 이유

는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일수록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부문의 규모 축소가 너무 급격히 진행된다면 빈곤층 및 신용불량자의 증대, 가족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불안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우리의 사회보장제도가 임금근로자를 기본으로 설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급격한 몰락은 국가의 재정 측면에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개선방안이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작 자영업자의 생활실태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 및 복지욕구 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건강과 출산, 양육 환경, 복지 서비스, 고령자의 노후준비 및 사회참여 증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대규모 자영업자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써, 정부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에게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박중서 부연구위원의 주관으로 원내외 많은 관련 전문가의 참여로 수행되었으며, 외부 전문가로 참여한 남서울대학교 이소정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또한 연구진은 본 연구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인하대학교 윤홍식 교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영란 연구위원,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철선 연구위원과 이윤경 부연구위원께 감사를 표하고 있다.

2012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방법	15
제3절 기존연구의 주요 쟁점	25
제2장 자영업자의 가구 및 사업체 일반 현황	33
제1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33
제2절 가구의 소득, 지출 및 재산	38
제3절 주거실태	62
제4절 사업체 일반 현황	74
제5절 직업경력	99
제6절 요약 및 정책 제언	110
제3장 자영업자의 출산양육 실태	119
제1절 가임기 자영업자의 종사형태	119
제2절 가임기 자영업자의 출산행태	124
제3절 자영업자의 자녀 양육 실태	139
제4절 요약 및 정책 제언	161
제4장 자영업자의 건강 실태	171
제1절 자영업자의 건강수준 및 질병이환율	172
제2절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176
제3절 의료서비스 미충족 욕구	183
제4절 건강보험 가입 현황	187

제5절 요약 및 정책 제언	191
제5장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실태	195
제1절 일반적인 노후준비 실태	195
제2절 노후소득준비 실태	208
제3절 개인연금 가입실태	225
제4절 여가활동 실태	232
제5절 요약 및 정책제언	239
제6장 자영업자의 복지서비스 실태	247
제1절 자영업자의 돌봄서비스 욕구	247
제2절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이용현황	256
제3절 요약 및 정책제언	262
제7장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	269
제1절 행복도와 분야별 만족도	269
제2절 요약 및 정책제언	287
제8장 결론	291
참고문헌	299
부록 1. ‘저출산·고령화대응 자영업자 복지수요 조사’조사표 ..	303
부록 2. 자영업자의 시간대 및 산업별 보육방법	325

표 목차

〈표 1-1〉 2010년도 산업별 전국 사업체 규모	17
〈표 1-2〉 2010년도 지역별 전국 사업체 규모	18
〈표 1-3〉 2010년도 평균임금 기준 표본규모	18
〈표 1-4〉 산업별 표본 배분 현황	19
〈표 1-5〉 지역별 표본 배분 현황	20
〈표 1-6〉 추출 표본과 조사완료 표본	25
〈표 2-1〉 사업주 특성 1	34
〈표 2-2〉 사업주 특성 2	35
〈표 2-3〉 사업주 가구 특성	37
〈표 2-4〉 소득계층별 가구규모 비교	41
〈표 2-5〉 자영업자 가구와 전국 가구의 빈곤율 비교	42
〈표 2-6〉 소득 5분위별 월평균 가구소득 규모 비교	42
〈표 2-7〉 자영업자 개인의 소득 규모	43
〈표 2-8〉 자영업자 개인의 소득원천별 연간 총소득 규모	44
〈표 2-9〉 자영업자 개인의 연간 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율	45
〈표 2-10〉 주요 변수별 자영업자 개인의 총소득	46
〈표 2-11〉 소득계층별 자영업자 가구 소득	48
〈표 2-12〉 가구 규모에 따른 자영업자 가구소득 및 전국가구와 비교	49
〈표 2-13〉 자영업자 가구의 성별 소득 현황	49
〈표 2-14〉 자영업자 개인의 주요 변수별 가구소득 규모	50
〈표 2-15〉 자영업자 가구의 주요 변수별 가구소득 규모	51
〈표 2-16〉 주요 지출항목에 따른 평균 생활비 지출 규모	53
〈표 2-17〉 자영업자 가구의 보건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 비율	54
〈표 2-18〉 자영업자 가구와 전국 가구의 생활비 및 가계수지 규모	55

〈표 2-19〉 가구규모에 따른 자영업자 가구의 주요 항목별 지출규모	56
〈표 2-20〉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평균재산 규모	57
〈표 2-21〉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총재산 대비 재산항목별 비율	58
〈표 2-22〉 자영업자 가구의 지역별 평균재산 규모	59
〈표 2-23〉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계층별 평균총재산 규모	60
〈표 2-24〉 가구규모에 따른 자영업자 가구의 지역별 평균총재산 규모	61
〈표 2-25〉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채유무	61
〈표 2-26〉 부채가 있는 가구의 소득계층별 평균 부채 규모	62
〈표 2-27〉 자영업자 특성별 사업장과 주거공간의 분리 정도	64
〈표 2-28〉 자영업자 특성별 거처의 종류	65
〈표 2-29〉 자영업자 특성별 주거공간 점유형태	67
〈표 2-30〉 자영업자 특성별 전세거주자의 전세금 분포	68
〈표 2-31〉 자영업자 특성별 보증부 월세 거주자의 보증금 분포	69
〈표 2-32〉 자영업자 특성별 보증부 월세 거주자의 월세액 분포	70
〈표 2-33〉 자영업자 특성별 현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71
〈표 2-34〉 자영업자 특성별 출퇴근 방법	72
〈표 2-35〉 자영업자 특성별 통근시간	73
〈표 2-36〉 사업장 소유 형태	75
〈표 2-37〉 사업장 특성별 전세금 분포	76
〈표 2-38〉 사업장 특성별 월세액 분포	78
〈표 2-39〉 월 근무일 분포	79
〈표 2-40〉 주당 근무시간 분포	81
〈표 2-41〉 월평균 매출액	82
〈표 2-42〉 월평균 순이익	84
〈표 2-43〉 전년도 1년간 소득세	85

〈표 2-44〉 전년도 1년간 부가가치세	86
〈표 2-45〉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 비율	88
〈표 2-46〉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비율	89
〈표 2-47〉 고용원이 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비율	91
〈표 2-48〉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 비율	93
〈표 2-49〉 4대 보험료 총액	94
〈표 2-50〉 고용보험 50% 정부지원 시 가입 의사	96
〈표 2-51〉 자영업 사업체 운영시 가장 어려운 점	98
〈표 2-52〉 자영업자의 임금근로 경력	100
〈표 2-53〉 자영업자의 자영업 경력	102
〈표 2-54〉 자영업 시작 동기	106
〈표 2-55〉 3년 이내 폐업계획	109
〈표 3-1〉 전체 자영업자와 가임기 자영업자의 산업 분포	120
〈표 3-2〉 가임기 자영업자의 자영업 기간	122
〈표 3-3〉 가임기 자영업자의 임금근로 경험 여부	123
〈표 3-4〉 가임기 자영업자의 임금근로 경험여부와 자영업기간	123
〈표 3-5〉 가임기 자영업자의 출생아수 분포	125
〈표 3-6〉 가임기 자영업자의 출생아수 분포	126
〈표 3-7〉 가임기 자영업자의 연령별(여성기준) 평균출생아수	127
〈표 3-8〉 가임기 자영업자의 자녀 추가 계획 여부	128
〈표 3-9〉 가임기 자영업자의 특성별 자녀 추가계획 비율	130
〈표 3-10〉 가임기 자영업자의 자녀추가 계획이 없는 이유	133
〈표 3-11〉 가임기 자영업자의 특성별 한 자녀 출산 후 중단 이유 ...	133
〈표 3-12〉 가임기 자영업자의 특성별 두 자녀 출산 후 중단 이유 ...	135
〈표 3-13〉 가임기 자영업자의 기대자녀수	136

〈표 3-14〉 가임기 자영업자의 특성별 기대자녀수	137
〈표 3-15〉 가임기 자영업자의 이상자녀수	138
〈표 3-16〉 가임기 자영업자의 특성별 이상자녀수	139
〈표 3-17〉 가임기 자영업자의 자녀양육 시 애로사항	140
〈표 3-18〉 가임기 자영업자의 미취학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141
〈표 3-19〉 가임기 자영업자의 초등학생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142
〈표 3-20〉 가임기 자영업자의 중학생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143
〈표 3-21〉 가임기 자영업자의 고등학생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144
〈표 3-22〉 가임기 자영업자 0~2세 자녀의 부·모 직접 돌봄 비율	147
〈표 3-23〉 가임기 자영업자 3~5세 자녀의 시간대별 부·모 직접 돌봄 비율	151
〈표 3-24〉 가임기 자영업자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직접 돌봄 비율	154
〈표 3-25〉 가임기 자영업자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홀로 있는 비율	155
〈표 3-26〉 자영업자 특성별 평균 가사 시간	157
〈표 3-27〉 산업별 조사대상자의 자녀 사교육비 평균 지출액	159
〈표 3-28〉 가임기 자영업자의 자녀수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정도	160
〈표 4-1〉 주관적 건강인지율	172
〈표 4-2〉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173
〈표 4-3〉 2주간 이환률	174
〈표 4-4〉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지난 2주간 만성/급성질환 및 사고, 중독 경험여부	174
〈표 4-5〉 지난 1년간 활동제한 경험률	175
〈표 4-6〉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활동제한 경험 여부	176
〈표 4-7〉 최근 2년간 건강검진수검률	177
〈표 4-8〉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최근 2년간 건강검진 수검률	177

〈표 4-9〉 최근 2년간 받은 건강검진 종류	178
〈표 4-10〉 연간입원율, 입원당 평균 입원기간 및 평균 본인부담비 ..	179
〈표 4-11〉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연간입원 경험여부, 평균 입원일수 및 이용료	180
〈표 4-12〉 지난 2주간 외래 이용 경험률, 이용횟수당 평균 본인부담비 ...	181
〈표 4-13〉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연간외래 이용률, 평균 이용횟수 및 이용료	181
〈표 4-14〉 지난 2주간 약국이용 경험률	182
〈표 4-15〉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약국 이용경험률, 평균 이용횟수 및 이용료	182
〈표 4-16〉 연간미치료를	183
〈표 4-17〉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연간 미치료를	184
〈표 4-18〉 연간미치료율의 미치료 이유	185
〈표 4-19〉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미치료 이유	185
〈표 4-20〉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대처방법	187
〈표 4-21〉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건강보험 가입 형태	188
〈표 4-22〉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건강보험료 미납경험 여부	189
〈표 4-23〉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민간건강보험 가입 비율 및 월 평균 보험료	190
〈표 5-1〉 평균 예상 은퇴연령	196
〈표 5-2〉 경제적 노후준비	198
〈표 5-3〉 노후대비 건강준비	201
〈표 5-4〉 노후대비 여가준비	203
〈표 5-5〉 노후의 사회활동 준비	206

〈표 5-6〉 노후소득준비 여부	209
〈표 5-7〉 노후소득 미준비 사유(연령계층별)	210
〈표 5-8〉 노후소득 미준비 사유(가구 총소득수준별)	210
〈표 5-9〉 노후소득 준비수단 1순위(연령계층별)	212
〈표 5-10〉 노후소득 준비수단 1순위(가구 총소득수준별)	212
〈표 5-11〉 노후소득 준비수단 1순위(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총소득별)	213
〈표 5-12〉 노후소득 준비수단 2순위(연령계층별)	213
〈표 5-13〉 노후소득 준비수단 2순위(가구 총소득수준별)	214
〈표 5-14〉 노후소득 준비수단 2순위(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총소득수준별)	214
〈표 5-15〉 국민연금 가입여부	215
〈표 5-16〉 일반가구의 국민연금 가입여부	216
〈표 5-17〉 국민연금 가입형태	217
〈표 5-18〉 일반가구의 국민연금 가입형태	217
〈표 5-19〉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형태	218
〈표 5-20〉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사유	219
〈표 5-21〉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미납	220
〈표 5-22〉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미납사유	220
〈표 5-23〉 국민연금 납부기간	222
〈표 5-24〉 향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사	223
〈표 5-25〉 일반가구의 향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사	223
〈표 5-26〉 보험료 일부지원시 국민연금 납부의사	224
〈표 5-27〉 일반가구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지원시에도 납부의사 없는 이유	225
〈표 5-28〉 개인연금 가입여부	227
〈표 5-29〉 일반가구의 개인연금 가입여부	227

〈표 5-30〉 개인연금 가입사유(연령계층별)	228
〈표 5-31〉 개인연금 가입사유(가구총소득)	228
〈표 5-32〉 개인연금 가입사유(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총소득)	229
〈표 5-33〉 개인연금 가입사유(국민연금 가입여부)	229
〈표 5-34〉 개인연금 미가입사유(연령계층별)	230
〈표 5-35〉 개인연금 미가입사유(가구총소득)	230
〈표 5-36〉 개인연금 미가입사유(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총소득)	231
〈표 5-37〉 개인연금 미가입사유(국민연금 가입여부)	231
〈표 5-38〉 하루 평균 여가시간(평일 & 휴일)/희망여가시간	234
〈표 5-39〉 월평균 여가활동을 위한 지출	238
〈표 6-1〉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	247
〈표 6-2〉 가구당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	248
〈표 6-3〉 장애인가구의 특성	249
〈표 6-4〉 노인가구의 특성	250
〈표 6-5〉 장애인 가구원의 돌봄 서비스 욕구	252
〈표 6-6〉 노인 가구원의 돌봄 서비스 욕구	253
〈표 6-7〉 장애인의 주관적인 돌봄 필요도와 장애등급 및 돌봄 실태	254
〈표 6-8〉 노인의 돌봄 필요도와 장기요양등급 및 돌봄 실태	255
〈표 6-9〉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및 이용의향	256
〈표 6-10〉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및 이용의향	257
〈표 6-11〉 복지서비스 비이용 사유	258
〈표 6-12〉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258
〈표 6-13〉 장애등급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259
〈표 6-14〉 노인 가구원의 도움 필요정도에 따른 평균 서비스 구매비용	260
〈표 6-15〉 장애인 가구원의 도움 필요정도에 따른 서비스 구매비용	261

〈표 6-16〉 요양등급별 서비스 구매비용	261
〈표 6-17〉 장애등급별 서비스 구매비용	262
〈표 7-1〉 전반적 행복도	270
〈표 7-2〉 가족관계 만족도	272
〈표 7-3〉 결혼생활 만족도	274
〈표 7-4〉 소득 만족도	276
〈표 7-5〉 일 만족도	278
〈표 7-6〉 여가활동 만족도	280
〈표 7-7〉 전체 삶 만족도	282
〈표 7-8〉 가족 저녁식사 빈도	284
〈표 7-9〉 가족 여가활동 빈도	286
〈부록표 1〉 미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전 산업)	323
〈부록표 1〉 미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전 산업)	325
〈부록표 2〉 미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농림광공업)	326
〈부록표 3〉 미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전기하수건설업)	327
〈부록표 4〉 미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도소매업)	328
〈부록표 5〉 미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운수업)	329
〈부록표 6〉 미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숙박음식업)	330
〈부록표 7〉 미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 ..	331
〈부록표 8〉 미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	332
〈부록표 9〉 미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 ..	333
〈부록표 10〉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전 산업)	334
〈부록표 11〉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농림광공업)	335
〈부록표 12〉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전기하수건설업)	336
〈부록표 13〉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도소매업)	337

〈부록표 14〉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운수업)	338
〈부록표 15〉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숙박음식업)	339
〈부록표 16〉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 ...	340
〈부록표 17〉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	341
〈부록표 18〉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	342

그림 목차

[그림 2-1]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규모추정	40
[그림 2-2] 자영업자 가구소득 분포	47
[그림 2-3]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의 자영업 진입연령별 비중	104
[그림 3-1] 0~6세 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전 산업)	145
[그림 3-2] 가임기 자영업자(부·모) 0~2세 자녀 직접 돌봄 비율	146
[그림 3-3] 가임기 자영업자 3~5세 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비율	149
[그림 3-4] 가임기 자영업자 3~5세 자녀의 시간대별 직접 돌봄 비율	150
[그림 3-5] 취학자녀(만 9세 이하) 시간대별 보육방법 (전 산업)	152
[그림 3-6] 가임기 자영업자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직접 돌봄 비율	153
[그림 3-7] 가임기 자영업자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홀로 있는 비율	155
[부록그림 1] 0~6세 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전 산업)	325
[부록그림 2] 0~6세 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농림광공업)	326
[부록그림 3] 0~6세 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전기하수건설업)	327
[부록그림 4] 0~6세 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도소매업)	328
[부록그림 5] 0~6세 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운수업)	329
[부록그림 6] 0~6세 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숙박음식업)	330
[부록그림 7] 0~6세 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	331
[부록그림 8] 0~6세 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332
[부록그림 9] 0~6세 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 ·	333
[부록그림 10]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전 산업)	334

[부록그림 11]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농림광공업)	335
[부록그림 12]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전기하수건설업)	336
[부록그림 13]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도소매업)	337
[부록그림 14]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운수업)	338
[부록그림 15]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숙박음식업)	339
[부록그림 16]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	340
[부록그림 17]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341
[부록그림 18]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	342



Abstract

A Study of the Living Status of the Self-Employed to Respond to Low Fertility and Aging

The share of the self-employed in total employment in Korea is very high. As of 2008, the share of the Korean self-employed was 31.3%, nearly twice as much as the OECD average of 15.8%. In Particular, after the 1998 Asian Financial Crisis, the share had risen to 30% of total employment. After that, there was a downturn in its share, and in 2003 when the Credit Crisis occurred, it largely declined. And since 2006, it has sharply fallen again.

The self-employed sector has a large share of the Korean economy, but its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is considered to be low. It is widely agreed that the share of the self-employed is quite large compared to the Korea's economic scale, but there are growing concerns that the abrupt restructuring of the sector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Korea's economy. Therefore, it is required to come up with proper measures so that the restructuring of the self-employed sector is carried out gradually, and the household economy of the self-employed is not undermined in the

process of the restructuring.

Very aware of this,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conducted a large- scale survey on the living status of the self-employed with less than 5 employees as of December 2011. Based on the results, the KIHASA understood the current status of health, child birth, child-rearing environment, welfare services, the preparation of post-retirement life, and social participation of the self-employed, and examined ways to promote related policies.

The survey analysis finds that the poverty rate of the self-employed is low, but the overall income level is quite lower than that of paid workers. The result analyzed by income quintile is also the same, meaning that the income of self employed people is lower than that of paid workers.

When it comes to the childbirth rate, the fertility rate of the self-employed seems to be getting lower. The expected number of children of the self-employed is predicted to be fewer than that of total fertile women, and the self-employed plan to have fewer children compared to the fertile women due to various restrictions. Therefore, measures are needed to reconcile work and family life and to make the self-employed be direct beneficiaries of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so that they can feel comfortable about child-bearing and -rearing.

Against people's expectation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the overall health status of small business owners is better than the result of the Korea National Health &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for the general public. Nevertheless, considering their working condition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healthcare services for small business owners who have not benefitted from the social security system.

As to the preparation of post-retirement life, the retirement age that the self-employed wish is higher than that of paid workers. Low income self-employed people are highly likely to face unprepared post retirement life if they do not fully prepare stable old age income during their work period. Therefore, the national level support programs for old age income security are required so that the self-employed themselves can secure their own old age income during their work period.

For the career history of the self-employed, more than half of the self-employed with less than 5 employees were paid workers before they became self-employed, and most of male self-employed people were paid workers before running their own businesses. More and more people in their 40s and 50s are getting self-employed, and the average period working as a paid worker is longer than the period working as a self-employed. In addition, it is very rare to change their businesses and to have plans on closing their businesses in the future. As a result, self-employed people are least likely to become paid workers again. Therefore, what is needed for the self-employed is to strengthen the welfare system and social security net for them, rather than promoting policy measures to transit self-employment into paid employment.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취업자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자영업 부문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크지만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그 규모가 부담스럽다는 진단이 일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너무 급격히 진행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이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완만히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자영업 생활자들의 가계경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 정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5인 미만 자영업 사업주에 대한 생활실태연구를 기획하여 2011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의 건강, 출산 및 양육 환경, 복지서비스와 노후준비 및 사회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태조사는 통계청의 2010년 전국사업체조사 대상 사업체 중에서 종사자규모 5인 미만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이중에서 11,082개 업체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완료 후 분석 가능한 11,232개 표본을 확보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II. 주요 연구결과

5인 미만 자영업 사업주의 가구소득을 계층별로 규모를 추정하고 빈곤가구의 규모를 비교한 결과,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영업자 가구의 빈곤율이 낮은 반면에 전반적인 소득수준은 근로자 가구의 소득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5분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 가구가 근로자 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 가구소득의 분포를 보면 평균값 이하에 대부분의 가구가 밀집되어 있고, 가구소득의 편차가 매우 크다.

가계지출에서 식료품비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며, 교육비와 기타 지출은 전체 소득계층에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에 의료비는 전체 소득계층이 지출액수가 유사하고, 따라서 보건의료비 지출의 비중은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출산행태를 분석할 결과 향후 자영업자의 출산수준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기대자녀수는 전체 가임기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이상자녀수는 전체 가임기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이상자녀수에서의 차이가 실제자녀수나 기대자녀수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자영업자가 장애요인들로 인하여 전체 여성에 비해 자녀 출산을 더 축소하고 있다.

다른 한편 자영업이라는 근로형태의 장점이 실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도 고객관리 등의 차원에서 일정한 시간대에 근무를 하여야 하며, 출산이나 양육 초기에 휴직을 하여야 하는 등 일반적인 취업여성 혹은 맞벌이 부부와 같이 자영업 종사자들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역시 자녀 양육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추가 출산을 주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출산과 양육을 마음 놓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이 일가정양립제도와 노후소득보장제도 등에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자영업자의 건강수준이나 의료이용, 건강검진 수준, 민간건강보험 가입 등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표본추출 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선별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대상 자영업자의 경우 비록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지라도 각 가구의 주된 수입원일 가능성이 많고, 이들의 경우 타 가구원에 비해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의 특성 등에 맞게 더 세밀하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체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의 노후 준비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희망하는 은퇴연령은 일반 임금노동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력수준 및 가구 소득수준 등 자영업자의 사회적 계층에 따라 희망 은퇴 시점에서 차이가 보였는데 임금노동자의 경우와 달리 고학력,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저학력 저소득 자영업자에 비해 희망 은퇴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현재의 자영업을 유지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활동 불안정 및 소득파악여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저조하고 제도 운영상으로도 한계가 있는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을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보장대책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구총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업자 중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납부율이 낮고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에 이들이 노령층이 될 경우 무연금자 또는 저연금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의 여가와 관련하여, 노후에 희망하는 여가 욕구와 현재의 여가생활이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특별히 관광 및 야외나들이, 운동 및 스포츠활동 등에 있어 욕구와 현실의 일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여가가 다른 여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용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여가 유형으로서 자영업자들이 여가에 할애할 시간이 길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욕구 불일치로 해석된다.

자영업자의 직업이동 경로를 살펴본 결과, 자영업 사업주의 임금근로 경험 비율은 60.8%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남성 사업주의 경우는 7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운수업 사업주의 경우 임금근로 경험 비율은 83.5%에 달해, 임금근로를 오래 지속한 고연령층은 다른 산업보다도 운수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영업 시작 평균 연령은 36.5세이며 자영업 평균 종사기간은 13.4년으로 긴 편이며, 업종 전환 평균횟수는 0.55번에 불과하여 자영업자의 업종 전환 사례는 매우 적었다. 주로 고연령층이 운수, 숙박·음식, 시설관리업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연도별 진입연령 비중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40대와 50대의 자영업 진입 비중이 그 전과 달리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

III.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은 낮은 생산성과 취약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자영업 부문은 앞으로도 약화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과정에서 자영업 부문의 급격한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각종 사회안전망을 자영업 종사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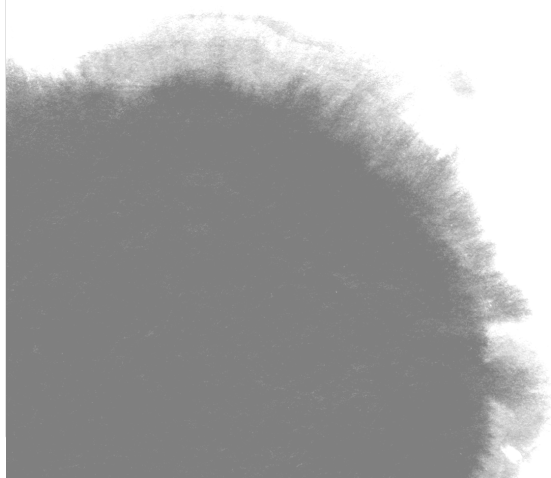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의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근로자 중심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영세자영업 사업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자영업 가구의 고용보험에 의한 모성보호급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에 제외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지원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도 여전히 크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소액의 보험료로 기본적 보장을 제공하는 제도 개선도 고려할 수 있다.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소가 추진 중인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자에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가구에 비해 장애인 가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며, 노인가구의 경우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주요용어: 자영업자, 자영업자의 소득과 지출, 노후준비, 출산과 양육

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1년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4,244천 명 중 자영업자는 5,594천 명으로 23.1%를 차지했다.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254천 명으로 5.2%를 차지하며, 둘을 합한 비임금근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28.2%에 달했다.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 30%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것은 기업의 노동유연화에 따른 실직자가 자영업노동시장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자영업자는 2003년부터 점차 감소하였고, 2006년 이후부터는 더욱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11년에는 감소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2006년 5월부터 감소세였던 자영업자가 전년 동월과 대비하여 다시 5만 3천명 증가한 것이다.

최근 자영업자의 특성변화를 살펴보면, 자영업자 내 성별 추이에서 남성비중이 증가하고 여성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전체 취업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이고, 학력수준은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¹⁾

1)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 임금근로자 중 중졸 이하 11.7%, 고졸 34.1%, 대학졸 이상 54.2%인 반면, 자영업자 중 중졸 이하 25.6%, 중졸 39.3%, 대학졸 이상 35.2%로 조사되었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8.8%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1990년 자영업자 비중은 22.3%였으나 2008년도는 13.0%에 그쳤고,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점과 비교된다.

자영업 노동시장 확대에 대한 입장은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비중과 1인당 GDP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2011년 연구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1인당 GDP와 자영업자 비중의 관계는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류재우·최호영, 1999). 그리고 자영업자는 복수의 공급자가 활동하고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임금근로자에 비해 위험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의 몰락은 개인과 가족의 고통과 함께 국가의 공적부조 등 재정지출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정부는 2005년 최초로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자영업 진입 지원 및 기존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및 시설사업지원 위주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자의 직업 전환 및 사회보장 확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1).

특히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자영업 종사자에게도 그 파급효과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환경이 취약하여 자녀의 출산과 양육환경 및 노인·장애인 등 가족돌봄 여건이 열악하며, 노후 소득 준비 정도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이 저조하여 모성보호 급여와 같은 일·가정 양립제도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자영업 종사자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체 운영의 수익구조가 취약하여 노후 소득을 준비하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자영업 종사자의 복지정책

을 개발하고자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자영업 종사자의 생활실태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에서 본 실태조사 결과와 분석 결과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는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사업체의 사업주으로써, 자영업자의 영세성 판단 기준을 종사자 규모 5인 미만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영세자영업 사업주의 생활실태와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제2절 연구방법

그동안 자영업 관련 연구는 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기초로 진행되어 왔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는 고용동향을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생활실태와 관련한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영업 종사자의 종합적인 생활실태를 분석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자영업 종사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른 기초자료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응 자영업자 복지수요 조사’를 실시하였다.

1. 표본설계

가. 자영업자의 정의²⁾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영업자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사용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 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란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하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란 “자기 책임하의 독립적인 형태로 일이 수행되며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을 하는 자”를 말한다.³⁾ 또한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사용하는 자영업자를 지칭하기도 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서는 자영업자를 “개인 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 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⁴⁾

또한 본 연구에서 영세자영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영세성 판단 기준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우선 종사자규모를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체의 사업주를 영세자영업자로 판단하고 있다. 다른 한편 연간 매출액을 영세성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연간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 및 면세사업자를 영세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있다(황수영, 2005; 이승렬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 규모에 의한 분류를 적용하여 영세자영업자를 5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2) 자영업자에 대한 정의는 이승렬 외(2009) 참조

3)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2012) 참조

4) 전국사업체조사보고서(2011) 참조

나. 모집단 분석

본 ‘저출산·고령화 대응 자영업자 복지수요 조사’의 표본추출을 위한 모집단은 2010년을 기준으로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사업체 2,572,720개로 한다. 포괄범위에 산업 분류상 영세자영업과 무관한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 산업은 제외한다. 그리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점, 가맹점 및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은 역시 제외한다.

〈표 1-1〉 2010년도 산업별 전국 사업체 규모

산업대분류	빈도	백분율
전산업	2,572,720	100
농림수산업	472	0.02
광업	1,158	0.05
제조업	200,118	7.78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117	0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1,520	0.06
건설업	52,154	2.03
도매및소매업	746,089	29
운수업	321,841	12.51
숙박및음식점업	562,598	21.87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8,819	0.34
금융및보험업	5,911	0.23
부동산업및임대업	95,144	3.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38,387	1.49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6,583	0.64
교육서비스업	115,172	4.48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4,772	1.74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93,669	3.64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268,196	10.42

〈표 1-2〉 2010년도 지역별 전국 사업체 규모

지역	사업체수	백분율	지역	사업체수	백분율
전체	2,572,720	100.0			
서울	564,301	21.93	강원	94,751	3.68
부산	208,694	8.11	충북	80,336	3.12
대구	146,391	5.69	충남	103,069	4.01
인천	124,074	4.82	전북	95,431	3.71
광주	77,858	3.03	전남	97,135	3.78
대전	73,646	2.86	경북	147,626	5.74
울산	54,944	2.14	경남	174,027	6.76
경기	494,392	19.22	제주	36,045	1.40

다. 표본 규모 및 표본 배분

표본의 규모는 전국 5인 미만 사업체 11,082개 업체로 하며, 이때의 자영업자의 범위는 5인 미만 사업체로 한정하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차이가 있으나 편의상 소상공인도 영세자영업자로 포함한다.

추출단위는 개인사업체로 하며, 표본추출 대상은 2010년 전국사업체 조사자료를 활용한다. 산업분류체계는 제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이용한다. 그리고 2007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중소기업연구원)결과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전체 표본규모를 산정한다.

〈표 1-3〉 2010년도 평균임금 기준 표본규모

평균임금(하용오차)	90%	95%	99%
200만 원(±3%)	8,274	11,802	20,368
200만 원(±5%)	3,683	5,258	9,098

표본규모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 전체 표본 규모:

$$- n = \frac{N(z_{\alpha/2}S)^2}{NB^2(z_{\alpha/2}S)^2}, \text{ 여기서 } B = z_{\alpha/2} \sqrt{\frac{N-n}{n} \frac{S^2}{n}}$$

－ 층화 추출시 표본규모 산정식

$$n = \frac{\sum_{h=1}^L N_h^2 S_h^2 / a_h}{N^2 D + \sum_{h=1}^L N_h S_h^2}, \text{ 여기서 } a_h = \frac{(N_h S_h)^p}{\sum_{h=1}^L (N_h S_h)^p}, D = B^2 / 4$$

표본배분방법은 산업분류별로 사업체 규모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산업별, 지역별 사업체 규모에 따라 변동이 심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역배분(power allocation)방법을 사용한다.

$$n_h = n \times \frac{N_h^p}{\sum_{h=1}^L N_h^p}, p=0.4$$

표본 추출 방법은 지역별 산업분류별 층화하여 층화 계통추출을 하며, 산업별, 지역별 표본 배분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4〉 산업별 표본 배분 현황

산업대분류	모집단	비례배분	역배분 (p=0.4)	역배분 (p=0.5)
전체	2,572,720	11,802	11,802	11,802
농림수산업	472	2	89	50
광업	1,158	6	128	78
제조업	200,118	918	1,002	1,027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17	0	51	2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	1,520	7	142	89
건설업	52,154	240	585	524
도소매업	746,089	3,423	1,696	1,983
운수업	321,841	1,476	1,212	1,302

〈표 1-4〉 산업별 표본 배분 현황 (계속)

산업대분류	모집단	비례배분	역배분 (p=0.4)	역배분 (p=0.5)
숙박및 음식점업	562,598	2,581	1,515	1,722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819	40	287	216
금융및 보험업	5,,911	27	245	176
부동산 및 임대업	95,144	437	744	70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8,387	176	518	45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6,583	76	370	296
교육서비스업	115,172	529	803	77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4,772	205	550	48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3,669	430	739	70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68,196	1230	1,126	1,189

〈표 1-5〉 지역별 표본 배분 현황

지역	모집단	비례배분	역배분 (p=0.4)	역배분 (p=0.5)
전체	2,572,720	11,802	11,802	11,802
서울	564,301	2,588	1,308	1,489
부산	208,694	957	879	905
대구	146,391	672	763	758
인천	124,074	569	714	698
광주	77,858	358	592	553
대전	73,646	338	579	538
울산	54,944	253	515	465
경기	494,392	2,268	1,241	1,394
강원	94,751	434	641	610
충북	80,336	368	600	562
충남	103,069	473	663	636
전북	95,431	438	643	612
전남	97,135	446	647	618
경북	147,626	677	765	761
경남	174,027	798	817	827
제주	36,045	165	435	376

라. 추정방법

추정방법으로 조사완료율 및 무응답, 사후조정과정을 통해 설계 가중값이 조정된 최종 가중값을 적용한 가중평균 및 표준오차를 산정한다. 분산 추정의 경우 SAS ver 9.2를 이용하여 Taylor 근사 분산식을 적용한 추정치를 산정한다.

추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사업체조사 결과에서 어떤 특성 y 를 갖는 사업체수에 대한 가중표본합계치는 조사완료된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기호의 정의

N : 모집단 총 사업체수($=\sum_h N_h$)

N_h : h 층의 모집단 사업체수

n_h : h 층의 표본사업체 수

p_{hi} : h 층의 i 번째 표본사업체의 추출확률

r_h : h 층의 i 번째 사업체의 응답률

w_{hi} : h 층의 i 번째 사업체의 가중치

w_{hi}^r : h 층의 i 번째 사업체의 무응답조정가중치

w_{hi}^p : h 층의 i 번째 사업체의 사후가중치

W_{hi} : h 층의 i 번째 사업체의 최종가중치

① h 층의 i 번째 사업체의 추출확률 계산

$$p_{hi} = \frac{n_h}{N_h} \quad (1)$$

② 가중치는 추출확률의 역수이므로 식(1)로부터 다음과 같이 가중치

를 계산할 수 있다.

$$w_{hi} = \frac{1}{p_{hi}} = \frac{N_h}{n_h} \quad (2)$$

- ③ 무응답 조정가중치는 표본사업체 중에서 응답한 사업체의 역수로 계산된다.

$$w_h^r = \frac{n_h}{r_h} \quad (3)$$

- ④ 사후 가중치

$$w_h^p = \frac{X_h}{\sum_{i=1}^{n_h} \widehat{X}_{hi}} \quad (4)$$

여기서 X_h 는 2010년 기준 h 층의 사업체 수이며, $\widehat{X}_{hi}$ 은 h 층의 가중치 합계이다.

결과적으로 최종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W_{hi} = w_{hi} \times w_h^r \times w_h^p$$

- ⑤ 전국 사업체의 평균 산출

$$\widehat{\bar{Y}} = \sum_h^L \sum_i^{n_h} W_{hi} y_{hi} / W_{..} \quad (5)$$

여기서 $W_{..} = \sum_{h=1}^L \sum_{i=1}^{n_h} W_{hi}$ 로서 표본사업체들의 가중치의 총계이다.

- ⑥ 분산과 표준오차

$$\widehat{V}(\widehat{\bar{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y_{hi} - \bar{y}_h)^2 \quad (6)$$

여기서 $\bar{y}_h = \sum_{i=1}^{n_h} y_{hi} / n_h$ 이다.

$$SE(\widehat{\bar{Y}}) = \sqrt{\widehat{V}(\widehat{\bar{Y}})} \quad (7)$$

⑦ 상대표준오차

$$\widehat{CV}(\widehat{Y}) = \frac{SE(\widehat{Y})}{\widehat{Y}} \times 100\% \quad (8)$$

2. 무응답 대처방안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응답은 크게 두 가지로 항목 무응답과 단위 무응답으로서 각각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무응답을 대체하고자 한다. 우선 단위무응답(unit nonresponse)은 표본사업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응답거절, 사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동일층의 유사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조사 지침에서 따라 대체한다. 만일 현장 대체가 불가능하여 더 이상 조사가 어려운 경우, 최종 완료표본을 대상으로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법(calibration)으로 단위무응답을 보정한다. 그리고 항목무응답(item nonresponse)은 특정 조사항목에 대해 조사자료 수집이 불가능하거나, 응답자의 응답거절, 범위 외 응답 등으로 발생하는 무응답으로서 동일층의 유사사업체의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핫덱 대체(hot-deck imputation)를 실시한다.

3. 표본의 한계

본 연구는 사업체 자료의 특성상 사업체 확률계통표집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서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표집설계가 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조건으로 인한 몇 가지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우선,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는 고정된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에 한정한다. 즉 이동사업장을 이용하여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제외되어 있고 이것은 매우 영세한 사업체가 모집단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의

미하고, 따라서 본 조사의 결과는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영세자영업자의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의 시의성에 관한 한계점도 밝혀둔다.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는 2010년을 기준으로 산출된 자료로서 연구 결과를 비교할 시의성 있는 모집단 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조사 기준연도가 2010년인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가중값 조정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조사시점인 2011년 말 현재 영세자영업자 규모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사업체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주의 가구특성을 조사하는 방법을 취했다. 일반적으로 가구조사를 통한 자영업자 발견확률은 매우 낮으며,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가구특성을 조사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엄밀하게 본 조사 결과를 전체 가구의 특성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사업체 표본 자체가 전국에 기반한 전수조사에 준하고, 본 조사는 이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지역과 산업을 기준으로 표본 추출한 것으로써, 전국대표성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조사과정과 분석 표본 및 분석 방법

실태조사는 2011년 12월 말을 조사시점으로 정하고,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5인 미만 사업체로서 추출된 표본 11,802 사업체 중에서 총 11,667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조사를 완료한 이후 종사자 규모의 변경 사항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사업체의 종사자 규모의 변동이 있는 사업체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표본은 5인 미만 사업체이면서 개인사업체인 11,232개로 분류되었으며, 이 표본

에 표본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본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표본수는 11,439개가 된다. 그리고 분석의 단위는 항목에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체의 사업주 개인, 사업주의 가구, 사업체로 구분될 수 있다.

〈표 1-6〉 추출 표본과 조사완료 표본

(단위: 사업체 수)

모집단 규모	추출 표본	조사완료 표본	분석대상 표본
2,572,720	11,802	11,667	11,232

분석과정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항목별로 무응답의 수가 달라 보고서에 제시한 표 중에서 일부는 전체 표본수와 항목별 표본수의 합이 다를 수 있다. 또한 가중치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표의 범주별 비율의 합이 100.0%와 근소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분석 방법은 주로 교차표와 평균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교차표 분석에는 χ^2 검정 결과를, 평균의 차이 분석에는 t검정 또는 F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3절 기존연구의 주요 쟁점

국내 자영업 부문에 대한 기존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자영업 추이와 특징,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 분석,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성과, 자영업 노동시장과 관련된 정책 등에 관한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자영업 노동시장의 추이와 특징에 대한 분석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류재우 외, 1999; 금재호 외, 2009; 김복순, 2011; 서

재만, 2011). 그 특징은 자영업 노동시장의 규모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임금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실직자가 자영업시장으로 유입되어, 2002년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3~2004년 신용카드 대란에 따른 내수 침체로 자영업 부문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고, 2006년 이후 계속하여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⁵⁾

규모의 축소뿐만 아니라 몇 가지 다른 특징적 현상도 관찰되고 있다. 성별에 따른 특징으로 1991년 이후 남성 자영업자가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여성 자영업자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50대 이상 고연령층의 진입이 증가하고 있다. 고연령층의 자영업 진입 확대는 임금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른 효과로 해석된다(김복순, 2011; 서재만, 2011).

기존 연구 동향에서 또 한 가지 조류를 형성하는 것은 자영업 선택 결정요인 분석과 소득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분석이다(전병유, 2003; 금재호 외, 2009; 이병희, 2012). 노동시장 성과로서 소득 수준을 비교할 때, 1998~2007년 노동패널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높지만, 임금근로자의 명목임금 증가폭에 비해 자영업자의 명목소득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금재호 외, 2009). 또한 2003~2010년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 부문의 소득 증가는 부진한 상황이며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 부정적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이병희, 2012).

다음은 자영업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연구 결과를 볼 수 있다. 정부가 자영업자 대책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2003년 경 신용대란을 계

5) 2003~2004년 자영업 부문 비중 감소를 ‘제1차 구조조정’, 2006년 이후 감소를 ‘제2차 구조조정’으로 부르고 있다(이병희, 2012).

기로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사회 문제로 확대되면서부터이다. 이후 정부는 2005년 ‘영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과잉진입을 방지하고,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영 안정 지원, 사업 전환 및 퇴출유도, 프랜차이즈를 통한 자영업 경쟁력 제고, 건전한 자영업 환경 조성 등이었다. 이 대책은 최초로 자영업 부문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가장 먼저 지적된 문제는 자영업 부문의 문제를 과잉진입의 문제로 인식하여 대책의 초점을 진입제한에 두었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문자격증제도 및 신고제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가 공급자의 서비스 질과 소득을 보장한다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오히려 대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미흡했다는 점도 주요한 비판의 초점이 되었다(서재만, 2011).

위와 같은 비판의 맥락에서 2005년 종합대책 이후로 최근까지 자영업 부문의 정책적 관심은 사회안전망에 맞춰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승렬 외(2009) 연구는 자영업자의 일자리 특성과 서울 및 안산 지역 자영업자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의 사회보장제도 보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차입제약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약 15.7%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입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영세자영업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할 경제적 유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해서 가입의 경제적 유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승렬, 2009).

산재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자영업자의 인적 특성보다는 경제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소득이 낮은 경우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현재의 소득 일부를 지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다. 산재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이 지출을 위하여 미래의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결과가 수반되고, 결국 사후적으로 지출될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자영업자에게 적은 부담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위험이 발생할 때 최소한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이승렬, 2009).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인식에 따라 그동안 부분적으로 제도보완이 이루어 졌지만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2012년 7월부터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과 고용보험)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최저임금 미만(월 104만 원)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분 각각에 대해 1/2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120%(월 125만 원)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분 각각에 대해 1/3을 지원한다(윤석명, 2012). 그러나 이 제도는 사업주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건강보험에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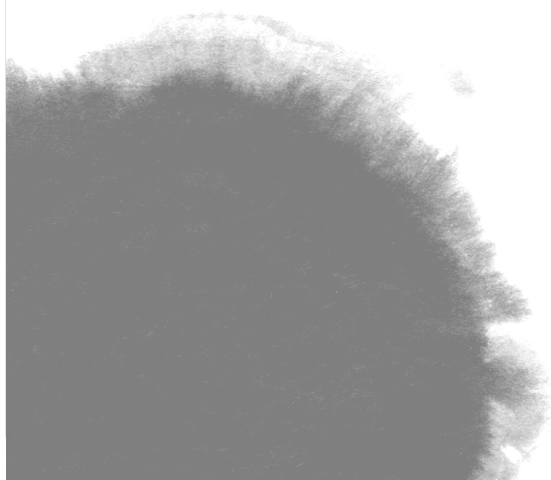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에게 임의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하여 2012년 1월부터 고용원이 없는 사업주 또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 사업주가 희망하는 경우,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한정되어 있고 모성보호 급여는 제외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에게 가입이 허용되고 있지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건설기계사업을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10년도 기준으로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사람은 50인 미만 전체 사업장 중에서 0.65%에 불과하여, 임의가입 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윤조덕, 2012).

이상의 기존연구 결과를 주요 쟁점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안전망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제시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자영업 부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일반적 생활실태는 밝혀진 바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그 이외의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성과는 또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자영업자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며, 앞서 살펴본 주요 쟁점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2장

자영업자의 가구 및 사업체 일반 현황



제2장 자영업자의 가구 및 사업체 일반 현황

제1 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조사한 표본은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사업체 11,232개의 사업주으로써, 사업주의 성별은 남성 54.9%, 여성 45.1%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로 40세 미만이 14.2%, 40~49세는 30.4%, 50~59세는 36.0%, 60세 이상은 19.4%로 나타나 40대와 50대가 전체의 66.4%를 차지하여 주 연령층을 형성하고 있다. 혼인상태에 따라서 전체 사업주 중 미혼자는 7.0%, 기혼 유배우자 비율은 84.4%, 기혼 무배우자(이혼, 사별 등)의 비율은 8.6%를 나타내어 대다수의 자영업자가 현재 배우자와 함께 가족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중졸 이하 19.4%, 고졸 49.5%, 전문대졸 이상 31.2%로 나타나 약 80%가 고졸 이상의 학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조사의 분석 대상인 5인 미만 자영업자의 76.9%는 단독자영업자로 임금을 지급하는 피고용인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피고용인을 두고 있는 고용주의 비율은 22.5%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대다수는 본인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일하며, 피고용인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종사상지위에서 무급가족 종사자로 나타난 사람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응답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표 2-1〉 사업주 특성 1

		(단위: %, 명)	
구분		비율	빈도
전체		100.0	11,439
성	남성	54.9	6,283
	여성	45.1	5,156
연령	40세 미만	14.2	1,476
	40~50세 미만	30.4	3,275
	50~60세 미만	36.0	4,285
	60세 이상	19.4	2,397
혼인상태	미혼	7.0	820
	기혼유배우자	84.4	9,496
	기혼무배우자	8.6	1,122
학력	중졸 이하	19.4	2,483
	고졸	49.5	6,070
	대학졸 이상	31.2	2,885
종사상지위	고용주	22.5	2,570
	단독자영업자	76.9	8,799
	무급가족종사자	0.6	70

주: 1)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2) 기혼무배우자는 이혼, 사별 등을 의미함.

직종에 따라서 서비스업 사업주가 전체의 51.1%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은 판매업 사업주으로써 30.7%를 나타냈다. 서비스업 사업주와 판매업 사업주가 5인 미만 자영업 사업체의 80%를 넘고 있는 것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이 2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숙박음식업으로 21.5%, 운수업 11.8%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시 지역에 47.3%가 분포하고 있고, 구 지역에 46.3%가 분포하여 시구지역에 전체의 대부분 사업체가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군 지역은 단지 6.4%의 사업체가 분포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16개 시도 중에서 서울에 21.5%, 경기도에 20.2%가 분포하고 다른 시도에는 각각 10%미만을 차지할 뿐이었다. 전체 5인 미만 사업체의 41.7%가 서울과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사업주 특성 2

		(단위: %, 명)	
구분		비율	빈도
전체		100.0	11,439
직종	관리자	0.5	5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2	367
	사무종사자	1.6	184
	서비스종사자	51.1	5,845
	판매종사자	30.7	3,51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0.2	20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9.4	1,07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1	239
	단순노무종사자	1.3	143
산업	농림, 광공업	9.0	1,034
	전기하수·건설업	2.6	296
	도소매업	28.6	3,269
	운수업	11.8	1,352
	숙박음식업	21.5	2,454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4.5	519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7.9	904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14.1	1,610
지역규모	시	47.3	5,257
	군	6.4	753
	구	46.3	5,429
지역	서울	21.5	2,461
	부산	7.9	907
	대구	5.7	654
	인천	4.9	566
	광주	3.0	340
	대전	2.8	325
	울산	2.1	245
	경기	20.2	2,312
	강원	3.5	406
	충북	3.1	358
	충남	3.9	452
	전북	3.7	424
	전남	3.7	418
	경북	5.6	646
	경남	6.8	773
	제주	1.3	154

주: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본 조사 결과 사업주 가구원은 1인 8.8%, 2인 21.4%, 3인 21.7%, 4인 이상이 48.2%이며, 평균 가구원수는 3.23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인 23.9%, 2인 24.3%, 3인 21.3%, 4인 22.5%, 5인 이상 8.1%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전체 1인 가구에 비해 자영업자의 1인 가구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고 4인 이상 가구의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전체 가구원수 평균 2.69명과 비교하면 5인 미만 사업체 사업주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가 0.54명 더 많은 것이다.

가구 내 세대구성에서 1세대 가구비율은 18.6%, 2세대 가구 비율은 65.9%, 3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1세대 가구 비율은 17.5%, 2세대 가구 비율은 51.3%, 3세대 이상 가구 비율은 6.2%인 것에 비해, 1세대 가구의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 비해 1.1%p 높고, 2세대 가구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 비해 14.6%p 높고, 3세대 이상 가구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차이는 1인 가구의 비율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 비해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자영업 사업체 사업주의 1인 가구비율이 낮고, 2세대 가구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간 가구총소득은 평균 4천 131만 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로 연간 2천만 원 미만 비율이 16.5%로 나타났고, 5천만 원 이상 비율은 26.9%로 나타났다. 3천만 원대 비율이 40.0%로 가장 많았고, 4천만 원대 비율은 16.6%로 나타났다. 연간 2천만 원 미만을 자영업 사업주 내의 취약계층으로 분류한다면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사업주 중 16.5%가 가구 소득기준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3〉 사업주 가구 특성

(단위: %, 명, 만 원)

	구분	비율	빈도(평균)
가구원수	1인	8.8	1002
	2인	21.4	2443
	3인	21.7	2481
	4인 이상	48.2	5513
	계	100.0	11,439(3.23)
가구세대수	1인가구	8.7	2132
	1세대	18.6	7534
	2세대	65.9	768
	3세대 이상	6.7	1002
	계	100.0	11,437
가구형태	부부단독가구	18.3	2095
	부부미혼자녀가구	59.0	6753
	편부모 및 조손가구	5.2	598
	1인가구	8.8	1002
	기타가구	8.6	987
	계	100.0	11437
연간가구총소득	2천만 원 미만	16.5	1944
	4천만 원 미만	40.0	4479
	5천만 원 미만	16.6	1808
	5천만 원 이상	26.9	3081
	계	100.0	11,311(4,113)
최저생계비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	4.8	592
소득 수준	최저생계비 120%	3.5	404
	최저생계비 150%	7.4	854
	평균소득	49.9	5516
	평균소득초과	34.4	3945
	계	100.0	11,311

주: 무응답을 제외하고 분석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제2절 가구의 소득, 지출 및 재산

여기서는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영세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과 지출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자영업자의 경제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자영업자 가구의 경제상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소득계층별로 구분하고, 계층별 규모를 추정하였다. 또한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지출과 재산·부채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소득계층별로 분석함으로써 계층별 경제상황을 살펴보았다.

계층구분을 위한 기준은 가구단위 총소득을 적용하였으며, 하위 소득계층에 대해서 소득인정액을 추가적인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자 판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유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값이다. 소득계층별 분석에 있어서 자영업자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구분하였다. 또한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비교함으로써 전국가구는 물론 근로자가구의 경제상황과 비교분석을 하였다.

자영업자의 지출실태 분석은 총생활비를 보건의료비, 교육비, 식료품비, 기타지출로 구분하였으며, 가구지출에 있어서 핵심 쟁점인 보건의료비와 교육비의 과부담 가구에 관심을 두었다. 또한 가계수지를 통하여 자영업자 가구의 경제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표본은 자영업자 개인소득, 가구소득 그리고 가구지출에 대한 응답에 결측치가 없는 10,979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영업자의 소득과 지출 분석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분석 대상이 5인 미만의 종사자와 고정된 사업장을 가진 사업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동사업장을 이용하여 자영업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는 제외되었으며, 이는 매우 영세한 사업체가 모집단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1. 자영업자의 소득계층별 규모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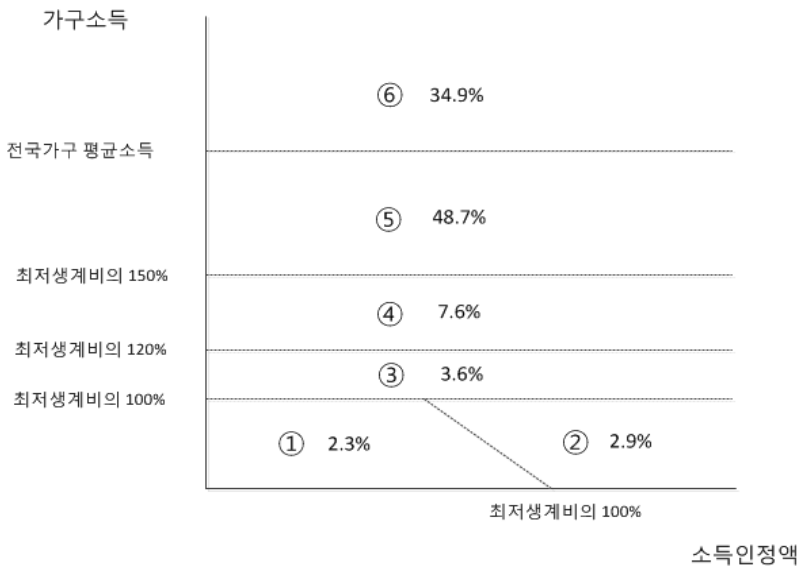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계층별로 구분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는 복지수요가 소득 수준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을 더욱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또한 빈곤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책기준선으로 활용하는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추가하여 소득계층을 구분하였다. 소득계층은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을 기준은 총 6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층 1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00% 미만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100% 미만인 가구
- 계층 2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00% 미만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100% 이상인 가구
- 계층 3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00% 이상 ~ 120% 미만인 가구
- 계층 4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 이상 ~ 150% 미만인 가구
- 계층 5 -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상이면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미만인 가구
- 계층 6 -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상인 가구

조사결과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규모를 보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계층은 전체의 5.2%(592 가구)이다.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에 해당하는 계층 1은 2.3%(260 가구)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100% 이상인 계층 2는 2.9%(332 가구)이다. 또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00% ~ 120%인 계층 3은 3.5%(406 가구),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 ~ 150%인 계층 4는 7.6%(854 가구),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대비 150% 이상이고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

하인 계층 5는 48.7%(5,516 가구), 그리고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득 이상인 계층 6은 34.9%(3,945 가구)로 나타났다.

[그림 2-1]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규모추정



자영업자 가구의 계층별 규모를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계층별 규모와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결과에 의하면 계층 1은 자영업자 가구
 가 2.3%, 전국가구가 8.8%로 비교적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계층 2·3은 6.5%와 7.7%, 계층 4는 7.5%와 6.9%로 상대적으로 차이
 가 크지 않으며, 계층 5·6은 83.6%와 76.6%로 규모에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 가구는 전국가구에
 비해서 저소득층의 규모가 작고, 소득이 많은 계층의 비율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표 2-4〉 소득계층별 가구규모 비교

(단위: %)

소득계층 구분	1	2	3	4	5	6	전체
본 조사 (2011년 기준)	2.3	6.5		7.6	83.6		100
		2.9	3.6		48.7	34.9	
복지욕구 실태조사 ¹⁾ (2010년 기준)	8.8	7.7		6.9	76.6		100

주 2011년 복지욕구 실태조사는 전국가구의 소득, 지출, 자산 및 생활실태, 그리고 복지욕구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 18,000가구를 대상으로 2011년 3월~5월에 실시한 조사이며, 조사시점은 2010년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2011년 복지욕구 실태조사, 1차 조사).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자영업자 가구가 전국가구와 비교하여 소득이 낮은 계층의 비율이 낮다는 점은 빈곤가구 규모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빈곤가구 규모 비교는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을 기준으로 한다. 절대빈곤율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가구의 비율이며,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절대빈곤율은 계층 1의 비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상대빈곤율 기준은 계층 4와 계층 5를 구분하는 최저생계비 대비 120% 수준과 유사하다⁶⁾. 따라서 계층 1, 계층 2, 계층 3의 규모를 더한 값은 자영업자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의 근사치라 할 수 있다.

자영업자 가구의 빈곤율을 전국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에 의하면 자영업자 가구의 절대빈곤율은 2.3%, 상대빈곤율은 8.8%이며, 전국가구의 절대빈곤율은 자료에 따라 각각 8.8%와 8.7% 그리고 상대빈곤율은 16.6%와 18%이다. 따라서 본 조사의 대상인 자영업자 가구는 전국가구에 비해서 빈곤율이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6) 빈곤율 계산은 경상소득이 아닌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장소득이란 가구의 총소득에서 비경상소득(기타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가구소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영업자 가구의 시장소득이 아니라 가구총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하였다. 소득계층별로 기타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은 규칙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계층별 규모의 비율은 동일한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2-5〉 자영업자 가구와 전국 가구의 빈곤율 비교

구분	(단위: %)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본 조사 (2011년)	2.3	8.8
2011년 복지욕구 조사 (2010년)	8.8	16.6
통계청 가계동향조사(1인가구 포함, 시장소득, 2010년)	8.7	18.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 복지욕구 실태조사, 1차 조사(조사시점 2010년).
통계청(2010), 가계동향조사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5분위로 구분하여 이를 통계청 조사와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에 의하면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은 월평균 3,467천 원으로 통계청 조사의 근로자 가구소득 4,199천 원은 물론 전체 가구소득 3,842천 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반면에 근로자 이외 가구소득 3,274천 원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소득 분위별로 구분한 결과 역시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데, 자영업자 가구소득은 근로자가구의 가구소득은 물론 전체 가구의 가구소득보다 낮은 반면에 근로자 이외 가구의 가구소득에 비해 다소 높다.

〈표 2-6〉 소득 5분위별 월평균 가구소득 규모 비교

소득 분위	본조사(2011년 기준)	(단위: 천 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1년 기준)		
		전체 가구	근로자 가구	근로자외 가구
전체	3,467	3,842	4,199	3,274
1분위	1,245	1,255	1,711	808
2분위	2,237	2,551	2,891	1,948
3분위	3,119	3,505	3,808	3,007
4분위	4,114	4,591	4,930	4,027
5분위	6,774	7,303	7,640	6,574

자료: 통계청(2011), 가계동향조사

2. 자영업자 소득 실태

가. 자영업자 개인 소득

자영업자 개인의 연평균 소득의 규모를 보면 총소득 기준으로 연 2,978만 원이며, 경상소득은 연 2,967만 원 그리고 시장소득은 2,934만 원이다. 개인소득을 소득계층별로 구분해서 보면,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층 1은 844만 원, 계층 2는 1,020만 원, 계층 3은 1,488만 원, 계층 4는 1,819만 원, 계층 5는 2,497만 원, 계층 6은 4,319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경상소득과 시장소득은 총소득과 차이가 매우 적으며, 소득계층에 따라 동일한 패턴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자의 경우 하위 소득계층도 공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적이전소득의 의존도가 낮은 것은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영업자는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의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이다.

〈표 2-7〉 자영업자 개인의 소득 규모

(단위: 만 원 / 년)

구분	소득 계층						전체
	1	2	3	4	5	6	
시장소득 ¹⁾	814	958	1,445	1,755	2,459	4,269	2,934
경상소득 ²⁾	844	1,018	1,490	1,813	2,490	4,298	2,967
총소득	844	1,020	1,488	1,816	2,497	4,319	2,978

주: 1) 시장소득 = 총소득 - 공적이전소득 - 기타소득, 2) 경상소득 = 총소득 - 기타소득

연간 총소득을 소득원천별로 보면 자영업자의 특성상 사업소득이 대부분을 차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 자영업자 개인의 소득원천별 연간 총소득 규모

(단위: 만 원, 년)

구분	소득 계층						전체
	1	2	3	4	5	6	
사업소득	779.8	939.5	1,406.5	1,728.6	2,417.1	4,115.4	2,855.3
근로소득	17.1	19.1	6.4	5.4	10.6	31.1	17.6
농어업소득	0.1	1.0	1.9	6.4	3.3	7.9	5.0
재산소득	2.6	3.8	1.8	4.8	15.1	98.8	42.8
사적이전	14.6	8.7	18.6	9.8	8.8	16.2	12.0
공적이전	36.2	62.2	48.3	58.2	36.1	32.4	37.6
기타소득	0.0	1.6	0.6	3.3	6.9	20.6	10.9

소득 원천별 비중은 살펴보면 총소득 대비 사업소득의 비율은 평균 95.78%이며, 계층 1과 계층 2가 각각 91.69%와 90.69%, 계층 3~계층 6은 95~6%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계층 1과 계층 2는 다른 계층에 비해 근로소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는 사업소득이 낮은 경우에 근로 등의 추가적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보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산소득은 전반적으로 낮으나 전국가구 평균소득을 상회하는 계층 6의 경우 다른 계층과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적이전소득의 경우에는 계층 2가 가장 비율이 높으며, 계층 1~계층 4가 계층 5~계층 6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9〉 자영업자 개인의 연간 총소득 대비 소득원천별 비율

(단위: %)

구분	소득 계층						전체
	1	2	3	4	5	6	
사업소득	91.69	90.69	94.78	95.17	96.76	95.21	95.78
근로소득	2.01	1.84	0.43	0.30	0.42	0.72	0.59
농어업소득	0.01	0.10	0.13	0.35	0.13	0.18	0.17
재산소득	0.31	0.36	0.12	0.26	0.60	2.29	1.43
사적이전	1.72	0.84	1.25	0.54	0.35	0.37	0.40
공적이전	4.26	6.01	3.25	3.20	1.44	0.75	1.26
기타소득	0.00	0.16	0.04	0.18	0.28	0.48	0.37

자영업자 개인의 총소득을 주요 변수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변수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보다는 남성인 경우 소득이 높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가장 높은 반면에 60대 이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변수를 다른 각도로 구분해서 베이비붐 세대 여부로 나누어 자영업자 개인소득을 보면, 2차 베이비붐 세대인 68~74년 출생의 경우가 소득이 가장 높고, 베이비붐 이전 세대인 54년 이전 출생자의 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소득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대도시(구), 중소도시(시), 농어촌(군)의 순서로 소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의 학력수준, 사업체의 종업원수, 매출액은 자영업자의 소득과 비례관계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는 전기하수·건설업, 도소매업, 농림광공업, 기술교육보건의서비스업 등이 소득이 높은 편에 속하고, 반면에 운수업,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의 소득이 낮은 편에 속한다.

〈표 2-10〉 주요 변수별 자영업자 개인의 총소득

(단위: 만 원,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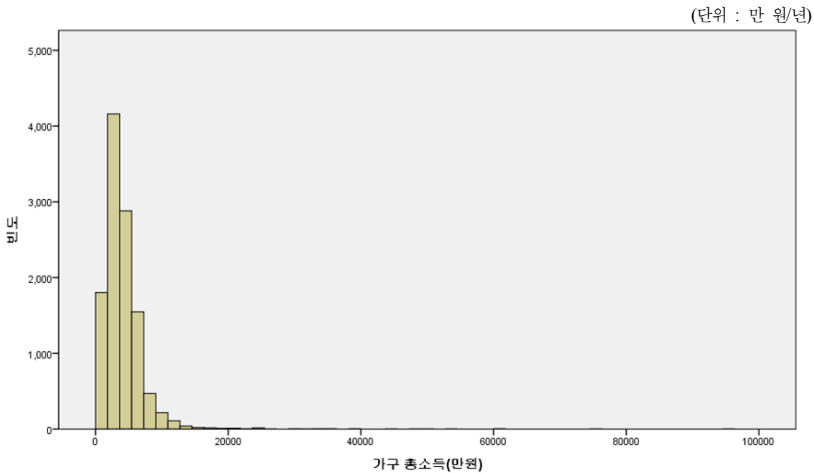
구분		개인소득(만 원/년)	표본수(명)	t/f-value
성별	남성	3,251.0	6,032	12.8***
	여성	2,614.0	4,946	
연령대	40세 미만	3,088.3	1,442	119.3***
	40~50세 미만	3,536.6	3,178	
	50~60세 미만	2,896.2	4,074	
	60세 이상	2,209.1	2,281	
베이비붐 세대 구분	54년생 이전	2,248.0	2,795	88.5***
	55~63년생	3,001.3	3,745	
	64~67년생	3,470.0	1,406	
	68~74년생	3,498.7	1,895	
	75년생 이후	3,084.7	1,137	
학력수준	중졸 이하	2,151.4	2,355	201.7***
	고졸	2,990.1	5,845	
	대학졸 이상	3,597.5	2,777	
거주지역	대도시 (구)	2,996.7	5,005	2.7*
	중소도시 (시)	2,961.9	5,245	
	농어촌 (군)	2,753.7	728	
종사자수	1명	2,324.0	5,773	519.5***
	2명	3,354.0	3,868	
	3~4명	4,597.7	1,338	
월평균 매출	300만 원 미만	1,586.1	2,798	1179.7***
	500만 원 미만	2,318.8	2,608	
	1,000만 원 미만	3,184.8	2,695	
	1,000만 원 이상	4,965.2	2,471	
산업별	농림, 광공업	3,233.2	997	35.8***
	전기하수·건설업	3,704.1	284	
	도소매업	3,311.5	3,139	
	운수업	2,235.6	1,301	
	숙박음식업	2,948.4	2,346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2,825.1	490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3,198.7	861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2,503.3	1,562	

* p<0.05, ** p<0.01, *** p<0.001

나. 자영업자 가구 소득

자영업자의 가구소득은 연평균 4,163만 원이며, 중위소득은 3,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기술통계치(descriptive statistics)에 근거하여 가구소득의 분포를 보면 평균값($\mu=4,161$)보다 중위값($Me=3,600$)이 낮고, 평균 값 이하에 분포가 집중되어 있으며($skew=6.6$), 매우 뾰족한 형태($kurt=126.8$)와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갖고 있는($max=96,000$) 형태의 분포를 보인다. 즉 일반적인 소득 분포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소득격차가 매우 큰 형태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2] 자영업자 가구소득 분포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중 자영업자의 개인소득은 2,965만 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의 7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가구원의 소득은 1,197만 원으로 28.8%의 비율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연평균 소득이 계층에 비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나, 특징적인 사항은 소득계층이 올라갈수록 자영업자 개인이 아닌 나머지 가구원의 소득 비중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계층 1의 경우에 자

영업자 소득은 93.5%, 나머지 가구원의 소득은 6.5%인 반면에 가장 소득이 높은 계층 6의 경우에는 자영업자 소득이 67.2%, 나머지 가구원의 소득이 32.8%를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은 가구원 수의 증가에 비례하는 양상을 보이며($F\text{-value} = 362, \text{sig.} < .000$), 이는 가구규모와 가구소득의 통상적인 관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가구규모에 따른 자영업자 가구 소득을 구체적으로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은 193.9만 원이고 2인 가구는 239.7만 원, 3인 가구는 356.9만 원, 4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는 각각 419.4만 원과 419.5만 원으로 나타났다. 가구 규모별 자영업자 가구 소득에서 특이한 점은 4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의 소득이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표 2-11〉 소득계층별 자영업자 가구 소득

(단위: 만 원/년, %)

구분		자영업자		나머지 가구원		자영업자 가구	
		소득	비율	소득	비율	소득	비율
계 층	1	831.1	93.5	57.8	6.5	888.9	100
	2	971.6	94.1	60.6	5.9	1,032.2	100
	3	1,473.0	91.0	145.8	9.0	1,618.8	100
	4	1,806.6	88.8	226.9	11.2	2,033.5	100
	5	2,485.1	73.9	879.0	26.1	3,364.1	100
	6	4,270.0	67.2	2,083.7	32.8	6,353.6	100
전체		2,965.2	71.2	1,197.4	28.8	4,162.6	100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을 전국 가구의 가구 소득과 비교한 결과, 자영업자 가구소득은 전국 가구(1인 가구 포함)에 비해서 높은 반면에 근로자 가구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자영업자 가구소득은 전국 가구 및 근로자 가구의 가구소득을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2인~4인 그리고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자영업자 가구소득은 근로자 가구는 물론 전국 가구의 가구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12〉 가구 규모에 따른 자영업자 가구소득 및 전국가구와 비교

(단위 : 만 원, 월)

가구원수	본 조사의 자영업자 가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전국 가구	근로자 가구	근로자의 가구
1명	193.9	146.1	192.4	108.4
2명	239.7	267.6	317.5	218.3
3명	356.9	393.7	419.3	346.1
4명	419.4	446.8	464.7	410.1
5명 이상	419.5	465.4	479.0	441.5
전체	346.9	336.3	384.5	269.5

주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전국, 1인 이상 가구, 신분류에 따른 결과임

자료 : 통계청(2011), 가계동향조사

자영업자 가구 소득에 있어서 주목할 점은 자영업자 성별에 따른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의 규모가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소득의 경우 남성 자영업자(3,251만 원/년)가 여성 자영업자(2,614만 원/년)에 비해 소득이 높은 반면에, 가구소득의 경우에는 여성 자영업자 가구(4,323만 원/년)가 남성 자영업자 가구(4,028만 원/년)보다 가구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3〉 자영업자 가구의 성별 소득 현황

(단위: 만 원/년)

구분	자영업자 가구원의 성별	연평균 소득(만 원/년)	t-value
자영업자 개인소득	남성	3,251.0	12.7***
	여성	2,614.0	
나머지 가구원 개인소득	남성	776.9	-30.7***
	여성	1,709.1	
가구소득	남성	4,027.9	-5.2***
	여성	4,323.1	

* p<0.05, ** p<0.01, *** p<0.001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자 가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의 소득수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소득수준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여성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남성 가구

원은 별도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다. 반면에 남성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여성 가구원은 별도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이 적음을 의미한다.

자영업자 가구 소득을 자영업자 개인의 주요 변수에 따라 구분하면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자영업자의 연령이 40대인 경우에 자영업자 가구 소득이 가장 높으며, 반면에 자영업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 가구소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를 구분한 결과는 1차 베이비붐 이후 세대인 64~67년생과 68~74년생의 경우에 가구소득이 높고, 54년생 이전에 출생한 노인세대의 가구소득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 개인의 학력 수준에 따른 가구소득은 자영업자 개인 소득의 경우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자영업자 개인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2-14〉 자영업자 개인의 주요 변수별 가구소득 규모

(단위: 만 원/년, 명)

	구분	가구 소득	표본 수	t/f-value
연령대	40세 미만	4,175.7	1,442	149.7***
	40~50세 미만	4,716.4	3,178	
	50~60세 미만	4,332.1	4,074	
	60세 이상	3,073.3	2,281	
베이비붐 세대 구분	54년생 이전	3,222.1	2,795	104.7***
	55~63년생	4,432.8	3,745	
	64~67년생	4,713.7	1,406	
	68~74년생	4,610.9	1,895	
학력수준	75년생 이후	4,140.6	1,137	247.2***
	중졸 이하	3,096.9	2,355	
	고졸	4,245.3	5,845	
	대학졸 이상	4,884.9	2,777	

* p<0.05, ** p<0.01, *** p<0.001

자영업자 가구의 주요 변수에 따른 가구소득 규모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에 의하면, 자영업자 가구의 거주지별로 가구소득이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이 연 4,255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중소도시 거주 가구가 연 4,129만 원, 농어촌 거주 가구가 연 3,744만 원임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결혼 상태에 따른 가구 소득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가구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5〉 자영업자 가구의 주요 변수별 가구소득 규모

(단위: 만 원/년, 명)				
	구분	가구 소득	표본 수	T/F-value
거주지역	구	4,255.0	5,005	10.0***
	시	4,129.0	5,245	
	군	3,744.2	728	
결혼상태	미혼	3,449.2	786	202.4***
	기혼유배우자	4,402.5	9,118	
	기혼무배우자	2,633.2	1,074	
주택점유형태	자가	4,420.9	7,545	60.6***
	전세	3,912.3	1,882	
	월세	3,092.8	822	
	기타	3,647.7	193	
가구형태	부부단독가구	2,872.1	2,052	333.2***
	부부미혼자녀가구	4,857.0	6,459	
	편부모 및 조손가구	3,285.5	555	
	1인가구	2,327.4	982	
	기타가구	4,621.5	928	

* p<0.05, ** p<0.01, *** p<0.001

주택의 점유형태에 따른 가구소득의 경우에 자가소유가구와 전세가구가 각각 연 4,421만 원과 연 3,912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월세 가구가 연 3,092만 원으로 가장 낮다. 가구 형태에 따른 자영업자 가구 소득의 규모를 보면, 부부 및 미혼자녀로 구성된 경우에 가구소득이 연 4,857만 원으로 가장 높고, 1인 가구 및 부부단독가구가 각각 연 2,327

만 원과 연 2,872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가구형태에 따른 가구 소득의 편차는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활동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미혼자녀가 있는 연령대가 생애주기에 있어서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라는 점과 일치하고 있으며, 1인 가구와 부부단독 가구의 경우 결혼 전후의 경제활동 초기단계 혹은 자녀가 독립하고 배우자가 없는 연령대가 높은 계층인 경우로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시기라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3. 자영업자 가구의 지출

평균 생활비 지출 수준은 수급가구에서 소득이 높은 집단으로 갈수록 지출규모가 커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지출이 많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지출규모에서는 소득계층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지출 항목별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비, 식료품비, 기타지출은 소득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지출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항목별로 증가율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계층에 따른 식료품비 증가는 총생활비 증가보다 낮아서 절대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교육비와 기타지출의 증가는 총생활비 증가와 비슷하고, 따라서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비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비의 지출양상은 다른 항목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지출규모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총생활비 대비 보건의료비 비율은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표 2-16〉 주요 지출항목에 따른 평균 생활비 지출 규모

(단위: 만 원/월)

구분		보건의료비	교육비	식료품비	기타지출	총생활비
계층	1	5.9	35.2	40.3	47.0	161.6
	2	6.6	27.8	48.1	49.1	175.8
	3	5.8	33.6	48.4	54.6	179.6
	4	6.8	33.5	51.5	53.0	190.4
	5	5.5	40.3	55.5	69.8	231.7
	6	6.0	43.8	63.6	85.1	284.1
전체		5.8	40.3	57.2	72.2	241.7

자영업자 가구의 보건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결과 보건의료비의 부담 정도는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에, 교육비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지출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보건의료비의 경우 전체 생활비 지출에서 평균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 1과 계층 2의 경우 각각 5.0%와 4.4%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보건의료비의 지출비율은 점차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보건의료비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일정한 규모를 지출하며, 따라서 총생활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따라서 보건의료비 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건의료비의 지출이 총생활비 20%를 상회하는 과부담 가구의 비율 역시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계층 1과 계층 2의 경우 의료비 과부담 가구는 4.7%와 3.7%로 전체 평균의 3배 정도가 되며, 이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교육비 지출은 총생활비 대비 12.2%로 모든 소득계층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소득계층의 변화와 교육비 지출 비율은 일정한 관계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생활비 대비 교육비 지출이 20%를

초과하는 경우는 평균 30.5%이며, 계층 2가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이 역시 소득계층과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17〉 자영업자 가구의 보건의료비 및 교육비 지출 비율

(단위: %)

구분		보건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대비 비율	20% 초과 비율	생활비 대비 비율	20% 초과 비율
계층	1	5.0	4.7	11.7	27.2
	2	4.4	3.7	9.2	21.8
	3	3.9	2.7	12.1	26.7
	4	4.0	2.6	12.6	30.2
	5	2.7	1.2	13.3	33.6
	6	2.3	1.0	10.9	27.6
전체		2.8	1.5	12.2	30.5

가구 규모별 생활비 지출 양상을 보면 자영업자 가구의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생활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경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비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112.7만 원, 2인 가구는 월 157.1만 원, 3인 가구는 월 233.1만 원, 4인 가구는 월 301.3만 원 그리고 5인 이상 가구는 월 317.3만 원이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 그리고 4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2인 가구와 3인 가구, 3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며, 이는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생활비 지출 증가가 크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가구 규모에 따른 자영업자 가구와 전국 가구의 생활비 지출을 비교한 결과 1인 가구의 경우를 제외하고 2인 가구 이상의 경우 전국 가구가 자영업자 가구에 비해서 생활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과 생활비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계수지와 관련해서는 자영업자 가구가

전국 가구에 비해서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과 지출에 대한 조사항목과 분류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소득과 지출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으나,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가계수지 흑자 규모가 크다는 것은 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 가구의 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18〉 자영업자 가구와 전국 가구의 생활비 및 가계수지 규모

(단위: 만 원/월)

구분	본 조사의 자영업자 가구			전국가구		
	총생활비	가구소득	가계수지	총생활비	가구소득	가계수지
1명	122.7	193.9	71.3	124.3	146.1	21.8
2명	157.1	239.7	82.6	219.4	267.6	48.2
3명	233.1	356.9	123.8	311.0	393.7	82.7
4명	301.3	419.4	118.1	367.3	446.8	79.5
5명 이상	317.3	419.5	102.2	384.3	465.4	81.1
Total	241.7	346.7	105.1	273.9	336.3	62.4

자료: 통계청(2011), 가계동향조사

생활비 주요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전체에서 기타지출은 29.8%, 식료품비는 23.7%, 교육비는 16.7%, 그리고 보건의료비는 2.4%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비 주요지출 항목에서 보건의료비는 2인 가구의 경우 3.7%로 가장 높으며, 4인 가구의 경우 1.7%로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가구원 수와 보건의료비의 지출 비율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비 지출은 다른 지출 항목과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인 가구와 3인 가구 그리고 3인 가구와 4인 가구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구원 수에 따른 가구 구성원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1인 ~ 2인 가구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많고, 3인 ~ 4인 가구는 통상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3인 가구와 4인 가구는 자녀에 대한 지출 특히 교육비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다.

보건의료비는 2인 가구에서 다른 가구 규모에 비해 두드러진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2인 이하 가구의 경우 가구구성원에서 노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표 2-19〉 가구규모에 따른 자영업자 가구의 주요 항목별 지출규모

(단위: 만 원/월, %)

가구원수	보건의료비(A)		교육비(B)		식료품비(C)		기타지출(D)		생활비(E)
	금액	A/E	금액	B/E	금액	C/E	금액	D/E	
1명	3.5	2.9	0.1	0.1	33.9	27.6	49.8	40.6	122.7
2명	5.8	3.7	1.7	1.1	45.5	29.0	59.3	37.8	157.1
3명	6.3	2.7	25.8	11.1	58.8	25.2	73.6	31.6	233.1
4명	5.2	1.7	70.3	23.3	64.4	21.4	81.0	26.9	301.3
5명 이상	9.2	2.9	75.5	23.8	71.5	22.5	81.9	25.8	317.3
Total	5.8	2.4	40.3	16.7	57.2	23.7	72.1	29.8	241.7

4. 자영업자 가구의 재산과 부채

총재산은 금융재산과 비금융재산 모두를 합한 금액이며, 비금융재산은 현재 부동산재산과 기타재산으로 나눌 수 있다. 순재산은 총재산에서 총 부채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자영업자 가구의 총재산은 평균 24,903만 원이고, 이중 금융재산이 1,569만 원, 비금융재산이 23,334만 원으로 대부분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비금융재산이 차지하고 있으며, 순재산은 22,194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에 따른 자영업자 가구의 재산규모를 보면 계층 1이 7,535만 원이고, 계층 6이 31,810만 원으로 계층이 높아질수록 재산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저소득가구와 고소득가구의 총재산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계층 2의 총재산과 순재산의 규모가 큰 것은 가구소득이 계층 1과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보유자산이 많아서 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집단을 별도로 분리한 결과로 판단된다.

〈표 2-20〉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평균재산 규모

(단위: 만 원)

구분	소득 계층						전체
	1	2	3	4	5	6	
총재산	7,534.9	30,941.4	17,467.9	19,497.9	21,696.3	31,809.5	24,902.9
금융재산	206.1	1,012.3	784.2	984.3	1,396.1	2,145.1	1,569.3
비금융재산	7,328.8	29,929.1	16,683.7	18,513.6	20,300.2	29,664.4	23,333.6
부동산	6,917.5	27,493.1	15,403.5	16,631.4	18,387.1	27,010.9	21,201.5
기타	411.3	2,436.0	1,280.2	1,882.2	1,913.1	2,653.6	2,132.1
순재산	3,716.1	26,628.6	15,245.3	17,111.8	19,386.3	28,627.3	22,194.3

주: 1) 총재산 = 금융재산 + 비금융재산, 2) 순재산 = 총재산 - 총부채액

평균 총재산을 기준으로 각 재산 항목별 비율을 보면 소득계층별로 일정한 경향성을 보인다. 금융재산의 경우 계층 1이 전체재산의 2.7%, 계층 2는 3.3%, 계층 3은 4.5%, 계층 4는 5%, 계층 5는 6.4% 그리고 계층 6은 6.7%로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금융재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금융재산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여 비금융재산은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계층 1의 경우 비금융재산은 전체재산의 97.3%인 반면에 계층 6은 93.3%이다. 비금융재산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주로 부동산재산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에 기인하며, 비금융재산 중 기타재산의 비율은 금융재산과 동일하게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부동산과 같이 비유동성재산의 비율이 높으며,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금융재산과 기타재산과 같이 유동성재산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총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의 경우 계층 1과 나머지 소득계층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순재산은 평균적으로 총재산의 89.1%인데, 이중 계층 1의 경우에는 총재산 대비 순재산의 비율이 49.3%인 반면에 나머지 소득계층은 모두 평균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 1의 자영업자는 재산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1〉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총재산 대비 재산항목별 비율

(단위: %)

구분	소득 계층						전체
	1	2	3	4	5	6	
총재산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금융재산	2.7	3.3	4.5	5.0	6.4	6.7	6.3
비금융재산	97.3	96.7	95.5	95.0	93.6	93.3	93.7
부동산	91.8	88.9	88.2	85.3	84.7	84.9	85.1
기타	5.5	7.9	7.3	9.7	8.8	8.3	8.6
순재산	49.3	86.1	87.3	87.8	89.4	90.0	89.1

주: 1) 총재산 = 금융재산 + 비금융재산, 2) 순재산 = 총재산 - 총부채액

지역별로 재산을 비교하여 보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순으로 평균 재산이 높게 나타났다. 대도시의 평균 총재산은 27,294만 원이고 중소도시는 23,777만 원, 농어촌은 18,271만 원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차이에 비하여 중소도시와 농어촌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는 주로 부동산 자산에 의해서 설명되는데,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하여 농어촌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총재산과 순재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데, 전체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규모는 2,733만 원이며 이중 대도시는 2,740만 원, 중소도시는 2,778만 원 그리고 농어촌은 2,358만 원이다. 즉 농어촌 지역의 자영업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채규모가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융재산의 경우 대도시 1,412만 원, 중소도시 1,607만 원, 농어촌 2,479만 원으로 농어촌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금융재산의 규모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자영업자가 금융재산이 많고, 부채규모가 적으며, 이는 자영업을 농어촌 지역에서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표 2-22〉 자영업자 가구의 지역별 평균재산 규모

(단위: 만 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총재산	27,293.5	23,776.7	18,271.1	25,042.7
금융재산	1,411.9	1,606.8	2,479.2	1,574.0
비금융재산	25,881.6	22,169.9	15,791.9	23,468.8
부동산	23,487.5	20,284.6	13,866.3	21,345.3
기타	2,394.1	1,885.3	1,925.7	2,123.5
순재산	24,553.7	20,998.7	15,913.6	22,310.0

주: 1) 총재산 = 금융재산 + 비금융재산, 2) 순재산 = 총재산 - 총부채액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총재산은 가구규모와 소득계층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계층 1의 가구 총재산은 2,539만 원이고, 계층 3은 2,997만 원, 계층 4는 8,348만 원, 계층 5는 8,963만 원 그리고 계층 6의 경우에는 14,386만 원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계층 1의 가구 총재산은 11,502만 원이고, 계층 3은 19,529만 원, 계층 4는 22,112만 원, 계층 5는 23,884만 원 그리고 계층 6의 경우에는 39,398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가구규모에 따른 자영업자 가구의 총재산의 양상을 보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 사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1인 가구는 대부분 가족형성 이전의 경제활동 초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재산 축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구규모에 따른 총재산의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는 생활비 지출의 증가로 인하여 추가적인 재산형성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23〉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계층별 평균총재산 규모

(단위: 만 원)

구분	소득 계층 ¹⁾				
	1	3	4	5	6
1인 가구	2,539.3	2,996.8	8,348.4	8,963.4	14,386.3
2인 가구	5,741.6	15,562.5	18,424.6	20,969.8	28,015.5
3인 가구	9,467.6	19,188.2	20,200.4	21,645.9	34,746.2
4인 가구	7,121.3	20,477.6	20,212.6	23,364.4	37,100.7
5인 이상	11,501.8	19,529.3	22,112.2	23,883.5	39,398.0
전체	7,534.9	17,467.9	19,497.9	21,696.3	31,809.5

주: 계층 2는 계층 1과 소득은 동일하지만 보유재산이 많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재산에 분석에서 계층 2를 제외함.

자영업자 가구의 총재산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거주지역에 따라 총 재산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가구의 재산이 중소도시나 농어촌보다 재산규모가 크고, 다음으로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촌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가구규모별로 비교해 보아도 전반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순으로 재산규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자영업자 가구의 가구원 수와 거주 지역을 종합하여 가구의 총재산의 양상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1인 가구에 비해서 2인 가구의 재산규모가 약 2배 정도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3개 지역 모두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의 총재산 규모가 차이를 보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활동 기간과 재산의 축적기와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표 2-24〉 가구규모에 따른 자영업자 가구의 지역별 평균총재산 규모

(단위: 만 원)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전국
1인 가구	12,380.9	12,424.1	9,429.3	12,193.3
2인 가구	23,882.7	21,335.8	18,028.9	22,231.7
3인 가구	28,982.8	24,225.3	18,789.9	26,090.2
4인 가구	30,382.4	26,348.4	18,996.8	27,907.5
5인 이상 가구	31,983.8	27,908.7	22,833.5	29,223.2
전체	27,293.5	23,776.7	18,271.1	25,042.7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채유무는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 개인의 부채가 있는 비율은 계층 1의 경우 59%이며,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계층 6의 경우에 36.8%이다. 자영업자 개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들의 부채여부 역시 자영업자 개인의 부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계층 1의 경우 8.4%이고 계층 6은 4.2%로 나타났다. 동일한 맥락에서 자영업자 가구의 부채유무 역시 계층 1의 경우 63.3%가 부채가 있으며, 계층 2와 계층 3은 급격하게 낮아져서 각각 42.8%와 43.6%이다. 계층 4~계층 6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 40.2%와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2-25〉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부채유무

(단위: %)

구분		소득 계층						전체
		1	2	3	4	5	6	
자영업자 개인	부채 있음	59.0	41.4	42.3	38.4	37.0	36.8	37.8
	부채 없음	41.0	58.6	57.7	61.6	63.0	63.2	62.2
나머지 가구원	부채 있음	8.4	2.1	2.6	3.6	4.1	4.2	4.1
	부채 없음	91.6	97.9	97.4	96.4	95.9	95.8	95.9
가구	부채 있음	63.3	42.8	43.6	40.6	39.5	39.2	40.2
	부채 없음	36.7	57.2	56.4	59.4	60.5	60.8	59.8

자영업자 가구 중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평균 부채 규모는 계층 6이 8,11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계층 1이 6,029만 원, 계층 4가 5,845만 원, 계층 5가 5,837만 원, 그리고 계층 3이 5,06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가구의 총재산 대비 평균 부채 규모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27% 수준이며, 계층 3에서 계층 6의 경우에는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에 계층 1의 경우에는 총재산 대비 부채규모의 비율이 80% 수준으로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6〉 부채가 있는 가구의 소득계층별 평균 부채 규모

구분	소득 계층 ¹⁾					(단위: 만 원)
	1	3	4	5	6	전체
평균값 (총재산 대비 비율)	6,029 (80.0%)	5,060 (29.0%)	5,845 (33.4%)	5,837 (26.9%)	8,110 (25.5%)	6,724 (27.0%)
중위수	3,000	3,000	3,000	3,000	4,000	3,500

주: 계층 2는 계층 1과 소득은 동일하지만 보유재산이 많은 계층이라는 점에서 재산에 분석에서 계층 2를 제외함.

제3절 주거실태

본 연구에서는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자영업 사업주의 생활실태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주거환경에 대한 조사 문항을 추가하였다. 사업장과 주거공간을 공유하는 자영업자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주거 관련 복지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에서 주거를 해결한다는 것은 거주공간을 마련할 여건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하고 있지 않고 자산과 매출의 수준이 높다

고 하더라도 별도의 주거환경이 부재한 경우 사업이 위기에 처할 시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가장 먼저 사업장과 주거공간의 분리 형태를 살펴보았다. 자영업자들의 주거공간이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이 원만하지 않거나, 업무와 가정생활의 분리가 어려워 삶의 질 자체가 매우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 등의 경우 사업장내 소음, 위험 및 공해 물질에 24시간 노출될 우려가 있어 건강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사업장과 다른 별도의 건물에 주거공간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87.9%, ‘사업장과 주거공간이 붙어있지만, 주거공간이 사업용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7.2%로 사업장과 주거공간이 분리된 경우가 대다수(95.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업장과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4.9%로 나타나 크게 열악한 주거 환경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가구의 특성별로 분석해보면, 자영업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업장과 별도의 주거공간이 있는 비율은 감소하고, 사업장과 거주지가 붙어 있을 경우와 사업장과 주거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사업장과 붙어있거나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 거주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고 있다.

가구원수별로는 1인과 2인인 경우 사업장과 다른 별도의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가 80%대를 밀돌고 있으나, 3~4인인 경우는 그 비율이 약 90%에 달하고 있어 주거형태가 가구구조에 따라 차별적임을 알 수 있다.

가구 내 세대수, 가구형태별로 살펴보아도 비슷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1세대 가구인 경우에는 사업장과 다른 건물 거주 비율이 81.7%이나, 2세대, 3세대 가구의 경우에는 모두 90.4%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형태별로도 1인가구, 부부단독가구, 편부모 및 조손가구가 각각 80.3%, 81.7%, 83.3% 순으로 낮았다.

일반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업장과 붙어있는 공간이나 사업장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총가구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장과 다른 별도의 건물에 거주하는 비율이 79.0%로 80%대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사업장과 주거공간이 붙어있는 경우는 11.3%, 사업장과 주거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도 9.7%가 해당되었다.

〈표 2-27〉 자영업자 특성별 사업장과 주거공간의 분리 정도

(단위: %)

구 분		①	②	③	계 (명)
전체		87.9	7.2	4.9	100.0(11,439)
연령 ($\chi^2=268.15^{***}$)	40세 미만	93.0	3.7	3.3	100.0(1,476)
	40~50세 미만	92.3	4.6	3.1	100.0(3,275)
	50~60세 미만	87.6	8.0	4.4	100.0(4,285)
	60세 이상	79.5	11.4	9.1	100.0(2,397)
가구원수 ($\chi^2=258.05^{***}$)	1인	80.3	8.4	11.4	100.0(1,002)
	2인	81.6	10.9	7.5	100.0(2,443)
	3인	90.3	5.9	3.8	100.0(2,481)
	4인 이상	91.1	5.9	3.1	100.0(5,513)
가구내세대수 ($\chi^2=139.64^{**}$)	1세대	81.7	10.8	7.5	100.0(2,132)
	2세대	90.4	6.0	3.6	100.0(7,534)
	3세대 이상	90.4	7.6	2.0	100.0(768)
가구형태 ($\chi^2=265.61^{***}$)	부부단독가구	81.7	10.7	7.5	100.0(2,095)
	부부미혼자녀가구	91.2	5.5	3.3	100.0(6,753)
	편부모 및 조손가구	83.3	9.8	6.9	100.0(598)
	1인가구	80.3	8.4	11.4	100.0(1,002)
	기타가구	89.0	8.3	2.7	100.0(987)
가구총소득 ($\chi^2=225.84^{***}$)	2천만 원 미만	79.0	11.3	9.7	100.0(1,944)
	4천만 원 미만	87.8	7.6	4.6	100.0(4,479)
	5천만 원 미만	91.3	5.9	2.8	100.0(1,808)
	5천만 원 이상	91.8	5.0	3.2	100.0(3,081)

① 사업장과는 다른 별도의 건물에 주거공간이 있다.

② 사업장과 주거공간이 붙어있지만, 주거공간이 사업용으로 쓰이지 않는다.

③ 사업장과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 $p<0.05$, ** $p<0.01$, *** $p<0.001$

주: 1)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2) 가구 내 세대수 분석시 1인가구를 제외하였으며, 본 보고서의 모든 분석은 동일하게 실시하였음.

위 문항에서 주거공간이 사업장과 다른 건물에 있거나, 사업장과 구분되어 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거주하는 건물의 종류를 질 문하였다.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비율이 96.0%로 대부분이었고, 상가, 공장, 여관 등 비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비율은 4.0%에 해당하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미만과 40대는 비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비율이 3%를 밑도는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50대는 4.6%, 60대 이상은 5.5%를 보여 자영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28〉 자영업자 특성별 거처의 종류

(단위: %)

구 분		주거용 건물	비주거용 건물	계 (명)
전체		96.0	4.0	100.0 (10,879)
연령 ($\chi^2=34.00^{***}$)	40세 미만	97.1	2.9	100.0 (1,427)
	40~50세 미만	97.2	2.8	100.0 (3,173)
	50~60세 미만	95.4	4.6	100.0 (4,097)
	60세 이상	94.5	5.5	100.0 (2,179)
가구원수 ($\chi^2=31.79^{***}$)	1인	93.2	6.8	100.0 (888)
	2인	95.0	5.0	100.0 (2,260)
	3인	96.1	3.9	100.0 (2,387)
	4인 이상	96.8	3.2	100.0 (5,344)
가구내세대수 ($\chi^2=0.92$)	1세대	95.8	4.2	100.0 (1,971)
	2세대	96.3	3.7	100.0 (7,264)
	3세대 이상	96.3	3.7	100.0 (753)
가구형태 ($\chi^2=49.55^{***}$)	부부단독가구	95.8	4.2	100.0 (1,937)
	부부미혼자녀가구	96.7	3.3	100.0 (6,533)
	편부모 및 조손가구	91.9	8.1	100.0 (557)
	1인가구	93.2	6.8	100.0 (888)
	기타가구	96.5	3.5	100.0 (961)
가구총소득 ($\chi^2=56.22^{***}$)	2천만 원 미만	93.2	6.8	100.0 (1,755)
	4천만 원 미만	95.7	4.3	100.0 (4,272)
	5천만 원 미만	97.1	2.9	100.0 (1,757)
	5천만 원 이상	97.4	2.6	100.0 (2,982)

* $p<0.05$, ** $p<0.01$, *** $p<0.001$

주 1) 주거용 건물(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비주거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2)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자영업자 가구의 구조별로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고, 가구 내 세대수가 적을수록 비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형태별로는 편부모 및 조손가구, 1인 가구, 부부단독 가구, 기타 가구, 부부와 미혼 자녀 가구 순으로 비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복지 수요 및 욕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라 여겨지는 편부모 및 조손 가구는 가구구성원에 자영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비주거용 건물에서 생활하는 자영업자가 많게 나타났다. 특히 가구총소득 2천만 원 미만의 경우 비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비율이 6.8%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과 동일한 공간에서 거주하는 응답자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주택 또는 거주공간의 점유형태를 질문하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72.0%가 자가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전세는 18.1%, 보증부 월세 7.4%, 사택, 지인 집 등 기타 1.9%, 무보증 월세 0.5%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 전체의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 54.1%, 전세 21.7%, 월세 및 사글세 21.4%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자가의 비율이 약 18%p 높아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업자의 특성별로 거주공간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가의 비율이 높아지고, 전세, 무보증 월세, 보증부 월세, 기타 등의 비율이 감소한다. 자가의 비율이 49.0%인 40대 미만에 비해 60대 이상은 82.4%이며, 전세의 경우도 40대 미만 34.0%, 40~49세 21.1%, 50~59세 14.5%, 60대 이상 10.3%로 나타났다.

자영업자가 1인 가구이거나 편부모 및 조손가구일 경우에는 자가의 비율이 각각 37.6%와 54.3%로 부부단독이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자가 소유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들 그룹은 전세뿐만 아니라, 보증부 월세의 비율도 16.8%와 21.6%에 이르고 있어 생활수준 및 경제적 여건 자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9〉 자영업자 특성별 거주공간 점유형태

(단위: %)

구 분		자가	전세	무보증 월세	보증부 월세	기타	계 (명)
전체		72.0	18.1	0.5	7.4	1.9	100.0(10,879)
연령 ($\chi^2=600.98^{***}$)	40세 미만	49.0	34.0	0.3	12.6	4.1	100.0(1,427)
	40~50세 미만	69.6	21.1	0.5	6.5	2.3	100.0(3,173)
	50~60세 미만	76.3	14.5	0.8	7.4	1.0	100.0(4,097)
	60세 이상	82.4	10.3	0.3	5.4	1.7	100.0(2,179)
가구형태 ($\chi^2=913.31^{***}$)	부부단독가구	80.1	12.3	0.3	5.7	1.6	100.0(1,937)
	부부미혼자녀가구	75.0	17.8	0.4	5.6	1.2	100.0(6,533)
	편부모 및 조손가구	54.3	23.0	0.9	16.8	5.0	100.0(557)
	1인가구	37.6	35.5	2.3	21.6	3.0	100.0(888)
	기타가구	77.3	13.3	0.1	4.6	4.8	100.0(961)
가구총소득 ($\chi^2=347.74^{***}$)	2천만 원 미만	63.2	18.3	1.4	14.1	3.0	100.0(1,755)
	4천만 원 미만	67.9	20.9	0.5	8.7	2.0	100.0(4,272)
	5천만 원 미만	76.8	16.9	0.1	4.7	1.5	100.0(1,757)
	5천만 원 이상	79.9	15.3	0.2	3.3	1.3	100.0(2,982)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거주공간을 전세형태로 점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들의 전세금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전세금은 4천만 원 미만과, 7천만 원 미만,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으로 구분하였고 범주별 평균 또한 제시하였다. 전체 전세거주 응답자중 4천만 원~7천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불하는 비율이 30.2%였으며, 30.0%의 자영업자도 1억 원 이상의 전세금을 냈다고 응답했다. 7천만 원~1억 원 미만의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은 26.7%, 4천만 원 미만은 13.1%로 나타났다, 평균 전세금은 8천 5백 60만 원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미만은 1억 원 미만이 35.1%로 가장 많았고, 7천

만 원미만, 1억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 순이었다.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전세금의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60대 이상의 경우 4천만 원 미만이 22.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았고, 1억 원 이상에 속하는 자영업자도 36.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단, 1억 원 미만이 6.5%에 불과하고 표본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적어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전세금 1억 원 이상의 비중이 가장 많은 가구형태는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40.3%)로 나타났고, 1인가구와 편부모 및 조손가구는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1인가구와 편부모 및 조손가구는 4천만 원 미만과 7천만 원 미만이 모두 6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그룹의 평균 전세액도 5,802만 원과 6,422.8만 원으로 7천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표 2-30〉 자영업자 특성별 전세거주자의 전세금 분포

(단위: %, 만 원)

구 분		4천만 원 미만	7천만 원 미만	1억 미만	1억 이상	계(명)	평균	F-value
전체		13.1	30.2	26.7	30.0	100.0(1,948)	8560.1	
연령 ($\chi^2=79.73^{***}$)	40세 미만	11.2	29.9	35.1	23.8	100.0(474)	8160.0	1.03
	40~50세 미만	10.4	30.0	27.8	31.9	100.0(660)	8850.5	
	50~60세 미만	13.9	29.3	26.0	30.8	100.0(588)	8650.5	
	60세 이상	22.8	34.6	6.5	36.1	100.0(222)	8318.8	
가구형태 ($\chi^2=244.03^{***}$)	부부단독가구	15.2	37.9	25.6	21.3	100.0(236)	7099.4	29.28***
	부부미혼자녀가구	8.0	24.8	26.9	40.3	100.0(1,152)	9832.0	
	편부모 및 조손가구	20.8	45.6	25.4	8.2	100.0(127)	6422.8	
	1인가구	27.3	41.9	23.1	7.7	100.0(308)	5802.0	
	기타가구	12.8	20.9	37.1	29.2	100.0(125)	8557.2	
가구총소득 ($\chi^2=116.22^{***}$)	2천만 원 미만	25.3	34.5	22.3	17.9	100.0(311)	6400.7	40.85***
	4천만 원 미만	13.4	32.9	27.6	26.2	100.0(879)	7884.8	
	5천만 원 미만	8.5	29.9	29.6	32.0	100.0(296)	8359.7	
	5천만 원 이상	7.2	22.6	26.6	43.6	100.0(453)	11398.7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아래 표는 보증부 월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분포를 분석한 결과이다.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액 사이의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직접적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지만, 나타나는 주요 경향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사결과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 평균은 2,22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볼 때 가구형태 중에서 편부모 및 조손가구와 1인 가구의 월세 보증금 평균이 특히 작게 나타났다. 이 형태의 가구가 주거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공간이 작은 주택을 임차했다고 가정하면 월세 보증금액이 작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런 결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이 형태의 가구가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월세 보증금의 평균이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취약 가구의 월세 보증금 평균은 소득수준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1〉 자영업자 특성별 보증부 월세 거주자의 보증금 분포

		(단위: %, 만 원)							
구 분		1천만 원미만	2천만 원미만	3천만 원미만	3천만 원이상	계(명)	평균	F-value	
전체		24.6	30.6	17.5	27.2	100.0(780)	2220.8		
연령 ($\chi^2=12.57$)	40세 미만	28.8	34.8	13.9	22.5	100.0(177)	1792.4	2.08	
	40~50세 미만	19.6	29.3	21.9	29.2	100.0(202)	2442.3		
	50~60세 미만	25.8	28.7	15.6	29.9	100.0(287)	2340.9		
	60세 이상	24.0	31.5	20.4	24.1	100.0(114)	2192.5		
가구형태 ($\chi^2=50.66^{***}$)	부부단독가구	21.5	21.2	21.0	36.3	100.0(106)	2716.3	8.08***	
	부부미혼자녀가구	20.6	27.3	17.5	34.6	100.0(353)	2658.1		
	편부모 및 조손가구	30.1	41.3	18.8	9.8	100.0(92)	1533.2		
	1인가구	30.0	38.7	15.7	15.6	100.0(187)	1513.2		
	기타가구	29.9	23.3	14.5	32.3	100.0(43)	1964.7		
가구총소득 ($\chi^2=37.55^{***}$)	2천만 원 미만	36.3	31.0	14.9	17.8	100.0(237)	1627.1	5.58***	
	4천만 원 미만	21.4	30.1	19.6	28.9	100.0(356)	2456.0		
	5천만 원 미만	16.9	32.7	18.4	32.0	100.0(81)	2480.3		
	5천만 원 이상	16.0	27.6	15.2	41.2	100.0(98)	2623.9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다음 표는 보증부 월세 거주자의 월세액 분포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 보증부 월세 거주자는 평균 4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연령층 중에서 40대 연령층의 월세액 평균이 45.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 연령층의 월세액 평균이 36.2만 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지만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나 소득수준에 따른 월세액 평균 역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2-32〉 자영업자 특성별 보증부 월세 거주자의 월세액 분포

(단위: %, 만 원)

구 분		20만 원미만	30만 원미만	40만 원미만	50만 원미만	50만 원이상	계(명)	평균	F-value
전체		13.4	24.7	21.9	12.3	27.7	100.0 (780)	40.0	
연령 ($\chi^2=24.66^*$)	40세 미만	10.1	27.9	23.9	19.4	18.8	100.0 (177)	38.2	1.31
	40~50세 미만	14.0	21.0	24.8	8.4	31.8	100.0 (202)	45.6	
	50~60세 미만	14.5	25.7	20.7	9.9	29.2	100.0 (287)	38.7	
	60세 이상	14.2	24.0	17.1	14.2	30.5	100.0 (114)	36.2	
가구형태 ($\chi^2=45.88^{***}$)	부부단독가구	12.0	21.0	28.7	16.3	22.1	100.0 (106)	37.9	1.37
	부부미혼자녀가구	9.3	24.2	20.1	11.2	35.2	100.0 (353)	42.5	
	편부모 및 조손가구	22.1	14.8	17.9	18.1	27.1	100.0 (92)	46.0	
	1인가구	16.9	32.2	24.1	9.8	17.0	100.0 (187)	34.4	
	기타가구	15.8	27.8	19.4	9.7	27.3	100.0 (43)	36.0	
가구총소득 ($\chi^2=27.73^{**}$)	2천만 원 미만	15.8	30.8	20.2	12.7	20.4	100.0 (237)	36.3	0.87
	4천만 원 미만	14.0	22.2	23.6	13.2	26.9	100.0 (356)	40.9	
	5천만 원 미만	13.0	21.2	24.9	12.4	28.5	100.0 (81)	39.2	
	5천만 원 이상	6.5	24.4	16.0	8.8	44.3	100.0 (98)	45.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로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조사대상 자영업자 중 현 거주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비율은 8.5%로 나타났다. 젊은 연령층보다는 재산을 축적할 시간이 있었던 고연령층에서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40세 미만 연령층의 현 거주지의 주택 소유 비율은 5.6%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40대와 50대는 8.8%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60세 이상 연령층은 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에서 편부모 및 조손가구와 1인가구의 현 거주지와 주택소유 비율은 다소 낮았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현 거주지와 주택소유 비율은 4.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자가보다는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자영업기간이 길수록 타 주택소유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는 일반적 경향성으로 볼 수 있으며, 자영업 기간은 연령 효과의 반영으로 역시 일반적 경향으로 볼 수 있다.

〈표 2-33〉 자영업자 특성별 현거주지와 주택 소유 여부

		(단위: %)		
	구 분	있음	없음	계 (명)
전체		8.5	91.5	100.0 (11,439)
연령 ($\chi^2=18.59^{***}$)	40세 미만	5.6	94.4	100.0 (1,476)
	40~50세 미만	8.8	91.2	100.0 (3,275)
	50~60세 미만	8.8	91.2	100.0 (4,285)
	60세 이상	9.2	90.8	100.0 (2,397)
가구형태 ($\chi^2=27.36^{***}$)	부부단독가구	8.2	91.8	100.0 (2,095)
	부부미혼자녀가구	9.0	91.0	100.0 (6,753)
	편부모 및 조손가구	6.8	93.2	100.0 (598)
	1인가구	4.9	95.1	100.0 (1,002)
	기타가구	10.7	89.3	100.0 (987)
가구총소득 ($\chi^2=61.25^{***}$)	2천만 원 미만	7.3	92.7	100.0 (1,944)
	4천만 원 미만	6.9	93.1	100.0 (4,479)
	5천만 원 미만	7.1	92.9	100.0 (1,808)
	5천만 원 이상	11.6	88.4	100.0 (3,081)
거주형태 ($\chi^2=33.67^{***}$)	자가	7.4	92.6	100.0 (7,831)
	전세	11.0	89.0	100.0 (1,974)
	월세 등	10.4	89.6	100.0 (1,074)
자영업기간 ($\chi^2=13.42^{***}$)	5년 미만	7.2	92.8	100.0 (2,766)
	10년 미만	7.6	92.4	100.0 (2,275)
	15년 미만	7.8	92.2	100.0 (2,032)
	20년 미만	9.7	90.3	100.0 (1,417)
	20년 이상	9.2	90.8	100.0 (2,608)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자영업자들은 대개 도보로 사업장 출퇴근을 하고 있었으며(50.9%), 그 외 자가용(33.6%), 대중교통(12.8%), 기타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가 높고, 가구소득이 낮으며, 자영업기간이 길수록 도보출퇴근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고, 가구소득이 높고 자영업 기간이 짧을수록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2-34〉 자영업자 특성별 출퇴근 방법

		(단위: %)				
구 분		도보	대중교통	자가용	기타	계(명)
전체		50.9	12.8	33.6	2.7	100.0(11,439)
연령 ($\chi^2=821.75^{***}$)	40세 미만	33.6	13.5	50.8	2.1	100.0(1,476)
	40~50세 미만	40.9	11.5	44.5	3.1	100.0(3,275)
	50~60세 미만	55.3	12.3	29.8	2.6	100.0(4,285)
	60세 이상	67.3	14.8	15.1	2.8	100.0(2,397)
가구형태 ($\chi^2=408.49^{***}$)	부부단독가구	65.3	10.9	21.7	2.1	100.0(2,095)
	부부미혼자녀가구	45.7	11.7	39.6	2.9	100.0(6,753)
	편부모 및 조손가구	58.0	18.3	21.8	1.9	100.0(598)
	1인가구	56.5	16.8	24.7	1.9	100.0(1,002)
	기타가구	45.7	16.5	33.9	3.9	100.0(987)
가구총소득 ($\chi^2=510.88^{***}$)	2천만 원 미만	68.4	13.5	15.2	2.9	100.0(1,944)
	4천만 원 미만	52.1	10.9	33.6	3.5	100.0(4,479)
	5천만 원 미만	46.2	12.0	39.9	1.9	100.0(1,808)
	5천만 원 이상	41.2	15.0	41.8	2.0	100.0(3,081)
거주형태 ($\chi^2=108.57^{***}$)	자가	47.4	12.5	37.7	2.5	100.0(7,831)
	전세	47.6	16.5	32.2	3.7	100.0(1,974)
	월세 등	57.2	14.5	24.2	4.0	100.0(1,074)
자영업기간 ($\chi^2=366.04^{***}$)	5년 미만	41.0	16.6	40.4	2.1	100.0(2,766)
	10년 미만	46.3	12.8	38.3	2.6	100.0(2,275)
	15년 미만	51.3	10.2	35.8	2.6	100.0(2,032)
	20년 미만	55.4	9.5	31.7	3.4	100.0(1,417)
	20년 이상	63.3	11.5	22.4	2.8	100.0(2,608)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자영업자의 통근시간은 10분 미만이 50.9%, 20분 미만이 12.8%, 30분 미만이 33.6%로 나타났으며, 30분 이상은 2.7%에 지나지 않아 사업장과 거주지의 거리가 크게 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가 높고,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전세와 자가보다는 월세인 경우, 자영업 기간이 길고, 타주택을 소유한 경우 출퇴근시간이 짧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35〉 자영업자 특성별 통근시간

(단위: %)

구 분		10분 미만	20분 미만	30분 미만	30분 이상	계(명)
전체		50.9	12.8	33.6	2.7	100.0(11,439)
연령 ($\chi^2=299.21^{***}$)	40세 미만	33.6	13.5	50.8	2.1	100.0(1,476)
	40~50세 미만	40.9	11.5	44.5	3.1	100.0(3,275)
	50~60세 미만	55.3	12.3	29.8	2.6	100.0(4,285)
	60세 이상	67.3	14.8	15.1	2.8	100.0(2,397)
가구형태 ($\chi^2=189.50^{***}$)	부부단독가구	65.3	10.9	21.7	2.1	100.0(2,095)
	부부미혼자녀가구	45.7	11.7	39.6	2.9	100.0(6,753)
	편부모 및 조손가구	58.0	18.3	21.8	1.9	100.0(598)
	1인가구	56.5	16.8	24.7	1.9	100.0(1,002)
	기타가구	45.7	16.5	33.9	3.9	100.0(987)
가구총소득 ($\chi^2=229.43^{***}$)	2천만 원 미만	68.4	13.5	15.2	2.9	100.0(1,944)
	4천만 원 미만	52.1	10.9	33.6	3.5	100.0(4,479)
	5천만 원 미만	46.2	12.0	39.9	1.9	100.0(1,808)
	5천만 원 이상	41.2	15.0	41.8	2.0	100.0(3,081)

* $p<0.05$, ** $p<0.01$, *** $p<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제4절 사업체 일반 현황

사업장 소유형태는 보증부 월세를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증부 월세의 비율은 65.1%였고,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25.9%, 전세인 비율은 4.4%, 보증금 없는 월세는 2.8%, 기타 1.7%로 나타났다.

사업장 소유형태에서 성과 연령에 따라서 차별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에 비해 남성 사업주의 사업장 소유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 사업주의 사업장 소유비율은 32.8%인 반면 여성 사업주의 소유비율은 17.4%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 사업장 소유비율은 일관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즉 연령이 많은 경우 사업장 소유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연령층의 경우 그동안 자산축적의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사업장 소유비율이 높게 나타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별 사업장 소유형태에서 특징적인 것은 운수업의 경우 사업장 소유비율이 87.2%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운수업에 이용되는 차량을 사업장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차량 소유비율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장 소유형태에서 보증부 월세를 이용하는 비율이 금융보험 및 사업시설관리업에서 81.5%로 높게 나타나는 것도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종사자수가 작을수록 사업장 소유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월평균 매출이 작을수록 사업장 소유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월평균 매출이 작은 사업체의 경우와 종사자수는 사업체의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소규모 사업체가 사업장을 소유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6〉 사업장 소유 형태

(단위: %)

구분		소유	전세	무보증 월세	보증부 월세	기타	계(명)
전체		25.9	4.4	2.8	65.1	1.7	100.0(11,439)
성	남성	32.8	4.4	2.1	58.3	2.4	100.0(6,283)
	($\chi^2=417.68^{***}$) 여성	17.4	4.4	3.7	73.5	1.0	100.0(5,156)
연령	40세 미만	8.4	4.5	2.1	83.2	1.8	100.0(1,476)
	($\chi^2=889.66^{***}$) 40~50세 미만	16.5	5.0	2.9	74.1	1.5	100.0(3,275)
	50~60세 미만	28.9	4.3	2.5	62.8	1.5	100.0(4,285)
	60세 이상	44.2	3.7	3.8	45.9	2.4	100.0(2,397)
산업	농림, 광공업	25.2	5.4	3.4	65.0	1.1	100.0(1,034)
	($\chi^2=3,470.64^{***}$) 전기하수·건설업	20.9	6.6	4.7	65.0	2.7	100.0(296)
	도소매업	19.9	4.3	4.3	70.1	1.3	100.0(3,269)
	운수업	87.2	2.4	0.2	4.3	6.0	100.0(1,352)
	숙박음식업	16.2	3.9	2.7	76.7	0.5	100.0(2,454)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10.6	4.7	2.0	81.5	1.3	100.0(519)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16.6	7.5	1.0	73.2	1.7	100.0(904)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13.0	4.2	2.6	78.8	1.3	100.0(1,610)
종사자수	1명	30.5	3.6	3.3	60.0	2.5	100.0(5,985)
	($\chi^2=233.18^{***}$) 2명	20.2	5.1	2.4	71.5	0.8	100.0(4,039)
	3~4명	22.6	5.9	1.8	68.6	1.2	100.0(1,416)
월평균 매출	300만 원 미만	37.6	4.1	4.0	51.1	3.2	100.0(2,929)
	($\chi^2=531.14^{***}$) 500만 원 미만	29.4	3.9	2.6	62.6	1.5	100.0(2,660)
	1000만 원 미만	19.1	4.8	2.4	72.5	1.1	100.0(2,763)
	1000만 원 이상	17.0	5.2	2.0	74.9	0.9	100.0(2,571)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1)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함이 불일치할 수 있음.

2) '기타'는 사택, 지인 건물 등 무상인 경우임.

사업장의 전세금 실태를 보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미만인 경우가 35.6%로 가장 많았다. 전세금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12.2%,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24.5%, 6천만 원 이상인 경우도 27.6%로 나타났으며, 전체 전세금 평균액은 4,940만 원으로 나타났다.

성별 특성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특히 전세금 평균액은 약 4,900만 원 수준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령별 특성에서 30대와 40대 사업주의 전세금 평균액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50대와 60세 이상 연령층의 전세금 평균액은 4천만 원대였지만, 30대와 40

대는 5천만 원대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도소매업(평균 5,242만 원)과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평균 6,475만 원)의 두 경우가 다른 산업에 비해 다소 높은 전세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사자수가 클수록 사업장 전세금 평균액이 증가하고 있다. 월평균 매출액이 클수록 사업장 전세금 평균액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사자 규모와 월평균 매출액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가 있으며 사업장 규모가 커지면 전세금 평균액이 올라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37〉 사업장 특성별 전세금 분포

(단위: %, 만 원)

구분		2천만 원 미만	4천만 원 미만	6천만 원 미만	6천만 원 이상	계(명)	평균
전체		12.2	35.6	24.5	27.6	100.0 (500)	4,940.3
성	남성	11.0	34.5	28.3	26.2	100.0 (272)	4,917.7
	여성	13.7	37.0	20.0	29.3	100.0 (228)	4,967.2
$(\chi^2=4.85)$							
연령	40세 미만	3.9	33.8	27.9	34.3	100.0 (63)	5,280.7
	40~50세 미만	11.3	31.4	21.1	36.1	100.0 (163)	5,563.4
	50~60세 미만	11.3	39.3	29.3	20.1	100.0 (185)	4,371.3
	60세 이상	21.7	37.0	18.4	22.9	100.0 (89)	4,741.2
$(\chi^2=25.80^{**})$							
산업	농림, 광공업	19.6	27.4	30.7	22.3	100.0 (54)	4,500.4
	전기하수·건설업	11.5	42.9	23.8	21.8	100.0 (20)	4,010.7
	도소매업	7.2	36.2	29.3	27.3	100.0 (141)	5,242.3
	운수업	3.7	54.5	17.6	24.2	100.0 (32)	4,651.6
	숙박음식업	17.9	45.0	12.3	24.7	100.0 (96)	4,505.3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23.5	19.4	27.2	30.0	100.0 (24)	4,660.9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6.0	24.9	26.5	42.5	100.0 (66)	6,475.2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15.2	32.8	27.5	24.5	100.0 (67)	4,272.9
$(\chi^2=41.66^{***})$							
종사자수	1명	14.0	39.0	23.3	23.7	100.0 (212)	4,500.0
	2명	13.0	35.0	23.9	28.1	100.0 (206)	4,770.0
	3~4명	6.0	28.6	29.1	36.4	100.0 (83)	6,490.2
$(\chi^2=9.47)$							
월평균 매출	300만 원 미만	22.1	39.8	23.0	15.1	100.0 (119)	3,714.2
	500만 원 미만	15.5	32.0	23.7	28.7	100.0 (104)	4,433.6
	1000만 원 미만	4.1	39.6	25.6	30.6	100.0 (132)	5,134.8
	1000만 원 이상	9.9	32.9	25.7	31.5	100.0 (133)	5,886.1
$(\chi^2=27.63^{**})$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월세 평균액은 72.8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월세액 분포에서 가장 적은 금액인 30만 원 이하인 경우도 13.9%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율은 51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 범주로 34.6%를 나타냈고, 다음은 31만 원에서 50만 원 이하 범주로 27.9%, 100만 원 이상 범주도 23.5%였다.

사업주의 성별 연령별 특성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성 사업주의 월세 평균액은 81.5만 원인 반면 여성 사업주의 월세 평균액은 64.4만 원으로 남성 사업주가 더 많은 월세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연령층일수록 월세 평균액은 작게 나타났다. 40세 미만 사업주의 월세 평균액이 83.1만 원으로 가장 컸고, 60세 이상 사업주의 월세 평균액이 61만 원으로 가장 작았다. 따라서 남성 저연령 사업주의 경우 규모가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별 특성에서 전체 평균 월세액을 초과하는 산업은 도소매업과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이었다. 도소매업의 월세 평균액은 78.9만 원이었고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은 월세 평균액 77.7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월세 평균액보다 낮은 경우는 전기하수건설업의 경우 51.6만 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은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으로 64.7만 원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는 사업체 규모와 관련이 있으므로 종사자 규모에 따라서 월세 평균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조사 결과 종사자 규모가 증가하면 월세 평균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 1명인 경우 월세 평균액은 55만 원, 2명인 경우 80.3만 원, 3명 이상인 경우는 117.4만 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매출액에 따라서도 월세 평균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사 결과 월평균 매출액이 증가하면 월세 평균액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매출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세 평균액은 43.3만 원이었고, 월평균 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월세 평균액은 109.5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2-38〉 사업장 특성별 월세액 분포

(단위: %, 만 원)

구분		30만 원 이하	5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상	계(명)	평균
전체		13.9	27.9	34.6	23.5	100.0(7,688)	72.8
성 ($\chi^2=114.36^{***}$)	남성	11.8	25.0	35.0	28.2	100.0(3,748)	81.5
	여성	15.9	30.7	34.3	19.1	100.0(3,940)	64.4
연령 ($\chi^2=159.85^{***}$)	40세 미만	8.3	28.6	33.8	29.3	100.0(1,253)	83.1
	40~50세 미만	11.3	26.5	36.2	25.9	100.0(2,489)	77.5
	50~60세 미만	15.3	28.5	34.9	21.4	100.0(2,768)	68.9
	60세 이상	22.3	28.9	31.4	17.3	100.0(1,175)	61.0
산업 ($\chi^2=96.47^{***}$)	농림, 광공업	13.5	29.8	35.9	20.8	100.0(699)	67.1
	전기·하수·건설업	19.3	36.6	32.3	11.8	100.0(207)	51.6
	도소매업	14.8	25.3	35.1	24.8	100.0(2,406)	78.9
	운수업	24.6	33.3	18.5	23.6	100.0(61)	70.9
	숙박음식업	12.4	28.5	33.7	25.4	100.0(1,932)	71.8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10.7	28.9	42.2	18.2	100.0(426)	64.7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9.4	26.5	36.6	27.5	100.0(665)	77.7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16.9	29.5	32.1	21.5	100.0(1,292)	69.4
종사자수 ($\chi^2=836.02^{***}$)	1명	20.6	33.3	33.2	12.9	100.0(3,757)	55.0
	2명	8.7	25.3	37.3	28.7	100.0(2,937)	80.3
	3~4명	4.1	15.7	31.8	48.5	100.0(994)	117.4
월평균 매출 ($\chi^2=1,362.42^{***}$)	300만 원 미만	29.3	36.5	28.3	5.9	100.0(1,612)	43.3
	500만 원 미만	16.3	36.3	37.5	10.0	100.0(1,720)	53.0
	1000만 원 미만	8.3	26.2	39.6	25.8	100.0(2,061)	73.7
	1000만 원 이상	6.0	17.0	32.3	44.7	100.0(1,955)	109.5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자영업체 사업주의 월 평균 근무일수는 25.5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남성 사업주의 월 평균 근무일수는 25일인 반면 여성 사업주의 월 평균 근무일수는 26.2일로 여성이 남성보다 1.2일 더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 특성에서 40대 사업주가 월평균 근무일 25.8일로 가장 많은 일수로 일하며, 60세 이상 사업주가 월평균 근무일 25.0일로 가장 적은 일수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월평균 근무일수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전기·하수·건설업의 경우 월평균 24일 이하 또는 25일 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도소매업의 경우 27일에서 30일 동안 일하는 비율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숙박음식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7일에서 30일 동안 일하는 비율이 61.4%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의 경우 월평균 24일 이하 일하는 비율이 58.3%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2-39〉 월 근무일 분포

		(단위: %, 일)					
구분		1~24일	25일	26일	27~30일	계(명)	평균
전체		22.5	20.7	21.4	35.3	100.0(11,439)	25.5
성 ($\chi^2=341.90^{***}$)	남성	28.6	20.4	21.0	30.0	100.0 (6,283)	25.0
	여성	15.1	21.1	21.9	41.8	100.0 (5,156)	26.2
연령 ($\chi^2=67.10^{***}$)	40세 미만	20.9	23.2	22.6	33.3	100.0 (1,476)	25.6
	40~50세 미만	20.4	19.7	23.8	36.1	100.0 (3,275)	25.8
	50~60세 미만	21.9	21.1	20.1	36.9	100.0 (4,285)	25.6
	60세 이상	27.4	19.9	20.0	32.7	100.0 (2,397)	25.0
산업 ($\chi^2=4,177.20^{***}$)	농림, 광공업	19.6	30.3	26.4	23.7	100.0 (1,034)	25.1
	전기·하수·건설업	26.6	31.7	28.5	13.1	100.0 (296)	24.0
	도소매업	10.4	22.1	22.7	44.8	100.0 (3,269)	26.6
	운수업	71.4	14.5	7.1	7.0	100.0 (1,352)	21.6
	숙박음식업	6.2	15.3	17.2	61.4	100.0 (2,454)	27.3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19.2	29.9	35.0	15.9	100.0 (519)	25.2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58.3	17.2	17.7	6.8	100.0 (904)	23.0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12.8	22.4	30.6	34.2	100.0 (1,610)	26.1
종사자수 ($\chi^2=536.93^{***}$)	1명	29.0	21.3	21.9	27.8	100.0 (5,985)	24.8
	2명	12.5	20.0	20.9	46.6	100.0 (4,039)	26.6
	3~4명	23.4	20.3	21.1	35.2	100.0 (1,416)	25.6
월평균 매출 ($\chi^2=367.39^{***}$)	300만 원 미만	30.6	23.2	19.9	26.3	100.0 (2,929)	24.5
	500만 원 미만	27.2	18.3	22.2	32.3	100.0 (2,660)	25.1
	1000만 원 미만	16.4	19.9	22.4	41.3	100.0 (2,763)	26.3
	1000만 원 이상	15.8	21.3	20.7	42.2	100.0 (2,571)	26.3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자영업체 사업주의 주당 근무시간은 65.5시간으로 나타났다.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비율은 8.3%에 불과하였고, 오히려 70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은 33.9%로 다른 범주에 비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으로써, 자영업 사업주의 장시간 근로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주당 근무시간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30대와 60세이상 연령집단의 주당 근무시간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고, 40대와 50대의 주당 근무시간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산업에 따른 차이에서 주당 근무시간이 가장 많은 산업은 숙박음식업으로 주당 71.7시간이었다. 다음은 도소매업의 경우 주당 67.8시간을 일했고,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의 경우 주당 66.8시간을 일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 일하고 있었다. 반면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의 경우 주당 49.9시간을 일하여 가장 적은 시간 일하고 있었고, 전기하수건설업은 주당 58.9시간,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의 경우 57.4시간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 일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와 관련하여 종사자 2명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68.2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종사자 2명인 경우는 사업주 본인과 무급가족종사자 1명의 구성이 전체의 70%를 차지함으로써, 사업주 본인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자영업 사업체의 주당 근무시간이 가장 많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월평균 매출과 주당 근무시간의 관계에서 월평균 매출이 큰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많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월평균 매출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은 62.4시간인 반면, 월평균 매출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은 67.4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2-40〉 주당 근무시간 분포

(단위: %, 시간)

구분		40시간 이하	50시간 이하	60시간 이하	70시간 이하	70시간 이상	계(명)	평균
전체		8.3	12.8	25.4	19.6	33.9	100.0(11,437)	65.5
성	남성	7.7	13.2	25.7	19.1	34.3	100.0(6,282)	65.5
($\chi^2=9.54^*$)	여성	9.0	12.4	25.0	20.1	33.4	100.0(5,155)	65.4
연령	40세 미만	12.0	12.7	27.5	18.2	29.6	100.0(1,476)	63.1
($\chi^2=78.96^{***}$)	40~50세 미만	8.2	13.0	24.0	19.8	35.1	100.0(3,274)	65.9
	50~60세 미만	6.4	12.5	24.9	20.6	35.7	100.0(4,285)	66.5
	60세 이상	9.5	13.4	27.1	18.4	31.6	100.0(2,396)	64.4
산업	농림, 광공업	8.7	12.9	36.3	18.9	23.2	100.0(1,034)	62.0
($\chi^2=1,850.65^{***}$)	전기·하수·건설업	11.7	19.3	32.7	18.0	18.4	100.0(296)	58.9
	도소매업	5.2	10.6	26.5	22.2	35.5	100.0(3,269)	67.8
	운수업	8.3	13.3	25.8	21.0	31.6	100.0(1,352)	64.6
	숙박음식업	4.2	10.9	14.7	18.3	52.0	100.0(2,452)	71.7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8.5	23.1	42.1	15.5	10.9	100.0(519)	57.4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33.5	24.8	23.8	8.9	9.0	100.0(903)	49.9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5.5	8.8	26.4	23.2	36.1	100.0(1,610)	66.8
종사자수	1명	8.9	13.8	26.9	20.2	30.2	100.0(5,985)	63.9
($\chi^2=132.60^{***}$)	2명	6.9	10.5	23.1	20.0	39.6	100.0(4,037)	68.2
	3~4명	9.4	15.6	25.6	16.0	33.3	100.0(1,415)	64.2
월평균 매출	300만 원 미만	12.8	13.1	26.5	18.4	29.1	100.0(2,928)	62.4
($\chi^2=173.79^{***}$)	500만 원 미만	7.0	12.6	25.6	22.6	32.2	100.0(2,660)	65.6
	1000만 원 미만	6.3	12.8	25.0	19.7	36.3	100.0(2,762)	66.9
	1000만 원 이상	6.1	12.6	24.1	18.4	38.9	100.0(2,571)	67.4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월평균 매출액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1천 68만 원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에서 남성 사업주의 월평균 매출은 1천 341만 원이었고, 여성 사업주의 월평균 매출은 740만 원으로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차이에서 30대와 40대의 월평균 매출이 50대와 60세 이상 연령층에 비해 많게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사업주의 월평균 매출은 613만 원으로 30대 사업주의 절반수준이고, 40대 사업주의 41%수준밖에 되지 않아 규모가 작거나 수익구조의 취약성이 예상된다.

산업별로도 월평균 매출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월평균 매출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하수건설업이고 가장 적은 산업은 운수업으로 나타났다. 농림광공업, 도소매업이 상대적으로 월평균 매출이 많아 1천만 원 이상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운수업, 숙박음식업,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 기술교육보건의서비스업,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은 800만 원 미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운수업은 월평균 매출이 412만 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종사자 규모에 따라서 월평균 매출의 차이는 예상되는 것으로, 종사자 1명인 경우 월평균 매출은 583.8만 원인 반면 종사자 3명 이상인 경우는 2,857.7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2-41〉 월평균 매출액

(단위: %, 시간)

구분		3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계(명)	평균
전체		26.8	24.4	25.3	23.5	100.0(10,924)	1,068.6
성 ($\chi^2=136.28^{***}$)	남성	26.2	23.2	22.8	27.7	100.0(5,966)	1,341.4
	여성	27.5	25.7	28.2	18.5	100.0(4,958)	740.3
연령 ($\chi^2=933.67^{***}$)	40세 미만	14.7	24.7	32.1	28.5	100.0(1,406)	1,200.4
	40~50세 미만	16.8	22.2	28.5	32.5	100.0(3,133)	1,480.0
	50~60세 미만	27.0	26.6	24.9	21.4	100.0(4,102)	962.5
	60세 이상	47.7	23.0	17.3	12.0	100.0(2,276)	613.8
산업 ($\chi^2=1,736.56^{***}$)	농림, 광공업	26.3	18.4	23.0	32.3	100.0(984)	1,275.4
	전기하수·건설업	19.6	15.4	29.5	35.5	100.0(279)	1,974.7
	도소매업	18.2	19.6	25.2	37.0	100.0(3,124)	1,781.7
	운수업	52.5	36.9	8.1	2.5	100.0(1,323)	411.6
	숙박음식업	17.4	22.4	36.2	24.0	100.0(2,371)	759.6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40.4	29.1	18.6	11.9	100.0(476)	752.3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20.7	26.7	33.8	18.8	100.0(835)	794.6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37.5	28.9	21.6	12.0	100.0(1,532)	609.6
종사자수 ($\chi^2=2,763.48^{***}$)	1명	40.5	30.5	18.6	10.5	100.0(5,794)	583.8
	2명	14.5	21.4	34.2	29.9	100.0(3,817)	1,189.4
	3~4명	2.4	5.8	29.2	62.5	100.0(1,312)	2,857.5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함이 불일치할 수 있음.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자영업 사업체의 월평균 매출에서 사업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은 143.2만 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순이익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비율이 6.6%였고, 적자는 아니지만 순이익이 발생하는 않는 비율은 32.4%로 순이익이 없는 상태 전체는 39.0%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남성 사업주의 월평균 순이익은 176.2만 원이었고, 여성 사업주의 월평균 순이익은 103.3만 원으로 여성 사업주의 이익이 남성 사업주 이익의 58.6% 수준이었다.

연령별 차이로 40대와 50대 사업주의 월평균 순이익은 각각 180.9만 원, 150.6만 원으로 30대와 60세 이상 사업주의 월평균 순이익보다 많은 수준이었다. 특히 60세 이상 사업주의 월평균 순이익은 86.3만 원에 불과해 수익구조가 매우 취약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월평균 순이익이 가장 큰 산업은 전기하수건설업으로 239.5만 원이었고, 월평균 순이익이 가장 작은 산업은 운수업으로 89.9만 원에 불과했다. 전기하수건설업과 함께 농림광공업과 도소매업이 전체 평균 이상의 월평균 순이익을 얻은 산업인 반면, 운수업과 함께 숙박음식업,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이 평균 이하의 월평균 순이익을 얻고 있는 산업으로 분류된다.

〈표 2-42〉 월평균 순이익

(단위: %, 만 원)

구분		0원 미만	0원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계(명)	평균
전체		6.6	32.4	33.8	27.2	100.0(11,038)	143.2
성	남성	6.4	29.9	32.4	31.4	100.0(6,035)	176.2
	여성	6.8	35.4	35.4	22.3	100.0(5,003)	103.3
(χ ² =117.68***)							
연령	40세 미만	4.0	29.7	34.2	32.2	100.0(1,415)	130.1
	40~50세 미만	6.2	28.5	30.5	34.9	100.0(3,169)	180.9
	50~60세 미만	7.6	34.3	32.2	26.0	100.0(4,132)	150.6
	60세 이상	6.9	36.2	40.8	16.0	100.0(2,316)	86.3
(χ ² =292.78***)							
산업	농림, 광공업	5.9	31.9	29.5	32.7	100.0(995)	168.9
	전기·하수·건설업	7.5	34.7	26.7	31.1	100.0(285)	239.5
	도소매업	5.6	29.7	32.4	32.3	100.0(3,150)	197.1
	운수업	4.9	37.7	39.9	17.4	100.0(1,339)	89.9
	숙박음식업	8.0	30.0	34.8	27.2	100.0(2,386)	113.7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8.4	31.3	35.9	24.5	100.0(482)	122.0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7.5	31.1	33.1	28.3	100.0(845)	143.1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7.0	37.8	33.6	21.6	100.0(1,555)	97.6
(χ ² =199.46***)							
종사자수	1명	6.8	36.8	37.9	18.5	100.0(5,854)	84.7
	2명	7.0	29.4	30.5	33.1	100.0(3,855)	145.3
	3~4명	4.3	21.9	24.9	48.9	100.0(1,329)	394.6
(χ ² =617.03***)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자영업 사업체의 전년도 1년간 소득세 평균은 44.9만 원이고,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비율이 63.1%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소득세 납부 실태를 보면, 도소매업이 1년간 평균 65만 원을 납부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농림광공업, 전기·하수·건설업,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의 연간 소득세 납부수준이 평균 이상으로 높은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 운수업, 숙박음식업,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의 연간 소득세 납부수준은 평균 이하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운수업의 경우 연간 16.9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여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종사자 규모에 따른 차이에서 종사자 3명 이상부터 연간 소득세 납부

액이 크게 증가한다. 종사자 1명인 경우 연간 소득세는 21.6만 원, 종사자 2명인 경우 46.8만 원이었지만, 종사자 3명 이상인 경우는 연간 소득세를 137.1만 원 납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종사자 3명이 소득세 납부 실태의 분기점이 되고 있다.

월평균 매출에 따른 차이에서 월평균 매출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연간 소득세는 5만 원, 300~499만 원인 경우 연간 소득세 14만 원, 500~999만 원인 경우 연간 소득세는 38.3만 원이었지만, 월평균 매출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연간 소득세는 137.1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3〉 전년도 1년간 소득세

(단위: %, 만 원)

구분		0원	100만 원 미만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계(명)	평균
전체		63.1	25.8	6.9	4.1	100.0(10,142)	44.9
산업 ($\chi^2=393.69^{***}$)	농림, 광공업	60.4	25.4	8.8	5.3	100.0(906)	54.9
	전기·하수·건설업	59.4	25.7	10.0	4.8	100.0(264)	47.1
	도소매업	57.0	27.0	9.0	6.9	100.0(2,891)	65.0
	운수업	82.7	14.1	2.3	0.9	100.0(1,208)	16.9
	숙박음식업	61.0	28.8	7.4	2.8	100.0(2,189)	39.5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56.6	34.5	5.6	3.3	100.0(443)	35.3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58.1	30.4	7.0	4.5	100.0(792)	56.6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69.4	23.8	4.7	2.1	100.0(1,448)	25.8
종사자수 ($\chi^2=869.90^{***}$)	1명	73.1	21.2	4.0	1.7	100.0(5,431)	21.6
	2명	56.0	31.3	8.1	4.7	100.0(3,517)	46.8
	3~4명	39.2	30.9	16.9	13.0	100.0(1,194)	144.7
월평균 매출 ($\chi^2=2,360.35^{***}$)	300만 원 미만	86.4	12.6	0.7	0.3	100.0(2,763)	5.0
	500만 원 미만	74.2	22.4	2.9	0.5	100.0(2,478)	14.0
	1000만 원 미만	52.3	36.9	7.6	3.2	100.0(2,516)	38.3
	1000만 원 이상	33.4	34.1	18.7	13.8	100.0(2,218)	137.1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자영업 사업체의 사업주가 1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 평균은 112.6만 원이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비율은 54.4%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부가가치세액 평균을 살펴보면, 전기하수건설업이 234.5만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운수업이 31만 원으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전기하수건설업과 함께 농림어업공광업과 도소매업이 166만 원 이상으로 높은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운수업과 함께 숙박음식업,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이 88만 원 이하로 낮은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다.

종사자 규모 특성에서 1명인 경우 부가가치세 평균액은 50.2만 원, 2명인 경우는 126.4만 원, 3~4명인 경우는 352.3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2-44〉 전년도 1년간 부가가치세

(단위: %, 만 원)

구분		0원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계(명)	평균
전체		54.4	23.8	21.8	100.0 (10,173)	112.6
산업 ($\chi^2=712.63^{***}$)	농림, 광공업	48.9	18.9	32.2	100.0 (924)	190.6
	전기하수·건설업	43.9	25.6	30.6	100.0 (267)	234.5
	도소매업	41.7	30.4	27.9	100.0 (2,896)	166.0
	운수업	81.8	9.8	8.3	100.0 (1,209)	31.0
	숙박음식업	51.7	26.3	22.0	100.0 (2,210)	88.3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61.9	24.1	13.9	100.0 (440)	72.2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62.8	17.3	19.9	100.0 (782)	86.3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59.3	24.9	15.8	100.0 (1,444)	65.0
종사자수 ($\chi^2=851.44^{***}$)	1명	65.4	20.8	13.8	100.0 (5,419)	50.2
	2명	45.0	29.0	26.1	100.0 (3,548)	126.4
	3~4명	32.2	22.3	45.5	100.0 (1,206)	352.3
월평균 매출 ($\chi^2=2,642.92^{***}$)	300만 원 미만	83.7	12.4	4.0	100.0 (2,740)	8.6
	500만 원 미만	64.1	23.1	12.9	100.0 (2,468)	32.7
	1000만 원 미만	41.8	34.3	23.9	100.0 (2,522)	85.7
	1000만 원 이상	22.1	26.9	51.0	100.0 (2,279)	355.5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종사자 5인 미만 자영업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에서 건강보험 가입 비율⁷⁾은 7.2%에 불과하여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 사업주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비율은 8.4%, 여성 사업주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비율은 5.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구분해 볼 때 특히 30대(9.3%)와 40대(10.5%) 사업주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 중에서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비율이 (24.2%)로 특히 높은 반면, 운수업(1.5%)과 숙박음식업(3.6%)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낮으며, 종사자 규모가 3명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비율(36.0%)이 종사자규모 2명 이하일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사업장 가입비율은 월평균 매출과도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월평균 매출이 1,000만 원 이상이 되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비율(19.7%)이 상대적으로 다른 매출범주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종사자 규모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종사자 규모가 3명이 넘어서면 건강보험의 사업장 가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7)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는 매년 8월에 실시되는데, 조사항목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는 포함되어 있으나 건강보험 가입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2-45〉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 비율

		(단위: %)		
구분		가입	미가입	계 (명)
전체		7.2	92.8	100.0 (11,439)
성 ($\chi^2=32.5^{***}$)	남성	8.4	91.6	100.0 (6,283)
	여성	5.7	94.3	100.0 (5,156)
연령 ($\chi^2=130.73^{***}$)	40세 미만	9.3	90.7	100.0 (1,476)
	40~50세 미만	10.5	89.5	100.0 (3,275)
	50~60세 미만	6.2	93.8	100.0 (4,285)
	60세 이상	3.1	96.9	100.0 (2,397)
산업 ($\chi^2=569.44^{***}$)	농림, 광공업	12.0	88.0	100.0 (1,034)
	전기·하수·건설업	11.8	88.2	100.0 (296)
	도소매업	7.1	92.9	100.0 (3,269)
	운수업	1.5	98.5	100.0 (1,352)
	숙박음식업	3.6	96.4	100.0 (2,454)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5.5	94.5	100.0 (519)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24.2	75.8	100.0 (904)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4.4	95.6	100.0 (1,610)
종사자수 ($\chi^2=2,143.11^{***}$)	1명	0.7	99.3	100.0 (5,985)
	2명	6.6	93.4	100.0 (4,039)
	3~4명	36.0	64.0	100.0 (1,416)
월평균 매출 ($\chi^2=908.08^{***}$)	300만 원 미만	1.1	98.9	100.0 (2,929)
	500만 원 미만	1.8	98.2	100.0 (2,660)
	1000만 원 미만	6.4	93.6	100.0 (2,763)
	1000만 원 이상	19.7	80.3	100.0 (2,571)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5인 미만 자영업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비율⁸⁾은 5.9%로 나타났다. 남성 사업주의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률은 7.2%인 반면 여성 사업주의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률은 4.4%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 사업주가 고연령 층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가 50대의 경우는 5.2%, 60세 이상의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불과 2.2%에 지나지 않았다.

산업별로 살펴볼 때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이

8)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여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집계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23.1%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른 산업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10% 이하인 점과 비교하면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종사자 수와 고용보험 가입률은 뚜렷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종사자수가 3명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33.6%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월평균 매출에 따라서도 차별적 특성을 나타내는데, 월평균 매출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이 16.9%로 다른 매출 범주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매출 규모나 종사자 수 3명 이상인 경우처럼 사업체 규모가 커지면서 나타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분기점은 종사자기준으로 3명을 넘어서면서부터 차별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46〉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비율

		(단위: %)		
구분		가입	미가입	계 (명)
전체		5.9	94.1	100.0 (11,439)
성 ($\chi^2=40.53^{***}$)	남성	7.2	92.8	100.0 (6,283)
	여성	4.4	95.6	100.0 (5,156)
연령 ($\chi^2=115.39^{***}$)	40세 미만	8.4	91.6	100.0 (1,476)
	40~50세 미만	8.4	91.6	100.0 (3,275)
	50~60세 미만	5.2	94.8	100.0 (4,285)
	60세 이상	2.2	97.8	100.0 (2,397)
산업 ($\chi^2=669.85^{***}$)	농림, 광공업	10.3	89.7	100.0 (1,034)
	전기·하수·건설업	10.0	90.0	100.0 (296)
	도소매업	5.9	94.1	100.0 (3,269)
	운수업	0.8	99.2	100.0 (1,352)
	숙박음식업	2.3	97.7	100.0 (2,454)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3.3	96.7	100.0 (519)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23.1	76.9	100.0 (904)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3.3	96.7	100.0 (1,610)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표 2-46〉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비율 (계속)

(단위: %)

구분		가입	미가입	계 (명)
종사자수 ($\chi^2=2,326.51^{***}$)	1명	0.1	99.9	100.0 (5,985)
	2명	4.8	95.2	100.0 (4,039)
	3~4명	33.6	66.4	100.0 (1,416)
월평균 매출 ($\chi^2=872.78^{***}$)	300만 원 미만	0.4	99.6	100.0 (2,929)
	500만 원 미만	1.0	99.0	100.0 (2,660)
	1000만 원 미만	5.1	94.9	100.0 (2,763)
	1000만 원 이상	16.9	83.1	100.0 (2,571)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5인 미만 자영업 사업장 중 고용원이 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비율은 24.7%로 나타났다. 2011년 8월 통계청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결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비율 37.3%와 비교하면 본 조사결과가 12.6%p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남성 사업주의 경우 30.0%, 여성 사업주의 경우 18.1%의 가입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 차이에서 40대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비율이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60세 이상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비율이 20.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47〉 고용원이 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비율

(단위: %)

구분		가입	미가입	계 (명)
전체		24.7	75.3	100.0 (2,536)
성 ($\chi^2=47.79^{***}$)	남성	30.0	70.0	100.0 (1,408)
	여성	18.1	81.9	100.0 (1,128)
연령 ($\chi^2=6.78$)	40세 미만	23.2	76.8	100.0 (502)
	40~50세 미만	27.3	72.7	100.0 (955)
	50~60세 미만	24.1	75.9	100.0 (813)
	60세 이상	20.4	79.6	100.0 (266)
산업 ($\chi^2=328.75^{***}$)	농림, 광공업	37.6	62.4	100.0 (257)
	전기하수·건설업	44.5	55.5	100.0 (63)
	도소매업	27.4	72.6	100.0 (617)
	운수업	29.7	70.3	100.0 (34)
	숙박음식업	6.3	93.7	100.0 (781)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14.5	85.5	100.0 (118)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49.6	50.4	100.0 (416)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20.0	80.0	100.0 (250)
종사자수 ($\chi^2=152.58^{***}$)	2명	13.6	86.4	100.0 (1,208)
	3명-4명	34.8	65.2	100.0 (1,328)
월평균 매출 ($\chi^2=103.79^{***}$)	300만 원 미만	10.7	89.3	100.0 (91)
	500만 원 미만	10.0	90.0	100.0 (258)
	1000만 원 미만	16.9	83.1	100.0 (770)
	1000만 원 이상	32.2	67.8	100.0 (1,251)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산업별 차이에서 산재보험 가입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기술교육보 건서비스업으로 49.6%였고, 다음은 전기하수건설업으로 44.5%, 농림광 공업이 37.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재보험 가입비율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음식업으로 6.3%에 불과했고, 이어서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으로 14.5%였다. 종사자 수에 따른 차이는 의미 있게 나타났는데, 종사자 2명인 경우 산재보험가입비율은 12.6%로 가장 낮았고, 3명인 경우 26.0%, 4명인 경우 50.1%로 산재보험 가입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비율은 7.1%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에서 사업주가 남성인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비율은 8.3%이고 여성인 경우 가입비율은 5.7%로 남성 사업주의 국민연금 가입비율이 여성 사업주의 국민연금 가입비율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연령별 차이에서 40대의 경우 1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세 이상의 경우 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0대와 4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 차이에서 기술교육보전복지서비스업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운수업이 1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운수업과 함께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사업시설관리업, 출판통신예술여가및기타서비스업이 역시 6% 미만의 낮은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에 따른 차이를 보면, 종사자 1명의 경우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비율은 0.7%에 불과했다. 그리고 종사자가 2명인 경우도 6.7%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종사자가 3명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비율은 35.6%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11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결과⁹⁾에서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비율에서 고용원이 있는 경우 39.6%, 고용원이 없는 경우 8.0%로 나타났다. 종사자 1~2명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보고, 종사자 3명 이상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보면, 본 조사결과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보이며, 다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가입비율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본 조사가 종사자 규모를 5인 미만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9) 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임금근로자 전체의 국민연금 가입비율은 66.9%이고, 이중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80.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2.2%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중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비율은 고용원이 있는 경우 39.6%, 고용원이 없는 경우 8.0%로 나타났다.

〈표 2-48〉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 비율

(단위: %)

구분		가입	미가입	계 (명)
전체		7.1	92.9	100.0 (11,439)
성	남성	8.3	91.7	100.0 (6,283)
	여성	5.7	94.3	100.0 (5,156)
연령	40세 미만	9.3	90.7	100.0 (1,476)
	40~50세 미만	10.7	89.3	100.0 (3,275)
	50~60세 미만	6.2	93.8	100.0 (4,285)
	60세 이상	2.7	97.3	100.0 (2,397)
산업	농림, 광공업	12.0	88.0	100.0 (1,034)
	전기·하수·건설업	11.8	88.2	100.0 (296)
	도소매업	7.2	92.8	100.0 (3,269)
	운수업	1.3	98.7	100.0 (1,352)
	숙박음식업	3.5	96.5	100.0 (2,454)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5.3	94.7	100.0 (519)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24.2	75.8	100.0 (904)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4.5	95.5	100.0 (1,610)
종사자수	1명	0.7	99.3	100.0 (5,985)
	2명	6.7	93.3	100.0 (4,039)
	3~4명	35.6	64.4	100.0 (1,416)
월평균 매출	300만 원 미만	1.0	99.0	100.0 (2,929)
	500만 원 미만	1.7	98.3	100.0 (2,660)
	1000만 원 미만	6.8	93.2	100.0 (2,763)
	1000만 원 이상	19.3	80.7	100.0 (2,571)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종사자 5인 미만 자영업 사업체 중 사업장 단위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1개월 보험료 평균은 755천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때 사회보험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산업별로 1개월 간 사회보험료 평균은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이 931천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전기·하수·건설업이 855천 원, 농림·광공업이 783천 원으로 1개월 간 사회보험료가 높은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의 경우 1개월 간 사회보험료 평균이 585천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종사자가 1명인 경우 1개월 간 사회보험료 평균은 194천 원으로 나

타났고, 종사자가 2명인 경우 497천 원, 종사자가 3명이상인 경우 959천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매출 규모에 따른 사회보험료 차이를 볼 수 있다. 월평균 매출이 300만 원 미만의 경우도 1개월 간 사회보험료 평균은 203천 원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매출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1개월 간 사회보험료 평균은 832천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9〉 4대 보험료 총액

(단위: %, 원)

구분		30만 원 미만	6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계	1개월 보험료 (명)
전체		32.0	31.8	18.9	17.3	100.0	754,553.8(854)
산업 ($\chi^2=126.97^{***}$)	농림, 광공업	19.9	39.8	18.0	22.4	100.0	782,638.9(127)
	전기·하수·건설업	24.6	32.9	15.1	27.4	100.0	854,716.7(34)
	도소매업	35.7	26.0	23.6	14.8	100.0	694,641.1(253)
	운수업	58.1	24.9	7.3	9.6	100.0	679,682.9(24)
	숙박음식업	58.2	22.1	5.3	14.4	100.0	630,416.3(104)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64.4	12.9	7.3	15.4	100.0	676,189.3(26)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13.7	38.8	29.2	18.2	100.0	931,391.2(212)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39.0	39.8	4.2	17.1	100.0	585,136.9(74)
종사자수 ($\chi^2=143.15^{***}$)	1명	85.1	13.9	0.0	1.0	100.0	193,510.0(53)
	2명	41.3	36.6	15.9	6.3	100.0	497,125.7(291)
	3~4명	21.2	30.9	22.6	25.3	100.0	959,220.9(510)
월평균 매출 ($\chi^2=89.14^{***}$)	300만 원 미만	77.6	19.2	2.6	0.6	100.0	202,686.4(38)
	500만 원 미만	55.9	33.1	5.2	5.8	100.0	476,614.1(48)
	1000만 원 미만	40.8	34.4	18.4	6.4	100.0	517,911.3(193)
	1000만 원 이상	24.6	32.3	22.1	21.1	100.0	832,377.2(521)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50%를 정부가 지원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정부지원시 향후 고용보험 가입의사는 전체 응답자 중 30.2%로 나타났다. 남성 사업주의 경우 31.1%, 여성 사업주의 경우 29.0%로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 특성에서 30대 연령 사업주의 경우 가입의사가 39.6%로 가장 높았다. 반면 60세 이상 연령층 사업주의 가입의사는 20.1%로 가장 낮았다. 대체로 연령이 낮은 집단의 정부지원시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혼인상태에 따라서 차이를 살펴보면, 미혼자의 경우 정부지원시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배우자의 경우 30.6%, 기혼무배우자 경우는 24.6%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가구소득 2천만 원 미만의 경우 정부지원시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로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의 경우 정부지원시 고용보험 가입의사가 37.9%로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금융부동산 시설관리업의 경우 정부지원시 고용보험가입의사가 26.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에 따른 차이도 찾아볼 수 있는데, 종사자 1명인 경우 정부지원시 고용보험 가입의사는 28.2%, 2명인 경우 29.9%, 그리고 3명 이상인 경우 44.0%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가 3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지원시 고용보험 가입의사는 다른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집단은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50〉 고용보험 50% 정부지원 시 가입 의사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계 (명)
전체		30.2	69.8	100.0 (10,764)
성 ($\chi^2=5.41^*$)	남성	31.1	68.9	100.0 (5,833)
	여성	29.0	71.0	100.0 (4,932)
연령 ($\chi^2=202.51^{***}$)	40세 미만	39.6	60.4	100.0 (1,352)
	40~50세 미만	34.8	65.2	100.0 (3,001)
	50~60세 미만	29.4	70.6	100.0 (4,061)
	60세 이상	20.1	79.9	100.0 (2,345)
혼인상태 ($\chi^2=20.84^{***}$)	미혼	33.4	66.6	100.0 (768)
	기혼유배우자	30.6	69.4	100.0 (8,901)
	기혼무배우자	24.6	75.4	100.0 (1,095)
가구소득 ($\chi^2=40.69^{***}$)	2천만 원 미만	24.1	75.9	100.0 (1,918)
	4천만 원 미만	31.7	68.3	100.0 (4,333)
	5천만 원 미만	30.3	69.7	100.0 (1,673)
	5천만 원 이상	31.5	68.5	100.0 (2,728)
산업 ($\chi^2=40.12^{***}$)	농림, 광공업	28.1	71.9	100.0 (928)
	전기하수·건설업	31.8	68.2	100.0 (267)
	도소매업	27.5	72.5	100.0 (3,077)
	운수업	31.9	68.1	100.0 (1,342)
	숙박음식업	31.4	68.6	100.0 (2,397)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26.0	74.0	100.0 (502)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37.9	62.1	100.0 (695)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30.8	69.2	100.0 (1,557)
종사자수 ($\chi^2=96.37^{***}$)	1명	28.2	71.8	100.0 (5,979)
	2명	29.9	70.1	100.0 (3,845)
	3~4명	44.0	56.0	100.0 (940)
월평균 매출 ($\chi^2=70.26^{***}$)	300만 원 미만	24.2	75.8	100.0 (2,919)
	500만 원 미만	30.8	69.2	100.0 (2,632)
	1000만 원 미만	31.9	68.1	100.0 (2,621)
	1000만 원 이상	34.3	65.7	100.0 (2,138)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자영업 사업주가 느끼는 운영상의 어려운 점을 조사한 결과 경기하락으로 인한 매출부진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5.5%가 경기하락으로 대답하였다. 다음은 경쟁업체 난립으로 19.3%, 대형마트로 인한 매출감소 6.4%, 자금부족 3.3%, 기타 5.5%로 나타났다. 이로써 자영업 사업주는 경기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 사업주와 여성 사업주의 차이는 크지 않고,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았지만,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고 있다. 30대와 40대 사업주의 경우 경기하락을 주요 어려움으로 응답하고 있지만 경쟁업체 난립에 대한 응답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30대의 경우 경쟁업체 난립으로 인한 어려움을 답한 비율이 24.4%이고, 40대의 경우는 21.2%로 50대와 60세 이상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30대와 40대 연령층이 경쟁업체 난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별 차이에서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의 경우 경기하락을 주요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지만, 경쟁업체 난립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비율이 28.0%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의 경우도 경쟁업체 난립에 대한 어려움을 답한 비율이 27.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두 산업군의 경우 경기하락에도 크게 영향 받지만, 경기변동뿐만 아니라 경쟁업체 난립의 어려움도 크게 느끼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사자 규모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종사자 1~2명의 경우 경기하락의 어려움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지만, 3명인 이상인 경우 경쟁업체 난립을 지적하는 비율이 22.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경기하락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51〉 자영업 사업체 운영시 가장 어려운 점

(단위: %)

구분		대형마트 로인한 매출감소	경기 하락	경쟁업 체 난립	자금 부족	기타	계 (명)
전체		6.4	65.5	19.3	3.3	5.5	100.0(11,300)
성	남성	5.9	65.8	18.8	3.7	5.8	100.0(6,211)
($\chi^2=15.60^{**}$)	여성	7.0	65.1	20.0	2.9	5.1	100.0(5,089)
연령	40세 미만	5.5	58.9	24.4	4.5	6.7	100.0(1,457)
($\chi^2=116.20^{***}$)	40~50세 미만	5.7	62.7	21.2	3.7	6.7	100.0(3,236)
	50~60세 미만	6.2	68.2	17.7	2.9	5.0	100.0(4,237)
	60세 이상	8.2	68.4	16.5	2.9	3.9	100.0(2,364)
가구소득	2천만 원 미만	7.7	67.5	17.4	4.0	3.5	100.0(1,920)
($\chi^2=60.11^{***}$)	4천만 원 미만	6.2	65.6	19.5	3.4	5.3	100.0(4,426)
	5천만 원 미만	5.9	64.5	20.5	4.0	5.1	100.0(1,788)
	5천만 원 이상	5.9	64.3	19.9	2.5	7.4	100.0(3,039)
산업	농림, 광공업	4.7	69.1	15.1	4.5	6.5	100.0(1,018)
($\chi^2=1,235.87^{***}$)	전기하수·건설업	1.9	73.7	14.9	4.8	4.7	100.0(296)
	도소매업	17.8	57.4	16.1	3.5	5.2	100.0(3,245)
	운수업	0.3	77.6	15.7	1.4	5.1	100.0(1,344)
	숙박음식업	2.0	68.3	19.6	2.9	7.3	100.0(2,410)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0.4	74.8	18.8	2.6	3.4	100.0(514)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0.5	59.6	28.0	4.8	7.2	100.0(888)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2.1	63.9	27.4	3.7	3.0	100.0(1,585)
종사자수	1명	5.1	69.6	18.8	3.1	3.5	100.0(5,929)
($\chi^2=422.62^{***}$)	2명	9.3	63.4	19.1	2.9	5.2	100.0(3,974)
	3~4명	3.5	54.0	22.2	5.6	14.6	100.0(1,397)
월평균 매출	300만 원 미만	5.6	70.8	17.2	3.3	3.1	100.0(2,890)
($\chi^2=204.20^{***}$)	500만 원 미만	5.2	66.6	21.1	3.1	4.0	100.0(2,640)
	1000만 원 미만	6.9	65.2	20.9	2.0	5.0	100.0(2,719)
	1000만 원 이상	7.6	59.4	18.9	5.0	9.2	100.0(2,547)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제5절 직업경력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1998년 외환위기 때부터 실직자와 생계형 창업이 증가하면서 2002년까지 크게 증가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직업이동 경로를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자영업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사업주의 직업경력의 실태가 과연 어떠한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자영업자의 직업경력에 대한 관심으로 실태조사에서 직업경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중 현재 자영업자의 임금근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임금근로 경험이 있는 비율은 60.8%로 나타났다. 임금근로 시작 평균 연령은 24.0세, 임금근로 종료 평균 연령은 35.0세, 임금근로 평균 지속기간은 10.8년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현재 남성 사업주의 임금근로 경험비율은 73.5%, 여성 사업주의 임금근로 경험비율은 45.3%로 남성의 경험비율이 훨씬 높았다. 또한 임금근로 시작연령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임금근로 종료 평균연령은 남성 사업주 36.1세, 여성 사업주 32.7세로 여성이 임금근로 종료 평균 연령에서 3.4세 더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금근로 평균 지속기간에서도 남성 사업주는 12.2년, 여성 사업주는 8.0년으로 나타나 여성의 지속기간이 남성보다 2.2년 더 짧았다. 임금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고용불안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연령에 따라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30대와 40대 연령층의 경우 임금근로 경험비율이 60%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50대와 60세 이상 연령층의 임금근로 경험비율은 50%대를 형성하여 약 10%p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임금근로자의 자영업자 전환 비율이 더 높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근로 시작 평균 연령과 임금근로 종료 평균 연령,

임금근로 평균 기간이 상승하는 것은 연령 효과로써 자연스런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2-52〉 자영업자의 임금근로 경력

(단위: %, 세)

구분		임금근로 경험		임금근로 시작	임금근로 종료	임금근로 평균기간	(명)
		없음	있음	평균연령	평균연령	(년)	
전체		39.2	60.8	24.0	35.0	10.8	(11,439)
성	남성	26.5	73.5	23.8	36.1	12.2	(6,283)
	여성	54.7	45.3	24.3	32.7	8.0	(5,156)
연령							
(χ ² =170.97***)	40세 미만	30.4	69.6	21.9	28.3	6.2	(1,476)
	40~50세 미만	33.6	66.4	23.2	32.3	8.9	(3,275)
	50~60세 미만	42.1	57.9	24.5	36.5	11.8	(4,285)
	60세 이상	47.1	52.9	25.9	41.9	16.0	(2,397)
직종							
(χ ² =141.92***)	관리자	46.1	53.9	24.1	35.1	10.4	(5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0.3	69.7	24.9	34.0	9.0	(367)
	사무종사자	26.6	73.4	23.9	34.3	10.2	(184)
	서비스종사자	37.7	62.3	24.3	36.0	11.4	(5,845)
	판매종사자	45.8	54.2	23.7	33.5	9.7	(3,51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27.3	72.7	20.5	33.3	12.5	(20)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35.9	64.1	22.9	34.2	11.1	(1,07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9.3	80.7	21.9	34.1	12.6	(239)
	단순노무종사자	33.6	66.4	24.3	35.0	10.6	(143)
산업							
(χ ² =492.30***)	농림, 광공업	40.8	59.2	23.1	34.3	11.1	(1,034)
	전기·하수·건설업	33.8	66.2	23.5	34.4	10.7	(296)
	도소매업	45.8	54.2	23.4	32.9	9.4	(3,269)
	운수업	16.5	83.5	24.3	39.5	15.0	(1,352)
	숙박음식업	49.1	50.9	25.2	36.1	10.7	(2,454)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33.2	66.8	24.5	36.9	12.1	(519)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32.8	67.2	24.4	32.7	8.1	(904)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35.2	64.8	23.3	33.4	9.9	(1,610)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직종에서는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의 경우 임금근로 경험비율이 80.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임금근로 평균 지속기간도 12.6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남으로써, 숙련기술을 소유한 임금근로자의 경우 높은 비율

이 자영업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경우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로 임금근로 경험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운수업으로 83.5%로 나타났으며, 임금근로 평균기간도 15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이는 임금근로를 오래 지속한 고연령층이 다른 산업보다도 운수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자영업자의 직업경력에서 임금근로뿐만 아니라 자영업 내의 변화와 지속기간도 주요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본 조사 결과 자영업 사업주의 자영업 시작 평균연령은 36.5세이며, 자영업 평균 종사기간은 13.4년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업종 전환 평균 횟수는 0.55번, 업종전환 경험에 있는 비율은 24.5%로 나타났다. 업종 전환 횟수에서 동일 산업 내에서의 사업장 이동이나 휴폐업 후 재개업의 사례는 전환으로 보지 않았다. 이로써 현재의 자영업자가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남성 사업주의 자영업 시작 평균 연령은 35.5세이고 여성 사업주의 자영업 시작 평균 연령은 37.7세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자영업 시작 연령이 2.2세 늦게 나타났다. 자영업 종사 기간 평균은 남성 사업주가 15년, 여성 사업주가 11.5년으로 여성 사업주가 남성 사업주에 비해 3.5년 더 짧게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상승할수록 자영업 시작 평균 연령이 높고 자영업 종사기간 평균은 길게 나타나고 있다.

직종에 따른 차이에서 자영업 시작 평균 연령이 서비스종사자와 관리자의 경우 전체 평균 이상으로 다소 높고,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전체 평균에 비해서 자영업 시작 평균 연령이 다소 낮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2-53〉 자영업자의 자영업 경력

(단위: 세, 년, 회, 명)

구분		자영업 시작 평균 연령	자영업 평균 종사기간	업종 전환 평균 횟수
전체		36.5 (11,424)	13.4 (11,091)	0.55 (11,430)
성	남성	35.5 (6,275)	14.9 (6,088)	0.64 (6,276)
	여성	37.7 (5,149)	11.5 (5,004)	0.44 (5,154)
연령	40세 미만	28.6 (1,471)	4.8 (1,455)	0.30 (1,471)
	40~50세 미만	34.1 (3,273)	9.3 (3,171)	0.44 (3,272)
	50~60세 미만	37.9 (4,285)	14.7 (4,152)	0.61 (4,285)
	60세 이상	42.0 (2,392)	21.9 (2,308)	0.75 (2,395)
직종	관리자	37.3 (59)	12.3 (59)	0.76 (5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4.2 (366)	11.4 (350)	0.14 (365)
	사무종사자	36.2 (184)	11.2 (179)	0.31 (184)
	서비스종사자	37.5 (5,835)	12.6 (5,695)	0.61 (5,840)
	판매종사자	35.9 (3,508)	13.7 (3,391)	0.56 (3,51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4.6 (20)	20.0 (20)	1.36 (20)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34.5 (1,071)	16.9 (1,037)	0.37 (1,071)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34.5 (239)	15.7 (228)	0.42 (239)
	단순노무종사자	35.9 (141)	15.2 (131)	0.41 (141)
산업	농림, 광공업	35.2 (1,034)	16.7 (1,006)	0.45 (1,034)
	전기·허수·건설업	33.7 (296)	16.2 (287)	0.59 (296)
	도소매업	35.6 (3,267)	14.0 (3,147)	0.54 (3,269)
	운수업	38.8 (1,352)	16.2 (1,323)	0.76 (1,352)
	숙박음식업	39.2 (2,446)	10.7 (2,377)	0.60 (2,450)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38.6 (519)	12.5 (504)	0.72 (519)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33.3 (901)	9.6 (875)	0.20 (901)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34.7 (1,607)	13.5 (1,571)	0.51 (1,607)
종사자수	1명	37.0 (5,977)	13.7 (5,826)	0.57 (5,982)
	2명	36.1 (4,031)	13.8 (3,896)	0.57 (4,033)
	3~4명	35.3 (1,415)	11.0 (1,370)	0.41 (1,414)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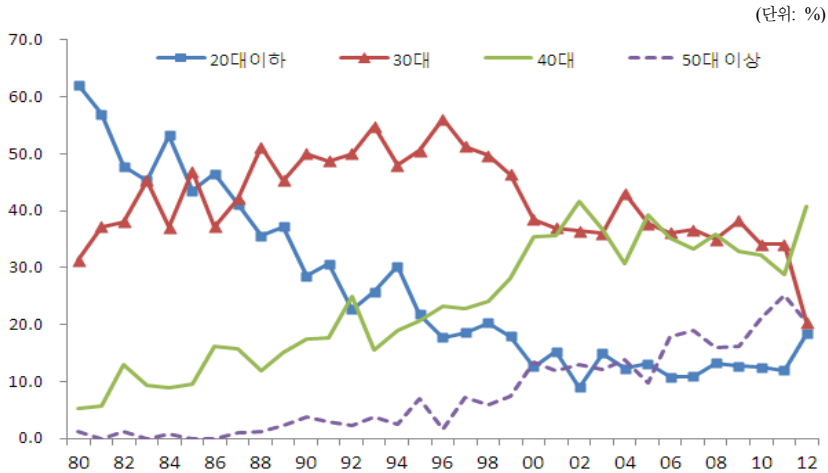
산업에 따른 차이는 자영업 시작 평균 연령이 운수업, 숙박음식업,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에서 전체 평균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업무 자영업에 고연령층이 진입하여 진입 평균 연령을 높이는 것으로 예상된다. 종사자 규모에 따른 큰 특징은 찾아보기 어렵다.

자영업 사업주의 직업 경력을 살펴볼 때, 임금근로 시작 평균 연령이 24세이고, 임금근로 종료 평균 연령이 35세이고, 임금근로 지속기간 평균이 10.8년이고, 자영업 시작 평균 연령이 36.5세로 나타난 점을 보면, 연령을 기준으로 할 때 하나의 생애사적 궤적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재의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24세에 임금근로를 시작하여 약 10년 동안 지속한 이후 임금노동시장을 빠져 나온다. 이후 약 1년 동안의 공백을 갖은 이후 36세경에 자영업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현재까지 약 13년 동안 자영업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주된 경향성을 찾을 수 있다.

다른 한편 자영업 진입 연령별로 자영업 진입시기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 자영업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자영업 사업주를 기준으로 볼 때, 자영업 진입연령이 20대인 비중은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980년만 해도 60%를 넘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 절반인 30%수준 이하로 감소하였다. 자영업 진입연령이 30대인 비중은 1990년대까지 5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30%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영업 진입연령이 40대인 비중은 1980년 이후 점차 증가하여 1990년대에 20%대를 넘어선 이후 2000년대 들어 30%대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자영업 진입연령이 50대인 비중 역시 1990년 10%이하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0년 들어 10%이상을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20%를 넘어섰다.

요컨대 1990년대만 해도 자영업 진입연령에서 30대의 비중이 제일 높았고, 20대와 40대가 유사한 수준이었다면, 2000년 이후 최근까지는 30대와 40대가 유사한 수준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50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근 10년간 40대와 50대의 자영업 진입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의 자영업 진입연령별 비중



직업 이동의 측면에서 자영업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자영업 시작동기에 대한 조사 결과 자영업 사업주의 46.8%가 ‘직장생활보다 높은 수입이 기대 돼서’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취직이 어려워서’ 18.2%, ‘전공 및 관심분야라서’ 14.4%로 나타나 자영업을 시작한 동기의 많은 부분은 소득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 의미 있는 사실은 자영업 선택의 이유로 자녀 양육과 취업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비율이 남성 사업주에 비해서 여성 사업주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 노동시장의 특성을 잘 반영해 주는 것으로 입직의 어려움과 양육 부담이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게 더 크다는 작용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자영업 시작 동기가 자녀 양육 및 가사에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1.1%인 반면 여성은 9.1%로 나타나 그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연령에 따라서도 일정한 경향성이 나타는데, 자영업 시작의 동기가 전공 및 관심분야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30대 사업주의 경우 이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23.1%인 반면 60세 이상 사업주의 경우 10.5%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자영업을 시작한 동기가 취직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30대 사업주의 경우 이 이유로 응답한 비율은 11.5%인 반면 60세 이상 사업주의 경우 23.4%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성별, 연령별 특성에서도 자영업 시작 동기의 가장 주된 이유는 직장 생활보다 높은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었다.

직종별로 자영업 시작 동기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경우 다른 직종과 달리 자영업을 시작한 동기 중 가장 주된 이유는 전공 및 관심분야이기 때문이었고 그 비율은 59%였다. 다른 직종에서는 대부분 직장생활보다 높은 수입이 기대되기 때문에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만 관리자, 사무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의 경우는 전공 및 관심분야이기 때문에 자영업을 시작했다는 비율이 20%대를 나타내어, 나머지 직종에 비해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것이 자영업 시작의 동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취직이 어려워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직종은 관리자, 판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노무 종사자는 취직이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1%로 다른 직종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취직이 어려워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직종은 대체로 전문 기술이 필요 없는 직종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산업에 따른 차이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데, 기술교육보전서비스업의 경우 전공 및 관심분야라서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54.8%로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출판통신에

술개인서비스업의 경우도 다른 산업에 비해 이 이유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운수업이나 숙박음식업의 경우 취직이 어려워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54〉 자영업 시작 동기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명)
전체		14.4	46.8	4.5	4.7	18.2	8.9	2.4	100.0(11,439)
성	남성	15.1	48.2	5.8	1.1	16.8	10.8	2.2	100.0(6,283)
	여성	13.6	45.1	2.8	9.1	19.9	6.7	2.7	100.0(5,156)
연령	40세 미만	23.1	45.6	2.1	4.2	11.5	10.5	3.0	100.0(1,476)
	40~50세 미만	16.5	50.6	3.1	5.8	14.7	7.1	2.3	100.0(3,275)
	50~60세 미만	12.0	47.5	4.3	4.4	20.2	9.6	1.9	100.0(4,285)
	60세 이상	10.5	41.4	8.1	4.1	23.4	9.2	3.2	100.0(2,397)
직종	관리자	21.2	36.6	10.0	1.0	20.4	8.6	2.4	100.0(5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9.3	27.0	2.7	3.8	3.7	2.2	1.2	100.0(367)
	사무종사자	21.3	45.4	5.3	5.6	13.3	5.6	3.5	100.0(184)
	서비스종사자	12.1	48.6	5.4	4.1	18.7	9.1	2.1	100.0(5,845)
	판매종사자	9.9	48.2	3.9	6.3	20.1	8.9	2.7	100.0(3,51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8.1	41.7	15.0	10.5	6.8	0.1	17.8	100.0(20)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22.9	40.8	2.2	3.5	15.7	11.8	3.1	100.0(1,07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5.6	45.7	4.2	4.1	8.9	8.8	2.8	100.0(239)
	단순노무종사자	13.4	48.1	0.0	2.6	29.1	4.6	2.2	100.0(143)
산업	농림, 광공업	18.2	39.8	3.2	4.3	18.4	11.5	4.5	100.0(1,034)
	전기·전자·통신·건설업	19.5	46.5	2.0	2.1	12.5	15.2	2.2	100.0(296)
	도소매업	9.9	48.9	3.3	6.7	18.9	9.2	3.2	100.0(3,269)
	운수업	6.6	48.9	10.0	1.2	22.1	10.5	0.7	100.0(1,352)
	숙박음식업	4.6	54.8	3.7	5.1	20.7	8.5	2.6	100.0(2,454)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11.0	47.2	9.0	3.6	18.6	7.5	3.0	100.0(519)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54.8	28.0	2.1	4.5	5.6	4.2	0.8	100.0(904)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20.2	43.8	4.7	4.4	17.5	8.0	1.4	100.0(1,610)
종사자수	1명	14.7	44.0	5.1	5.4	19.6	9.1	2.0	100.0(5,985)
	2명	11.6	50.0	4.0	4.4	18.3	9.3	2.4	100.0(4,039)
	3~4명	21.4	49.5	3.4	2.6	12.0	6.9	4.3	100.0(1,416)

① 전공분야 또는 관심분야로서, ② 직장생활보다 더 높은 수입이 기대되서, ③ 정년퇴직 후 하기에 적당한 일이라서

④ 자녀양육(가족돌봄) 및 가사일에 편리해서, ⑤ 취직이 어려워서, ⑥ 직장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⑦ 기타(가업(또는 집안에서 하도록 전해진 일)이어서 등)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한편, 자영업을 시작한 동기에서 임금근로 경험여부의 차별성이 드러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임금근로 경험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직장생활보다 높은 수입이 기대되어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취직이 어려워서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에서 임금근로 경험자보다 임금근로 미경험자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임금근로 경험의 부재가 취업을 더욱 어렵게 느끼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임금근로 평균 기간에 따른 자영업 시작 동기에서도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임금근로 평균 기간이 증가할 경우 전공 및 관심분야로서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낮게 나타나고, 취직이 어려워서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높게 나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공 및 관심분야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임금근로 기간을 줄이고 자영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자영업 시작 연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향성을 찾을 수 있는데, 자영업 시작 연령이 증가할 경우 전공 및 관심분야 때문에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전공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임금근로 기간을 줄이고 비교적 이른 시점에 관련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54〉 자영업 시작 동기(계속)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명)
전체	14.4	46.8	4.5	4.7	18.2	8.9	2.4	100.0(11,439)
임금근로 경험여부 없음	13.4	43.9	2.6	6.5	20.6	9.9	3.1	100.0(4,482)
($\chi^2=168.72^{***}$) 있음	15.1	48.7	5.7	3.6	16.6	8.3	2.0	100.0(6,957)
임금근로 평균기간 5년 미만	19.5	47.4	2.1	4.7	14.5	9.5	2.4	100.0(1,651)
($\chi^2=316.72^{***}$) 10년 미만	15.3	50.4	3.1	4.3	15.5	9.2	2.3	100.0(2,006)
15년 미만	15.7	47.6	5.0	4.1	18.0	7.9	1.6	100.0(1,476)
15년 이상	10.3	48.8	12.4	1.6	18.7	6.6	1.6	100.0(1,824)
자영업 시작연령 30세 미만	19.0	47.1	2.2	4.3	12.6	11.8	3.0	100.0(2,863)
($\chi^2=768.88^{***}$) 30~40세 미만	15.2	48.7	2.9	5.6	16.2	9.0	2.4	100.0(4,568)
40~50세 미만	10.9	47.8	4.8	4.6	22.4	7.7	1.8	100.0(2,937)
50세 이상	8.4	35.8	16.2	2.1	30.0	4.6	2.8	100.0(1,061)

① 전공분야 또는 관심분야라서, ② 직장생활보다 더 높은 수입이 기대되서, ③ 정년퇴직 후 하기에 적당한 일이라서

④ 자녀양육(가족돌봄) 및 가사일에 편리해서, ⑤ 취직이 어려워서, ⑥ 직장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⑦ 기타(가업(또는 집안에서 하도록 정해진 일)이어서 등)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자영업 사업주의 향후 사업체 운영 계획을 조사하였다. 향후 3년 이내 폐업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는 전체의 9.3%로 나타났다. 남성 사업주에 비해서 여성 사업주가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다. 저연령층에 비해 고연령층에서 3년 이내 폐업계획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3년 이내 폐업 계획 비율은 5.8%로 낮지만, 연령층이 높아지면 폐업 계획 비율도 점차 높게 나타나다가, 60세 이상 사업주의 경우 3년 이내 폐업 계획 비율은 13.7%까지 높아졌다.

직종에 따른 차이에서 3년 이내 폐업 계획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직종은 관리자로 14.4%, 그리고 판매종사자의 경우는 10.1%로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 차이도 일부 특색을 찾을 수 있는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3년 이내 폐업 계획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도소매업의 경우 3년 이내 폐업 계획 비율이 10.2%, 숙박음식업의 경우 11.7%로 가장 높고,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의 경우 10.7%로 나타났다.

이들 산업의 수익구조가 취약하거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예상된다.

〈표 2-55〉 3년 이내 폐업계획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계 (명)
전체		9.3	90.7	100.0 (11,439)
성 ($\chi^2=23.28^{***}$)	남성	8.1	91.9	100.0 (6,283)
	여성	10.7	89.3	100.0 (5,156)
연령 ($\chi^2=91.03^{***}$)	40세 미만	5.8	94.2	100.0 (1,476)
	40~50세 미만	7.3	92.7	100.0 (3,275)
	50~60세 미만	9.5	90.5	100.0 (4,285)
	60세 이상	13.7	86.3	100.0 (2,397)
직종 ($\chi^2=13.10$)	관리자	14.4	85.6	100.0 (5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1	91.9	100.0 (367)
	사무종사자	6.3	93.7	100.0 (184)
	서비스종사자	9.1	90.9	100.0 (5,845)
	판매종사자	10.1	89.9	100.0 (3,510)
	농림어업숙련종사자	5.7	94.3	100.0 (20)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9.1	90.9	100.0 (1,07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5.0	95.0	100.0 (239)
	단순노무종사자	9.2	90.8	100.0 (143)
산업 ($\chi^2=72.84^{***}$)	농림, 광공업	9.4	90.6	100.0 (1,034)
	전기·허수·건설업	6.3	93.7	100.0 (296)
	도소매업	10.2	89.8	100.0 (3,269)
	운수업	4.5	95.5	100.0 (1,352)
	숙박음식업	11.7	88.3	100.0 (2,454)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10.7	89.3	100.0 (519)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6.1	93.9	100.0 (904)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9.6	90.4	100.0 (1,610)
종사자수 ($\chi^2=7.86^*$)	1명	9.4	90.6	100.0 (5,985)
	2명	9.8	90.2	100.0 (4,039)
	3~4명	7.3	92.7	100.0 (1,416)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종사자 규모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는 나타났지만 큰 차이로 보기는 힘들다. 종사자 1명의 경우 3년 이내 폐업 계획 비율은 9.4%로 나타났고, 종사자 2명의 경우는 9.8%, 종사자 3명 이상인 경우는 7.3%로 나타났다. 여기서 종사자 규모가 작은 경우 폐업 계획 비율이 더 높게 나

타나고 있는데, 이는 소규모 자영업 사업체의 경우 수익 구조가 더욱 취약하여 폐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제6절 요약 및 정책 제언

자영업 사업주 개인의 특징으로 우선 여성화와 고령화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본 조사 결과 전체 사업주의 45.1%가 여성으로써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고령화 현상은 전체 사업주의 66.4%를 40대와 50대가 차지하고, 50대와 6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은 55.4%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학력수준은 임금근로자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직종별로 서비스종사자가 51.1%로 절반을 넘고 있으며, 산업에서는 도소매업의 비중이 28.6%로 가장 높고 숙박음식업이 21.5%로 다음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을 합하면 50.4%를 이루고 있어 역시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이다. 지역적으로 시 지역의 비중이 거의 절반에 이르는 47.3%를 나타내며, 구 지역이 또한 거의 절반에 이르는 46.3%를 나타낸다. 시도별 분포를 보면 서울에 21.5%가 분포하여 가장 높고 경기도에 20.2%가 분포하고 있어, 서울과 경기도에 전체의 41.7%가 분포하고 있다. 사업주의 가구 특성으로 특징적인 것은 1인 가구 비율이 전국 규모에 비해 매우 작고 4인 이상 가구 비율이 크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가구소득, 지출 및 재산의 분석결과 몇 가지 특징적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소득계층별 규모 추정과 빈곤가구의 규모를 비교한 결과,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전국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빈곤율이 낮은 것은 자영업자의 특성상 사업체 경영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이로 인하여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높

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빈곤율이 낮은 반면에 전반적인 소득수준은 근로자 가구의 소득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5분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 가구가 근로자 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 가구소득의 분포를 보면 평균값 이하에 대부분의 가구가 밀집되어 있고, 가구소득의 편차가 매우 크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영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의 소득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가구소득은 가구 내 소득자의 수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이 자영업자의 성별에 따라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개인소득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반면에 가구소득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소득수준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여성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남성 가구원은 상당한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는 반면에 남성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여성 가구원의 소득이 적기 때문이다.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계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다만 지출항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식료품비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며, 교육비와 기타 지출은 전체 소득계층에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에 의료비는 전체 소득계층이 지출액수가 유사하고, 따라서 보건의료비 지출의 비중은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교육비 지출은 총생활비 대비 평균 12.2%이며, 모든 소득계층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총생활비에서 교육비 지출이 20%를 초과하는 가구가 전체의 30.5%로 자영업자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자녀교육에 상당한 액수를 지출하고 있다. 의료비 지출은 교육비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료비 지출은 총생활비 대비 평균 2.8%이며,

소득계층별로 편차가 크다. 총생활비에서 의료비 지출이 20% 초과하는 가구가 전체의 1.5%이며, 빈곤층이 계층 1의 경우에는 4.7%로 전체평균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가구규모별 가계지출의 양상을 보면 2인 가구와 3인 가구, 3인 가구와 4인 가구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다. 3인과 4인 가구의 가계지출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교육비 지출 때문이며, 이는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생활비 지출의 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 가구의 재산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평균 85.1%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소득계층에 따른 재산항목별 비중은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금융재산의 비중이 높아지고, 부동산의 비중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가구규모에 따른 재산규모를 1인 가구와 2인 가구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인 가구의 대부분이 가족형성 이전의 경제활동 초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재산 축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구규모에 따른 총재산의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는 생활비 지출의 증가로 인하여 추가적인 재산형성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부채를 보유한 자영업자 가구는 전체의 40.2%이며, 총재산 대비 평균부채는 평균 27% 수준이다. 특히 빈곤층에 해당하는 계층 1의 경우에는 총재산 대비 부채규모가 80%수준으로 저소득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주거실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자가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전체 조사대상 사업주의 72.0%가 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전세 거주자의 경우 전세액 평균은 8,560만 원이었고, 보증부 월세 거주자의 경우 보증금 평균액은 2,220만 원, 월세액 평균은 40만 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사업장 소유형태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25.9% 수준이었다. 전세로 이용한 경우 평균 전세액은 4,940만 원이었고 월세액 평균은 72.8만 원 수준이었다.

근로조건으로 월평균 근무일은 25.5일이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1.2일 더 일하고 있었다. 전기하수건설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근무일 수가 많았으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경우도 근무일수가 많은 편에 속했다.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65.5시간이었으며, 70시간 이상 근무하는 비율도 33.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로 주당 근무시간이 가장 많은 산업은 숙박음식업으로 주당 71.7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자영업 종사자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현행 사회보험의 중요성은 매우 클 것이다. 본 조사 결과 사업장 단위의 사회보험 가입실태를 분석한 결과 사회보험의 사업장 가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사업장 건강보험 가입률은 7.2%에 불과했다.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률은 5.9%, 고용원이 있는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4.7%,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률은 7.1% 수준이었다.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료 총액 1개월 평균은 76만 원 수준이었다. 고용보험의 경우 정부가 일부 지원할 경우 가입의사가 있는 비율은 30.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기하락(65.5%)을 지적하였고, 다음은 경쟁업체 난립(19.3%)을 지적하였다.

직업이동과 관련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영업 사업주의 임금근로 경험 비율은 6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남성 사업주의 경우는 7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장차 기계조작·조립종사자의 경우 임금근로로 경험 비율은 80.7%에 달해 숙련기술을 소유한 임금근로자의 자영업 전환 가능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운수업 사업주의 경우 임금근로 경

험 비율은 83.5%에 달해, 임금근로를 오래 지속한 고연령층은 다른 산업보다도 운수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영업 시작 평균 연령은 36.5세이며 자영업 평균 종사기간은 13.4년으로 긴 편이며, 업종 전환 평균횟수는 0.55번에 불과하여 자영업자의 업종 전환 사례는 매우 적었다. 산업적 특징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업무와 관련되는 자영업의 경우 진입 연령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주로 고연령층이 운수업, 숙박음식업,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도별 진입연령 비중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40대와 50대의 자영업 진입 비중이 그 전과 달리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

직업이동의 관점에서 자영업 진입의 주된 이유는 직장생활보다 높은 수입을 기대했기 때문(46.8%)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취직의 어려움도(18.2%) 자영업 진입의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취직이 어려워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특성으로 자녀 양육 및 가사의 편의를 위해 자영업을 시작했다는 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라는 우리나라 여성노동의 전형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폐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는 9.3%에 불과하였으며, 다만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3년 이내 폐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자영업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자영업 사업주는 절반 이상이 이미 임금근로를 경험했으며, 특히 남성 사업주는 대부분 임금근로를 경험한 이후 자영업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였다. 40대와 50대의 자영업 진입이 확대되고 있고, 임금근로를 지속한 평균 기간보다

현재까지 자영업을 지속한 평균 기간이 더 길며, 업종을 전환한 경우도 많지 않고, 향후 폐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도 극히 드물었다.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고연령층의 임금근로 전환비중이 낮다는 기존 연구 등을 고려하면,¹⁰⁾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의 임금근로 진입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자영업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사업주는 주로 경제상황의 악화 시점에 자영업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고, 임금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탈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아마 이들은 스스로 임금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자영업 노동시장에서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다시 비자발적으로 저임금 직종으로 재진입을 시도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자영업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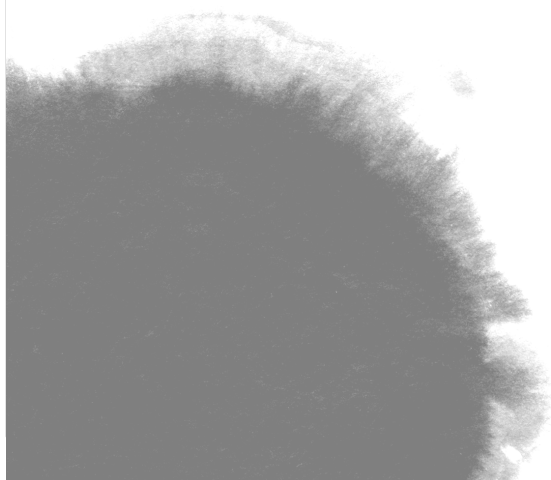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렇다면 지금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금근로 전환 정책보다는 자영업 사업체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대책과 사회안전망의 강화일 것이다. 기존 연구의 노동패널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임금근로 전환비중은 4~5%에 불과하고 4.0%는 다른 자영업으로, 6.4%는 비취업상태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 부문의 급격한 구조조정은 가계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클 것이며, 기존의 임금노동시장의 개선을 통해서만 임금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¹¹⁾ 따라서 현재의 자영업자에게는 사업체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과 사회안전망의 강화가 절실할 것으로 생각된다.

10) 김복순(2011) 연구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50대 이상 중고령층의 자영업자수가 증가하고 있음(김복순, 2011, 자영업 노동시장의 최근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10월호: 7~18). 또한 고연령층의 임금근로 전환 비중이 저연령층에 비해 더 작게 나타남(이병희, 2012 앞의 논문 참조).

11) 이병희(2012) 앞의 논문 참조

3장

자영업자의 출산양육 실태



제3장 자영업자의 출산양육 실태

제1 절 가임기 자영업자의 종사형태

가임기 자영업자¹²⁾가 종사하는 산업은 일의 강도와 시간 등으로 인하여 자녀양육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조사에서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가임기 자영업자의 산업으로 도매 및 소매업이 30.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18.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0.7%, 제조업 8.7%, 교육서비스업 7.5%, 운수업 7.1%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 6개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가임기 자영업자는 전체 가임기 자영업자의 83.2%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들이 자영업자로서 혹은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직접 일을 할 가능성이 높은 도매업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49.2%로 거의 반절을 차지하고 다. 이들 산업은 일반적으로 아침 일찍부터 혹은 오후 늦게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영업자(남편과 부인 모두의 관점에서)들이 자녀 육아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 주로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업(7.5%)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8%) 등도 1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임기 자영업자의 산업 분포를 전체 자영업자와 비교해 보면, 대체적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부분적인 차이로는 도매 및 소매업,

12) 이하에서는 여성자영업자 본인 혹은 남성자영업자의 배우자가 15~49세인 경우를 의미함.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가임기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고, 반대로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는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덜 분포되어 있다.

〈표 3-1〉 전체 자영업자와 가임기 자영업자의 산업 분포

(단위: %, 명)

구분		전체 자영업자 (A)	가임기 자영업자 (B)	차이 (A-B)
전체		100.0 (11,439)	100.0 (4,504)	-
산업분류	농·임·어업	0.0	0.0	0.0
	광업	0.0	0.0	0.0
	제조업	9.0	8.7	0.3
	전기, 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0.0	0.0	0.0
	하수, 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0.1	0.1	0.0
	건설업	2.5	3.1	-0.6
	도매 및 소매업	28.6	30.4	-1.8
	운수업	11.8	7.1	4.7
	숙박 및 음식점업	21.5	18.8	2.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5	0.7	-0.2
	금융 및 보험업	0.3	0.2	0.1
	부동산 및 임대업	3.5	3.5	0.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	2.3	-0.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8	0.7	0.1
	교육서비스업	4.6	7.5	-2.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	2.8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5	3.4	0.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0.1	10.7	-0.6
연구진 산업분류	농림, 광공업	9.0	8.7	0.3
	전기하수·건설업	2.6	3.2	-0.6
	도소매업	28.6	30.4	-1.8
	운수업	11.8	7.1	4.7
	숙박음식업	21.5	18.8	2.7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4.5	4.4	0.1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7.9	12.6	-4.7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14.1	14.7	-0.6

주: 무응답/거절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일반적으로 여성 초혼연령이 20대 후반~30대 초반(2011년 여성 평균 초혼연령은 약 29세)이고 출산은 30대에 완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전후일 것이다. 가임기 자영업자는 여성 기준으로 15~49세이므로 분석 대상의 자녀양육기간은 최장 20년일 것이다. 이는 자영업 기간이 길수록 자녀 출산 및 양육 시기와 겹치는 기간이 길어짐을 의미하며, 그만큼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여성들이 자영업자로서 혹은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직접 일을 할 가능성이 높은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등 일부 산업에서 더욱 클 것이다.

가임기 자영업자의 자영업 기간은 전체적으로 0~5년 미만 31.5%, 5~10년 미만 24.6%, 10~20년 미만 34.0%, 20년 이상 9.8%로 나타난다. 자영업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간인 비율이 43.8%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산업별로 자영업 기간이 10년 이상인 비율은 농림광공업 58.9%, 운수업 58.5%, 전기하수건설업 57.9%, 도소매업 47.6%,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 43.4%,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 34.5%,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34.1%, 숙박음식업 32.0%의 순으로 높다. 이에 따라 평균 종사기간은 전체적으로 9.4년이며, 산업별로는 전기하수건설업 12.5년, 운수업 11.9년, 농림광공업 11.7년, 도소매업 9.7년 등의 순으로 길며, 숙박음식업은 7.7년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짧게 나타난다. 그러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그리고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의 경우 장기간 종사 비율이 30% 이상으로 여성 자영업자들의 출산·양육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표 3-2〉 가임기 자영업자의 자영업 기간

(단위: %, 년)

구분	0~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계(명)	평균 기간
전체($\chi^2=215.89^{***}$)	31.5	24.6	34.0	9.8	100.0(4,380)	9.4
농림, 광공업	19.1	22.0	43.7	15.2	100.0(388)	11.7
전기·하수·건설업	17.9	24.3	38.4	19.5	100.0(141)	12.5
도소매업	28.9	23.5	38.1	9.5	100.0(1,312)	9.7
운수업	16.7	24.8	41.6	16.9	100.0(312)	11.9
숙박음식업	43.9	24.1	25.3	6.7	100.0(823)	7.7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34.4	31.1	27.3	7.2	100.0(196)	8.3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37.9	28.0	28.0	6.1	100.0(559)	8.0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32.4	24.2	33.6	9.8	100.0(648)	9.5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임금근로와 자영업은 소득수준이나 일하는 시간 등 패턴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 자영업의 산업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09:00~18:00 근무시간을 가진 임금근로자에 비해 출산 및 양육에 있어서 장점을 가질 수 있고 반대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특히 여성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남편의 경우에도 육아·가사 참여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성장기에 있는 자녀도 부 혹은 모의 종사상지위나 근무형태(출퇴근 시간 등)의 변화는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체 가임기 자영업자 중 67.8%는 임금근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별로는 근무시간 등 형태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추정되는 운수업(80.0%)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여성 자영업자들이 더욱 집중되어 있는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75.0%)과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73.0%)도 임금근로 후 전업을 하여 종사하는 산업들 가운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3-3〉 가임기 자영업자의 임금근로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계(명)
전체($\chi^2=76.97^{***}$)	32.2	67.8	100.0(4,504)
농림, 광공업	30.3	69.7	100.0(393)
전기하수·건설업	28.9	71.1	100.0(146)
도소매업	34.9	65.1	100.0(1,369)
운수업	20.0	80.0	100.0(318)
숙박음식업	41.1	58.9	100.0(848)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27.0	73.0	100.0(200)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31.7	68.3	100.0(568)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25.0	75.0	100.0(661)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가임기 자영업자 중 임금근로 경험이 없는 경우 자영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난다. 임금근로 유경험 가임기 자영업자 중 20년 이상 종사 비율은 6.1%로 무경험 가임기 자영업자의 경우 17.6%에 비해 3 배 정도 낮다. 무경험 가임기 자영업자 중 10년 이상 자영업 종사 비율은 51.8%로 유경험 가임기 자영업자의 40.0%보다 높게 나타난다.

〈표 3-4〉 가임기 자영업자의 임금근로 경험여부와 자영업기간

(단위: %)

구분	0~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년 이상	계(명)	평균 기간
전체($\chi^2=165.10^{***}$)	31.5	24.6	34.0	9.8	100.0(4,380)	9.4
경험없음	24.3	23.8	34.2	17.6	100.0(1,427)	11.2
경험있음	35.0	25.0	33.9	6.1	100.0(2,953)	8.6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제2절 가임기 자영업자의 출산행태

1. 현 출산수준

가임기 자영업자(15~49세)의 출생아수는 2명이 63.1%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1명이 20.4%, 3명 이상이 9.9%, 무자녀 6.6%로 나타난다. 전체 기혼여성과 비교하기 위하여 2009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결과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비교를 위해 연령구간을 20~44세로 한정할 경우 전체적인 패턴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무자녀 비율이나 두 자녀 비율은 가임기 자영업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고, 한 자녀 비율과 세 자녀 이상 비율은 전체 가임기 기혼여성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출생아수별 분포에서 차이가 아주 근소한 결과 평균 출생아수는 1.66명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출산율이 큰 변동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조사 간에 약 3년 간의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자영업자의 출산력은 전체 가임기 여성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출산수준을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 중 취업여성의 출산수준과 비교해보면, 무자녀 비율을 제외한 한 자녀 비율, 두 자녀 비율 그리고 세 자녀 이상 비율 모두 자영업자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 결과 평균 출생아수는 전체 취업여성(1.60명)에 비해 자영업자 여성(1.66명)이 다소 많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자인 여성들이 특히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경우 종사시간과 자녀양육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일반 취업여성보다 다소 많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일하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더 큰 자영업자 여성들의 평균 출생아수가 전체 취업여성들에 비해 0.06명

정도만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영업자 여성들이 자녀양육비용 부담 등 다른 요소들에 의해 출산 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5〉 가임기 자영업자의 출생아수 분포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이상	계(명)	평균 출생자녀수
본 자영업자 조사(15~49세)	6.6	20.4	63.1	9.9	100.0(4,500)	1.77
본 자영업자 조사(20~44세)	9.6	24.3	57.2	8.9	100.0(2,583)	1.66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기혼여성 20~44세) ¹⁾	9.0	26.6	54.3	10.1	100.0(3,585)	1.66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취업기혼여성 20~44세) ¹⁾	12.6	24.1	54.9	8.5	100.0(1,501)	1.60

자료: 1)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이삼식 외, 2009), p. 379

산업별로 가임기 자영업자의 출생아수 분포는 2자녀, 1자녀, 3자녀 이상, 무자녀 순으로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문기술, 교육 및 보건복지서비스업의 경우 무자녀 비율이 3자녀 이상 비율보다 높다. 출생아수별 비율은 산업 간 편차가 존재한다. 3자녀 이상 비율을 보면, 농림광공업 12.5%, 도소매업 11.2%,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 11.2%, 숙박음식업 10.0%로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2자녀 이상을 가진 비율은 운수업 80.7%, 전기하수건설업 80.0%, 농림광공업 76.4%, 음식점숙박업 75.4%, 도소매업 74.6%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자영업 기간별로는 대체적으로 장기간 종사할수록 다자녀를 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2자녀와 3자녀 비율은 자영업 기간이 길수록 높으며, 1자녀와 무자녀 비율은 자영업 기간이 짧을수록 높다. 자영업 기간이 길수록 자영업자의 연령이 고연령층으로 그만큼 상대적으로 자녀를 많이 두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한편으로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직할 자영업자는 자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자영업자의 수가 비전직 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자영업 기간과 출산수준 간

의 정적인 관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임금 근로 경험부별 출생아수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6〉 가임기 자영업자의 출생아수 분포

		(단위: %)				
구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계(명)
전체		6.6	20.4	63.1	9.9	100.0(4,503)
산업 ($\chi^2=78.63^{***}$)	농림, 광공업	5.0	18.6	63.9	12.5	100.0(393)
	전기하수·건설업	3.1	16.9	70.2	9.8	100.0(146)
	도소매업	7.1	18.4	63.4	11.2	100.0(1,369)
	운수업	2.1	17.2	72.9	7.8	100.0(318)
	숙박음식업	6.8	17.8	65.4	10.0	100.0(848)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3.5	23.2	62.1	11.2	100.0(200)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9.8	26.1	56.3	7.8	100.0(568)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7.5	25.5	58.9	8.0	100.0(661)
임금근로경험 ($\chi^2=2.83$)	경험없음	6.4	21.5	63.1	9.0	100.0(1,451)
	경험있음	6.7	19.9	63.1	10.3	100.0(3,052)
자영업 기간 ($\chi^2=118.74^{***}$)	0~5년 미만	10.8	25.2	56.2	7.8	100.0(1,381)
	5~10년 미만	6.8	20.7	63.2	9.3	100.0(1,078)
	10~20년 미만	3.8	18.1	67.6	10.5	100.0(1,489)
	20년 이상	3.2	14.6	68.6	13.7	100.0(431)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로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가임기 자영업자의 출산수준은 여성의 연령 분포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산업 등 종사형태별 출산수준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곤란하다. 집단별 연령구조 차이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집단에 대해 모의 연령분포가 동일한 것으로 설정한 후 출산수준을 측정하는 이른바 ‘연령 표준화’가 필요하다.

우선, 가임기 자영업자의 평균 출생아수를 여성 연령별로 살펴보면 예외 없이 가임기간(임신 노출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고연령층일수록 많게 나타난다. 가임기 자영업자 여성(15~49세)의 평균 출생아수는 1.77명으로 사례수가 극히 적은 15~19세 연령층을 제외하면 고연령층일수록 많게 나타난다. 특히, 가임기간이 거의 완료된 45~49세 연령층의 평

균 출생아수는 1.91명에 이르고 있다. 산업별로 출생아수를 비교해보면, 연령 비표준화 평균 출생아수는 운수업(1.87명), 전기하수건설업(1.87명), 농림광공업(1.84명),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1.81명), 숙박음식업(1.79명), 도소매업(1.79명),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1.67명),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1.62명)의 순으로 나타난다. 즉, 산업 간의 평균 출생아수 편차는 0.25명(1.62명~최대 1.87명)으로 나타난다. 연령을 표준화한 후에도 산업별 평균 출생아수의 차이는 유사하게 나타나며, 다만 산업 간 편차는 0.2명(최소 1.69명~최대 1.89명)으로 다소 줄어든다.

〈표 3-7〉 가임기 자영업자의 연령별(여성기준) 평균출생아수

(단위: %, 명)

구분	여성 연령							평균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비표준화	표준화
전체 (명)	2.30 (3)	0.94 (19)	0.75 (82)	1.20 (372)	1.65 (734)	1.84 (1,376)	1.91 (1,915)	1.77 (4,500)	1.77 (4,500)
산업									
농림, 광공업	-	1.00	1.51	1.49	1.84	1.85	1.88	1.84	1.84
전기하수·건설업	-	-	0.29	1.07	1.88	1.95	1.93	1.87	1.86
도소매업	3.00	0.63	0.75	1.15	1.54	1.88	1.99	1.79	1.82
운수업	1.00	2.00	1.31	1.92	1.79	1.86	1.89	1.87	1.89
숙박음식업	-	1.00	0.74	1.16	1.70	1.88	1.91	1.79	1.83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	-	0.00	1.25	1.60	1.88	1.89	1.81	1.83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	1.00	0.54	1.15	1.62	1.76	1.80	1.62	1.69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	0.93	0.59	1.20	1.70	1.71	1.83	1.67	1.71
임금근로 경험 없음	-	1.00	0.68	1.11	1.65	1.82	1.88	1.75	1.76
경험 경험 있음	2.30	0.91	0.77	1.25	1.65	1.85	1.92	1.77	1.79
자영업 기간									
0~5년 미만	2.30	1.17	0.68	1.18	1.62	1.77	1.85	1.61	1.62
5~10년 미만	-	0.31	0.91	1.18	1.71	1.81	1.91	1.75	1.78
10~20년 미만	-	1.00	1.12	1.35	1.66	1.90	1.90	1.85	1.87
20년 이상	-	-	-	2.97	1.24	1.85	1.96	1.93	1.94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2. 추가출산 계획 및 중단이유

가. 추가출산 계획

가임기 자영업자(여성 기준 15~49세)의 자녀 추가 계획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8.7%만이 추가로 출산할 계획에 있다. 현 자녀수별 추가출산의향 비율은 무자녀인 경우 61.9%, 1자녀인 경우 18.6%, 두 자녀인 경우 1.1%, 세 자녀 이상인 경우 1.3%로 나타난다. 자녀가 없으면서도 추가출산의향 비율이 62%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들 가임기 자영업자의 소득 불안정 등 사회경제적 특성뿐만 아니라 불임 등 보건의료적인 환경이 열악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들 무자녀 가임기 자영업자들 중 약 10%가 추가 출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소득 불안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한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추가출산의향 비율이 20% 미만이고 두 자녀 이상을 둔 경우 추가출산의향비율이 거의 무시할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자영업자의 출산력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 자녀를 두고 있는 가임기 자영업자들 중 7.0%가 추가 출산을 망설이고 있다는 점도 소득 불안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표 3-8〉 가임기 자영업자의 자녀 추가 계획 여부

		(단위: %)				
	구분	0명	1명	2명	3명이상	전체
자녀추가 계획여부 ($\chi^2=1,573.84^{***}$)	있음	61.9	18.6	1.1	1.3	8.7
	없음	27.9	74.5	97.4	96.6	88.0
	아직 결정하지 않음	10.2	7.0	1.5	2.1	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98)	(919)	(2,841)	(445)	(4,504)

가임기 자영업자(여성 연령 15~49세)의 추가출산의향 비율(이하에서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례들을 제외한 비율임)을 종사 산업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전체 패턴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우선 무자녀 집단으로서 추가출산의향비율이 가장 낮은 산업은 운수업 33.3%, 전기·하수·건설업 46.2%, 농림·광공업 55.6%, 숙박·음식업 69.0% 등으로 평균 수준보다 낮으며, 나머지 산업들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다. 한 자녀를 둔 자영업자 중 추가출산의향 비율은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 12.5%, 운수업 18.4%, 농림·광공업 20.5%,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 20.6%, 도소매업 20.7% 등으로 평균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한편, 두 자녀 이상을 가진 자영업자들 중 추가로 출산을 계획인 비율은 산업들에 따라 0~3% 범위에 있으나 모든 산업에서 절대적인 수준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임금근로를 경험한 자영업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가출산의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경향성은 현존 자녀수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2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추가출산의향비율은 임금근로 경험이 없는 자영업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나 임금근로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들과 거의 차이가 없다.

추가출산의향 비율은 자영업 종사기간과 아주 큰 정적인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존 자녀수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다소 특이성을 가지는 몇몇 사항들을 살펴보자. 우선 자영업기간이 길면서 아직 자녀를 두고 있지 않은 집단들의 추가출산의향 비율이 아주 낮게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불임 등의 영향을 추측해볼 수 있다. 다른 또 하나는 자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경우 2~3명 자녀를 가지고 있는 집단 중 일부가 추가출산 의향이 나타나나, 자영업 종사기간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길어지면 추가출산의향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영업 종사기간별 추가출산의향 비율의 차이는 자영업 종사자의 연령 분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자영업 종사기간이 길수록 대체적으로 연령이 많기 때문이다. 여성의 연령이 많을수록 추가출산의향 비율은 급격히 낮아진다. 무자녀인 경우에는 불임 등으로 인하여 추가출산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며, 1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늦게 출산하는 데에 따른 경제적 및 심리적인 부담으로 추가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9〉 가임기 자영업자의 특성별 자녀 추가계획 비율

(단위: %)

구분		현 자녀수				전체 (명)	
		0명	1명	2명	3명이상		
전체		70.8	22.1	1.2	1.6	9.5	(4,355)
산업	농림, 광공업	55.6	20.5	1.7	0.0	7.7	(389)
	전기하수·건설업	46.2	26.3	0.9	3.0	7.3	(143)
	도소매업	72.7	20.7	0.7	0.0	8.5	(1,305)
	운수업	33.3	18.4	0.0	3.1	4.1	(312)
	숙박음식업	69.0	24.4	1.4	0.0	8.6	(822)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72.7	12.5	1.6	1.9	6.9	(198)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78.8	27.1	1.9	2.0	13.6	(542)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78.8	27.1	1.9	2.0	13.6	(644)
임금근로	경험 없음	62.2	20.5	1.5	1.4	9.0	(1,394)
	경험 있음	74.5	22.9	1.1	1.7	9.8	(2,962)
자영업 기간	5년 미만	80.4	33.3	2.6	5.2	18.3	(1,319)
	10년 미만	73.5	24.9	0.9	0.0	9.7	(1,046)
	20년 미만	54.7	10.5	0.6	0.6	4.2	(1,446)
	20년 이상	20.0	1.3	0.9	1.6	1.5	(427)
여성 연령	30세 미만	95.3	70.6	15.8	0.0	70.1	(101)
	30~34세	94.0	66.4	9.8	9.1	48.6	(338)
	35~39세	75.0	32.5	1.9	3.6	13.7	(672)
	40~49세	37.8	4.1	0.4	0.8	2.2	(3,242)

주: 1) “아직 결정하지 않음”을 제외한 응답자 중 자녀추가계획이 있는 비율

2)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나. 추가출산 중단 이유

가임기 자영업자 중 자녀 추가계획이 없는 경우 주된 이유로는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39.2%, ‘나이가 많아서’ 30.4%,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18.9%, ‘소득이 적거나 직업적 불안정성 때문에’ 6.9%, 기타 4.5% 순으로 높다. 전체 기혼여성과 비교하기 위하여 2009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이삼식 외, 2009)’ 결과를 검토해보면,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24.1%, ‘나이가 많아서’ 8.0%,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37.4%, ‘소득이 적거나 직업적 불안정성 때문에’ 12.8%, 기타 17.7% 등이다.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와 ‘나이가 많아서’ 이유들은 전체 가임기 기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반면,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와 ‘소득이 적거나 직업적 불안정성 때문에’ 이유들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가임기 자영업자(여성 기준)들은 기존에 임금 근로에서 전직하는 등 다른 직장(혹은 종사상지위)의 경로를 거친 후에 선택한 것으로 이들 종사상지위 집단들은 전체 가임기 기혼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비교 대상인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의 조사대상이 20~44세인 반면 본 자영업자 조사의 대상은 15~49세로 45~49세의 고연령층이 포함되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둘째, 전체 가임기 기혼여성에 비해 가임기 자영업자들이 자녀에 대해 투자(사교육비 등)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자녀양육 및 교육 비용에 대한 주관적인 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자영업자의 자녀들에 대해 교육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셋째,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유는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저출산 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소득이 적거나 직업적 불안정성’을 이유로 자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저출산 사회에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련 정책들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현 자녀수별로 이유는 다르게 나타난다. 무자녀인 경우 주된 이유는 기타가 45.6%로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나이가 많아서’,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소득이 적거나 직업적 불안정성 때문에’ 등 순으로 높다. 여기에서 ‘기타’ 이유는 불임 등 의료적 이유가 크겠지만, ‘나이가 많아서’,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소득이 적거나 직업적 불안정성 때문에’ 무자녀를 선택하겠다는 조사 결과는 자영업자들의 결혼과 출산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와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도 18.3%로 비교적 높다. 연령이나 계획출산 완료는 어느 정도 가치관에 기인한 것으로 절반 이상(54%)으로 높게 나타난다. 현존 자녀수가 많을수록 이러한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와 같은 비율이 아주 높고, 반면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현존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 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이 줄어들은 의미하지는 않는다. 고연령층으로 그리고 원하는 자녀수를 달성하였다는 이유가 더 절대적이기 때문에 자녀양육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기 때문이다.

〈표 3-10〉 가임기 자영업자의 자녀추가 계획이 없는 이유

(단위: %)

구분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나이가 많아서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소득이 적거나, 직업 불안정	기타	계(명)
전체	39.2	30.4	18.9	6.9	4.5	100.0(3,963)
현 자녀수						
0자녀	0.0	29.4	15.4	9.7	45.6	100.0(82)
($\chi^2=585.19^{***}$) 1자녀	18.3	35.7	25.6	9.7	10.7	100.0(684)
2자녀	43.7	29.9	17.9	6.3	2.3	100.0(2,767)
3자녀 이상	51.6	25.2	15.7	6.1	1.4	100.0(430)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한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추가 출산을 중단하려는 이유의 산업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이는 임금근로 경험 여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자영업 종사기간이나 여성의 연령별로 추가출산 중단 이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준다. 자영업 종사기간이 길거나 고연령층인 경우 나이가 많아서 이유가 아주 높게 나타나는 패턴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표 3-11〉 가임기 자영업자의 특성별 한 자녀 출산 후 중단 이유

(단위: %)

구분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나이가 많아서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소득이 적거나, 직업 불안정	기타	계(명)
전체	18.3	35.7	25.6	9.7	10.7	100.0(684)
산업						
농림, 광공업	18.4	39.1	23.2	9.1	10.2	100.0(60)
($\chi^2=20.77$) 전기·허수·건설업	9.8	32.1	34.5	15.1	8.5	100.0(19)
도소매업	17.5	38.3	21.8	10.8	11.6	100.0(178)
운수업	12.3	45.7	24.8	10.0	7.2	100.0(42)
숙박음식업	16.8	36.5	23.7	9.6	13.4	100.0(105)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23.6	31.5	32.4	6.3	6.2	100.0(40)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25.6	26.0	25.7	8.2	14.5	100.0(105)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16.1	36.4	30.0	10.0	7.5	100.0(134)
임금근로						
경험없음	22.7	35.5	22.9	7.5	11.4	100.0(234)
($\chi^2=6.70$) 경험있음	16.0	35.8	27.0	10.9	10.4	100.0(450)

〈표 3-11〉 가임기 자영업자의 특성별 한 자녀 출산 후 중단 이유 (계속)

(단위: %)

	구분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나이가 많아서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소득이 적거나, 직업 불안정	기타	계(명)
자영업기간 ($\chi^2=46.87^{***}$)	0~5년 미만	16.0	23.5	37.1	10.7	12.7	100.0(228)
	5~10년 미만	20.3	33.4	27.4	10.7	8.3	100.0(162)
	10~20년 미만	19.4	43.9	16.9	8.5	11.3	100.0(222)
	20년 이상	20.1	51.5	9.7	9.0	9.7	100.0(62)
여성 연령 ($\chi^2=90.72^{***}$)	30세 미만	12.7	0.0	61.7	8.3	17.2	100.0(12)
	30~34세	17.5	3.2	45.7	23.8	9.8	100.0(45)
	35~39세	22.7	13.4	31.4	13.1	19.5	100.0(122)
	40~49세	17.3	44.9	21.6	7.7	8.5	100.0(504)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로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추가적인 출산을 중단하는 이유는 산업, 임금근로 경험 여부, 자영업 종사기간, 여성연령 등의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이유는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 30.0%, 숙박음식업 38.7% 등으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그만큼 다른 요건들만 충족되면 추가로 출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들 두 산업 종사자는 ‘나이가 많아서’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즉, 이들 산업에 종사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고연령화되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유는 농림광공업 23.5%,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 23.2%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 20.7%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한편, 소득이 적거나, 직업적 불안정성은 산업 간에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근로경험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들에 비해 2자녀 출산 후 추가출산 중단 이유로서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및 ‘소득이 적거나, 직업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임금근로를 하다가 부득불 자영업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직업 전환에 따른 불안정성, 경제적 수입 감소 내지 불안정 등이 추가 출산에 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자영업 종사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여성의 연령이 많을수록 ‘나이가 많아서’ 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나,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유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이유는 40~50%대에서 유지되는 반면 기간 경과에 따라 ‘나이가 많아서’ 이유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녀 양육 및 교육 비용 이유가 30대에 비해 40대에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즉, 이러한 경향성이 실제 자녀 양육 및 교육 부담이 줄어들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표 3-12〉 가임기 자영업자의 특성별 두 자녀 출산 후 중단 이유

(단위: %)

구분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나이가 많아서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소득이 적거나, 직업적 불안정성	기타	계(명)
전체		43.7	29.9	17.9	6.3	2.3	100.0(2,767)
산업 ($\chi^2=73.52^{***}$)	농림, 광공업	43.1	26.4	23.5	4.4	2.5	100.0(245)
	전기하수·건설업	42.8	30.5	19.1	6.1	1.4	100.0(100)
	도소매업	44.3	29.9	16.7	6.6	2.4	100.0(839)
	운수업	42.8	31.9	16.3	7.4	1.5	100.0(231)
	숙박음식업	38.7	36.3	16.1	7.6	1.4	100.0(544)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30.0	36.6	23.2	7.0	3.2	100.0(122)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55.8	19.5	14.7	5.0	4.9	100.0(307)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45.1	27.7	20.7	5.2	1.3	100.0(379)
임금근로 ($\chi^2=18.20^{***}$)	경험없음	42.0	34.8	14.9	6.1	2.2	100.0(889)
	경험있음	44.5	27.6	19.3	6.4	2.3	100.0(1,878)
자영업기간 ($\chi^2=90.32^{***}$)	0~5년 미만	45.2	27.4	18.2	6.3	2.9	100.0(742)
	5~10년 미만	49.2	23.7	19.5	6.1	1.4	100.0(660)
	10~20년 미만	41.8	28.3	19.4	7.7	2.8	100.0(990)
	20년 이상	37.7	49.8	9.1	2.6	0.8	100.0(295)
여성 연령 ($\chi^2=175.45^{***}$)	30세 미만	70.2	11.3	11.0	3.9	3.5	100.0(18)
	30~34세	49.0	1.9	34.5	7.7	6.9	100.0(106)
	35~39세	52.2	9.0	25.2	10.9	2.8	100.0(380)
	40~49세	41.8	34.8	15.9	5.5	2.0	100.0(2,261)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3. 기대자녀수

기대자녀수(expected number of children)는 기존에 출산한 자녀수와 향후 출산할 계획에 있는 자녀수를 합한 전체 자녀수로 완결출산력(complete fertility rate)의 의미를 갖는다. 본 자영업 조사 결과 15~49세 여성의 평균 기대자녀수는 1.92명이며, 연령을 20~44세로 한정할 경우에는 1.90명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결과로서 2009년 1.94명에 비해 다소 적은 규모이다. 그간 출산 수준이 다소 증가하였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자영업자의 기대자녀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3-13〉 가임기 자영업자의 기대자녀수

구분	기대자녀수				계(명)	평균
	0명	1명	2명	3명이상		
본 자영업 조사(15세~49세)	1.9	17.2	69.4	11.5	100.0(4,352)	1.92
본 자영업 조사(20세~44세)	1.8	18.7	67.9	11.5	100.0(2,446)	1.90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20~44세) ¹⁾	1.6	19.3	64.2	14.9	100.0(3,055)	1.94

자료: 1)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이삼식 외, 2009) p.412.

자영업 종사 산업에 따라 기대자녀수는 차이가 존재한다. 전기하수건설업 1.99명, 숙박음식업 1.95명, 농림광공업 1.95명, 도소매업 1.93명, 운수업 1.91명 등으로 많이 나타난다.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1.86명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 1.85명 등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한편, 자영업자의 특성 중 임금근로 경험여부, 자영업 종사기간, 여성 현 연령에 따른 기대자녀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3-14〉 가임기 자영업자의 특성별 기대자녀수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이상	계(명)	평균
전체		1.9	17.2	69.4	11.5	100.0 (4,352)	1.92
산업 ($\chi^2=44.84^*$)	농림, 광공업	1.8	16.8	67.1	14.3	100.0 (389)	1.95
	전기·하수·건설업	1.0	14.2	74.1	10.8	100.0 (143)	1.99
	도소매업	2.2	15.7	69.4	12.6	100.0 (1,305)	1.93
	운수업	1.8	13.8	76.2	8.2	100.0 (309)	1.91
	숙박음식업	1.8	14.0	72.5	11.8	100.0 (822)	1.95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1.3	20.8	65.3	12.6	100.0 (198)	1.90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1.9	21.5	66.5	10.0	100.0 (542)	1.86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2.0	22.3	66.1	9.6	100.0 (644)	1.85
임금근로 ($\chi^2=2.76$)	경험없음	2.3	18.0	68.8	10.9	100.0 (1,393)	1.90
	경험있음	1.7	16.9	69.7	11.7	100.0 (2,959)	1.92
자영업기간 ($\chi^2=12.48$)	0~5년 미만	2.3	19.6	67.3	10.8	100.0 (1,319)	1.88
	5~10년 미만	1.8	17.2	69.6	11.4	100.0 (1,045)	1.91
	10~20년 미만	1.6	16.4	71.0	11.0	100.0 (1,444)	1.93
	20년 이상	1.9	15.1	68.9	14.1	100.0 (427)	1.97
여성 연령 ($\chi^2=13.76$)	30세 미만	1.3	18.9	66.9	12.8	100.0 (101)	1.92
	30~34세	2.1	21.1	62.1	14.7	100.0 (338)	1.91
	35~39세	2.2	19.2	67.6	11.1	100.0 (672)	1.89
	40~49세	1.9	16.4	70.6	11.2	100.0 (3,242)	1.92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로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4. 이상자녀수

본인 실제 낳은 자녀수나 향후 출산할 계획인 자녀수와 무관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는 자영업자 조사 결과 15~49세 여성의 경우 2.05명 그리고 20~44세 여성의 경우 2.02명으로 각각 나타난다.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결과 20~44세 여성의 평균 이상자녀수(ideal number of children)는 1.98명으로 나타난다. 다소 조사 시기는 다르나,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의 수를 조사한 것을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이상자녀수가 전체 여성의 이상자녀수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자영업자의 기대자녀수가 전체

여성에 비해 다소 많이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여러 장애요인들로 인하여 자영업자가 전체 여성에 비해 이상보다 적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15〉 가임기 자영업자의 이상자녀수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이상	계(명)	평균
본 자영업 조사(15~49세)	1.6	10.7	71.7	15.9	100.0(4,447)	2.05
본 자영업 조사(20~44세)	1.8	12.4	70.5	15.3	100.0(2,549)	2.02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기혼 20~44세) ¹⁾	1.1	16.5	68.4	13.9	100.0(3,523)	1.98

자료: 1)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이삼식 외, 2009), p. 370.

평균 이상자녀수는 전기하수건설업 2.14명, 숙박음식업과 농림광공업 각 2.08명으로 전체 평균 수준보다 높고,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 2.00명,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2.02명, 운수업 2.03명 등으로 전체 평균 수준 더 낮게 나타난다. 임금 근로 경험이 있는 자영업자들의 평균 이상 자녀수는 2.07명으로 임금 근로 경험이 없는 자영업자의 2.00명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영업 종사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여성의 연령이 많을수록 이상 자녀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는 고연령층일수록 더 많은 자녀를 선호하는 이른바 ‘세대효과(cohort effect)’로 간주할 수 있다.

〈표 3-16〉 가임기 자영업자의 특성별 이상자녀수

(단위: %, 명)

구분		0명	1명	2명	3명이상	계(명)	평균
전체		1.6	10.7	71.7	15.9	100.0 (4,450)	2.05
산업 ($\chi^2=39.05^{**}$)	농림, 광공업	0.6	9.2	73.9	16.4	100.0 (389)	2.08
	전기하수·건설업	0.5	6.4	75.9	17.1	100.0 (144)	2.14
	도소매업	2.1	11.4	69.6	17.0	100.0 (1,344)	2.04
	운수업	1.2	7.8	79.7	11.3	100.0 (318)	2.03
	숙박음식업	0.8	9.4	73.4	16.4	100.0 (840)	2.08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2.2	12.3	66.1	19.4	100.0 (199)	2.05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1.8	12.8	69.3	16.2	100.0 (564)	2.02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2.2	12.3	71.8	13.7	100.0 (652)	2.00
임금근로 ($\chi^2=15.32^{**}$)	경험없음	1.8	11.3	73.9	12.9	100.0 (1,435)	2.00
	경험있음	1.5	10.5	70.7	17.4	100.0 (3,015)	2.07
자영업 기간 ($\chi^2=26.06^{**}$)	0~5년 미만	2.0	12.1	71.7	14.2	100.0 (1,366)	2.00
	5~10년 미만	1.9	12.6	70.1	15.4	100.0 (1,072)	2.03
	10~20년 미만	1.5	9.3	71.9	17.3	100.0 (1,467)	2.08
	20년 이상	0.2	7.5	75.5	16.8	100.0 (429)	2.13
여성 연령 ($\chi^2=50.35^{***}$)	30세 미만	2.4	16.3	68.1	13.3	100.0 (103)	1.92
	30~34세	2.7	18.6	67.6	11.0	100.0 (370)	1.88
	35~39세	1.5	13.4	69.5	15.5	100.0 (724)	2.01
	40~49세	1.4	9.1	72.8	16.7	100.0 (3,250)	2.08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제3절 자영업자의 자녀 양육 실태

1. 자녀양육 애로사항

가임기 자영업자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으로 수입이 적어 교육비와 양육비가 부담된다는 비율이 36.9%와 34.6%로 높고, 다음으로 ‘바빠서 자녀학습지도가 어려워’ 10.5%, ‘늦게 끝나 자녀를 마주하기 힘들어’ 7.2%, ‘자녀가 아프거나 급한 일 생겼을 때’ 5.1% 순으로 높다. 이와 같은 애로사항들은 다소의 정도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

로 자영업 산업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숙박음식업과 기술교육 보건서비스업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교육비 부담보다 양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양육비와 교육비는 자녀가 어떤 단계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자영업 산업과 무관하게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이 교육적 혹은 정서적 부담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표 3-17〉 가임기 자영업자의 자녀양육 시 애로사항

(단위: %)

구분	수입이 적어 양육비 부담	수입이 적어 교육비 부담	바빠서 자녀학습지도 어려움	늦게 끝나 자녀를 마주하기 힘들	자녀가 아프거나 급한 일 생겼을 때	기타	계(명)
산업($\chi^2=81.76^{***}$)	34.6	36.9	10.5	7.2	5.1	5.6	100.0(3,857)
농림, 광공업	33.2	41.5	11.9	5.8	4.8	2.7	100.0(327)
전기·수·건설업	35.2	45.5	8.5	3.6	4.7	2.5	100.0(113)
도소매업	32.1	36.9	11.0	7.1	6.5	6.3	100.0(1,222)
운수업	34.8	42.9	11.2	5.5	2.2	3.4	100.0(278)
숙박음식업	40.0	31.2	9.1	7.6	3.9	8.1	100.0(695)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38.9	43.8	5.7	5.0	4.1	2.5	100.0(177)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35.8	34.4	11.1	6.7	6.3	5.7	100.0(492)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31.8	36.7	11.6	10.1	4.7	5.0	100.0(554)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자영업자가 미취학자녀 양육 시 겪는 애로사항들은 자녀의 연령이 어린만큼 ‘수입이 적어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수입이 적어 교육비 부담’, ‘늦게 끝나 자녀를 마주하기 힘들’, ‘자녀가 아프거나 급한 일 생겼을 때’, ‘바빠서 자녀학습지도 어려움’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산업별로 자영업자가 겪는 애로사항은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농림광공업의 경우 ‘수입이 적어 교육비 부담’의 비율이 양육비 부담보다 더 높으며, ‘자녀가 아프거나 급한 일 생겼을 때’ 비율은 20.9%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 산업은 보

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등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어 그만큼 자영업자가 자녀의 질병 시 겪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도소매업의 경우 ‘수입이 적어 교육비 부담’ 비율이 8.8%로 아주 낮은 반면, ‘바빠서 자녀학습지도 어려움’ 비율은 27.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소매업자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로서 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을 감안하면 자녀의 학습을 지도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의미한다.

〈표 3-18〉 가임기 자영업자의 미취학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단위: %)

구분	수입이 적어 양육비 부담	수입이 적어 교육비 부담	바빠서 자녀학습지도 어려움	늦게 끝나 자녀를 마주하기 힘들	자녀가 아프거나 급한 일 생겼을 때	기타	계(명)
전 산업($\chi^2=65.74^{**}$)	39.6	23.5	8.6	10.9	8.7	8.7	100.0(834)
농림, 광공업	21.5	47.6	6.4	2.2	20.9	1.5	100.0(65)
전기·통신·건설업	34.3	24.1	9.0	12.2	11.8	8.7	100.0(19)
도소매업	39.9	8.8	27.8	8.0	8.8	6.7	100.0(247)
운수업	43.6	19.6	6.0	13.8	4.2	12.9	100.0(37)
숙박음식업	37.9	36.5	1.9	15.2	2.9	5.7	100.0(154)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39.6	28.0	8.1	8.1	8.6	7.6	100.0(24)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44.8	21.3	7.5	10.3	5.3	10.9	100.0(149)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40.3	21.9	9.5	10.5	8.1	9.8	100.0(139)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자영업자가 초등학생 자녀 양육 시 겪는 애로사항들은 ‘수입이 적어 교육비 부담’, ‘수입이 적어 양육비 부담’, ‘바빠서 자녀학습지도 어려움’, ‘늦게 끝나 자녀를 마주하기 힘들’, ‘자녀가 아프거나 급한 일 생겼을 때’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미취학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들이 교육보다 양육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고 있는 반면, 초등학생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은 미취학자녀의 경우와 달리 양육보다는 교육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운수업, 숙박음식업 및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초등학생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으로 ‘수입이 적어 양육비 부담’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어, 다른 산업들의 경우 ‘수입이 적어 교육비 부담’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과 다르게 나타난다.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의 경우 두 애로사항에 대한 응답비율에 거의 차이가 없으나 나머지 두 산업들의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운수업과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녀교육비에 앞서 기본적인 자녀양육비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표 3-19〉 가임기 자영업자의 초등학생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단위: %)

구분	수입이 적어 양육비 부담	수입이 적어 교육비 부담	바빠서 자녀학습 지도 어려움	늦게 끝나 자녀를 마주하기 힘들	자녀가 아프거나 급한 일 생겼을 때	기타	계(명)
전 산업($\chi^2=58.38^{***}$)	33.7	38.4	9.6	6.9	5.8	5.7	100.0(1,357)
농림, 광공업	29.7	48.4	11.4	4.9	4.6	1.1	100.0(103)
전기·하수·건설업	30.1	41.5	7.6	8.2	7.8	4.8	100.0(44)
도소매업	33.0	41.5	13.1	8.3	0.0	4.2	100.0(415)
운수업	36.6	28.4	9.4	8.1	5.7	11.7	100.0(80)
숙박음식업	42.6	37.6	5.0	5.1	8.2	1.6	100.0(234)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37.0	36.4	11.6	5.0	4.8	5.1	100.0(62)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31.7	38.7	10.3	7.1	6.9	5.3	100.0(212)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35.2	36.2	10.7	7.5	4.1	6.3	100.0(207)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자영업자가 중학생 자녀 양육 시 겪는 애로사항들은 초등학생 자녀 양육 시와 마찬가지로 ‘수입이 적어 교육비 부담’, ‘수입이 적어 양육비 부담’, ‘바빠서 자녀학습지도 어려움’, ‘늦게 끝나 자녀를 마주하기 힘들’, ‘자녀가 아프거나 급한 일 생겼을 때’ 등 순으로 나타난다. 중학생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들은 전체적으로 양육보다 교육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고 있으며, 그 경향성은 초등학생 자녀 양육 시에 비해 더 크다.

산업별로 자영업자의 중학생 자녀 양육시 애로사항은 정도 차이가 있으나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전체의 패턴과 유사하다. 농림광공업, 전기하수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수입이 적어 교육비 부담’의 비율이 50%를 상회하거나 육박하고 있어 그만큼 교육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중학생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은 다른 산업들과 달리 ‘수입이 적어 양육비 부담’이 가장 주된 것으로 나타난다. 숙박음식업 자영업자들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자녀교육비에 앞서 기본적인 자녀양육비가 부족함을 의미한다.

〈표 3-20〉 가임기 자영업자의 중학생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단위: %)

구분	수입이 적어 양육비 부담	수입이 적어 교육비 부담	바빠서 자녀학습지도 어려움	늦게 끝나 자녀를 마주하기 힘들	자녀가 아프거나 급한 일 생겼을 때	기타	계(명)
전 산업($\chi^2=55.69^*$)	33.2	42.4	10.9	5.2	4.1	4.3	100.0(1,328)
농림, 광공업	25.6	51.1	9.5	5.8	4.5	3.5	100.0(128)
전기하수·건설업	34.7	50.4	10.4	1.0	1.1	2.3	100.0(43)
도소매업	31.7	41.2	12.3	4.5	4.4	5.9	100.0(108)
운수업	35.0	49.4	10.4	0.9	0.6	3.6	100.0(108)
숙박음식업	42.3	35.3	8.9	6.1	2.7	4.7	100.0(227)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41.7	43.1	4.9	5.3	2.4	2.7	100.0(69)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34.6	40.3	10.3	5.6	4.8	4.4	100.0(138)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24.3	43.2	14.0	9.0	7.7	1.9	100.0(173)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자영업자가 고등학생 자녀 양육 시 겪는 애로사항들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 양육 시와 마찬가지로 ‘수입이 적어 교육비 부담’, ‘수입이 적어 양육비 부담’, ‘바빠서 자녀학습지도 어려움’, ‘늦게 끝나 자녀를 마주하기 힘들’, ‘자녀가 아프거나 급한 일 생겼을 때’ 등 순으로 나타난다. 고등학생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들도 전체적으로 양육보다 교육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고 있다.

산업별로 자영업자의 고등학생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은 정도 차이가 있으나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전체의 패턴과 유사하다. 운수업의 경우 ‘수입이 적어 교육비 부담’의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한편, 전기 하수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고등학생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은 다른 산업들과 달리 ‘수입이 적어 양육비 부담’이 가장 주된 것으로 나타나나 ‘수입이 적어 교육비 부담’과 큰 차이가 없다.

〈표 3-21〉 가임기 자영업자의 고등학생 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

(단위: %)

구분	수입이 적어 양육비 부담	수입이 적어 교육비 부담	바빠서 자녀학습지도 어려움	늦게 끝나 자녀를 마주하기 힘들	자녀가 아프거나 급한일 생겼을때	기타	계(명)
전 산업($\chi^2=48.13$)	33.7	41.5	11.3	5.6	3.7	4.2	100.0(1,741)
농림, 광공업	30.9	43.4	13.8	5.4	3.1	3.5	100.0(151)
전기하수·건설업	42.6	40.1	7.8	2.8	1.9	4.8	100.0(51)
도소매업	32.5	39.2	12.8	5.6	4.9	4.9	100.0(596)
운수업	33.8	52.1	6.4	3.3	2.1	2.2	100.0(136)
숙박음식업	37.9	39.1	9.0	4.5	3.7	5.7	100.0(330)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36.4	49.5	7.1	4.6	1.7	0.6	100.0(90)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35.0	38.4	12.1	5.4	4.3	4.7	100.0(162)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28.2	42.4	14.0	10.2	2.5	2.6	100.0(224)

* pr <0.05, ** pr <0.01, *** pr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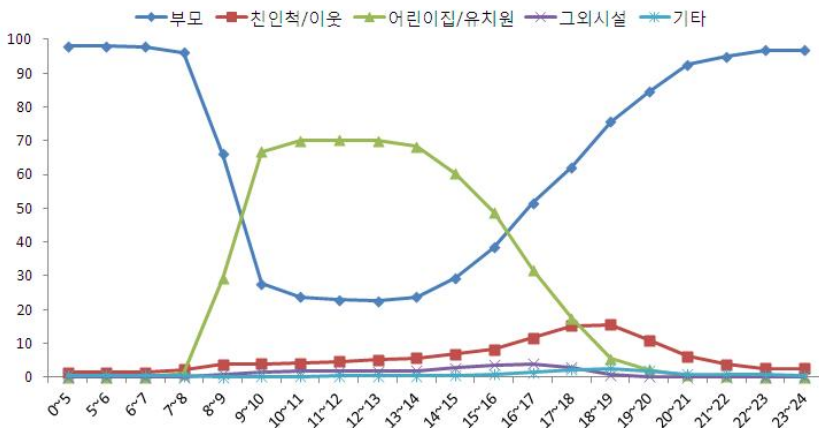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2. 자녀 양육 형태

주간에 미취학자녀들을 돌보는 형태는 부·모나 아동의 특성에 따라 아주 다양하다. 0~2세 영아자녀들을 두고 있는 경우에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형태가 보편적이며, 다만 맞벌이부부로서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보육시설 등에 맡기고 있다. 물론 맞벌이부부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일정 기간 자녀들을 직접 양육할 수 있다. 최근의 경향으로 한국사회에서는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도 정부의

무상 보육료 지원에 따라 어린 자녀들일지라고 보육시설에 맡기는 가정들이 증가하고 있다. 취업모의 경우 장시간 근로관행에 따라 혹은 집과 직장 간에 거리가 멀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함으로써 아주 일찍 혹은 아주 늦게까지 자녀들을 보육시설이나 친인척 등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그림 3-1] 0~6세 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전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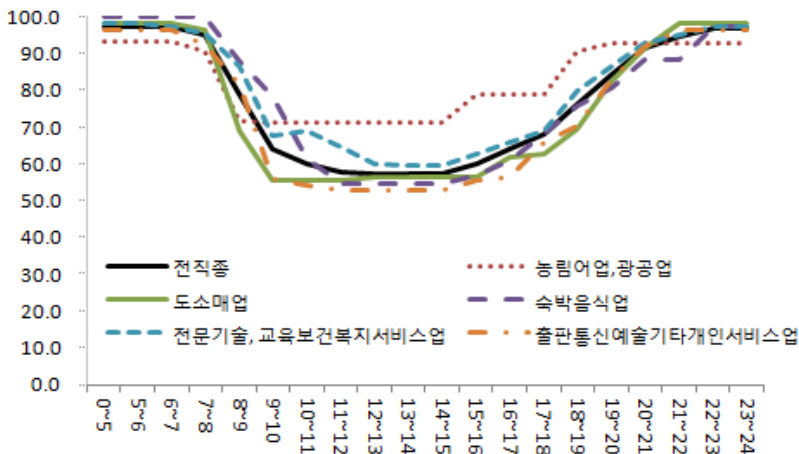
자영업 특성상 자영업자의 일하는 시간이 임금근로자와 다르거나 불규칙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육 시스템이나 일-가정 양립 시스템은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맞추어져 있어, 자영업자가 자녀 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자영업자가 영세한 경우(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부부 모두 일(같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이 아닌 다른 일 포함)을 함으로써 자녀들이 방치될 위험성도 있다. 특히 부모들이 지나치게 바빠 직접적인 양육시간이 줄어들고 시설이나 타인에게 맡겨지는 것도 어린자녀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들을 토대로 가임기 자영업자의 자녀양육 형태를 자녀의 연령 및 취학여부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자영업

산업들 간 비교를 통하여 자녀양육의 취약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가. 0~2세 자녀 양육

우선 가임기 자영업자들의 0~2세 자녀들에 대한 양육 형태이다. 자영업자를 하고 있는 부·모가 0~2세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는 비율은 시간대에 따라 ‘넓은 냄비’ 형태를 보인다. 즉,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은 아침 7~8시까지 아주 높으나 이후 급격하게 낮아져 아침 9~10시부터 오후 3~4시까지는 50~60% 사이로 가장 낮아진다. 그 후 시간대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은 점진적으로 높아지나 오후 8~9시에서야 90% 이상이 된다. 그러나 오후 12시까지도 부·모가 직접 자녀들을 돌보는 비율은 96.9%로 부와 모 모두 자정을 넘겨서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2] 가임기 자영업자(부·모) 0~2세 자녀 직접 돌봄 비율



주: 일부 산업(전기하수건설업, 운수업,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은 사례수가 적어 전 산업에만 포함시키고, 분리하여 분석하지는 않음. 이들 산업에 대한 자료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자영업 산업별로 0~2세 자녀양육 행태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거나 시간대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¹³⁾ 농림광공업의 경우 아침 이른 시간대와 오후 늦은 시간대에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아침 9~10시와 오후 9~10시 사이에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의 경우 부·모 직접 자녀돌봄 비율은 모든 시간대에서 타 산업들에 비해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표 3-22〉 가임기 자영업자 0~2세 자녀의 부·모 직접 돌봄 비율

(단위: %)

시간구분	전 산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0~5시	97.5	93.4	100.0	98.3	96.8	100.0	87.8	98.2	96.6
5~6시	97.5	93.4	100.0	98.3	96.8	100.0	87.8	98.2	96.6
6~7시	97.4	93.4	100.0	98.3	96.8	100.0	87.8	97.4	96.6
7~8시	95.0	90.9	100.0	96.5	86.5	100.0	83.4	95.7	92.6
8~9시	79.0	71.8	92.8	68.9	67.7	88.2	83.4	86.5	81.5
9~10시	64.2	71.3	70.4	55.6	52.4	78.7	72.2	67.9	56.2
10~11시	60.1	71.3	51.0	55.6	52.4	61.3	68.8	69.2	54.1
11~12시	57.9	71.3	49.5	55.6	52.4	54.8	68.8	64.8	52.7
12~13시	57.2	71.3	49.5	56.7	52.4	54.8	65.5	60.0	52.7
13~14시	57.3	71.3	54.6	56.7	52.4	54.8	65.5	59.8	52.7
14~15시	57.3	71.3	54.6	56.7	52.4	54.8	65.5	59.8	52.7
15~16시	59.9	79.0	54.6	56.7	60.9	56.9	65.5	62.6	55.8
16~17시	64.1	79.0	54.6	62.1	81.5	61.2	65.5	66.0	56.6
17~18시	68.3	79.0	66.8	63.0	81.5	68.3	70.0	69.2	66.0
18~19시	76.2	90.6	87.8	69.5	86.5	76.0	78.2	80.1	70.5
19~20시	84.3	92.9	87.8	82.4	86.5	81.0	84.5	86.8	83.1
20~21시	91.7	92.9	100.0	91.7	96.8	88.3	84.5	92.9	91.9
21~22시	94.6	92.9	100.0	98.3	96.8	88.3	84.5	95.3	96.6
22~23시	96.9	92.9	100.0	98.3	96.8	97.4	87.8	97.5	96.6
23~24시	96.9	92.9	100.0	98.3	96.8	97.4	87.8	97.5	96.6

① 농림광공업, ② 전기하수건설업, ③ 도소매업, ④ 운수업, ⑤ 숙박음식업, ⑥ 금융부동산서비스업

⑦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⑧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

13) 이하 일부 산업은 사례수가 적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어 전 직종에만 포함함.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가임기 자영업자의 경우 아침과 늦은 오후 및 저녁시간대에 부·모가 자녀들을 직접 돌보는 비율은 다른 산업들과 유사하나, 낮 동안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아무래도 주간에 부·모 모두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숙박음식업의 경우에는 오전에는 늦게 영업을 시작하고 오후 늦게 영업을 마치는 경향성으로 인하여 부·모가 자녀들을 직접 돌보는 비율도 아침에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오전 10시~11시부터 오후 9시~10시까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요컨대, 산업별 특성에 따라 가임기 자영업자들은 시간대에 따라 자녀들을 직접 돌볼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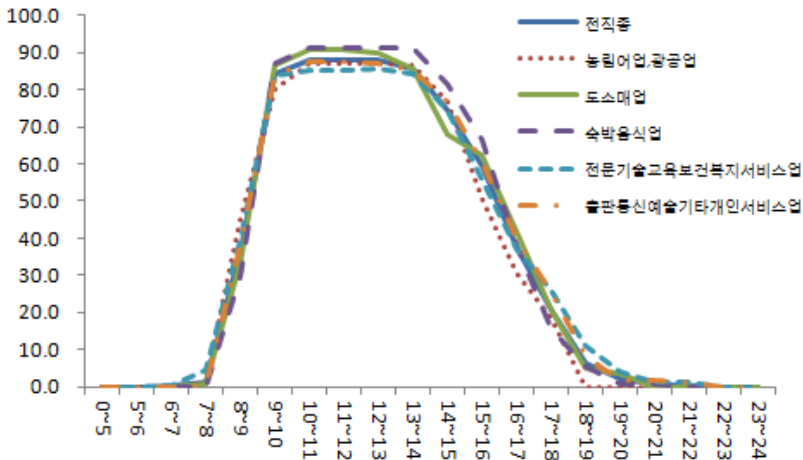
나. 3~5세 자녀 양육

자녀들을 3~5세에 이르면 대부분 가정에서는 돌봄 목적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장발달 등을 고려하여 자녀들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맡기고 있다. 취업모 등은 늦게 퇴근하는 경우 자녀들을 유치원 등의 끝난 후에 보육시설 등에 자녀들을 맡기곤 한다. 가임기 자영업자들 대부분은 주간 동안 3~5세 자녀들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있으나 9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오후 늦은 시간에 갈수록 급격하게 낮아지나, 오후 7시 이후까지 이용하는 경향도 있다. 가임기 자영업자들(특히 부부 모두)이 산업의 특성상 밤늦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5세 자녀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비율은 부·모의 자영업 산업 간에 큰 차이가 없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보육시설·유치원을 더 이용하고 있는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주된 영업시간이 주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과 농림광공업 종사하는 경우에 자녀들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영업시간이 다소 자유로워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농림광공업의 경우에는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3-3] 가임기 자영업자 3~5세 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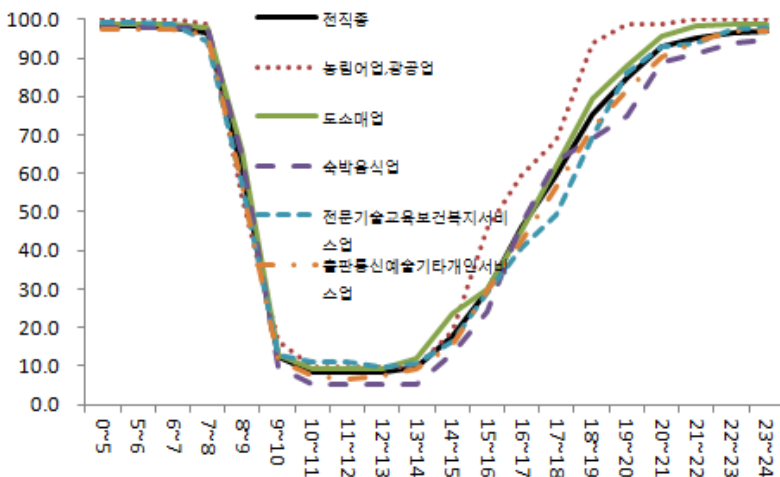


주: 일부 산업(전기하수건설업, 운수업,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은 사례수가 적어 전 산업에만 포함시키고, 분리하여 분석하지는 않음. 이들 산업에 대한 자료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자영업자들이 3~5세 자녀들을 직접 돌보는 비율은 시간대에 따라 ‘좁은 냄비’ 형태를 보인다.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은 아침 7~8시까지 아주 높으나 이후 급격하게 낮아져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10% 미만으로 나타난다. 그 후 시간대에서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은 급격하게 높아지나 오후 8~9시에 90% 이상으로 높아진다. 특히, 오후 9~12시까지 부·모가 직접 자녀들을 돌보는 비율은 95% 내외로 일부 부·모는 늦게 일을 마침으로써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영업 산업별로 3~5세 자녀양육 행태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나 오후에는 시간대별로는 차이가 나타난다. 농림광공업의 경우 오후 시간대에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산업의 특성상 야간에 일을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의 경우 오후 4~7시 사이 특정시간대에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 산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이 이 시간대에 다른 아이들을 돌보는 등 비교적 바쁘게 활동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림 3-4] 가임기 자영업자 3~5세 자녀의 시간대별 직접 돌봄 비율



주: 일부 산업(전기하수건설업, 운수업,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은 사례수가 적어 전 산업에만 포함시키고, 분리하여 분석하지는 않음. 이들 산업에 대한 자료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직접 돌보는 비율은 아침 9시~오후 4시까지 가장 낮고, 오후 4시~오후 7시까지 타 산업과 유사하나, 이후 오후 12시까지 다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는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부·모가 오전 늦게 영업을 시작하고 오후 늦게 영업을 마치고

는 근로시간 사이에 자녀양육을 위한 부부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등의 패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3~5세 자녀들도 부·모 산업의 특성에 따라 오후는 물론 밤늦게 홀로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3〉 가임기 자영업자 3~5세 자녀의 시간대별 부·모 직접 돌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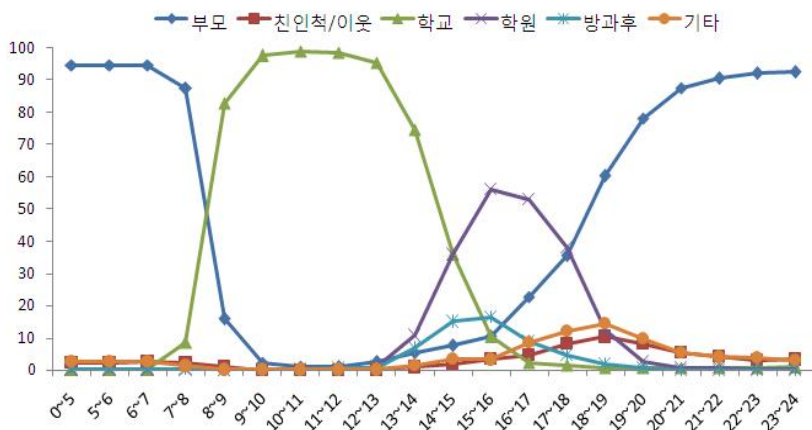
시간 구분	전 산업	농림 광공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기술교육보건 서비스업	출판통신예술 개인서비스업
0~5시	98.2	100.0	98.6	97.9	99.1	97.3
5~6시	98.2	100.0	98.6	97.9	99.1	97.3
6~7시	98.1	100.0	98.6	97.9	98.8	97.3
7~8시	96.7	98.9	97.8	97.9	94.2	96.1
8~9시	60.8	53.8	65.9	64.7	57.5	57.0
9~10시	12.4	16.7	12.8	9.6	13.1	11.4
10~11시	8.5	9.9	9.4	5.4	11.3	7.6
11~12시	8.4	9.9	9.4	5.4	11.3	6.8
12~13시	8.2	9.9	9.4	5.4	9.9	7.5
13~14시	9.8	9.9	12.0	5.4	10.6	9.1
14~15시	17.8	19.4	23.5	13.5	16.7	15.7
15~16시	29.6	45.9	29.8	24.0	29.0	29.6
16~17시	46.2	59.5	45.2	47.0	41.0	42.4
17~18시	59.7	68.7	61.9	63.3	49.4	56.7
18~19시	75.4	94.0	79.3	69.3	69.7	72.0
19~20시	84.7	98.9	88.2	75.0	86.3	81.7
20~21시	92.9	98.9	95.8	89.0	93.0	90.1
21~22시	95.1	100.0	98.3	91.0	93.9	94.4
22~23시	96.7	100.0	98.6	93.8	97.6	97.2
23~24시	97.0	100.0	98.6	94.7	97.9	97.2

주: 일부 산업(전기하수건설업, 운수업,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은 사례수가 적어 전 산업에만 포함시키고, 분리하여 분석하지는 않음. 이들 산업에 대한 자료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양육

초등학교 저학년초등학생 저학년(1~3학년)의 경우 학교에서 정규수업이 일찍이 끝남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OECD국가들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 영역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과후보육은 방과후학교(수업), 학원, 친인척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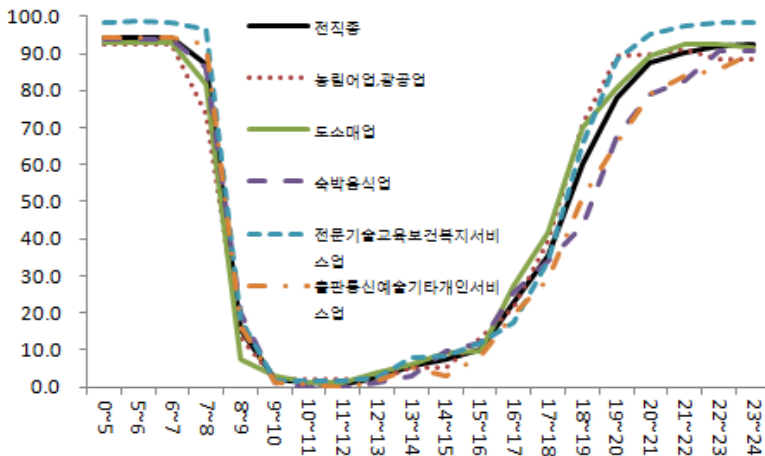
[그림 3-5] 취학자녀(만 9세 이하) 시간대별 보육방법 (전 산업)



가임기 자영업자들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을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을 측정해보면, 얼마나 다른 수단들에 자녀들의 양육을 맡기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 가임기 자영업자들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을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3~5세 자녀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좁은 냄비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등교 이전에는 대부분 부·모들이 돌보고, 이후 오후 1시까지에는 대부분 학교에 다니고 있다. 방과 후에 자녀들을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은 오후 4시까지 완만하게 높아지고, 이후 시간대에서는 급격하게 높아지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그러나 오후 8시~오후 12시까지 부모의 직접 돌봄비율은 87~92% 정도로 많은 자녀들이 홀로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산업 별로 보면, 숙박음식업과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 부모의 직접 돌봄 비율이 오후 늦게까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숙박음식업이나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의 경우에는 부모의 영업 시간에 따라 밤 늦게까지 자녀들을 돌볼 수 없다.

[그림 3-6] 가임기 자영업자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직접 돌봄 비율



주: 일부 산업(전기하수건설업, 운수업,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은 사례수가 적어 전 산업에만 포함시키고, 분리하여 분석하지는 않음. 이들 산업에 대한 자료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표 3-24〉 가임기 자영업자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직접 돌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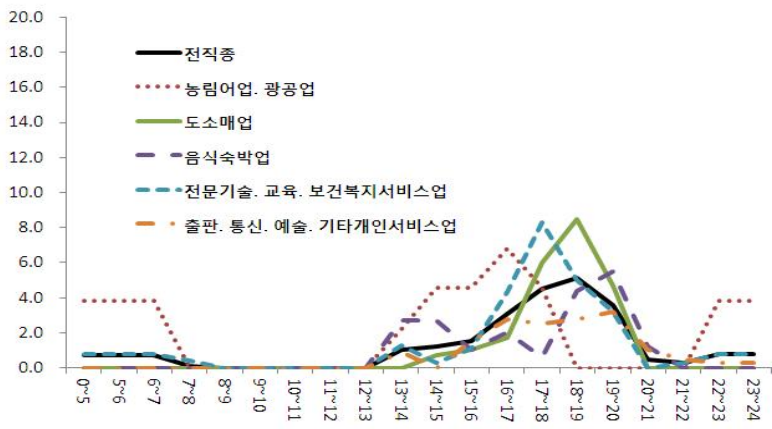
(단위: %)

시간구분	전 산업	농림 광공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기술교육보건 서비스업	출판통신예술 개인서비스업
0~5시	94.4	92.3	92.9	93.9	98.3	94.5
5~6시	94.5	92.3	92.9	93.9	98.7	94.5
6~7시	94.4	92.3	92.9	93.9	98.3	94.5
7~8시	87.3	73.6	81.9	86.4	96.5	92.7
8~9시	15.8	13.3	7.4	20.3	18.1	16.3
9~10시	2.2	2.1	3.0	1.2	1.8	1.2
10~11시	1.1	2.1	1.0	-	1.6	0.9
11~12시	0.9	2.1	1.0	-	1.6	-
12~13시	2.5	2.1	3.9	1.3	2.6	1.6
13~14시	5.5	5.4	6.2	3.0	8.0	5.4
14~15시	7.6	5.2	9.4	9.9	8.2	3.1
15~16시	10.4	13.4	9.6	11.9	12.2	8.6
16~17시	22.7	21.5	27.1	25.3	17.6	19.8
17~18시	35.5	39.5	41.5	33.9	34.1	29.2
18~19시	60.2	70.9	70.0	43.7	65.6	51.0
19~20시	78.0	89.2	80.9	67.7	88.3	65.8
20~21시	87.4	90.0	89.4	79.1	95.1	79.2
21~22시	90.4	91.2	92.5	82.5	97.5	84.0
22~23시	92.0	88.4	92.7	90.6	98.5	85.9
23~24시	92.4	88.4	91.6	90.6	98.5	90.1

주: 일부 산업(전기하수건설업, 운수업,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은 사례수가 적어 전 산업에만 포함시키고, 분리하여 분석 하지는 않음. 이들 산업에 대한 자료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전 산업으로 아동홀로 보내는 시간대를 보면 오후 5~7시 사이로 5% 내외가 집중되어 있다. 아동이 홀로 있는 비율을 산업별 및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농림광공업의 경우 오후 4~6시에 5~8% 정도, 도소매업의 경우 오후 5~8시에 5~9% 정도,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의 경우 오후 4~8시 사이에 6~7% 정도, 숙박음식업의 경우 오후 6~8시 사이에 5% 정도, 전기하수건설업의 경우 오후 4~7시 사이에 4~8% 정도,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의 경우 오후 4~7시 사이에 5~8% 정도가 집중되어있다.

[그림 3-7] 가임기 자영업자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홀로 있는 비율



주: 일부 산업(전기하수건설업, 운수업,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은 사례수가 적어 전 산업에만 포함시키고, 분리하여 분석하지는 않음. 이들 산업에 대한 자료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람.

<표 3-25> 가임기 자영업자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홀로 있는 비율

시간 구분	(단위: %)								
	전 산업	농림 광공업	전기하수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업	금융부동산 시설관리업	기술·교육·보건 서비스업	출판·통신·예술 기타개인서비스업
0~5시	0.7	3.8	0.0	0.0	6.3	0.0	0.0	0.8	0.0
5~6시	0.7	3.8	0.0	0.0	6.3	0.0	0.0	0.8	0.0
6~7시	0.7	3.8	0.0	0.0	6.3	0.0	0.0	0.8	0.0
7~8시	0.1	0.0	0.0	0.0	0.0	0.0	0.0	0.4	0.0
8~9시	0.0	0.0	0.0	0.0	0.0	0.0	0.0	0.0	0.0
9~10시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11시	0.0	0.0	0.0	0.0	0.0	0.0	0.0	0.0	0.0
11~12시	0.0	0.0	0.0	0.0	0.0	0.0	0.0	0.0	0.0
12~13시	0.0	0.0	0.0	0.0	0.0	0.0	0.0	0.0	0.0
13~14시	1.0	2.2	0.4	0.0	0.0	2.7	0.0	1.3	0.9
14~15시	1.2	4.6	2.1	0.7	0.0	2.7	0.2	0.3	0.0
15~16시	1.5	4.6	6.9	1.0	0.0	1.0	0.2	1.1	1.5
16~17시	3.1	6.8	4.4	1.7	2.0	2.0	6.0	4.3	2.8
17~18시	4.5	4.6	3.7	6.0	2.0	0.6	6.0	8.3	2.5
18~19시	5.1	0.0	7.3	8.5	2.0	4.4	6.7	5.0	2.8
19~20시	3.6	0.0	0.0	4.7	0.0	5.5	6.0	3.2	3.2
20~21시	0.5	0.0	0.0	0.0	3.2	1.2	0.0	0.0	1.0
21~22시	0.3	0.0	0.0	0.0	3.2	0.0	0.0	0.3	0.5
22~23시	0.8	3.8	0.0	0.0	6.3	0.0	0.0	0.8	0.3
23~24시	0.8	3.8	0.0	0.0	6.3	0.0	0.0	0.8	0.3

3. 가사 시간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근로행태는 외부에서 결정되어 의무화됨으로써 본인의 의지 등에 따라 육아와 가사시간을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자영업자의 근로(영업)시간은 산업의 특성과 자영업자의 여러 상황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가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영업시간은 더욱 길어지거나 불규칙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근로패턴을 결과적으로 육아나 가사 시간을 단축시켜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자영업자 본인의 가사시간(이하 1일 가사시간을 의미)은 평균 1.4시간(약 1시간 24분), 배우자의 가사시간은 평균 2.4시간(약 2시간 24분)으로 나타난다. 통계청의 2009년도 생활시간조사 결과(평일 기준) 종사상지위별로 평균 가사시간은 자영업자 1시간 1분, 무급가족종사자 2시간 43분, 고용주 32분, 임금근로자 51분으로 각각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남편이 자영업자인 경우에 아내는 무급가족종사자일 가능성이 높다. 여성 기준으로 가임기(15~49세)에 있는 자영업자는 대체적으로 전체 자영업자에 비해 다소 많이 가사(육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가사시간은 다소 큰 편차가 나타난다. 자영업자 본인의 평균 가사시간은 운수업 자영업자가 평균 0.7시간으로 가장 짧고, 숙박음식업 자영업자는 평균 1.8시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난다. 두 산업 간의 가사시간 차이는 1.1시간이다. 자영업자 본인의 가사시간이 전체 평균보다 긴 산업들로는 숙박음식업,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 도소매업이며, 반대로 전체 평균보다 짧은 산업들로는 농림광공업, 전기하수건설업, 운수업으로 나타난다.

자영업자 배우자의 평균 가사시간은 운수업의 경우 평균 3.7시간으로 가장 길고, 숙박음식업의 경우 평균 1.7시간으로 가장 짧다. 두 산업 간

의 가사시간 차이는 2.0시간이다. 자영업자 배우자의 가사시간이 전체 평균보다 짧은 산업들로는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 숙박음식업이며, 나머지 산업들은 전체 평균보다 길게 나타난다.

〈표 3-26〉 자영업자 특성별 평균 가사 시간

구분	자영업자 본인(N=4,820)		배우자(N=4,819)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 산업	1.4	0.03	2.4	0.05
농림, 광공업	1.1	0.67	2.9	0.12
전기하수·건설업	0.8	0.06	3.2	0.15
도소매업	1.5	0.06	2.5	0.11
운수업	0.7	0.06	3.7	0.16
숙박음식업	1.8	0.06	1.7	0.09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1.7	0.09	2.4	0.17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1.8	0.05	2.2	0.07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1.5	0.06	2.3	0.10

(단위: 시)

4. 사교육비 부담

가임기 자영업자들의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액은 미취학 자녀의 경우 평균 13.4만 원, 초등학교 자녀의 경우 평균 31.2만 원, 중학교 자녀의 경우 평균 38.8만 원, 고등학교 자녀의 경우 38.8만 원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자녀들의 경우에는 중학생과 고등학교 자녀들 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자영업 산업들 간 사교육비를 비교해보면, 전 직종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사교육비 지출액 수준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존재한다. 미취학자녀의 사교육비는 부모의 산업들 중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 전기하수건설업 등의 순으로 많고, 운수업과 숙박음식업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과

운수업 간 미취학자녀의 사교육비는 약 1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사교육비도 미취학 자녀의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전기하수건설업 등의 순으로 많고, 운수업과 숙박음식업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과 운수업 간 초등학생 자녀의 사교육비는 14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중학생 자녀의 사교육비는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농림광공업, 도소매업 등의 순으로 많고, 운수업과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과 운수업 간 중학생 자녀의 사교육비는 약 14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

고등학생 자녀의 사교육비는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전기하수건설업 등의 순으로 많고, 숙박음식업, 운수업 등의 순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과 숙박음식업 간 고등학생 자녀의 사교육비는 약 22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다. 특히, 농림광공업, 숙박음식업,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에서는 고등학생 사교육비가 오히려 중학생 자녀의 사교육비보다 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미취학 자녀부터 고등학생 자녀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자영업 산업 간에 사교육비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산업 간의 수입 규모의 차이, 산업별 부모의 기본특성, 자녀교육에 대한 열망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27〉 산업별 조사대상자의 자녀 사교육비 평균 지출액

(단위: 만 원)

구분	미취학 (N=834)		초등학교 (N=1,357)		중학교 (N=1,327)		고등학교 (N=1,741)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전 산업	13.4	1.0	31.2	0.8	38.8	1.1	38.8	1.2
농림, 광공업	12.5	3.3	33.4	2.9	42.2	3.9	37.3	3.6
전기하수·건설업	14.9	5.6	34.8	2.9	37.4	2.5	44.9	4.9
도소매업	12.5	2.2	29.9	1.7	38.6	1.9	40.9	2.5
운수업	9.6	2.8	22.1	2.6	32.1	3.1	33.8	3.2
숙박음식업	10.3	2.0	27.1	1.8	37.3	3.5	29.7	2.0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15.9	4.7	36.1	3.0	46.2	3.2	52.4	3.6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19.4	2.2	36.0	1.7	45.1	2.6	52.1	4.0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13.0	1.9	33.7	1.8	35.5	1.8	34.4	2.2

주: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비율은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자영업자들 간 소득(수입) 수준이 서로 달라 사교육비 부담 정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소득대비 사교육비 부담(월 기준)을 자녀수별로 측정해 보면, 전체적으로 월 소득 중 5.3%를 사교육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1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 사교육비 부담(월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율)은 7.0%, 2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12.9%, 3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15.3%로 나타난다. 즉, 자녀수가 많을수록 사교육비 부담정도는 급격하게 높아진다.

자영업 산업별로 자녀수에 상관없이 총사교육비 부담 정도는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 도소매업 등의 순으로 높다. 앞서 분석한 사교육비 지출액은 대체적으로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전기하수건설업 등의 순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과 일치하고 있다. 운수업과 숙박음식업의 경우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 또한 사교육비 지출정도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요컨대,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전기하수건설업 등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자영업자들은 본인의 소득에 비해 다소 과다하게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향이 있으며, 운수업과 숙박음식업 등의 경우에는 본인의 소

득수준에 맞게 혹은 과소하게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수별로 사교육비 부담은 전체 평균에 비해 다소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1자녀만을 두고 있는 경우 사교육비 부담정도는 금융부동산 시설관리업, 전기하수건설업,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2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 사교육비 부담정도는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도소매업, 농림광공업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3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경우에 사교육비 부담정도는 전기하수건설업, 도소매업,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 농림광공업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요컨대, 1~2자녀를 둔 경우에는 산업간 사교육비 부담의 순서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반면, 3자녀 이상 다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 사교육비 부담은 사교육비 지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과 농림광공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은 적을지라도 다자녀를 두고 있는 경향이 높아 전체 사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28〉 가임기 자영업자의 자녀수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정도

(단위: %)

구분	전체	1명 (N=903)	2명 (N=2,808)	3명 이상 (N=438)
전 산업	5.3	7.0	12.9	15.3
농림, 광공업	5.4	7.2	14.3	15.7
전기하수·건설업	6.0	9.0	10.8	17.3
도소매업	6.4	6.0	14.9	17.3
운수업	3.0	6.5	11.2	10.1
숙박음식업	3.7	7.3	9.2	11.7
금융, 부동산, 시설관리업	7.2	9.8	16.8	14.6
기술, 교육, 보건 서비스업	8.4	8.3	15.2	15.2
출판통신, 예술, 개인서비스업	4.8	6.3	11.6	16.9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를 적용한 값임.

2) 자영업자 가구의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월사교육비의 비중을 평균 계산한 값임.

제4절 요약 및 정책 제언

출산과 양육은 전 국민에게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취업여성은 전업주부와 달리 경력 유지나 일-가정 양립 문제 등과 관련하여 출산과 양육의 행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국내외 많은 연구들은 취업여성들은 전업주부에 비해 자녀 출산을 늦게 그리고 적게 하며, 자녀 양육 상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런데 취업여성들 내에서도 종사상 지위에 따라 출산과 양육 행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근거로 출산과 양육 행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두 가지의 관점들이 제시될 수 있다. 하나는 근로형태로서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대부분 오전 9~오후 6시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은 다소 비고정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관점은 현행 일-가정 양립제도가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영업자는 그만큼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자녀 출산과 양육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영업자의 출산 및 양육 행태에 대한 분석은 학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장에서 분석 대상은 조사 시점에서 가임기 자영업자로서 여성 자영업자 본인이나 남성자영업자의 배우자로서 15~49세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가임기 자영업자의 출산 및 양육 행태는 과연 일반가정 혹은 전체 취업여성과 비교하여 얼마나 다를 것인가와 동일한 자영업자들 중에서 산업 등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1. 자영업자의 출산행태와 정책적 함의

우선 가임기 자영업자의 출산행태로 실제 출생아수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가임기 자영업자 중 두 자녀를 두고 있는 비율이 63%로 압도적으로 많고, 한 자녀는 20%, 세 자녀 이상은 10%, 무 자녀도 약 7%로 평균은 1.66명이다. 가임기 자영업자의 산업들 중에는 전문기술, 교육 및 보건복지서비스업 등이 평균 이하이다. 이와 같은 자영업자의 출산수준은 전체 가임기 여성의 수준과 유사하고 취업여성에 비해서는 다소 많은 편이다. 즉, 자영업자의 출산 수준은 취업여성과 전업주부의 중간 수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영업자는 수입이 적더라도 근무형태가 비교적 정적으로 자녀 출산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일반 취업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출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차이는 아주 근소한 것으로 출산행태에 자영업 종사의 장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에도 가임기 자영업자 중 8.7%만이 추가로 출산할 계획이다. 추가출산의향 비율은 무자녀인 경우 61.9%, 1자녀인 경우 18.6%, 두 자녀인 경우 1.1%, 세 자녀 이상인 경우 1.3%로 나타난다. 자영업자의 산업별로 추가출산의향은 운수업, 전기·하수·건설업, 농림·광공업, 숙박·음식업 등의 순으로 낮다. 임금근로를 경험한 자영업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들에 비해 추가출산계획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추가출산의향 비율은 자영업 종사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여성의 연령이 많을수록 추가출산의향 비율은 낮다.

추가 자녀 출산을 중단한 주된 이유로는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혹은 ‘나이가 많아서’가 70%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자녀양육과 교육 비용이 많이 들어서’ 18.9%, ‘소득이 적거나 직업적 불안정성 때문에’ 6.9%, 기타 4.5% 순이다. 자녀가 없는 자영업자들 중 40%가 출

산을 포기하거나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불임이나 늦은 결혼으로 인하여 출산을 할 수 없음을 시사해 준다. 한 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가 나이가 많거나 계획한 자녀를 다 낳아서 더 이상 추가로 출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자녀의 수’에 대한 가치관과 ‘자녀출산 적정 연령 규범’에 따른 것으로 사회문화적인 이유가 클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임기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전체 가임기 여성들에 비해 고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즉, 나이가 많기 때문에 만산에 따른 경제적 및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임금 근로 경험 여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영업자의 상당 비율은 자녀양육 비용 부담과 소득 및 직업 불안정으로 추가 출산을 중단하고 있다. 사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한국사회에서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소득이 적거나 직업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어느 정도 자영업자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결국 분석 향후 자영업자의 출산수준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의 기대자녀수는 전체 가임기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자영업 종사 산업별로도 전기하수건설업, 숙박음식업, 농림광공업, 도소매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평균 수준 이하로 나타난다. 자영업자의 이상자녀수는 전체 가임기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이상자녀수에서의 차이가 실제자녀수나 기대자녀수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자영업자가 장애요인들로 인하여 전체 여성에 비해 자녀 출산을 더 축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가임기 자영업자의 자녀양육실태와 정책적 함의

미취학 자녀를 두고 있는 자영업자들 중 약 70%가 수입이 적어 자녀의 교육비와 양육비를 부담스러워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그리고 나머지 30%는 교육적 혹은 정서적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다. 교육적 및 정서적 부담으로는 바빠서 자녀의 학습을 돌볼 수 없다거나(10%), 영업이 늦게 끝나 자녀를 돌보기가 힘들다거나(7%), 자녀가 아프거나 급한 일 생겼을 때 어렵다(5%) 등이다. 이러한 애로사항들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 특이한 점으로 농림광공업 종사자는 교육비 부담과 자녀 질병 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보건의료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등 거주지의 특성이 반영되고 있다. 도소매업 종사자는 바빠서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정도가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 부부가 함께 운영함으로써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시사해 준다.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두고 있는 자영업자가 양육 시 겪는 애로사항들도 미취학 자녀 양육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만, 양육보다 교육을 상대적으로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산업 간에도 큰 차이가 없으나, 숙박음식업과 운수업 종사 자영업자들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기본적인 자녀양육비 부족을 더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가임기 자영업자들의 0~2세 자녀들을 직접 돌보는 비율은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50~60%로 가장 낮고 오후 8~9시에 90% 이상으로 높아지나 오후 12시까지도 97%로 부모 모두 자정을 넘겨서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산업별로 대체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다만, 농림광공업 종사자는 아침 이른 시간과 오후 늦은 시간, 출판통신에 술개인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종사자는 낮 동안,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늦게 영업을 마치는 경향성으로 인하여 부·모가 자녀들을 직접 돌보는 비율도 아침에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오전 10시~오후 10시 사이에 직

집 돌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자영업자들이 3~5세 자녀들을 직접 돌보는 비율은 오전 10시~오후 4시 사이에 10% 미만으로 가장 낮고, 이후 오후 8~9시에 90% 이상으로 높아지나 오후 9~12시까지 95% 내외로 일부 부·모는 늦게 일을 마침으로써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 간에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지만,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자영업자는 오후 4~7시, 숙박음식업 종사 자영업자는 오전 9시~오후 4시와 오후 7시~12시에 직접 자녀를 돌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자영업자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을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은 오후 8시~12시 사이에 87~92% 정도로 많은 자녀들이 홀로 지내고 있다. 산업 중에는 숙박음식업과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에서 부모의 직접 돌봄 비율이 오후 늦게까지 상대적으로 낮다.

이와 같이 자영업 산업별로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비율이 오후 늦게까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산업의 특성에 따라 보육서비스 등을 상대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자녀들을 홀로 방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자영업자 본인의 가사시간은 대체적으로 전체 자영업자에 비해 다소 더 많이 가사(육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의 특성 상 비교적 정적인 종사 시간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영업 산업 중에는 운수업 자영업자가 평균 0.7시간으로 가장 짧고, 숙박음식업 자영업자는 평균 1.8시간으로 가장 길다. 자영업자 본인의 가사시간이 전체 평균보다 짧은 산업들로는 농림광공업, 전기하수건설업, 운수업 등이다. 자영업자 배우자의 평균 가사시간은 운수업의 경우 평균 3.7시간으로 가장 길고, 숙박음식업의 경우 평균 1.7시간으로 가장 짧다. 이외에도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 등이 전체 평균보다 짧다.

자영업자들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미취학자녀 월평균 13.4만 원, 초등

학생 자녀 평균 31.2만 원, 중학생 자녀 평균 38.8만 원, 고등학생 자녀 38.8만 원이다. 자영업 산업들 간 사교육비 지출 패턴은 유사하나 지출액은 차이가 존재하는데, 산업 간 최대 차이는 미취학자녀의 경우 10만 원,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14만 원, 중학생 자녀의 경우 14만 원,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22만 원이다. 자영업자의 소득대비 사교육비 부담은 5.3%이며, 1자녀 7.0%, 2자녀 12.9%, 3자녀 이상의 경우 15.3%이다. 1자녀만을 두고 있는 경우 사교육비 부담은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 전기하수건설업,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순으로 높다. 2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도소매업, 농림광공업 등 순으로 높다. 3자녀 이상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전기하수건설업, 도소매업,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 농림광공업 등 순으로 높다. 이와 같이 자영업 산업 간에 사교육비 지출액 및 부담의 차이는 가계수입, 산업별 부모의 근로형태, 자녀교육에 대한 열망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정책적 제언

자영업자들의 출산 및 양육은 저출산을 극복한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들은 정책 등을 통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의 자녀 출산 및 양육 행태에서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자영업은 가계 수입을 위하여 선택한 직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특히 여성의 경우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선택한 직업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의 출산수준은 적어도 일반적인 취업여성들의 출산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야 하나 그 차이는 아주 미세한 수준이다. 즉,

자영업이라는 근로형태의 장점이 실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영업도 고객관리 등의 차원에서 일정한 시간대에 근무를 하여야 하며, 출산이나 양육 초기에 휴직을 하여야 하는 등 일반적인 취업여성 혹은 맞벌이 부부와 같이 자영업 종사자들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자영업자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임금 근로 등을 경험한 이후에 자영업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임기의 후반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자영업자들 중에는 직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늦게 결혼을 하고 늦게 출산을 하는 경향이 높을 수 있다. 그러한 자영업자들은 만산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실제 무자녀나 1자녀만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아서 출산을 중단하겠다는 비율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대부분 가임기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요컨대 자영업의 근로형태 등 특수성을 감안한 보건의료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자영업자들 역시 자녀 양육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추가 출산을 주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수입이 적어 자녀 양육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의 출산수준이 생각보다 적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에 제대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그만큼 자녀 출산 및 양육 시에서는 더 많은 지출을 할 것이며 노후를 위한 저축 등도 부담이 될 것이다. 요컨대, 자영업자들이 출산과 양육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이 일-가정 양립제도와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영업자의 출산행위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들 중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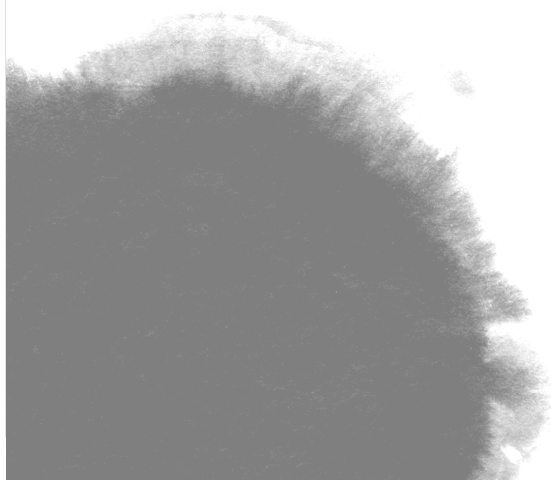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나는 소득과 직업의 불안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자영업자들에게 내재된 것으로 사회경제 거시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지만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자녀 출산 및 양육의 어려움을 방치하는 것은 저출산 극복이나 질 높은 인적자본 확보에 상당한 장애가 되므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적절한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자영업자들은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가정 내 교육과 정서적 교감 등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은 야간에 근무하는 경향성이 강한데 비해 일반적으로 보육 등 돌봄서비스는 주간에 한정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시차의 한계성을 직접적으로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영업자 등 야간 보육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야간 돌봄 도우미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섯째, 농림광공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자녀 질병 시 서비스 부족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산업의 경우 지역적으로 농·어촌이나 광촌 등 보건의료인프라가 취약한 경우 다른 지역의 인프라를 이용하는데 시간적인 그리고 비용적인 한계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녀양육을 위해서 보건의료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4장

자영업자의 건강 실태



제4장 자영업자의 건강 실태

2009년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체 329만개 중 5인 미만 영세사업체가 82.7%를 차지하고, 영세 자영업체의 1년 생존률이 65~75%에 불과한 현실에서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창업 등에 따라 열악한 경영환경에 노출된 자영업자가 경기여건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간 다양한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이 강구되었으나 보건의료부문에서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대책이 크게 미흡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보건의료 실태 분석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장에서는 5인 미만 자영업 사업체 사업주의 건강수준, 의료이용 실태, 질병이환 및 활동제한 실태, 건강검진 수검률, 민간건강보험 가입 실태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영업자들의 건강수준과 질병이환 및 활동제한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질병이환에 따른 의료이용과 미충족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보건의료 비용조달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보건의료부문의 지원 대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조사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등과의 비교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상대적인 건강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사업장 및 거주지, 소득수준, 산업 등 다양한 요인이 조사되었으나, 사업장 및 거주지 주소, 산업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로 연령 및 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1 절 자영업자의 건강수준 및 질병이환율

1. 주관적 건강상태

조사대상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건강에 대해 양호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자신의 건강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좋다’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63.7%로,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인 36.6%(19세 이상, 2010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4-1〉 주관적 건강인지율¹⁾

구분	국민건강영양조사 ²⁾						(단위: %) 본조사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2012
비율	44.7	46.8	32.4	42.8	43.9	36.6	63.7

주: 1) 평소 자신의 건강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좋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0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2010), 2011.12.

이와 같이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생각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일반국민의 평균수준에 비해 높은 것은 선별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계층은 자신의 건강이 양호하다는 인식을 가진 계층이며, 건강이 나쁜 계층은 현재 자영업 등 직업 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주관적 건강상태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미만의 경우 자신의 건강이 “매우 좋다” 또는 “좋다”는 비율이 83.7%, 40대 71.2%, 50대 60.3%, 그리고 60대 이상 47.5% 등으로 젊은 연령층일수록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4-2〉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

구 분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계(명)
전체		6.2	57.5	29.2	6.6	0.5	100.0(11,439)
성	남성	6.8	58.7	27.7	6.3	0.5	100.0(6,283)
	여성	5.4	56.1	31.0	7.0	0.5	100.0(5,156)
연령	40세 미만	16.8	66.9	14.9	1.4	0.1	100.0(1,476)
	40~50세 미만	7.1	64.1	25.6	3.0	0.2	100.0(3,275)
	50~60세 미만	4.0	56.3	32.5	7.0	0.3	100.0(4,285)
	60세 이상	2.3	45.2	36.8	14.2	1.5	100.0(2,398)
가구총소득	2천만 원 미만	4.7	41.7	37.3	14.9	1.4	100.0(1,944)
	4천만 원 미만	5.7	58.0	29.7	6.1	0.5	100.0(4,479)
	5천만 원 미만	5.7	62.2	28.5	3.4	0.2	100.0(1,808)
	5천만 원 이상	8.1	64.1	23.6	3.9	0.2	100.0(3,081)
가구형태	부부단독가구	3.4	51.4	34.7	9.6	0.9	100.0(2,096)
	부부미혼자녀가구	6.6	61.3	27.1	4.7	0.2	100.0(6,753)
	편부모 및 조손가구	5.2	50.2	33.8	9.7	1.2	100.0(598)
	1인가구	9.5	51.1	29.3	9.0	1.1	100.0(1,001)
	기타가구	5.9	55.8	28.6	8.9	0.8	100.0(987)
고용원유무	없음	5.3	55.7	31.0	7.4	0.6	100.0(8,904)
	있음	9.3	63.8	22.9	3.8	0.2	100.0(2,536)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2. 2주간 급성/만성질환·사고·중독 경험률

조사대상 자영업자들의 질병이환율이 일반국민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 자영업자의 최근 2주간 이환율은 4.4%로서,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9세 이상 일반국민의 21.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표 4-3〉 2주간 이환률¹⁾

구 분	국민건강영양조사 ²⁾				(단위: %)
	2007	2008	2009	2010	본조사
이환율	16.4	23.6	21.3	21.1	4.4

주: 1) 최근 2주 동안 만성·급성 질환 및 사고·중독 등으로 몸이 아프거나 불편을 느꼈던 비율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0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2010), 2011.12.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지난 2주간 급성/만성질환·사고·중독·경험률 7.6%, 50대 경험률 4.5%, 40대 경험률 3.0% 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환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계층별로도 가구총소득 2천 만 원 미만의 급성/만성질환·사고·중독·경험률은 7.8%, 2천~4천만 원 4.6% 등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이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지난 2주간 만성/급성질환 및 사고 중독 경험여부

구 분		있음	없음	계 (명)	평균일수	F-value (t-value)
전체		4.4	95.6	100.0 (11,439)	7.11	
성 ($\chi^2=0.24$)	남성	4.3	95.7	100.0 (6,283)	7.08	(0.14)
	여성	4.5	95.5	100.0 (5,156)	7.14	
연령 ($\chi^2=99.08^{***}$)	40세 미만	1.8	98.2	100.0 (1,476)	5.74	2.13
	40~50세 미만	3.0	97.0	100.0 (3,275)	6.15	
	50~60세 미만	4.5	95.5	100.0 (4,285)	7.59	
	60세 이상	7.6	92.4	100.0 (2,397)	7.33	
가구총소득 ($\chi^2=86.40^{***}$)	2천만 원 미만	7.8	92.2	100.0 (1,944)	8.09	2.69*
	4천만 원 미만	4.6	95.4	100.0 (4,479)	7.00	
	5천만 원 미만	2.5	97.5	100.0 (1,808)	6.94	
	5천만 원 이상	2.9	97.1	100.0 (3,081)	6.08	

〈표 4-4〉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지난 2주간 만성/급성질환 및 사고 중독 경험여부 (계속)

(단위: %, 명, 일)

구 분	있음	없음	계 (명)	평균일수	F-value (t-value)
가구형태					
부부단독가구	6.1	93.9	100.0 (2,095)	7.17	
($\chi^2=34.67^{***}$) 부부미혼자녀가구	3.5	96.5	100.0 (6,753)	7.11	
편부모 및 조손가구	6.5	93.5	100.0 (599)	7.56	0.61
1인가구	4.6	95.4	100.0 (1,002)	6.01	
기타가구	5.2	94.8	100.0 (987)	7.58	
고용원유무					
없음	4.7	95.3	100.0 (8,903)	7.02	
($\chi^2=11.11^{***}$) 있음	3.2	96.8	100.0 (2,536)	7.58	(0.96)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3. 활동제한율

지난 1년간 건강상의 문제나 신체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6.3%로서,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19세 이상 일반국민의 10.1%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지난 1년간 활동제한 경험률

(단위: %)

구 분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
활동제한 경험률	10.1	6.3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0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2010), 2011.12.

활동제한 경험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활동제한 경험 여부

(단위: %, 일)

구 분		있음	없음	계 (명)	평균 경험일수	F-value (t-value)
전체		6.3	93.7	100.0 (11,439)	49.49	-
성 ($\chi^2=0.30$)	남성	6.4	93.6	100.0 (6,283)	39.76	(3.00**)
	여성	6.1	93.9	100.0 (5,156)	61.72	
연령 ($\chi^2=133.26^{***}$)	40세 미만	3.3	96.7	100.0 (1,476)	13.06	7.29***
	40~50세 미만	4.3	95.7	100.0 (3,275)	28.45	
	50~60세 미만	6.2	93.8	100.0 (4,285)	48.94	
	60세 이상	10.9	89.1	100.0 (2,397)	68.27	
가구총소득 ($\chi^2=151.58^{***}$)	2천만 원 미만	11.9	88.1	100.0 (1,944)	52.39	1.32
	4천만 원 미만	6.4	93.6	100.0 (4,479)	54.82	
	5천만 원 미만	4.8	95.2	100.0 (1,808)	48.59	
	5천만 원 이상	3.4	96.6	100.0 (3,081)	32.38	
가구형태 ($\chi^2=77.35^{***}$)	부부단독가구	10.1	89.9	100.0 (2,095)	45.12	4.38**
	부부미혼자녀가구	4.9	95.1	100.0 (6,753)	42.07	
	편부모 및 조손가구	7.9	92.1	100.0 (598)	79.90	
	1인가구	6.9	93.1	100.0 (1,002)	87.69	
	기타가구	5.7	94.3	100.0 (987)	36.56	
고용원유무 ($\chi^2=51.17^{***}$)	없음	7.1	92.9	100.0 (8,903)	50.71	(-0.93)
	있음	3.2	96.8	100.0 (2,536)	40.04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제2절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1. 건강검진 수검률

최근 2년간 건강검진 수검률은 67.0%로,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9세 이상 일반국민의 52.8%에 비해 14.2%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가정의 주수입원(main earner)으로서 자영업자들이 자신들의 건강에 대한 투자를 일반국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추측된다.

〈표 4-7〉 최근 2년간 건강검진수검률¹⁾

(단위: %)

구분	국민건강영양조사 ²⁾						본조사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2012
수검률	47.1	47.4	47.9	48.0	50.1	52.8	67.0

주: 1) 최근 2년동안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응답자 비율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0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2010), 2011.12.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는 건강검진 수검률이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나 2~30대는 36.4%에 불과하여 연령 계층별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소득계층별로는 연간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건강검진 수검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적으로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4-8〉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최근 2년간 건강검진 수검률

(단위: %)

구 분		있음	없음	계 (명)
전체		67.0	33.0	100.0 (11,439)
성 ($\chi^2=9.72^{**}$)	남성	65.8	34.2	100.0 (6,283)
	여성	68.5	31.5	100.0 (5,156)
연령 ($\chi^2=906.14^{***}$)	40세 미만	36.4	63.6	100.0 (1,476)
	40~50세 미만	62.2	37.8	100.0 (3,275)
	50~60세 미만	75.5	24.5	100.0 (4,285)
	60세 이상	77.1	22.9	100.0 (2,397)
가구총소득 ($\chi^2=44.12^{***}$)	2천만 원 미만	66.9	33.1	100.0 (1,944)
	4천만 원 미만	63.8	36.2	100.0 (4,479)
	5천만 원 미만	68.7	31.3	100.0 (1,808)
	5천만 원 이상	70.9	29.1	100.0 (3,081)
가구형태 ($\chi^2=151.82^{***}$)	부부단독가구	74.4	25.6	100.0 (2,095)
	부부미혼자녀가구	67.4	32.6	100.0 (6,753)
	편부모 및 조손가구	62.3	37.7	100.0 (598)
	1인가구	52.7	47.3	100.0 (1,002)
	기타가구	65.9	34.1	100.0 (987)
고용원유무 ($\chi^2=0.08$)	없음	67.1	32.9	100.0 (8,903)
	있음	66.8	33.2	100.0 (2,536)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수검을 받은 건강검진의 종류별로는,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수검률이 16.7%에 달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수검률도 66.9%에 달하고 있다. 연령별로는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이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수검률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수검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가구총소득 수준별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수검률은 소득계층별로 약 60% 대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고 있으며,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은 소득이 높을수록 수검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9〉 최근 2년간 받은 건강검진 종류

(단위: %)

구 분		본인부담 건강검진	산업장특수 건강검진	보험공단 건강검진	가족회사 건강검진
전체		16.7	0.2	66.9	0.1
성	남성	17.6	0.3	65.6	0.1
	여성	15.6	0.2	68.4	0.1
연령	40세 미만	14.7	0.2	36.3	0.2
	40~50세 미만	16.0	0.2	62.2	0.1
	50~60세 미만	17.6	0.2	75.4	0.1
	60세 이상	17.4	0.4	76.7	0.1
가구총소득	2천만 원 미만	13.6	0.1	66.8	0.0
	4천만 원 미만	15.0	0.3	63.6	0.1
	5천만 원 미만	16.5	0.1	68.6	0.0
	5천만 원 이상	21.1	0.3	70.7	0.3
가구형태	부부단독가구	17.2	0.2	74.2	0.2
	부부미혼자녀가구	17.5	0.2	67.3	0.1
	편부모 및 조손가구	12.1	0.1	62.3	0.0
	1인가구	14.1	0.2	52.4	0.0
	기타가구	16.2	0.1	65.6	0.3
고용원유무	없음	15.7	0.2	66.9	0.1
	있음	20.3	0.3	66.6	0.0

주: 1) 전체 응답자 중에서 한 번이라도 각 종류의 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며, 따라서 각 행의 합이 100이 되지 않음.

2)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임.

2. 연간입원을

출산·급성/만성질환·사고·중독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입원을 경험한 자영업자의 비율은 5.5%로서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9세 이상 일반국민의 11.1%보다 낮게 나타났다.

평균입원기간은 약 14.9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11.6일보다 다소 길게 나타났으며, 본인부담금은 1,627천 원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986천 원보다 641천 원이나 높았다.

〈표 4-10〉 연간입원을, 입원당 평균 입원기간 및 평균 본인부담비

(단위: %, 일, 천 원)

구분	국민건강영양조사	본조사
연간입원률	11.1	5.5
입원당 평균기간	11.6	14.98
본인부담비	986	1,627.4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0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2010), 2011.12.

연간입원율을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8.7%, 50대 5.3% 40대 3.7% 등 연령이 높을수록 연간입원율이 높다. 소득수준별로는, 2천만 원 미만 8.4%, 5천만 원 이상 4.7% 등으로 총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연간입원율이 높는데, 이는 총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고연령층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1〉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연간입원 경험여부, 평균 입원일수 및 이용료

(단위: %, 일, 천 원)

구 분		없음	있음	계 (명)	평균 입원일수	F-value (t-value)	평균 이용료	F-value (t-value)
전체		5.5	94.5	100.0 (11,439)	17.3		1,627.4	
성 ($\chi^2=10.52^{**}$)	남성	4.8	95.2	100.0 (6,283)	18.4	(-0.93)	1,742.5	(-1.13)
	여성	6.2	93.8	100.0 (5,156)	16.2		1,520.0	
연령 ($\chi^2=70.57^{***}$)	40세 미만	4.1	95.9	100.0 (1,476)	12.3	1.49	954.5	1.85
	40~50세 미만	3.9	96.1	100.0 (3,275)	14.5		1,525.9	
	50~60세 미만	5.3	94.7	100.0 (4,285)	17.6		1,739.7	
	60세 이상	8.7	91.3	100.0 (2,397)	20.0		1,766.8	
가구총소득 ($\chi^2=41.80^{***}$)	2천만 원 미만	8.4	91.6	100.0 (1,944)	23.1	4.11**	2,186.0	4.18**
	4천만 원 미만	5.2	94.8	100.0 (4,479)	15.4		1,511.7	
	5천만 원 미만	4.2	95.8	100.0 (1,808)	21.2		1,062.4	
	5천만 원 이상	4.7	95.3	100.0 (3,081)	12.2		1,484.8	
가구형태 ($\chi^2=42.84^{***}$)	부부단독가구	6.5	93.5	100.0 (2,095)	23.9	2.35	1,987.4	1.00
	부부미혼자녀가구	4.4	95.6	100.0 (6,753)	16.3		1,539.1	
	편부모 및 조손가구	8.7	91.3	100.0 (598)	12.7		1,567.4	
	1인가구	6.9	93.1	100.0 (1,002)	14.2		1,611.4	
	기타가구	7.3	92.7	100.0 (987)	14.8		1,344.9	
고용원유무 ($\chi^2=11.18^{***}$)	있음	5.8	94.2	100.0 (8,903)	18.5	(-2.30*)	1,669.1	(-0.95)
	없음	4.1	95.9	100.0 (2,536)	11.3		1,418.5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함이 불일치할 수 있음.

3. 외래 이용률

지난 2주간 입원하지 않고 병의원, 보건소, 한의원 등의 외래의료를 이용한 경험률은 14.1%로서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19세 이상 일반국민의 31.4%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외래이용 횟수 당 평균 본인 부담비는 35.9천 원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38천 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4-12〉 지난 2주간 외래 이용 경험률, 이용횟수당 평균 본인부담비

(단위: %, 천 원)

구분	국민건강영양조사	본조사
외래이용경험률	31.4	14.1
외래이용횟수당 본인부담비	38	35.9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09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3차년도(2009), 2010.12.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23.2%, 50대 15.1%, 그리고 40대 미만 7.0% 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수준별로는 가구 총소득이 2천만 원 미만 경우가 19.9%로서 소득이 낮을수록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 중에는 고연령층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표 4-13〉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연간외래 이용률, 평균 이용횟수 및 이용료

(단위: %, 회, 천 원)

구분		있음	없음	계 (명)	평균 이용횟수	F-value (t-value)	평균 이용료	F-value (t-value)
전체		14.1	85.9	100.0(11,439)	2.2		79.0	
성	남성	13.0	87.0	100.0(6,283)	2.0	(4.29***)	84.5	(-0.63)
	여성	15.4	84.6	100.0(5,156)	2.4		73.2	
연령	40세 미만	7.0	93.0	100.0(1,476)	1.8	0.93	162.7	3.42*
	40~50세 미만	9.2	90.8	100.0(3,275)	2.2		118.4	
	50~60세 미만	15.1	84.9	100.0(4,285)	2.2		60.1	
	60세 이상	23.2	76.8	100.0(2,397)	2.2		64.2	
가구총소득	2천만 원 미만	19.9	80.1	100.0(1,944)	2.4	1.81	101.3	0.61
	4천만 원 미만	13.9	86.1	100.0(4,479)	2.1		69.3	
	5천만 원 미만	11.4	88.6	100.0(1,808)	2.3		87.9	
	5천만 원 이상	11.6	88.4	100.0(3,081)	2.1		72.3	
가구형태	부부단독가구	19.1	80.9	100.0(2,095)	2.2	2.09	57.2	1.51
	부부미혼자녀가구	11.8	88.2	100.0(6,753)	2.2		78.3	
	편부모 및 조손가구	20.1	79.9	100.0(598)	2.7		155.7	
	1인가구	12.8	87.2	100.0(1,002)	1.9		86.0	
	기타가구	16.6	83.4	100.0(987)	2.2		73.8	
고용원유무	없음	14.9	85.1	100.0(8,903)	2.2	(0.80)	81.6	(-0.63)
	있음	11.1	88.9	100.0(2,536)	2.3		66.6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4. 약국이용 경험률

지난 2주 동안 의약품, 건강식품, 위생용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이용한 경험률은 19.8%로,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19세 이상 일반국민의 32.6%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표 4-14〉 지난 2주간 약국이용 경험률

(단위: %)		
구 분	국민건강영양조사	본조사
약국이용경험률	32.6	19.8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0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2010), 2011.12.

〈표 4-15〉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약국 이용경험률, 평균 이용횟수 및 이용료

(단위: %, 회, 천 원)						
구 분	있음	없음	계 (명)	평균 이용횟수	F-value (t-value)	평균 이용료 F-value (t-value)
전체	19.8	80.2	100.0(11,439)	1.7		17.7
성						
남성	18.9	81.1	100.0(6,283)	1.7	(2.32*)	18.9
여성	20.9	79.1	100.0(5,156)	1.8		16.3 (-1.76)
($\chi^2=6.95^{**}$)						
연령						
40세 미만	12.4	87.6	100.0(1,476)	1.6	0.58	13.2
($\chi^2=197.71^{***}$)						
40~50세 미만	15.4	84.6	100.0(3,275)	1.7		21.4
50~60세 미만	21.2	78.8	100.0(4,285)	1.7		15.6
60세 이상	28.0	72.0	100.0(2,397)	1.8		18.9
가구총소득						
2천만 원 미만	26.1	73.9	100.0(1,944)	1.7	0.20	20.8
($\chi^2=77.16^{***}$)						
4천만 원 미만	19.4	80.6	100.0(4,479)	1.7		14.9
5천만 원 미만	15.2	84.8	100.0(1,808)	1.7		14.3
5천만 원 이상	18.5	81.5	100.0(3,081)	1.7		20.5
가구형태						
부부단독가구	24.8	75.2	100.0(2,095)	1.8	0.76	15.5
($\chi^2=80.00^{***}$)						
부부미혼자녀가구	17.5	82.5	100.0(6,753)	1.7		18.2
편부모 및 조손가구	25.5	74.5	100.0(598)	1.9		20.4
1인가구	17.6	82.4	100.0(1,002)	1.7		13.7
기타가구	23.8	76.2	100.0(987)	1.7		21.1
고용원유무						
없음	20.8	79.2	100.0(8,903)	1.7	(2.40*)	16.1
($\chi^2=23.53^{***}$)						
있음	16.4	83.6	100.0(2,536)	1.9		24.9 (4.73^{***})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제3절 의료서비스 미충족 욕구

1. 의료서비스 이용 제한 현황

조사대상 자영업자들 중 지난 1년 동안 의료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었으나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자는 약 1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세 이상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20.3%(2010년)에 비해 약 8.2%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표 4-16〉 연간미치료률¹⁾

(단위: %)

구분	국민건강영양조사 ²⁾					본조사
	2005	2007	2008	2009	2010	2012
비율	16.4	22.4	22.8	24.1	20.3	12.1

주: 1)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비율(19세 이상)

2)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0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2010), 2011.12.

지난 1년간 병의원을 이용하고 싶었으나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자의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 60대 이상이 13.5%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 1년간 병의원을 이용하고 싶었으나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자의 비율은 연간 가구총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4-17〉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연간 미치료율

(단위: %)

구 분		있음	없음	계 (명)
전체		12.1	87.9	100.0 (11,439)
성 ($\chi^2=29.20^{***}$)	남성	10.6	89.4	100.0 (6,283)
	여성	13.9	86.1	100.0 (5,156)
연령 ($\chi^2=19.25^{***}$)	40세 미만	8.9	91.1	100.0 (1,476)
	40~50세 미만	12.4	87.6	100.0 (3,275)
	50~60세 미만	12.1	87.9	100.0 (4,285)
	60세 이상	13.5	86.5	100.0 (2,397)
가구총소득 ($\chi^2=29.10^{***}$)	2천만 원 미만	15.2	84.8	100.0 (1,944)
	4천만 원 미만	12.1	87.9	100.0 (4,479)
	5천만 원 미만	11.4	88.6	100.0 (1,808)
	5천만 원 이상	10.2	89.8	100.0 (3,081)
가구형태 ($\chi^2=40.73^{***}$)	부부단독가구	15.0	85.0	100.0 (2,095)
	부부미혼자녀가구	11.4	88.6	100.0 (6,753)
	편부모 및 조손가구	16.6	83.4	100.0 (598)
	1인가구	9.4	90.6	100.0 (1,002)
	기타가구	10.5	89.5	100.0 (987)
고용원유무 ($\chi^2=16.51^{***}$)	없음	12.7	87.3	100.0 (8,903)
	있음	9.8	90.2	100.0 (2,536)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2. 의료서비스 이용 제한 이유

의료서비스 이용욕구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주로 생업 상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한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와 ‘가게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가 각각 63.0%, 18.8%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했다는 비율은 19세 이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르는 직접적인 비용부담보다는 생업활동에 매진해야 할 절박성이 높기 때문에 의

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4-18〉 연간미치료를¹⁾의 미치료 이유

(단위: %)

구 분	경제적 문제	예약 곤란	교통 불편	시간 없음	기다리기 싫음	가벼운 증상	가게봐줄 사람없음	기타	계
본조사	7.9	0.1	0.6	63.0	3.5	5.8	18.8	0.4	100.0
국건영 ²⁾	24.6	0.9	1.9	32.5	1.7	22.9	-	15.5	100.0

주: 1)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비율(19세 이상)

2)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9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3차년도(2009), 2010.12.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은 경제적 이유로 못 갔다는 비율이 15.4%로 높게 나타난 반면, 40대 미만은 시간이 없어서와 가게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라는 비율이 각각 68.6%, 27.9%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이유의 비율이 낮은 반면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9〉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미치료 이유

(단위: %)

구 분		①	②	③	④	계 (명)
전체		7.9	63.0	18.7	10.4	100.0(1,382)
성 ($\chi^2=35.87^{***}$)	남성	9.9	66.0	12.6	11.5	100.0(665)
	여성	6.1	60.1	24.5	9.3	100.0(716)
연령 ($\chi^2=68.34^{***}$)	40세 미만	2.0	68.6	27.9	1.5	100.0(131)
	40~50세 미만	5.4	65.6	20.9	8.1	100.0(406)
	50~60세 미만	6.8	65.5	16.3	11.4	100.0(520)
	60세 이상	15.4	53.3	16.2	15.0	100.0(324)
가구총소득 ($\chi^2=55.89^{***}$)	2천만 원 미만	16.7	55.1	16.9	11.3	100.0(296)
	4천만 원 미만	7.8	60.1	21.6	10.5	100.0(542)
	5천만 원 미만	3.1	68.8	18.7	9.4	100.0(205)
	5천만 원 이상	3.2	70.6	15.7	10.6	100.0(315)

〈표 4-19〉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미치료 이유 (계속)

		(단위: %)				
구 분		①	②	③	④	계 (명)
가구형태 ($\chi^2=49.78^{***}$)	부부단독가구	9.9	59.7	17.9	12.6	100.0(315)
	부부미혼자녀가구	5.1	67.1	18.2	9.6	100.0(770)
	편부모 및 조손가구	19.3	52.7	19.1	8.9	100.0(99)
	1인가구	3.5	55.9	28.8	11.8	100.0(94)
	기타가구	16.0	58.3	16.4	9.3	100.0(104)
고용원유무 ($\chi^2=21.61^{***}$)	없음	8.5	60.2	20.1	11.2	100.0(1,134)
	있음	5.2	75.9	12.5	6.4	100.0(247)

① 돈이 없어서, ② 시간이 없어서, ③ 가게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④ 기타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3. 미충족 욕구에 대한 조치방법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한 경우 이들 의료서비스 이용욕구는 결국 미충족(unmet)으로 남거나 과소 충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한 경우의 대처방법으로 ‘집에 있던 상비약을 복용하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먹었다’가 60.7%로 가장 많고, ‘그냥 참았다’도 3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는 40대 미만 집단에서 그냥 참는다는 비율이 42.0%로 월등히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냥 참는다는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집에 있던 상비약을 복용하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먹었다는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4-20〉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대처방법

(단위: %)

구 분		①	②	③	④	계 (명)
전체		38.0	60.7	1.1	0.2	100.0(1,382)
성 ($\chi^2=4.23$)	남성	39.3	59.4	0.9	0.4	100.0(665)
	여성	36.8	61.9	1.2	0.0	100.0(716)
연령 ($\chi^2=5.69$)	40세 미만	42.0	56.6	0.6	0.8	100.0(131)
	40~50세 미만	37.8	61.0	1.0	0.2	100.0(406)
	50~60세 미만	37.7	61.2	0.9	0.1	100.0(520)
	60세 이상	37.2	61.1	1.7	0.0	100.0(324)
가구총소득 ($\chi^2=28.24^{***}$)	2천만 원 미만	32.8	65.1	2.1	0.0	100.0(296)
	4천만 원 미만	40.6	58.7	0.7	0.0	100.0(542)
	5천만 원 미만	36.0	60.4	2.3	1.3	100.0(205)
	5천만 원 이상	39.3	60.5	0.2	0.0	100.0(315)
가구형태 ($\chi^2=17.56$)	부부단독가구	29.3	68.6	1.8	0.3	100.0(315)
	부부미혼자녀가구	40.3	58.6	0.8	0.2	100.0(770)
	편부모 및 조손가구	41.9	58.1	0.0	0.0	100.0(99)
	1인가구	38.1	60.0	1.9	0.0	100.0(94)
	기타가구	43.5	55.6	0.9	0.0	100.0(104)
고용원유무 ($\chi^2=7.71$)	없음	39.1	59.6	1.2	0.1	100.0(1,134)
	있음	32.9	65.8	0.6	0.7	100.0(247)

① 그냥 참았다, ② 집에 있던 상비약을 복용하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먹었다

③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였다, ④ 가정용의료기기를 사용하였다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제4절 건강보험 가입 현황

1. 건강보험 가입형태

자영업자들의 건강보험 가입형태를 살펴본 결과 지역가입자 비율이 86.5%이었고 직장가입자 비율이 13.0%였다. 자영업자중 직장가입자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도 1인 이상 유급종사자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 가입한 경우이거나, 자영업

자들 중에도 자녀나 부모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 직장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미만의 직장가입자 비율이 14.9%로 가장 높고 40대가 14.7%, 60대 이상 12.3%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는 자녀들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40대 미만과 40대는 사업체 중 직장가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직장가입자 비율을 소득계층별로 보면, 소득 5천만 원 이상이 19.4%, 4천~5천만 원이 14.7%로 소득이 높을수록 직장가입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이 잘되는 경우 종업원들도 많이 고용하게 되어 직장에 가입하는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4-21〉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건강보험 가입 형태

		(단위: %)					
구 분		지역건강 보험	직장건강 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미가입	계 (명)
전체		86.5	13.0	0.2	0.1	0.1	100.0 (11,439)
성	남성	88.2	11.4	0.2	0.1	0.1	100.0 (6,283)
	($\chi^2=37.53^{***}$) 여성	84.4	15.0	0.2	0.2	0.2	100.0 (5,156)
연령	40세 미만	84.6	14.9	0.2	0.2	0.1	100.0 (1,476)
	($\chi^2=27.83^{**}$) 40~50세 미만	84.7	14.7	0.2	0.2	0.2	100.0 (3,275)
	50~60세 미만	88.1	11.5	0.2	0.1	0.1	100.0 (4,285)
	60세 이상	87.3	12.3	0.2	0.1	0.1	100.0 (2,397)
가구총소득	2천만 원 미만	88.8	10.4	0.1	0.4	0.4	100.0 (1,944)
	($\chi^2=22.38^{***}$) 4천만 원 미만	90.2	9.1	0.4	0.2	0.2	100.0 (4,479)
	5천만 원 미만	85.3	14.7	0.0	0.0	0.0	100.0 (1,808)
	5천만 원 이상	80.4	19.4	0.1	0.0	0.1	100.0 (3,081)
가구형태	부부단독가구	88.5	11.0	0.3	0.0	0.2	100.0 (2,095)
	($\chi^2=109.09^{***}$) 부부미혼자녀가구	85.0	14.7	0.2	0.1	0.1	100.0 (6,753)
	편부모 및 조손가구	88.8	9.2	1.2	0.8	0.0	100.0 (598)
	1인가구	91.0	8.7	0.0	0.2	0.1	100.0 (1,002)
	기타가구	86.7	12.8	0.0	0.1	0.4	100.0 (987)
고용원유무	없음	90.7	8.8	0.2	0.2	0.2	100.0 (8,903)
	($\chi^2=627.02^{***}$) 있음	71.9	27.7	0.3	0.0	0.1	100.0 (2,536)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2. 건강보험료 미납경험여부

조사대상 자영업자의 12.3%가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13.9%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12.6%, 2~30대가 12.1%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미납경험이 많아 2천만 원 미만이 1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천만 원 이상이 10.2%로 가장 낮았다.

미납의 이유는 경제적 이유나 바빠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12.3%가 미납경험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자영업자 보험료 납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2〉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건강보험료 미납경험 여부

(단위: %)

구 분		있음	없음	계 (명)
전체		12.3	87.7	100.0 (11,384)
성 ($\chi^2=0.33$)	남성	12.1	87.9	100.0 (6,259)
	여성	12.5	87.5	100.0 (5,125)
연령 ($\chi^2=26.16^{***}$)	40세 미만	12.1	87.9	100.0 (1,468)
	40~50세 미만	13.9	86.1	100.0 (3,256)
	50~60세 미만	12.6	87.4	100.0 (4,266)
	60세 이상	9.5	90.5	100.0 (2,388)
가구총소득 ($\chi^2=31.40^{***}$)	2천만 원 미만	15.4	84.6	100.0 (1,928)
	4천만 원 미만	12.4	87.6	100.0 (4,448)
	5천만 원 미만	11.2	88.8	100.0 (1,808)
	5천만 원 이상	10.2	89.8	100.0 (3,074)
가구형태 ($\chi^2=39.18^{***}$)	부부단독가구	9.8	90.2	100.0 (2,086)
	부부미혼자녀가구	12.0	88.0	100.0 (6,728)
	편부모 및 조손가구	16.8	83.2	100.0 (586)
	1인가구	16.4	83.6	100.0 (999)
	기타가구	12.8	87.2	100.0 (982)
고용원유무 ($\chi^2=0.22$)	없음	12.4	87.6	100.0 (8,858)
	있음	12.0	88.0	100.0 (2,526)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1)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만 분석함.

3. 민간건강보험 가입여부

조사대상 자영업자의 72.3%가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가 84.5%로 가장 높고 2~30대가 82.7%로 높은 반면에 50대가 75.2%, 60세 이상이 43.9%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연간 가구총소득이 높을수록 민간건강보험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자영업자의 주요 특성별 민간건강보험 가입 비율 및 월 평균 보험료

(단위: %, 천 원)

구 분	미가입	가입	납부중 연체, 미납, 완납			계(명)	평균 보험료	F-value (t-value)
			납부중	연체	미납			
전체	27.7	72.3	70.7	0.2	1.3	100.0(11,439)	159.4	
성 남	30.3	69.7	68.3	0.2	1.2	100.0(6,283)	163.3	(-2.85**)
여	24.6	75.4	73.7	0.3	1.4	100.0(5,156)	155.1	
연령 40세 미만	17.3	82.7	81.9	0.5	0.3	100.0(1,476)	157.0	35.65***
40~50세 미만	15.5	84.5	83.5	0.2	0.9	100.0(3,275)	172.7	
50~60세 미만	24.8	75.2	73.6	0.3	1.2	100.0(4,285)	160.0	
60세 이상	56.1	43.9	41.2	0.0	2.7	100.0(2,397)	123.2	
가구총소득 2천만 원 미만	49.7	50.3	47.7	0.4	2.2	100.0(1,944)	120.7	105.81***
4천만 원 미만	27.9	72.1	70.5	0.3	1.3	100.0(4,479)	142.4	
5천만 원 미만	20.4	79.6	77.9	0.3	1.3	100.0(1,808)	161.1	
5천만 원 이상	17.9	82.1	81.3	0.1	0.7	100.0(3,081)	192.6	
가구형태 부부단독가구	46.4	53.6	51.8	0.0	1.9	100.0(2,095)	128.0	26.75***
부부미혼자녀가구	19.9	80.1	78.7	0.3	1.1	100.0(6,753)	168.5	
편부모 및 조손가구	34.2	65.8	65.0	0.3	0.5	100.0(598)	144.1	
1인가구	37.5	62.5	61.4	0.3	0.9	100.0(1,002)	143.4	
기타가구	27.8	72.2	69.6	0.3	2.3	100.0(987)	161.6	
고용원유무 없음	29.9	70.1	68.5	0.2	1.4	100.0(8,903)	149.0	(12.86***)
있음	20.1	79.9	78.6	0.4	0.9	100.0(2,536)	191.2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제5절 요약 및 정책 제언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5인 미만 자영업 사업주의 건강수준이나 의료이용, 건강검진 수준, 민간건강보험 가입 등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표본추출 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선별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대상 자영업자의 경우 비록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지라도 각 가구의 주된 수입원(main earner)일 가능성이 많고, 이들의 경우 타 가구원에 비해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강하지 못할 경우 자영업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사시점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는 비교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즉,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폐업하거나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된 대상자의 결과만을 집계할 경우 건강수준이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추론이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면 본 조사결과를 놓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의 필요성이 타 사회계층이나 인구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의 특성 등에 맞게 더욱 세밀하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보건의료 부문의 지원은 크게 보건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이용의 접근성 제고, 자영업자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 지원 강화, 영업장 건강관련 환경 개선 지원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보건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가장 큰 장애요인은 영업장 운영으로

인한 시간제한으로, 자영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중산층을 포함하는 일반국민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공급망 확대를 위해서는 종전까지 정부가 추진해 오던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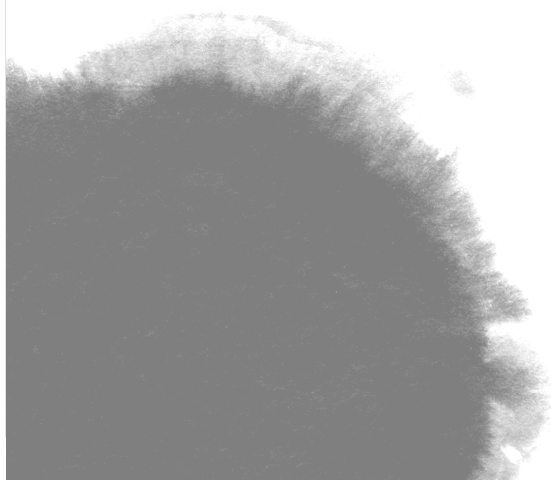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둘째, 자영업자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2012년 2월 전국의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은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해 보험료의 1/3~1/2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적용대상 사업장 기준은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고, 근로자 기준은 월평균 보수 35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이다. 그러나 이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만 적용되고 있어서 앞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건강보험 보험료를 포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자영업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의 산업을 고려하여 영업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직업병 및 산재 예방, 위기 자영업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상담·교육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자영업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소양교육이나 위생교육 등 교육 시에 건강관리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필요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장의 건강관련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 내 환경단체 등 NGO, 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여 영세 영업장에서의 질병 유발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 정화 활동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환경 및 건강관련 전문가로 자원봉사사업 조직을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장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실태



제5장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실태

본 장에서는 5인 미만 자영업 사업주의 노후준비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일반적인 노후준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예상 은퇴연령, 경제적 노후준비, 건강준비, 여가 및 사회활동 준비 등에 대한 실태를 살펴본다. 이후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후소득 대비 준비 실태와 여가활동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분석결과를 기초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 절 일반적인 노후준비 실태

1. 예상 은퇴연령

조사 대상 자영업자의 평균 예상 은퇴 연령은 65.55세로 일반 국민들의 평균 퇴직연령에 비해 늦은 은퇴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3.5년 정도 늦게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자영업자의 연령대가 높을수록 본인의 예상 은퇴연령을 높게 응답했다. 가령 40세 미만의 경우 예상 은퇴연령이 60.60세라고 응답한 반면 60세 이상의 경우 예상 은퇴연령을 72.19세로 응답해 약 12년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학력수준별로 살펴보면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예상 은퇴연

령이 높게 나타나 중졸 이하는 69.43세, 대졸 이상은 63.23세로 응답했다.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예상 은퇴연령을 높게 응답해, 가구총소득이 2천 만 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68.28세로 응답한 반면 소득이 5천 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의 경우 64.4세로 응답하였다.

〈표 5-1〉 평균 예상 은퇴연령

		(단위: 세, 명)	
	구분	평균	N
전체		65.55	11,439
본인성별	남자	67.11	6,283
	여자	63.76	5,156
본인만나이	40세 미만	60.60	1,476
	40~50세 미만	62.66	3,275
	50~60세 미만	65.87	4,285
	60세 이상	72.19	2,397
베이비붐세대구분	54년생 이하	71.44	2,949
	55~63년생	65.44	3,925
	64~67년생	63.12	1,445
	68~74년생	62.01	1,957
	75년생 이상	60.41	1,160
학력	중졸 이하	69.43	2,483
	고졸	65.17	6,070
	대학졸 이상	63.23	2,885
결혼상태	미혼	61.82	820
	기혼유배우자	65.68	9,496
	기혼무배우자	67.71	1,122
구시군	구	65.98	5,294
	시	65.22	5,407
	군	65.68	738
가구원수	1명	65.76	1,002
	2명	68.71	2,443
	3명	65.28	2,481
	4명 이상	64.34	5,513
주택점유형태	자가	65.93	7,831
	전세	64.13	1,974
	월세	64.90	865
	기타	64.84	209

〈표 5-1〉 평균 예상 은퇴연령 (계속)

(단위: 세)

	구분	평균	명
가구총소득	2천만 원 미만	68.28	1,944
	4천만 원 미만	65.64	4,479
	5천만 원 미만	64.60	1,808
	5천만 원 이상	64.40	3,081
가구형태	부부단독가구	69.25	2,095
	부부미혼자녀가구	64.45	6,753
	편부모 및 조손가구	65.65	598
	1인가구	65.76	1,002
	기타가구	65.56	987
종사자수	1명	66.14	5,985
	2명	65.30	4,039
	3명~4명	64.15	1,416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	300만 원 미만	67.61	2,929
	500만 원 미만	65.65	2,660
	1000만 원 미만	64.26	2,763
	1000만 원 이상	64.40	2,571
자영업 진입연도	~89년	70.24	2,128
	90~94년	66.79	1,594
	95~99년	65.45	1,546
	00~04년	65.20	2,450
	05~12년	62.75	3,716
	무응답·거절	73.39	6
자영업 진입연령	~20대	64.39	2,586
	30대	64.81	4,634
	40대	66.23	3,056
	50대 이상	69.74	1,154
	무응답·거절	78.13	9
자영업 지속기간	0~5년	62.38	2,766
	6~10년	64.53	2,275
	11~15년	65.38	2,032
	16~20년	66.40	1,417
	20년 초과	69.60	2,608
	무응답·거절	66.26	34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2. 경제적 노후준비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32.4%는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비율도 약 33.1%로 전체 자영업자의 약 1/3이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머지 1/3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남성=32.6%, 여성=33.8%)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도가 높다. 학력수준이 높은 자영업자의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의 24.7%가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반면 대졸 이상의 고학력 자영업자의 40.5%가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소득수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소득수준이 높은 자영업자의 경제적 노후준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경우 경제적 노후준비도가 높았으며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 그리고 가구 형태에 있어서는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가 경제적 노후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2〉 경제적 노후준비

(단위: %)

구분		① 전혀 하고 있지 않다	② 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 이다	④ 하고 있는 편이다	⑤ 많이 하고 있다	계(명)
전체		6.6	25.8	34.4	31.1	2.0	100.0(11,439)
성별 ($\chi^2=4.449$)	남자	6.7	25.7	35.1	30.5	2.1	100.0(6,283)
	여자	6.6	26.0	33.6	31.9	1.9	100.0(5,156)
본인만나이 ($\chi^2=42.351^{***}$)	40세 미만	6.0	24.6	34.6	32.7	2.0	100.0(1,476)
	40~50세 미만	5.8	25.5	34.3	32.7	1.7	100.0(3,274)
	50~60세 미만	6.9	26.4	32.7	31.9	2.1	100.0(4,285)
	60세 이상	7.7	25.8	37.7	26.7	2.1	100.0(2,397)

〈표 5-2〉 경제적 노후준비 (계속)

(단위: %)

	구분	① 전혀 하고 있지 않다	② 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 이다	④ 하고 있는 편이다	⑤ 많이 하고 있다	계(명)
베이비붐 세대구분 ($\chi^2=49.61^{***}$)	54년생 이하	7.6	25.4	37.3	27.5	2.1	100.0(2,949)
	55~63년생	6.6	27.2	32.1	32.0	2.0	100.0(3,925)
	64~67년생	6.2	24.4	34.6	33.0	1.7	100.0(1,444)
	68~74년생	5.4	25.5	33.9	33.5	1.7	100.0(1,957)
	75년생 이상	6.6	24.2	35.6	31.1	2.5	100.0(1,160)
학력 ($\chi^2=215.37^{***}$)	중졸 이하	10.3	28.7	36.2	23.0	1.7	100.0(2,484)
	고졸	5.8	27.0	34.2	30.9	2.1	100.0(6,069)
	대학졸 이상	5.1	20.9	33.4	38.6	1.9	100.0(2,885)
결혼상태 ($\chi^2=113.06^{***}$)	미혼	8.8	25.1	34.8	28.9	2.4	100.0(821)
	기혼유배우자	5.8	25.3	34.4	32.4	2.0	100.0(9,496)
	기혼무배우자	11.9	30.8	34.0	22.2	1.2	100.0(1,122)
구시군 ($\chi^2=151.24^{***}$)	구	9.3	25.8	33.8	29.2	1.8	100.0(5,294)
	시	4.3	26.6	34.5	32.2	2.4	100.0(5,407)
	군	4.5	20.6	37.8	36.7	0.4	100.0(738)
가구원수 ($\chi^2=104.07^{***}$)	1명	10.1	29.5	34.7	25.0	0.7	100.0(1,003)
	2명	5.4	25.2	38.8	28.9	1.8	100.0(2,444)
	3명	8.2	26.7	32.7	30.1	2.3	100.0(2,481)
	4명 이상	5.9	25.1	33.2	33.7	2.2	100.0(5,512)
가구총소득 ($\chi^2=639.00^{***}$)	2천만 원 미만	14.2	32.4	32.5	18.8	2.1	100.0(1,945)
	4천만 원 미만	6.8	28.0	36.1	26.8	2.4	100.0(4,479)
	5천만 원 미만	4.0	24.3	37.6	32.8	1.3	100.0(1,807)
	5천만 원 이상	3.1	20.0	31.1	43.9	1.8	100.0(3,080)
가구형태 ($\chi^2=138.54^{***}$)	부부단독가구	4.3	24.3	39.7	30.2	1.5	100.0(2,095)
	부부미혼자녀가구	6.3	25.2	33.5	32.8	2.2	100.0(6,753)
	편부모 및 조손가구	11.0	30.4	33.2	23.2	2.2	100.0(599)
	1인가구	10.1	29.5	34.7	25.0	0.7	100.0(1,003)
	기타가구	7.4	27.2	30.2	32.5	2.7	100.0(987)
종사자수 ($\chi^2=103.79^{***}$)	1명	7.3	27.1	35.5	28.2	1.8	100.0(5,985)
	2명	6.4	25.6	33.9	32.0	2.0	100.0(4,039)
	3명~4명	4.2	21.0	31.4	40.8	2.6	100.0(1,416)
사업체	300만 원 미만	10.4	29.6	35.3	22.5	2.3	100.0(2,930)
월평균매출액 ($\chi^2=380.12^{***}$)	500만 원 미만	5.6	29.1	35.4	28.0	1.9	100.0(2,660)
	1000만 원 미만	4.7	23.7	36.8	33.1	1.6	100.0(2,764)
	1000만 원 이상	4.6	19.8	31.0	42.7	2.0	100.0(2,571)

〈표 5-2〉 경제적 노후준비 (계속)

(단위: %)

구분	① 전혀 하고 있지 않다	② 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 이다	④ 하고 있는 편이다	⑤ 많이 하고 있다	계(명)
자영업 ~89년	7.3	24.4	37.3	28.8	2.3	100.0(2,128)
진입연도 90~94년	6.5	27.2	34.8	29.2	2.3	100.0(1,594)
($\chi^2=54.57^{***}$) 95~99년	5.0	24.3	33.3	35.5	1.9	100.0(1,545)
00~04년	6.2	27.8	34.6	29.7	1.7	100.0(2,449)
05~12년	7.2	25.5	33.0	32.4	1.9	100.0(3,716)
무응답·거절	33.3	16.7	33.3	16.7	0.0	100.0(6)
자영업 ~20대	5.5	25.7	35.2	31.3	2.4	100.0(2,586)
진입연령 30대	6.3	25.1	34.8	32.1	1.7	100.0(4,633)
($\chi^2=38.76^{***}$) 40대	7.3	26.6	33.4	30.9	1.9	100.0(3,056)
50대 이상	8.8	27.0	34.2	27.4	2.5	100.0(1,154)
무응답·거절	22.2	44.4	22.2	11.1	0.0	100.0(9)
자영업 0~5년	7.3	24.7	32.5	33.5	1.9	100.0(2,764)
지속기간 6~10년	5.4	26.1	36.3	30.5	1.6	100.0(2,276)
($\chi^2=133.17^{***}$) 11~15년	6.0	26.2	33.9	32.0	1.8	100.0(2,032)
16~20년	4.9	26.5	33.1	33.8	1.7	100.0(1,417)
20년 초과	7.2	24.7	37.4	28.3	2.4	100.0(2,609)
무응답·거절	14.9	36.3	23.4	21.3	4.1	100.0(342)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3. 노후대비 건강준비

조사대상 자영업자의 24.9%는 노후대비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28.6%는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노후대비 건강관리의 성별 차이는 카이스퀘어 검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와 집단간 통계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실제 비율에서의 차이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노후대비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력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은 자영업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노후대비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령 중졸 이하의 저학력 자영업자 가운데 17.8%만이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가운데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37.9%였다. 또한 기혼이며 배우자가 있는 자영업자와(29.6%) 미혼 자영업자(33.0%)의 경우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기혼 무배우자의 경우 32.8%가 노후대비 건강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사하게 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 비해 많을수록 건강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형태에 있어서도 1인가구의 경우 29.2%, 그리고 편부모 및 조손가구의 경우 30.0%가 노후대비 건강관리를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규모와 형태가 노후대비 건강준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3〉 노후대비 건강준비

(단위: %)

구분		①전혀 하고 있지 않다	②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 이다	④하고 있는 편이다	⑤많이 하고 있다	계(명)
전체		4.4	20.5	46.6	27.6	1.0	100.0(11,439)
본인성별 ($\chi^2=28.72^{**}$)	남자	4.7	19.1	46.5	28.5	1.2	100.0(6,283)
	여자	4.0	22.3	46.6	26.5	0.7	100.0(5,156)
본인만나이 ($\chi^2=125.20^{***}$)	40세 미만	3.2	19.4	43.1	32.4	2.0	100.0(1,477)
	40~50세 미만	3.8	18.9	47.1	29.4	0.7	100.0(3,276)
	50~60세 미만	4.2	20.1	47.2	28.0	0.6	100.0(4,285)
	60세 이상	6.2	24.2	46.7	21.6	1.3	100.0(2,397)
베이비붐 세대구분 ($\chi^2=117.96^{***}$)	54년생 이하	5.9	23.3	47.0	22.7	1.1	100.0(2,949)
	55~63년생	4.1	20.3	46.6	28.4	0.6	100.0(3,924)
	64~67년생	3.9	18.4	48.3	28.7	0.8	100.0(1,445)
	68~74년생	3.3	19.1	46.8	30.1	0.7	100.0(1,957)
	75년생 이상	3.7	19.4	42.5	32.0	2.4	100.0(1,159)
학력 ($\chi^2=314.16^{***}$)	중졸 이하	6.5	26.7	49.1	17.1	0.7	100.0(2,484)
	고졸	4.1	20.0	47.4	27.7	0.8	100.0(6,071)
	대학졸 이상	3.1	16.4	42.7	36.4	1.5	100.0(2,886)
결혼상태 ($\chi^2=121.87^{***}$)	미혼	5.5	19.4	42.1	30.8	2.2	100.0(821)
	기혼유배우자	4.0	20.0	46.5	28.7	0.9	100.0(9,496)
	기혼무배우자	6.6	26.2	50.4	15.9	0.9	100.0(1,122)
구시군 ($\chi^2=237.94^{***}$)	구	7.2	22.0	44.9	24.9	0.9	100.0(5,294)
	시	1.6	19.4	48.1	29.9	1.0	100.0(5,406)
	군	3.5	18.3	47.3	29.4	1.5	100.0(738)

〈표 5-3〉 노후대비 건강준비 (계속)

(단위: %)

	구분	①전혀 하고 있지 않다	②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 이다	④하고 있는 편이다	⑤많이 하고 있다	계(명)
가구원수 ($\chi^2=88.55^{***}$)	1명	5.6	23.6	47.0	22.4	1.5	100.0 (1,002)
	2명	3.3	23.3	48.4	24.0	0.9	100.0 (2,443)
	3명	5.6	20.7	44.5	28.0	1.3	100.0 (2,482)
	4명 이상	4.0	18.7	46.6	30.0	0.7	100.0 (5,512)
가구총소득 ($\chi^2=401.50^{***}$)	2천만 원 미만	7.7	27.9	46.6	16.7	1.1	100.0 (1,944)
	4천만 원 미만	5.0	21.8	47.8	24.7	0.7	100.0 (4,479)
	5천만 원 미만	2.7	16.9	48.6	30.7	1.1	100.0 (1,809)
	5천만 원 이상	2.4	16.4	43.1	36.9	1.2	100.0 (3,080)
가구형태 ($\chi^2=104.53^{***}$)	부부단독가구	2.9	23.0	48.6	24.4	1.1	100.0 (2,095)
	부부미혼자녀가구	4.4	19.4	45.7	29.8	0.8	100.0 (6,753)
	편부모 및 조손가구	7.3	22.7	49.6	18.9	1.5	100.0 (599)
	1인가구	5.6	23.6	47.0	22.4	1.5	100.0 (1,002)
	기타가구	4.3	18.9	46.0	29.6	1.2	100.0 (987)
종사자수 ($\chi^2=83.24^{***}$)	1명	4.6	21.2	47.8	25.6	0.9	100.0 (5,984)
	2명	4.6	20.9	46.3	27.3	1.0	100.0 (4,038)
	3명~4명	2.8	17.0	42.0	37.1	1.1	100.0 (1,417)
사업체 월평균매출액 ($\chi^2=203.08^{***}$)	300만 원 미만	6.7	23.4	46.9	22.0	1.0	100.0 (2,929)
	500만 원 미만	2.8	22.9	48.2	25.3	0.9	100.0 (2,660)
	1000만 원 미만	4.1	19.7	47.1	28.4	0.7	100.0 (2,762)
	1000만 원 이상	3.7	16.3	43.5	35.5	1.0	100.0 (2,572)
자영업 진입연도 ($\chi^2=39.11^{**}$)	~89년	5.4	21.0	46.8	25.6	1.3	100.0 (2,128)
	90~94년	4.2	21.8	47.7	25.5	0.8	100.0 (1,594)
	95~99년	2.8	19.0	46.7	30.7	0.8	100.0 (1,545)
	00~04년	4.3	21.3	46.2	27.4	0.8	100.0 (2,450)
	05~12년	4.5	19.9	46.0	28.5	1.0	100.0 (3,716)
	무응답·거절	0.0	0.0	83.3	16.7	0.0	100.0 (6)
자영업 진입연령 ($\chi^2=87.76^{***}$)	~20대	3.4	19.1	45.1	30.9	1.5	100.0 (2,587)
	30대	4.2	20.7	46.9	28.2	1.0	100.0 (4,634)
	40대	4.5	20.7	47.9	26.5	0.4	100.0 (3,056)
	50대이상	6.8	22.7	48.5	20.8	1.2	100.0 (1,153)
	무응답·거절	0.0	0.0	88.9	11.1	0.0	100.0 (9)
자영업 지속기간 ($\chi^2=142.32^{***}$)	0~5년	4.3	20.0	45.9	29.0	0.9	100.0 (2,766)
	6~10년	3.9	20.3	47.4	27.9	0.6	100.0 (2,276)
	11~15년	4.0	20.2	45.0	29.9	0.8	100.0 (2,032)
	16~20년	2.6	22.2	46.7	27.9	0.6	100.0 (1,416)
	20년 초과	5.4	21.0	47.4	25.2	1.0	100.0 (2,608)
	무응답·거절	9.7	18.5	49.1	17.4	5.3	100.0 (340)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4. 노후의 여가 및 사회활동 준비

자영업자는 특히 노후대비 여가 준비와 사회활동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자영업자 가운데 47.1%가 노후대비 여가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여가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은 13.4%에 불과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노후대비 여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남성의 경우 44.8%, 여성의 경우 49.8%가 노후대비 여가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 연령이 낮을수록 여가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력과 소득수준에 따른 노후 여가준비 차이가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나 학력이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인 경우 여가준비를 하고 있는 비율은 8.3%에 불과하고 과반수 이상(60.4%)이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20.2%가 여가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못하고 있는 비율은 33.0%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가구 총소득이 2천만 원 미만으로 저소득 자영업자인 경우 9%만이 노후 여가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60.8%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반면 5천만 원 이상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18.2%가 노후 여가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37.3%로 소득수준간 노후 여가준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표 5-4〉 노후대비 여가준비

		(단위: %)					
구분		①전혀 하고 있지 않다	②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 이다	④하고 있는 편이다	⑤많이 하고 있다	계(명)
전체		10.3	36.8	39.5	12.9	0.5	100.0(11,439)
본인성별 ($\chi^2=35.07^{***}$)	남자	9.4	35.4	40.8	13.8	0.6	100.0(6,283)
	여자	11.4	38.4	38.0	11.8	0.4	100.0(5,156)

〈표 5-4〉 노후대비 여가준비 (계속)

(단위: %)

구분		①전혀 하고 있지 않다	②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 이다	④하고 있는 편이다	⑤많이 하고 있다	계(명)
본인만나이 ($\chi^2=119.75^{***}$)	40세 미만	7.0	31.4	46.5	14.7	0.3	100.0(1,477)
	40~50세 미만	9.5	35.2	40.6	14.4	0.3	100.0(3,275)
	50~60세 미만	10.9	38.2	39.0	11.5	0.4	100.0(4,284)
	60세 이상	12.4	39.5	34.8	12.1	1.1	100.0(2,397)
베이비붐세대구분 ($\chi^2=129.57^{***}$)	54년생 이하	12.1	39.4	35.4	12.2	0.9	100.0(2,949)
	55~63년생	10.6	38.1	39.3	11.6	0.4	100.0(3,925)
	64~67년생	10.4	38.2	36.1	15.0	0.3	100.0(1,444)
	68~74년생	8.4	33.2	44.4	13.7	0.3	100.0(1,957)
	75년생 이상	7.8	29.8	47.0	15.0	0.3	100.0(1,160)
학력 ($\chi^2=516.10^{***}$)	중졸 이하	16.8	43.6	31.3	7.6	0.7	100.0(2,482)
	고졸	9.9	38.4	39.4	11.8	0.4	100.0(6,070)
	대학졸 이상	5.6	27.4	46.8	19.7	0.5	100.0(2,885)
결혼상태 ($\chi^2=176.26^{***}$)	미혼	10.0	28.3	45.7	15.9	0.1	100.0(820)
	기혼유배우자	9.5	36.6	39.9	13.4	0.6	100.0(9,496)
	기혼무배우자	17.7	44.1	31.9	6.3	0.0	100.0(1,121)
구시군 ($\chi^2=68.86^{***}$)	구	12.1	35.4	38.9	13.3	0.3	100.0(5,295)
	시	9.1	38.0	40.3	12.1	0.6	100.0(5,406)
	군	6.4	38.0	38.7	15.6	1.4	100.0(737)
가구원수 ($\chi^2=49.35^{***}$)	1명	11.7	38.2	38.2	11.8	0.1	100.0(1,002)
	2명	9.6	38.3	38.7	12.2	1.1	100.0(2,442)
	3명	11.9	36.3	38.0	13.5	0.3	100.0(2,482)
	4명이상	9.6	36.1	40.8	13.1	0.4	100.0(5,513)
가구총소득 ($\chi^2=418.36^{***}$)	2천만 원 미만	18.5	42.3	30.7	8.0	0.5	100.0(1,944)
	4천만 원 미만	11.1	38.6	38.6	11.3	0.4	100.0(4,479)
	5천만 원 미만	8.4	34.9	42.5	13.4	0.8	100.0(1,807)
	5천만 원 이상	5.3	32.0	44.5	17.8	0.4	100.0(3,080)
가구형태 ($\chi^2=139.9^{***}$)	부부단독가구	8.4	38.1	39.1	13.1	1.3	100.0(2,096)
	부부미혼자녀가구	9.8	35.3	40.8	13.8	0.4	100.0(6,753)
	편부모 및 조손가구	19.1	39.3	34.1	7.5	0.0	100.0(598)
	1인가구	11.7	38.2	38.2	11.8	0.1	100.0(1,002)
	기타가구	11.5	41.0	36.8	10.3	0.4	100.0(986)
종사자수 ($\chi^2=81.94^{***}$)	1명	10.3	37.8	39.6	11.9	0.5	100.0(5,984)
	2명	11.5	37.3	38.5	12.2	0.5	100.0(4,038)
	3명~4명	7.3	30.9	42.4	18.8	0.6	100.0(1,416)

〈표 5-4〉 노후대비 여가준비 (계속)

(단위: %)

	구분	①전혀 하고 있지 않다	②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 이다	④하고 있는 편이다	⑤많이 하고 있다	계(명)
사업체	300만 원 미만	12.9	40.1	35.8	10.5	0.7	100.0(2,930)
월평균매출액	500만 원 미만	8.8	37.6	40.8	12.2	0.6	100.0(2,659)
($\chi^2=119.19^{***}$)	1000만 원 미만	10.2	35.9	41.4	12.5	0.1	100.0(2,763)
	1000만 원 이상	8.7	32.9	41.6	16.3	0.5	100.0(2,572)
자영업	~89년	11.7	38.5	36.3	12.9	0.6	100.0(2,128)
진입연도	90~94년	10.7	39.2	36.7	12.7	0.8	100.0(1,593)
($\chi^2=51.57^{***}$)	95~99년	9.0	37.9	39.5	12.8	0.7	100.0(1,545)
	00~04년	9.9	36.2	40.8	12.7	0.3	100.0(2,450)
	05~12년	10.1	34.6	41.8	13.1	0.3	100.0(3,716)
	무응답·거절	50.0	0.0	33.3	16.7	0.0	100.0(6)
자영업	~20대	7.8	34.8	41.4	15.8	0.2	100.0(2,586)
진입연령	30대	10.4	35.9	40.4	12.7	0.6	100.0(4,633)
($\chi^2=96.33^{***}$)	40대	10.7	39.9	37.7	11.1	0.6	100.0(3,056)
	50대 이상	14.3	36.3	37.2	11.6	0.6	100.0(1,154)
	무응답·거절	40.0	30.0	20.0	10.0	0.0	100.0(10)
자영업	0~5년	10.0	33.9	42.5	13.1	0.5	100.0(2,766)
지속기간	6~10년	8.3	36.0	43.1	12.4	0.2	100.0(2,275)
($\chi^2=143.57^{***}$)	11~15년	10.1	37.3	38.9	13.4	0.3	100.0(2,032)
	16~20년	8.9	39.9	37.2	13.0	1.0	100.0(1,418)
	20년 초과	11.7	37.9	36.6	13.2	0.5	100.0(2,609)
	무응답·거절	23.2	39.9	27.3	8.2	1.5	100.0(341)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노후대비 사회활동 준비 역시 여가준비와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조사 대상자의 과반이 넘는 53.7%가 노후 대비 사회활동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하고 있는 비율은 10.7%에 불과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노후 사회활동 준비를 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으며(남성=51.8%, 여성=56.1%)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활동 준비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의 저학력 자영업자의 경우 64.8%가 노후대비 사회활동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하고 있는 비율은 8.1%에 불과했다. 반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 42.6%가 사회활

동 준비를 못하고 있었으며 14.8%가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해 학력수준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유사하게 소득수준간 사회활동 준비 정도의 차이도 두드러진다. 2천만 원미만의 저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65.2%가 사회활동 준비를 못하고 있었으며 6.7%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반면 가구소득 5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 46.5%가 노후 대비 사회활동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13.5%가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가구원 수 및 가구형태별 노후 사회활동 준비 정도의 차이는 다른 영역(경제, 건강)에서의 준비와 마찬가지로 가구원수가 많을 수록, 그리고 부부와 자녀가 함께 동거하는 형태의 가구일수록 그리고 기혼 배우자일수록 사회활동에 대한 준비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1인 가구와 편부모 및 조손가구의 경우 사회활동 준비가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5〉 노후의 사회활동 준비

		(단위: %)					
구분		①전혀 하고 있지 않다	②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 이다	④하고 있는 편이다	⑤많이 하고 있다	계(명)
전체		17.0	36.7	35.6	10.4	0.3	100.0(11,439)
본인성별 ($\chi^2=37.54^{**}$)	남자	15.5	36.3	36.9	11.0	0.4	100.0(6,283)
	여자	18.9	37.2	34.0	9.8	0.1	100.0(5,155)
본인만나이 ($\chi^2=67.36^{***}$)	40세 미만	14.7	33.3	41.6	10.3	0.1	100.0(1,475)
	40~50세 미만	15.5	35.7	37.5	11.0	0.3	100.0(3,276)
	50~60세 미만	17.8	37.8	34.7	9.5	0.2	100.0(4,284)
	60세 이상	19.0	38.3	31.0	11.4	0.3	100.0(2,397)
베이비붐 세대구분 ($\chi^2=88.70^{***}$)	54년생 이하	18.3	38.7	31.6	11.1	0.3	100.0(2,949)
	55~63년생	17.9	37.7	34.8	9.4	0.2	100.0(3,925)
	64~67년생	17.4	36.4	33.4	12.5	0.3	100.0(1,445)
	68~74년생	13.8	34.5	41.0	10.3	0.4	100.0(1,959)
학력 ($\chi^2=319.55^{***}$)	75년생 이상	15.7	32.2	41.9	10.0	0.2	100.0(1,160)
	중졸 이하	23.6	41.2	27.1	7.9	0.2	100.0(2,484)
	고졸	17.2	37.2	35.7	9.6	0.2	100.0(6,070)
	대학졸 이상	10.8	31.8	42.6	14.4	0.4	100.0(2,886)

〈표 5-5〉 노후의 사회활동 준비 (계속)

(단위: %)

구분		①전혀 하고 있지 않다	②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이 다	④하고 있는 편이다	⑤많이 하고 있다	계(명)
결혼상태 ($\chi^2=110.15^{***}$)	미혼	16.6	31.9	43.6	7.8	0.1	100.0(821)
	기혼유배우자	16.2	36.6	35.7	11.2	0.3	100.0(9,497)
	기혼무배우자	24.2	40.8	28.5	6.1	0.3	100.0(1,122)
구시군 ($\chi^2=82.93^{***}$)	구	18.7	35.0	35.3	10.9	0.1	100.0(5,295)
	시	16.2	38.0	36.2	9.2	0.4	100.0(5,407)
	군	10.3	39.7	33.3	16.4	0.3	100.0(738)
가구원수 ($\chi^2=35.85^{**}$)	1명	18.6	36.8	37.6	6.8	0.2	100.0(1,002)
	2명	16.8	37.5	34.7	10.7	0.4	100.0(2,444)
	3명	18.0	38.6	33.4	9.8	0.2	100.0(2,482)
	4명 이상	16.3	35.5	36.6	11.3	0.2	100.0(5,513)
가구총소득 ($\chi^2=273.3^{***}$)	2천만 원 미만	25.6	39.6	28.2	6.5	0.2	100.0(1,943)
	4천만 원 미만	18.2	37.3	34.5	9.8	0.2	100.0(4,479)
	5천만 원 미만	15.1	35.4	38.0	11.5	0.1	100.0(1,807)
	5천만 원 이상	11.2	35.3	40.1	13.1	0.4	100.0(3,080)
가구형태 ($\chi^2=86.34^{***}$)	부부단독가구	15.5	37.2	35.4	11.5	0.3	100.0(2,096)
	부부미혼자녀가구	16.2	36.0	36.3	11.2	0.2	100.0(6,753)
	편부모 및 조손가구	26.4	36.9	30.2	6.2	0.3	100.0(599)
	1인가구	18.6	36.8	37.6	6.8	0.2	100.0(1,002)
	기타가구	18.5	40.2	32.1	8.9	0.2	100.0(987)
종사자수 ($\chi^2=55.81^{***}$)	1명	17.2	38.1	35.0	9.6	0.2	100.0(5,985)
	2명	17.8	36.5	35.1	10.4	0.3	100.0(4,038)
	3명~4명	14.1	31.6	39.7	14.3	0.4	100.0(1,416)
사업체 월평균매출액 ($\chi^2=63.81^{***}$)	300만 원 미만	19.9	38.4	31.7	9.7	0.3	100.0(2,929)
	500만 원 미만	15.6	38.1	35.9	10.2	0.3	100.0(2,661)
	1000만 원 미만	17.0	35.4	37.7	9.9	0.0	100.0(2,763)
	1000만 원 이상	15.4	34.5	37.8	11.9	0.3	100.0(2,572)
자영업	~89년	17.9	39.2	31.2	11.6	0.1	100.0(2,128)
진입연도 ($\chi^2=60.78^{***}$)	90~94년	19.3	36.4	33.8	10.1	0.4	100.0(1,594)
	95~99년	15.7	38.6	34.7	10.6	0.4	100.0(1,546)
	00~04년	16.6	37.1	36.4	9.8	0.1	100.0(2,450)
	05~12년	16.3	34.4	38.8	10.3	0.3	100.0(3,716)
	무응답·거절	50.0	16.7	33.3	0.0	0.0	100.0(6)
자영업	~20대	14.9	36.4	36.3	12.1	0.3	100.0(2,586)
진입연령 ($\chi^2=32.16^{**}$)	30대	16.9	36.8	35.7	10.3	0.2	100.0(4,633)
	40대	17.9	37.7	35.0	9.1	0.2	100.0(3,055)
	50대 이상	19.3	34.3	35.4	10.7	0.3	100.0(1,154)
	무응답·거절	40.0	40.0	20.0	0.0	0.0	100.0(10)

〈표 5-5〉 노후의 사회활동 준비 (계속)

(단위: %)

	구분	①전혀 하고 있지 않다	②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 이다	④하고 있는 편이다	⑤많이 하고 있다	계(명)
자영업	0~5년	16.5	33.9	38.8	10.5	0.3	100.0(2,766)
지속기간	6~10년	13.8	37.0	40.1	9.0	0.2	100.0(2,276)
(χ ² =113.51***)	11~15년	18.1	36.7	34.0	11.0	0.2	100.0(2,033)
	16~20년	16.4	37.9	34.4	10.9	0.4	100.0(1,417)
	20년 초과	18.4	38.4	31.7	11.3	0.2	100.0(2,608)
	무응답·거절	28.2	40.2	23.5	7.9	0.3	100.0(341)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제2절 노후소득준비 실태

본 절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후소득 준비실태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 때 ‘노후소득 준비’란 나이가 들어 은퇴,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 시기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보완적인 준비로 공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저축, 부동산 및 금융투자, 자녀들의 부양 등을 포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후소득 준비실태는 개인사업체 5인 미만 근로자 개인사업체 사업주 11,439명을 대상으로 노후소득 준비실태를 조사하였다. 먼저 노후소득보장 인식 및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구축 측면에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노후소득 준비실태와 인식에 대해서는 주로 연령계층과 가구 총소득수준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가입실태는 국민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총소득, 국민연금 가입종별,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가입실태를 분석하였다.

1. 노후소득준비 실태

5인 미만 개인사업장 사업주의 노후소득 준비여부를 조사한 결과 83.3%가 현재 노후소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40대가 88.6%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의 현 노령층은 70.3%가 노후소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총소득기준으로는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노후소득에 대비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구총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90.8%가 노후소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가구총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68.7%가 노후소득 준비를 하고 있고 31.3%는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5-6〉 노후소득준비 여부

		(단위: %)		
구 분		있음	없음	계(명)
전체		83.3	16.7	100.0 (11,439)
연령 ($\chi^2=394.56^{***}$)	40세 미만	82.8	17.2	100.0 (1,476)
	40~50세 미만	88.6	11.4	100.0 (3,275)
	50~60세 미만	86.7	13.3	100.0 (4,285)
	60세 이상	70.3	29.7	100.0 (2,397)
베이비붐세대 ($\chi^2=334.58^{***}$)	54년생 이하	72.9	27.1	100.0 (2,949)
	55~63년생	87.0	13.0	100.0 (3,925)
	64~67년생	88.0	12.0	100.0 (1,445)
	68~74년생	88.8	11.2	100.0 (1,957)
	75년생 이상	82.4	17.6	100.0 (1,160)
가구총소득 ($\chi^2=446.88^{***}$)	2천만 원 미만	68.7	31.3	100.0 (1,944)
	4천만 원 미만	82.9	17.1	100.0 (4,479)
	5천만 원 미만	87.5	12.5	100.0 (1,808)
	5천만 원 이상	90.8	9.2	100.0 (3,081)
최저생계비기준 ($\chi^2=213.39^{***}$)	최저생계비 이하	69.3	30.7	100.0 (592)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	72.7	27.3	100.0 (404)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76.9	23.1	100.0 (854)
	평균소득 이하 가구	83.0	17.0	100.0 (5,516)
	평균소득 초과	88.3	11.7	100.0 (3,945)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현재 노후소득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1,909명을 대상으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사유를 조사한 결과, 지금 당장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가 75.9%로 가장 많았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노후소득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아져서 50대의 경우 84.8%로 나타났다. 가구 총소득별로는 2천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노후소득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82.4%로 조사되었다.

〈표 5-7〉 노후소득 미준비 사유(연령계층별)

구분	연령계층 ($\chi^2=350.88^{***}$)				
	전체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현재로도 충분해서	4.5	3.8	2.5	3.9	6.4
노후 준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4.4	3.0	2.9	2.7	7.1
당장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75.9	60.8	83.8	84.8	70.0
아직 계획할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3.7	22.4	2.2	0.8	0.2
별 다른 이유 없음	9.7	9.3	7.3	6.4	13.8
기타	1.7	0.7	1.3	1.4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909)	(254)	(372)	(569)	(712)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1) 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2) 기타: 나이가 많아서, 자녀부양에 의존할 예정 등

〈표 5-8〉 노후소득 미준비 사유(가구 총소득수준별)

구분	가구 총소득 ($\chi^2=67.49^{***}$)				
	전체	2천만 원 미만	4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현재로도 충분해서	4.5	3.7	3.9	5.8	7.5
노후 준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4.4	3.1	6.2	5.1	2.2
당장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75.9	82.4	74.7	72.8	68.6
아직 계획할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3.7	0.2	3.8	5.5	8.5
별 다른 이유 없음	9.7	8.9	9.6	9.8	11.0
기타	1.7	1.7	1.8	1.0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909)	(609)	(766)	(227)	(284)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1)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2) 기타: 나이가 많아서, 자녀부양에 의존할 예정 등

노후 소득보장 수단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1순위와 2순위 복수응답의 결과를 살펴보면, 노후 소득보장 수단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제도라고 응답한 자의 비중이 42.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 순위로 예금 및 적금 등의 개인저축이라는 응답이 32.9%, 개인연금 등 민간연금 12.4%, 부동산 및 주식투자 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 말 기준 일반가구의 30세 이상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2011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에서 노후소득보장 수단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노후소득준비 수단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적연금제도라는 응답이 58.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소득보장 수단에 대한 인식을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공적소득보장제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비중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총소득수준별로는 2천만 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도 공적소득보장제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비중이 41.9%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중 저소득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노후소득준비를 하지 않는 가구의 비중이 높았으나,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수단이 공적소득보장제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자 중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소득대비 차원에서 공적소득보장제도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9〉 노후소득 준비수단 1순위(연령계층별)

(단위: %)

구분	연령계층 ($\chi^2=126.50^{***}$)				
	전체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공적 소득보장제도	42.2	34.7	40.8	44.6	44.5
개인연금 등 민간연금	12.4	16.5	14.2	11.5	8.8
저축(예금 및 적금)	32.9	38.2	32.7	30.8	33.7
부동산 및 주식투자	11.0	9.5	11.0	11.6	10.6
자녀들의 부양	1.2	0.7	1.0	1.1	1.9
기타	0.4	0.4	0.3	0.4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439)	(1,476)	(3,275)	(4,285)	(2,397)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1)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2) 기타: 노후경제활동, 없음 등

〈표 5-10〉 노후소득 준비수단 1순위(가구 총소득수준별)

(단위: %)

구분	가구총소득 ($\chi^2=88.29^{***}$)				
	전체	2천만 원 미만	4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공적 소득보장제도	42.2	41.9	41.6	45.4	41.4
개인연금 등 민간연금	12.4	9.6	13.2	11.9	13.2
저축(예금 및 적금)	32.9	35.8	34	30.2	31.2
부동산 및 주식투자	11.0	9.9	9.6	11.1	13.2
자녀들의 부양	1.2	2.0	1.1	1.2	0.9
기타	0.4	0.8	0.4	0.4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439)	(1,944)	(4,479)	(1,808)	(3,081)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1)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2) 기타: 노후경제활동, 없음 등

〈표 5-11〉 노후소득 준비수단 1순위(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총소득별)

(단위: %)

구분	가구총소득 ($\chi^2=80.88^{***}$)					
	전체	최저생계비 이하	최저생계비 120% 이하	최저생계비 150% 이하	평균소득 이하	평균소득 초과
공적 소득보장제도	42.2	44.0	38.6	42.4	42.8	40.7
개인연금 등 민간연금	12.4	10.4	8.3	12.2	12.1	12.2
저축(예금 및 적금)	32.9	27.6	37.0	32.6	33.8	32.8
부동산 및 주식투자	11.0	15.1	13.0	10.2	9.9	13.5
자녀들의 부양	1.2	2.4	2.3	1.9	1.0	0.7
기타	0.4	0.0	0.0	0.0	0.1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439)	(592)	(404)	(854)	(5,516)	(3,945)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1)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2) 기타: 노후경제활동, 없음 등

노후소득대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순위 준비 수단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금 및 적금 등 저축이 36.1%로 가장 높았고 민간연금이 24.1%, 부동산 및 주식투자가 21.1%, 공적소득보장제도가 14.8%, 자녀부양 3.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2〉 노후소득 준비수단 2순위(연령계층별)

(단위: %)

구분	연령계층 ($\chi^2=90.71^{***}$)				
	전체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공적 소득보장제도	14.8	12.5	16.5	14.5	14.4
개인연금 등 민간연금	24.1	25.9	26.0	24.0	20.6
저축(예금 및 적금)	36.1	33.9	34.4	37.4	37.5
부동산 및 주식투자	21.1	24.7	20.0	20.4	21.8
자녀들의 부양	3.7	2.9	2.8	3.7	5.6
기타	0.1	0.1	0.3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250)	(1,440)	(3,238)	(4,221)	(2,345)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1)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2) 기타: 노후경제활동, 없음 등

〈표 5-13〉 노후소득 준비수단 2순위(가구 총소득수준별)

(단위: %)

구분	가구총소득 ($\chi^2=72.70^{***}$)				
	전체	2천만 원 미만	4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공적 소득보장제도	14.8	15.9	14.1	13.1	16.3
개인연금 등 민간연금	24.1	22.2	25.3	24.0	23.7
저축(예금 및 적금)	36.1	34.7	35.0	38.8	37.1
부동산 및 주식투자	21.1	20.8	21.8	20.7	20.2
자녀들의 부양	3.7	6.2	3.6	3.3	2.5
기타	0.1	0.1	0.2	0.1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250)	(1,905)	(4,405)	(1,778)	(3,035)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1)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2) 기타: 노후 경제활동, 없음 등

〈표 5-14〉 노후소득 준비수단 2순위(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총소득수준별)

(단위: %)

구분	가구총소득 ($\chi^2=65.38^{***}$)					
	전체	최저생계비 이하	최저생계비 120% 이하	최저생계비 150% 이하	평균소득 이하	평균소득 초과
공적 소득보장제도	14.8	15.9	14.2	16.3	14.7	14.8
개인연금 등 민간연금	24.1	22.6	25.6	23.2	24.9	23.3
저축(예금 및 적금)	36.1	34.1	32.6	34.5	35.8	37.6
부동산 및 주식투자	21.1	20.8	23.1	20.1	20.5	21.8
자녀들의 부양	3.7	6.5	4.5	5.4	4.0	2.4
기타	0.1	0.0	0.1	0.5	0.1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250)	(583)	(400)	(827)	(5,436)	(3,877)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1)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2) 기타: 노후 경제활동, 없음 등

2. 국민연금 가입실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영업자가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가입실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가입여부를 살펴보면, 응답자 11,436명 중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비중은 65.7%로 나타났다.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 이력이 있는 자를 모두 고려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와 노령연금을 수급 하고 있는 16.8%를 합하여 전체 응답자 중 82.5%가 국민연금에 가입 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가구주를 조사한 「2011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에서는 91.8%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 다고 응답하였는데,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의 국 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계층별 국민연금 가입률은 40대가 80.9%로 가장 높았고 20~30대 의 가입률은 72.8%, 50대는 78.5%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개인별 소득 활동 여부와 소득수준으로 제도가입여부가 결정되므로 개인총소득 기준으 로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살펴보았다.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국민연금 가입 비중 또한 높아져서 5천만 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 89.2%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83%)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으로(6.2%) 조사되었다.

〈표 5-15〉 국민연금 가입여부

(단위: %)

구 분		가입하고 있음	가입하지 않음	노령연금 수급중	계 (명)
전체		65.7	17.5	16.8	100.0(11,436)
연령 ($\chi^2=8,728.96^{***}$)	20~39세	72.8	27.2	0.0	100.0(1,475)
	40~49세	80.9	19.1	0.0	100.0(3,274)
	50~59세	78.5	21.5	0.0	100.0(4,284)
	60세 이상	18.0	2.0	80.0	100.0(2,397)
개인총소득 ($\chi^2=879.47^{***}$)	2천만 원 미만	50.5	22.3	27.1	100.0(3,871)
	3천만 원 미만	65.0	17.2	17.8	100.0(2,995)
	4천만 원 미만	78.8	13.6	7.5	100.0(2,240)
	5천만 원 미만	79.0	15.0	6.0	100.0(959)
	5천만 원 이상	83.0	10.7	6.2	100.0(1,133)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표 5-16〉 일반가구의 국민연금 가입여부

(단위: %)

구분		국민연금 가입	적용제외자	전체
조사	가구주(명)	91.8(2,852)	8.2(254)	100(3,106)
	사업주(명)	97.5	2.5	100(80)
	자영업자(명)	96.4	3.6	100(672)

자료: 「2011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국민연금 가입실태¹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사업장 또는 지역가입인지, 보험료 납부여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7,083명 중 사업장 가입자는 11.2%이고 지역 가입자가 88%로, 대부분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가구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주(70.5% 지역가입)와 자영업자(97.7% 지역가입) 대부분이 지역가입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장가입을 확대함에 따라 2006년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국민연금법상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나, 사업주 대부분이 본인 신고소득에 의존하여 소득을 파악하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주 본인이 지역으로 가입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근로자 또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라 본인이 보험료 9%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있거나, 아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연령계층별로 국민연금 가입형태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가입자 비중이 높아져서 50대는 지역가입자 비중이 91.5%에 달한다. 개인총소득 기준으로는¹⁵⁾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가입자 비중이 점차

14) 조사대상 중 국민연금 최대가입연령인 59세로 제한하여 분석하였음.

15) 한편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자의 개인총소득 평균월액은 215만 원, 중위수는 200만 원으로 조사되었음. 2011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189만 원으로, 조사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높은

줄어들어 4천만 원대는 84.5%, 5천만 원 이상은 76%로 조사되었는데 여전히 지역가입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17〉 국민연금 가입형태

(단위: %)

구 분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계 (명)
전체	11.2	88.0	0.8	100.0(7,083)
연령				
20~39세	14.4	84.7	0.9	100.0(1,073)
40~49세	14.1	84.9	1.0	100.0(2,648)
50~59세	7.8	91.5	0.7	100.0(3,362)
개인총소득				
2천만 원 미만	7.0	91.9	1.1	100.0(1,791)
3천만 원 미만	7.5	91.3	1.2	100.0(1,820)
4천만 원 미만	10.9	88.7	0.4	100.0(1,692)
5천만 원 미만	14.9	84.5	0.6	100.0(734)
5천만 원 이상	23.1	76.0	0.9	100.0(901)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표 5-18〉 일반가구의 국민연금 가입형태

(단위: %, 명)

구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전체
가구주	55.4(1,580)	44.4(1,266)	0.2(7)	100(2,852)
사업주	29.5%	70.5%	-	100(78)
자영업자	2.3%	97.7%	-	100(648)

자료: 「2011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국민연금 제도상 소득활동을 하면 당연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입자가 일시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 납부에서 예외적용할 수 있는 납부예외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제도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한 7,083명 중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는 91.6%이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자의 비중은 8.4%로 조사되어, 제도에 가입하고

자의 노후소득준비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로 볼 수 있음.

있는 자 대부분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형태별로 보험료 납부여부를 살펴보면, 사업장 가입자는 97.9%로 대부분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지역가입자는 91.1%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보험료 납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86.4%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13.6%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체납상태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자 중 94%가 지역가입자로 조사되었다.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상태로 조사된 자들이 장기체납상태로 가입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 중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제도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납부율이 낮고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무연금자나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액이 적은 저연금자로 전락할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5-19〉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형태

(단위: %)

구 분	보험료 납부	보험료 납부하지 않음		계(명)	
		3개월 미만 미납	3개월 이상 미납		
전체	91.6	2.1	6.3	100.0(7,083)	
연령 ($\chi^2=10.10^*$)	20~39세	89.9	2.7	7.4	100.0(1,073)
	40~49세	91.1	1.9	7.0	100.0(2,648)
	50~59세	92.5	2.0	5.5	100.0(3,362)
국민연금 가입형태 ($\chi^2=184.45^{***}$)	사업장 가입자	97.9	0.4	1.8	100.0(790)
	지역 가입자	91.1	2.1	6.8	100.0(6,234)
	임의 가입자	56.2	21.9	21.9	100.0(59)
개인총소득 ($\chi^2=134.77^{***}$)	2천만 원 미만	86.4	3.9	9.7	100.0(1,791)
	3천만 원 미만	91.5	1.7	6.8	100.0(1,820)
	4천만 원 미만	94.2	1.0	4.8	100.0(1,692)
	5천만 원 미만	93.5	1.7	4.8	100.0(734)
	5천만 원 이상	97.6	1.0	1.4	100.0(901)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이 지역가입자로 나타났는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유를 살펴보았다. 대부분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고(90.4%) 응답하였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응답도 8%에 이르렀다.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보험료 미납자 대부분이 경제적인 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0〉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사유

(단위: %)

구 분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걱정이 없어서	계(명)
전체		90.4	8.0	1.5	100.0(597)
연령 ($\chi^2=6.09$)	20~39세	87.4	9.5	3.1	100.0(108)
	40~49세	89.1	10.0	0.9	100.0(236)
	50~59세	93.0	5.6	1.4	100.0(253)
국민연금 가입형태 ($\chi^2=6.56$)	사업장 가입자	77.4	22.6	0.0	100.0(17)
	지역 가입자	90.5	7.9	1.6	100.0(554)
	임의 가입자	97.4	2.6	0.0	100.0(26)
개인총소득 ($\chi^2=44.24^{***}$)	2천만 원 미만	97.6	2.4	0.0	100.0(244)
	3천만 원 미만	87.1	9.9	3.0	100.0(155)
	4천만 원 미만	85.0	12.0	3.0	100.0(98)
	5천만 원 미만	69.9	27.0	3.2	100.0(48)
	5천만 원 이상	93.2	6.8	0.0	100.0(22)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국민연금법상 소득활동을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실제로는 소득활동을 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597명 중 91.1%로 나타났다. 소득활동을 하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경험이 있는 자 중 92.2%가 지역가입자로, 5인 미만 사업장을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역가입이 아닌 사업장 가입자로 관리한다면 미납자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5-21〉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미납

(단위: %)

구 분		미납한적 있음	미납한적 없음	계 (명)
전체		91.1	8.9	100.0 (597)
연령 ($\chi^2=2.31$)	20~39세	94.5	5.5	100.0 (108)
	40~49세	91.3	8.7	100.0 (236)
	50~59세	89.5	10.5	100.0 (253)
국민연금 가입형태 ($\chi^2=3.65$)	사업장 가입자	99.5	0.5	100.0 (17)
	지역 가입자	90.5	9.5	100.0 (554)
	임의 가입자	98.9	1.1	100.0 (26)
개인총소득 ($\chi^2=2.64$)	2천만 원 미만	89.7	10.3	100.0 (244)
	3천만 원 미만	91.5	8.5	100.0 (155)
	4천만 원 미만	92.0	8.0	100.0 (98)
	5천만 원 미만	88.7	11.3	100.0 (48)
	5천만 원 이상	99.1	0.9	100.0 (22)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실제로는 소득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대답한 자 중 대부분이 소득수준이 낮고 불안정한 소득활동으로 인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8.9%로 조사되었다. 다음 순위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응답으로 8.5%로 나타났다.

〈표 5-22〉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미납사유

(단위: %)

구 분		①	②	③	④	계(명)
전체		88.9	8.5	2.5	0.1	100.0(544)
연령 ($\chi^2=11.80$)	20~39세	82.1	12.4	5.5	0.0	100.0(102)
	40~49세	91.6	5.4	2.8	0.2	100.0(216)
	50~59세	89.5	9.6	0.9	0.0	100.0(226)
국민연금 가입형태 ($\chi^2=17.12^{**}$)	사업장 가입자	74.5	8.5	17.0	0.0	100.0(17)
	지역 가입자	89.3	8.8	1.9	0.1	100.0(502)
	임의 가입자	92.2	2.6	5.1	0.0	100.0(26)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제도가 불안정하여 받지 못할 것 같아서

③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④ 다른 노후 소득보장 대책이 있어서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표 5-22〉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미납사유 (계속)

		(단위: %)				
구 분		①	②	③	④	계(명)
개인총소득 ($\chi^2=80.48^{***}$)	2천만 원 미만	96.7	3.1	0.2	0.0	100.0(219)
	3천만 원 미만	84.6	9.9	5.6	0.0	100.0(142)
	4천만 원 미만	90.3	7.5	1.7	0.4	100.0(91)
	5천만 원 미만	51.4	40.4	8.3	0.0	100.0(42)
	5천만 원 이상	91.8	6.8	1.4	0.0	100.0(22)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제도가 불안정하여 받지 못할 것 같아서

③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④ 다른 노후 소득보장 대책이 있어서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을 살펴보면 4년 이상인 자가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 번도 낸 적 없거나 1년 미만인 자의 비중 또한 2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험료를 4년 이상 납부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1년 미만 또는 아예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경우에는 노후에 무연금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근로기간에 본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4년 이상 가입 비중이 낮아져서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가입기간이 4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자는 55%로 조사되었다. 소득이 낮을수록 보험료를 낸 적 없는 경우도 증가하여 2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10.6%이고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응답자도 20.2%로 나타났다.

〈표 5-23〉 국민연금 납부기간

(단위: %)

구 분		낸적 없음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4년 이상	계(명)
전체		7.1	13.9	5.9	4.5	3.6	65.0	100.0(9,033)
연령 ($\chi^2=457.71^{***}$)	20~39세	9.2	20.6	11.7	8.8	5.8	43.7	100.0(1,475)
	40~49세	6.3	12.0	6.1	4.9	4.3	66.4	100.0(3,274)
	50~59세	7.0	13.0	3.7	2.8	2.3	71.3	100.0(4,284)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0.0	2.0	5.6	6.1	4.4	82.0	100.0(790)
가입형태 ($\chi^2=20.83^{**}$)	지역 가입자	0.0	3.6	6.5	5.2	4.3	80.4	100.0(6234)
	임의 가입자	0.0	3.8	11.3	13.8	0.0	71.1	100.0(59)
개인총소득 ($\chi^2=342.83^{***}$)	2천만 원 미만	10.6	20.2	6.3	4.1	3.8	55.0	100.0(2,632)
	3천만 원 미만	7.0	14.0	6.7	4.5	3.3	64.5	100.0(2,322)
	4천만 원 미만	4.4	11.0	5.7	5.8	4.5	68.6	100.0(1,992)
	5천만 원 미만	6.1	8.8	5.2	3.5	3.1	73.3	100.0(876)
	5천만 원 이상	4.1	6.2	3.6	4.2	3.0	78.8	100.0(1,021)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사를 조사한 결과, 향후에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응답은 76.2%이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다는 자의 비중은 23.5%로 나타난다.¹⁶⁾

개인총소득이 높아질수록 보험료 납부율도 높아지고 향후에 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나,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88.3%가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답하였다.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 기간에 따라 향후 납부의사를 살펴보면 한 번도 낸 적 없는 자 중 향후에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는 자는 17.6%로 나타난 반면, 납부기간이 길어질수록 향후 보험료 납부의사가 있는 자의 비중이 높아져서 보험료 납부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에는 92.1%가 향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답하였다.

16) 응답자 중 0.2%는 이미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5-24〉 향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사

(단위: %)

구 분		있음	없음	연금 수급중	계 (명)
전체		76.2	23.5	0.2	100.0 (9,033)
연령 ($\chi^2=32.32^{***}$)	20~39세	72.8	27.1	0.1	100.0 (1,475)
	40~49세	77.8	22.2	0.0	100.0 (3,274)
	50~59세	76.2	23.3	0.5	100.0 (4,284)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94.5	5.4	0.0	100.0 (790)
가입형태 ($\chi^2=18.89^{***}$)	지역 가입자	90.3	9.5	0.1	100.0 (6,234)
	임의 가입자	83.4	16.6	0.0	100.0 (59)
개인총소득 ($\chi^2=295.11^{***}$)	2천만 원 미만	66.0	33.6	0.4	100.0 (2,632)
	3천만 원 미만	76.2	23.4	0.4	100.0 (2,322)
	4천만 원 미만	82.4	17.5	0.1	100.0 (1,992)
	5천만 원 미만	81.5	18.5	0.0	100.0 (876)
	5천만 원 이상	88.3	11.7	0.0	100.0 (1,021)
납부기간 ($\chi^2=3,431.55^{***}$)	낸적 없음	17.6	81.9	0.5	100.0 (644)
	1년 미만	32.2	67.8	0.0	100.0 (1,252)
	2년 미만	70.9	28.7	0.4	100.0 (532)
	3년 미만	77.1	22.9	0.0	100.0 (408)
	4년 미만	83.1	16.9	0.0	100.0 (327)
	4년 이상	92.1	7.6	0.3	100.0 (5,871)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표 5-25〉 일반가구의 향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사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비해당1)	전체
가구주	84.9(2,525)	12.3(365)	2.8(84)	100(2,974)
사업주	90.0	7.5	2.5	100(80)
자영업자	83.6	15.7	0.6	100(648)

주: 1) 비해당은 이미 60세 이상인 경우 또는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임.

자료: 「2011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향후에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다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중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면 50.5%가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2012년부터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중 125만 원 미만인

경우 정부에서 사회보험료 1/3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시행하고 있다. 7월 30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사업장 50.2만 개 소 중 24.4만 개(48.6%)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 49.2만 명에게 약 190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도 자영업자가 아닌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게만 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경우, 기존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자 중 절반을 넘어서는 50.5%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으므로 보험료지원 정책이 국민연금 가입유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5-26〉 보험료 일부지원시 국민연금 납부의사

		(단위: %)		
구 분		있음	없음	계 (명)
전체		50.5	49.5	100.0 (2,125)
연령 ($\chi^2=9.13^*$)	20~39세	53.2	46.8	100.0 (400)
	40~49세	53.7	46.3	100.0 (726)
	50~59세	47.0	53.0	100.0 (1,000)
국민연금 가입형태 ($\chi^2=0.30$)	사업장 가입자	64.5	35.5	100.0 (43)
	지역 가입자	60.2	39.8	100.0 (594)
	임의 가입자	60.2	39.8	100.0 (10)
개인총소득 ($\chi^2=2.88$)	2천만 원 미만	49.8	50.2	100.0 (886)
	3천만 원 미만	49.1	50.9	100.0 (543)
	4천만 원 미만	49.5	50.5	100.0 (349)
	5천만 원 미만	56.3	43.7	100.0 (162)
	5천만 원 이상	48.8	51.2	100.0 (120)
납부기간 ($\chi^2=40.05^{***}$)	납적 없음	41.2	58.8	100.0 (528)
	1년 미만	49.1	50.9	100.0 (848)
	2년 미만	59.5	40.5	100.0 (153)
	3년 미만	63.3	36.7	100.0 (93)
	4년 미만	63.0	37.0	100.0 (55)
	4년 이상	56.6	43.4	100.0 (448)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더라도 여전히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절반에 가까운 49.5%로 나타났다.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한 「2011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에서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더라도 향후에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答한 이유를 살펴보면,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더라도 나머지를 부담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인 경우가 51%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37.3%)는 의견도 다수를 이루고 있다. 자영업자만 별도로 분리해서 살펴보면 경제적인 여유(32.3%)보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해도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5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27〉 일반가구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지원시에도 납부의사 없는 이유

(단위: %)

구분	가구주	자영업자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51.0	32.3
제도가 불완전하여 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37.3	53.2
다른 노후보장수단이 있어서	6.0	8.1
노후대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5.6	6.5
합계(명)	100.0(249)	100(62)

자료: 「2011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제3절 개인연금 가입실태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뿐 아니라 사용주가 책임지는 퇴직연금과 본인의 자산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등 민간부문의 연금상품 가입 활성화가 꾸준히 제기되

고 있다. 1994년 세계은행에서 발간된 ‘Averting the Old Age Crisis’에서 기존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만으로 초고령 사회에서의 노후준비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주장을 제기한 이후에는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공적연금 뿐 아니라 개인연금 등을 함께 고려한 다층 노후 소득보장 체계 구축이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다층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 자영업자의 소득보장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해 앞서 살펴본 국민연금 가입실태와 함께 자영업 사업주의 개인연금 가입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응답자 중 22.6%만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75.8%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는 등 사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에서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개인연금 가입여부를 조사한 결과 개인연금 가입비중이 31.1%로,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개인연금 가입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국민연금 가입자 중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비중이 28.9%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자가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17.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개인연금 가입비중이 35%로 지역가입자(28.1%)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총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개인연금 가입률 또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천만 원 미만 저소득 가구의 경우 개인연금 가입률이 8.4%에 불과하고 개인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더라도 10.1%로 나타났다.

〈표 5-28〉 개인연금 가입여부

(단위: %)

구 분		있음	없음	개인연금 수급증	계(명)
전체		22.6	75.8	1.6	100.0(11,436)
연령 ($\chi^2=719.75^{***}$)	40세 미만	28.1	71.3	0.6	100.0(1,475)
	40~50세 미만	32.1	66.9	1.0	100.0(3,274)
	50~60세 미만	22.7	76.7	0.6	100.0(4,284)
	60세 이상	6.2	89.1	4.7	100.0(2,397)
국민연금					
가입여부					
가입하지 않음		17.3	81.6	1.1	100.0(1,998)
가입중		28.9	70.5	0.7	100.0(7,518)
연금수급증 ($\chi^2=785.18^{***}$)		3.9	90.5	5.6	100.0(1,920)
국민연금					
가입형태					
사업장 가입자		35.0	63.8	1.2	100.0(818)
지역 가입자		28.1	71.3	0.6	100.0(6,628)
임의 가입자 ($\chi^2=23.19^{***}$)		30.0	70.0	0.0	100.0(72)
가구총소득					
2천만 원 미만		8.4	89.9	1.7	100.0(1,943)
3천만 원 미만		15.6	82.4	2.0	100.0(2,030)
4천만 원 미만		23.8	75.1	1.1	100.0(2,448)
5천만 원 미만		25.5	73.1	1.4	100.0(1,807)
5천만 원 이상 ($\chi^2=502.88$)		33.4	65.1	1.5	100.0(3,080)
최저생계비기준					
최저생계비 이하		8.6	89.7	1.7	100.0(592)
최저생계비 120% 이하		11.0	86.5	2.6	100.0(404)
최저생계비 150% 이하		16.2	83.0	0.7	100.0(854)
평균소득 이하 가구		20.4	78.1	1.5	100.0(5,513)
평균소득 초과		30.3	68.1	1.7	100.0(3,945)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표 5-29〉 일반가구의 개인연금 가입여부

(단위: %, 명)

구분		가입하고 있음	가입하고 있지 않음	전체
조사	가구주	31.1(966)	68.9(2,140)	100(3,106)
	사업주	53.1	46.9	100(81)
	자영업자	26.0	74.0	100(648)

자료: 「2011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개인연금 가입사유를 살펴보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만으로 노후대책이 불충분할 것 같아서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응답이 74.1%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순위로 다른 노후소득수단에 비해 수익률이 높아서가 12.6%로 나타났고 개인연금의 안전성(8.9%) 등을 가입이유로 답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개인연금 가입사유를 살펴보면 국민연

금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으로 노후대책이 불충분할 것 같아서 개인연금에 가입했다는 응답이 80.6%로 나타난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33.3%로 조사되었다.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여 개인연금을 노후대비 보완수단으로 가입했다는 응답이 29.5%로 높게 나타났다.

〈표 5-30〉 개인연금 가입사유(연령계층별)

(단위: %)

구분	연령계층 ($\chi^2=26.96^{***}$)				
	전체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①	74.1	71.2	76.3	74.1	68.6
②	3.9	3.2	3.7	5.1	0.0
③	12.6	15.8	11.1	12.0	19.5
④	8.9	9.7	8.4	8.4	11.9
⑤	0.4	0.2	0.6	0.4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590)	(415)	(1,051)	(972)	(148)

① 국민연금 등 공적제도만으로 노후대책이 불충분하므로, ②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③ 다른 노후소득보장 준비수단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해서
 ④ 다른 노후소득보장 준비수단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⑤ 기타(은행권, 설계사의 가입부탁 등)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표 5-31〉 개인연금 가입사유(가구총소득)

(단위: %)

구분	가구총소득 ($\chi^2=21.66^*$)				
	전체	2천만 원 미만	4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①	74.1	70.7	76.0	71.6	74.4
②	3.9	6.9	5.1	2.6	3.2
③	12.6	11.5	11.2	15.9	12.5
④	8.9	10.9	7.5	9.2	9.4
⑤	0.4	0.0	0.2	0.6	0.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590)	(164)	(899)	(462)	(1,029)

① 국민연금 등 공적제도만으로 노후대책이 불충분하므로, ②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③ 다른 노후소득보장 준비수단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해서
 ④ 다른 노후소득보장 준비수단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⑤ 기타(은행권, 설계사의 가입부탁 등)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표 5-32〉 개인연금 가입사유(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총소득)

(단위: %)

구분	가구총소득 ($\chi^2=41.67^{***}$)					
	전체	최저생계비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평균소득 이하	평균소득 초과
①	74.1	70.5	70.1	75.8	76.0	72.7
②	3.9	1.6	3.2	10.4	4.1	3.3
③	12.6	8.6	10.8	6.7	11.8	14.2
④	8.9	19.3	15.9	5.7	7.9	9.4
⑤	0.4	0.0	0.0	1.4	0.3	0.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2,590)	(51)	(44)	(139)	(1,125)	(1,194)

① 국민연금 등 공적제도만으로 노후대책이 불충분하므로, ②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③ 다른 노후소득보장 준비수단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해서

④ 다른 노후소득보장 준비수단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⑤ 기타(은행권, 설계사의 가입부탁 등)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표 5-33〉 개인연금 가입사유(국민연금 가입여부)

(단위: %)

구분	국민연금 가입여부 ($\chi^2=798.34^{***}$)			
	전체	가입하지 않음	가입중	연금수급중
①	74.1	33.3	80.6	74.0
②	3.9	29.5	0.0	0.0
③	12.6	20.5	11.2	18.6
④	8.9	16.0	7.8	7.5
⑤	0.4	0.7	0.4	0.0
계	100.0	100.0	100.0	100.0
(명)	(2,590)	(345)	(2,169)	(75)

① 국민연금 등 공적제도만으로 노후대책이 불충분하므로, ②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③ 다른 노후소득보장 준비수단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해서

④ 다른 노후소득보장 준비수단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⑤ 기타(은행권, 설계사의 가입부탁 등)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의 75.8%가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이 63.6%로 가장 높았다. 그 밖에 개인연금이 실제 노후 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11.7%), 개인연금의 안전성, 수익률 등에 확신이 없어서(7.3%)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5-34〉 개인연금 미가입사유(연령계층별)

(단위: %)

구분	연령계층 ($\chi^2=1,269.84^{***}$)				
	전체	2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현재 노후소득대비로 충분	2.7	2.7	2.9	2.4	3.0
실제 노후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11.7	13.8	13.2	11.7	9.1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63.6	63.4	69.1	67.6	52.1
개인연금에 대해 몰라서	5.7	6.6	5.2	5.9	5.5
개인연금의 안정성 또는 수익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7.3	13.0	8.8	6.9	3.5
이미 나이가 많아서	8.9	0.3	0.7	5.3	27.0
기타	0.1	0.2	0.1	0.1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8,662)	(1,049)	(2,189)	(3,285)	(2,137)

* $p<0.05$, ** $p<0.01$, *** $p<0.001$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각 문항마다 무응답수가 달라 인원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해약이 어려워져서, 다른 노후보장 수단이 더 좋아서, 금융사가 거부해서, 가입예정 등

〈표 5-35〉 개인연금 미가입사유(가구총소득)

(단위: %)

구분	가구총소득 ($\chi^2=404.78^{***}$)				
	전체	2천만 원 미만	4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현재 노후소득대비로 충분	2.7	1.1	2.3	2.1	5.1
실제 노후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11.7	6.8	11.3	13.8	15.5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63.6	69.5	65.0	63.7	56.7
개인연금에 대해 몰라서	5.7	3.6	5.9	5.9	6.7
개인연금의 안정성 또는 수익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7.3	3.0	6.7	9.0	10.6
이미 나이가 많아서	8.9	16.0	8.6	5.5	5.3
기타	0.1	0.0	0.1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8,662)	(1,746)	(3,508)	(1,321)	(2,004)

* $p<0.05$, ** $p<0.01$, *** $p<0.001$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각 문항마다 무응답수가 달라 인원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해약이 어려워져서, 다른 노후보장 수단이 더 좋아서, 금융사가 거부해서, 가입예정 등

〈표 5-36〉 개인연금 미가입사유(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총소득)

(단위: %)

구분	가구총소득 ($\chi^2=364.31^{***}$)					
	전체	최저생계비 이하	120% 이하 가구	150% 이하 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	평균소득 초과
현재 노후소득대비로 충분	2.7	0.7	1.3	1.3	2.2	4.5
실제 노후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11.7	7.6	4.0	7.5	10.9	15.9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63.6	75.7	78.4	69.8	65.7	54.9
개인연금에 대해 몰라서	5.7	1.2	2.5	4.4	5.6	7.3
개인연금의 안정성 또는 수익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7.3	1.4	3.2	3.2	7.0	10.4
이미 나이가 많아서	8.9	13.2	10.6	13.5	8.6	7.0
기타	0.1	0.1	0.0	0.3	0.0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8,662)	(529)	(349)	(710)	(4,309)	(2,682)

* p<0.05, ** p<0.01, *** p<0.001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각 문항마다 무응답수가 달라 인원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해약이 어려워서, 다른 노후보장 수단이 더 좋아서, 금융사가 거부해서, 가입예정 등

〈표 5-37〉 개인연금 미가입사유(국민연금 가입여부)

(단위: %)

구분	국민연금 가입여부 ($\chi^2=1,223.20^{***}$)			
	전체	가입하지 않음	가입중	연금수급중
현재 노후소득대비로 충분	2.7	2.0	2.9	2.9
실제 노후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11.7	10.1	13.5	7.9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63.6	73.1	64.7	51.4
개인연금에 대해 몰라서	5.7	5.1	6.0	5.4
개인연금의 안정성 또는 수익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7.3	6.1	9.1	2.9
이미 나이가 많아서	8.9	3.6	3.8	29.5
기타	0.1	0.1	0.1	0.0
계	100.0	100.0	100.0	100.0
(명)	(8,662)	(1,629)	(5,296)	(1,737)

* p<0.05, ** p<0.01, *** p<0.001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각 문항마다 무응답수가 달라 인원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 해약이 어려워서, 다른 노후보장 수단이 더 좋아서, 금융사가 거부해서, 가입예정 등

제4절 여가활동 실태

1. 여가시간

아래 표는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하루 평균 실제 여가에 소요하는 시간과 희망하는 여가시간을 평일과 주말로 구분해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평일의 경우 하루 평균 약 97분(1시간 37분)을 여가에 할애하고 있었으며 주말의 경우 하루 평균 225분(3시간 45분)의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희망하는 여가시간은 평일의 경우 하루 177분(2시간 57분), 주말의 경우 하루 평균 324분(5시간 24분)으로 희망 여가시간과 실제 여가 시간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일과 주말에 향유하고 있는 여가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평일 평균 100분(1시간 30분)을, 여성의 경우 평일 평균 94분(1시간 34분)을 여가에 할애하고 있었으며 주말의 경우 남성은 240분(4시간), 여성은 207분(3시간 27분)을 여가에 할애하고 있었다. 한편 여성이 남성에 비해 희망하는 여가시간도 더 짧은 것으로 분석되었다(남성 평일 = 178분, 남성 주말 = 333분, 여성 평일 = 176분, 여성 주말 = 313분).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과 60세 이상의 경우 평일 여가 시간이 각각 99분, 102분으로 50세 미만과 60세 미만의 93분, 97분에 비해 소폭 긴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 주말 여가시간도 마찬가지로 60세 이상이 232분으로 가장 길고 40세 미만이 227분, 50세 미만과 60세 미만은 각각 218분과 226분으로 나타났다. 한편 희망하는 여가시간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세 미만의 경우 평일 181분, 주말 333분, 50세 미만의 경우 평일 180분, 주말 333분, 60세미만의 경우 평일 173분, 주말 318

분, 60세 이상의 경우 평일 175분, 주말 315분으로 응답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40대와 50대 연령군의 자영업자들이 실제 여가시간과 희망 여가시간의 간격이 커 희망하는 만큼의 여가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연령집단으로 보인다.

학력수준별로 살펴보면 중졸 이하의 경우 평일 평균 94분, 주말 평균 215분의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며 고졸의 경우 평일 95분 주말 223분, 대졸 이상의 경우 평일 105분, 주말 239분의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분석되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여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여가시간도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길어져 학력수준과 여가시간에 대한 욕구 간에 비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배우자 유무나 가족 수에 따라 상이한 여가시간 분포를 보인다. 가령 미혼자의 경우 평일 평균 111분, 주말 평균 247분의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기혼 무배우자의 경우 평일 평균 104분, 주말 평균 218분의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반면 기혼유배우자의 경우 평일 평균 95분, 주말 평균 224분의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평일에 더 많은 여가 시간을 누리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말 여가시간이 늘어남을 보여준다.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 평일 평균 109분의 여가시간을, 주말의 경우 232분의 여가시간을 향유하는 반면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평일 평균 94분, 주말 평균 216분의 여가시간을 향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 규모가 클수록 여가시간이 짧다. 이러한 경향은 가구형태에서도 유사하게 반영되어 1인가구와 부부단독가구의 여가활용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반면 미혼자녀와 함께 거주하거나 편부모 및 조손가구의 경우 여가활용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8〉 하루 평균 여가시간(평일 & 휴일)/희망여가시간

(단위: 시간)

구분		평일여가시간	주말여가시간	희망평일여가시간	희망주말여가시간
전체		평균 97.3 (명) (11,439)	225.1 (11,439)	177 (11,439)	323.7 (11,439)
성별	남자	평균 99.7 (명) (6,283)	239.9 (6,283)	178 (6,283)	332.6 (6,283)
	여자	평균 94.4 (명) (5,156)	207 (5,156)	175.5 (5,156)	312.7 (5,156)
만나이	40세 미만	평균 98.6 (명) (1,476)	227 (1,476)	181 (1,476)	332.5 (1,476)
	40~50세 미만	평균 93.4 (명) (3,275)	218.4 (3,275)	180.4 (3,275)	333 (3,275)
	50~60세 미만	평균 97.2 (명) (4,285)	225.5 (4,285)	173.8 (4,285)	318 (4,285)
	60세 이상	평균 102 (명) (2,397)	232.4 (2,397)	175 (2,397)	315.4 (2,397)
베이비붐세대구분	54년생 이하	평균 103.5 (명) (2,949)	233.1 (2,949)	177.8 (2,949)	318.2 (2,949)
	55~63년생	평균 95.3 (명) (3,925)	223.7 (3,925)	172.1 (3,925)	317.1 (3,925)
	64~67년생	평균 93.7 (명) (1,445)	218.2 (1,445)	175.9 (1,445)	325.1 (1,445)
	68~74년생	평균 93.4 (명) (1,957)	218 (1,957)	182.3 (1,957)	336.4 (1,957)
	75년생 이상	평균 99.5 (명) (1,160)	229.9 (1,160)	183.4 (1,160)	336.3 (1,160)
학력	중졸 이하	평균 94.2 (명) (2,483)	215.2 (2,483)	170.6 (2,483)	310.8 (2,483)
	고졸	평균 95 (명) (6,070)	222.5 (6,070)	176.6 (6,070)	323.8 (6,070)
	대학졸 이상	평균 104.8 (명) (2,885)	239 (2,885)	183 (2,885)	334.4 (2,885)
결혼상태	미혼	평균 111.4 (명) (820)	246.9 (820)	186.7 (820)	342.4 (820)
	기혼유배우자	평균 95.3 (명) (9,496)	224.1 (9,496)	175.4 (9,496)	322.7 (9,496)
	기혼무배우자	평균 103.7 (명) (1,122)	217.5 (1,122)	182.7 (1,122)	317.2 (1,122)
구시군	구	평균 95.2 (명) (5,294)	226.5 (5,294)	174.9 (5,294)	325.2 (5,294)
	시	평균 98.2 (명) (5,407)	225.8 (5,407)	176.8 (5,407)	323.4 (5,407)
	군	평균 105.6 (명) (738)	209.7 (738)	192.6 (738)	314.1 (738)

〈표 5-38〉 하루 평균 여가시간(평일 & 휴일)/희망여가시간 (계속)

(단위: 시간)

구분		평일여가시간	주말여가시간	희망평일여가시간	희망주말여가시간
가구원수	1명	평균 109 (명) (1,002)	232.2 (1,002)	188.7 (1,002)	326.3 (1,002)
	2명	평균 99.1 (명) (2,443)	232.3 (2,443)	175.6 (2,443)	319.6 (2,443)
	3명	평균 98.4 (명) (2,481)	234.5 (2,481)	175.4 (2,481)	330.7 (2,481)
	4명 이상	평균 93.8 (명) (5,513)	216.3 (5,513)	176 (5,513)	321.7 (5,513)
	2천만 원 미만	평균 100.6 (명) (1,944)	230.5 (1,944)	176.7 (1,944)	319.9 (1,944)
	4천만 원 미만	평균 94.5 (명) (4,479)	225 (4,479)	174.6 (4,479)	323.6 (4,479)
	5천만 원 미만	평균 96.7 (명) (1,808)	219.8 (1,808)	174.2 (1,808)	320.9 (1,808)
	5천만 원 이상	평균 97.3 (명) (3,081)	223.8 (3,081)	180.3 (3,081)	327.3 (3,081)
	부부단독가구	평균 100.1 (명) (2,095)	235.7 (2,095)	176.7 (2,095)	321.8 (2,095)
	부부미혼자녀	평균 94.7 (명) (6,753)	224 (6,753)	176.4 (6,753)	325.3 (6,753)
가구 형태	가구	평균 94.4 (명) (598)	208.8 (598)	172.8 (598)	314.6 (598)
	편부모 및	평균 109 (명) (1,002)	232.2 (1,002)	188.7 (1,002)	326.3 (1,002)
	조손가구	평균 98.5 (명) (987)	212.4 (987)	171.2 (987)	318.8 (987)
	1인가구	평균 97.7 (명) (5,985)	235.1 (5,985)	176.4 (5,985)	329.8 (5,985)
	2명	평균 97 (명) (4,039)	210.9 (4,039)	176.3 (4,039)	313.4 (4,039)
	3명~4명	평균 96.3 (명) (1,416)	223.3 (1,416)	180.7 (1,416)	326.6 (1,416)
	300만 원 미만	평균 100 (명) (2,929)	235.1 (2,929)	172.5 (2,929)	323.1 (2,929)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	500만 원 미만	평균 99.1 (명) (2,660)	231.9 (2,660)	176.6 (2,660)	326.6 (2,660)
	1000만 원 미만	평균 96 (명) (2,763)	218 (2,763)	179.4 (2,763)	326.8 (2,763)
	1000만 원 이상	평균 94.8 (명) (2,571)	220.9 (2,571)	174.1 (2,571)	320.7 (2,571)

〈표 5-38〉 하루 평균 여가시간(평일 & 휴일)/희망여가시간 (계속)

(단위: 시간)

구분		평일여가시간	주말여가시간	희망평일여가시간	희망주말여가시간
자영업 진입연도	~89년	평균 99.9 (명) (2,128)	239.6 (2,128)	174.1 (2,128)	322.6 (2,128)
	90~94년	평균 96.5 (명) (1,594)	238.8 (1,594)	170.9 (1,594)	329 (1,594)
	95~99년	평균 96.5 (명) (1,546)	215.8 (1,546)	174 (1,546)	318.1 (1,546)
	00~04년	평균 96.2 (명) (2,450)	216.3 (2,450)	178.1 (2,450)	318.8 (2,450)
	05~12년	평균 97.1 (명) (3,716)	220.5 (3,716)	181.5 (3,716)	327.4 (3,716)
	무응답·거절	평균 118.8 (명) (6)	195.8 (6)	198.1 (6)	311.9 (6)
자영업 진입연령	~20대	평균 100 (명) (2,586)	232.3 (2,586)	177.4 (2,586)	329.7 (2,586)
	30대	평균 94.3 (명) (4,634)	226.6 (4,634)	176.4 (4,634)	327.5 (4,634)
	40대	평균 97.2 (명) (3,056)	219.4 (3,056)	176.6 (3,056)	318 (3,056)
	50대 이상	평균 103.6 (명) (1,154)	217.9 (1,154)	178.5 (1,154)	309.3 (1,154)
	무응답·거절	평균 90.2 (명) (9)	192.6 (9)	189.4 (9)	305.4 (9)
자영업 지속기간	0~5년	평균 97.3 (명) (2,766)	221.9 (2,766)	184 (2,766)	330.4 (2,766)
	6~10년	평균 97.5 (명) (2,275)	217.9 (2,275)	178.4 (2,275)	323.4 (2,275)
	11~15년	평균 98.6 (명) (2,032)	220 (2,032)	175.1 (2,032)	314.8 (2,032)
	16~20년	평균 94 (명) (1,417)	227.8 (1,417)	169.2 (1,417)	326.5 (1,417)
	20년 초과	평균 101.1 (명) (2,608)	244.1 (2,608)	175 (2,608)	326.8 (2,608)
	무응답·거절	평균 72.5 (명) (341)	171.7 (341)	166.6 (341)	285.9 (341)

2. 여가활동을 위한 지출수준

지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월평균 약 10.45만 원을 여가활동에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여가 지출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남성=12.12만 원, 여성=8.41만 원) 연령대가 낮을수록 여가에 대한 지출이 높았다. 40세 미만의 경우 12.50만 원을, 50세 미만의 경우 11.10만 원을, 60세 미만의 경우 9.99만 원을, 그리고 60세 이상의 경우 9.16만 원을 여가에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서 살펴본 여가시간 활용과 비교해 보면 50세 미만과 60세 미만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여가시간을 선용하고 있었지만 여가에 대한 지출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연령집단의 경우 시간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여가를 선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히려 비용이 소요되는 여가를 향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수준은 여가에 대한 지출수준과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졸 이하의 경우 월평균 7.09만 원의 여가지출을 하는 반면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월평균 14.84만 원을 지출해 큰 차이를 보였다. 가구 소득수준도 학력수준과 마찬가지로 2천 만 원 미만의 저소득자의 경우 월평균 7.55만 원을, 5천 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 월평균 13.13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혼의 경우 14.53만 원의 여가지출을 하는 반면 기혼 무배우자의 경우 6.86만 원의 여가지출을 해 미혼이거나 배우자의 존재 여부가 여가 지출에 차이를 가져 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39〉 월평균 여가활동을 위한 지출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명)
전체		10.45	(11,439)
성별	남자	12.12	(6,283)
	여자	8.41	(5,156)
만나이	40세 미만	12.50	(1,476)
	40~50세 미만	11.10	(3,275)
	50~60세 미만	9.99	(4,285)
	60세 이상	9.16	(2,397)
베이비붐 세대구분	54년생 이하	9.22	(2,949)
	55~63년생	9.97	(3,925)
	64~67년생	10.80	(1,445)
	68~74년생	11.43	(1,957)
	75년생 이상	13.16	(1,160)
학력	중졸 이하	7.09	(2,483)
	고졸	9.74	(6,070)
	대학졸 이상	14.84	(2,885)
결혼상태	미혼	14.53	(820)
	기혼유배우자	10.52	(9,496)
	기혼무배우자	6.86	(1,122)
구시군	구	11.83	(5,294)
	시	9.34	(5,407)
	군	8.67	(738)
가구원수	1명	9.71	(1,002)
	2명	10.00	(2,443)
	3명	10.51	(2,481)
	4명 이상	10.76	(5,513)
가구총소득	2천만 원 미만	7.55	(1,944)
	4천만 원 미만	9.68	(4,479)
	5천만 원 미만	10.53	(1,808)
	5천만 원 이상	13.13	(3,081)
가구형태	부부단독가구	9.81	(2,095)
	부부미혼자녀가구	10.85	(6,753)
	편부모 및 조손가구	9.48	(598)
	1인가구	9.71	(1,002)
	기타가구	10.46	(987)
종사자수	1명	9.76	(5,985)
	2명	10.20	(4,039)
	3명~4명	14.06	(1,416)

〈표 5-39〉 월평균 여가활동을 위한 지출 (계속)

(단위: 만 원)

	구분	평균	(명)
사업체월평균매출액	300만 원 미만	8.37	(2,929)
	500만 원 미만	9.64	(2,660)
	1000만 원 미만	10.62	(2,763)
	1000만 원 이상	13.47	(2,571)
자영업진입연도	~89년	10.81	(2,128)
	90~94년	9.76	(1,594)
	95~99년	9.85	(1,546)
	00~04년	10.67	(2,450)
	05~12년	10.66	(3,716)
	무응답·거절	5.02	(6)
자영업진입연령	~20대	12.28	(2,586)
	30대	10.76	(4,634)
	40대	9.09	(3,056)
	50대 이상	8.78	(1,154)
	무응답·거절	3.47	(9)
자영업지속기간	0~5년	10.61	(2,766)
	6~10년	10.73	(2,275)
	11~15년	10.65	(2,032)
	16~20년	9.90	(1,417)
	20년 초과	10.47	(2,608)
	무응답·거절	8.19	(341)

제5절 요약 및 정책제언

자영업자의 노후준비 실태를 예상 은퇴연령,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노후소득보장 및 여가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희망하는 은퇴연령은 일반 임금노동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력수준 및 가구 소득수준 등 자영업자의 사회적 계층에 따라 희망 은퇴 시점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임금노동자의 경우와 달리 고학력,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저학력 저소

특 자영업자에 비해 희망 은퇴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현재의 자영업을 유지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희망 은퇴연령의 차이는 경제적인 노후준비 여부와 밀접한 상관이 있다. 앞선 분석 결과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자영업자의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제적 노후준비 정도로 인하여, 희망 은퇴연령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준비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83.3%가 노후소득대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구총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68.7%만 노후소득준비를 하고 있어 31.3%는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금 당장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국민연금 가입 등 노후소득 준비를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82.4%로 나타났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기간에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채 그대로 방치될 경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근로기간에 본인 스스로 노후소득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중 저소득층 역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노후소득 보장수단은 국민연금제도이므로 노후소득대비 차원에서 공적소득보장제도에서 자영업자 중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가 노후소득 수단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 82.5%가 제도에 가입하고 있거나(65.7%)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16.8%) 조사되었다. 일반가구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91.8%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소득활동 불안정 및 소득

파악여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저조하고 제도 운영 상으로도 한계가 있는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을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보장대책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구총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자 중 88%가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법상 2006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나, 본인 신고소득에 의존하여 소득을 파악하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 본인이 지역으로 가입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근로자 또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본인이 보험료 9%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있거나, 아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자영업자 중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납부율이 낮고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에 이들이 노령층이 될 경우 무연금자나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액이 적은 저연금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활동을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실제로는 소득활동을 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의 비중이 91.1%로 나타났다. 소득이 있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경험에 있는 사람들 중 92.2%가 지역가입자였다. 이와 같은 자영업 사업장을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득파악이 더 유리한 사업장 가입자로 관리한다면 보험료 체납자 또는 미납자 상당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자영업자 중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면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는 자의 비중은

50.5%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더라도 여전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절반에 가까운 49.5%로 나타났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125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사회보험료 1/3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2012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민연금도 자영업자가 아닌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면 기존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자 중 절반을 넘어서는 50.5%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으므로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면 국민연금 가입 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층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 자영업자의 소득보장 전반에 대한 실태과 악을 위해 개인연금 가입실태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22.6%만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고 75.8%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사적 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연금이 아직까지는 노후 소득보장체계의 한축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임금생활자들의 경우 여가 및 사회활동 측면의 노후 준비에 있어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금노동자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역 U자 분포를 보이는 것과 차별적이다. 즉 임금노동자들의 경우 여가와 사회활동 관련 노후준비에 있어 시간적인 여유 등으로 인해 양 극단에서 준비도가 낮고 오히려 중간층에서 준비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수준 및 학력수준과 비례관계의 분포를 보인다.

여가 활동의 경우 국민 평균과 비교했을 때 자영업자들의 여가선행용 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자들이 일반 국민에 비해 여가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국민여가활동조사 자료(2007)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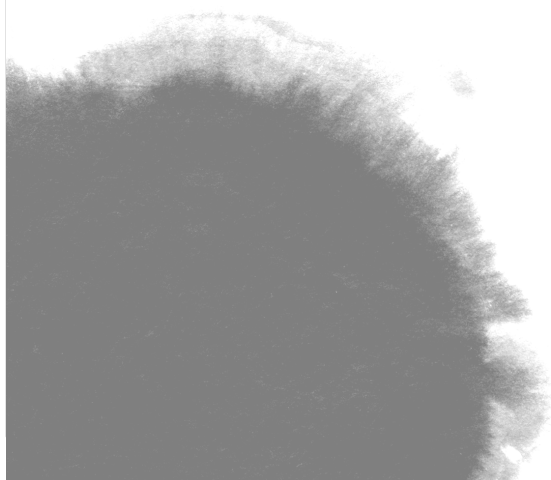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평일 여가시간은 178분, 주말 여가시간은 330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의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97.3분, 주말 225.1분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점의 차이로 인해 단선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국민 평균치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자 가운데서도 고학력, 고소득인 사람들의 상대적 여가지출 및 여가시간 선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영업자 내부에서도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현재 자영업자들은 노후에 희망하는 여가 욕구와 현재의 여가생활이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특별히 관광 및 야외나들이, 운동 및 스포츠 활동 등에 있어 욕구와 현실의 일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여가가 다른 여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용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여가 유형으로서 자영업자들이 여가에 할애할 시간이 길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욕구 불일치로 해석된다.



6장

자영업자의 복지서비스 실태



제6장 자영업자의 복지서비스 실태

제1 절 자영업자의 돌봄서비스 욕구 :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1. 노인과 장애인 가구의 현황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자영업자 11,439가구 중 장애인가구는 312가구로 전체의 2.7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증장애인가구는 94가구로 전체의 0.82%를 차지하고 있었다.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원으로 있는 경우는 2,023가구로 17.68%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장애인으로 등록된 노인 즉 장애노인이 있는 경우는 192가구로 전체의 1.68%로 나타났다.

〈표 6-1〉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가구		11,439	100.00
장애인가구	비장애	11,127	97.28
	장애	312	2.72
중증장애인가구	비장애 혹은 경증장애	11,345	99.18
	중증장애	94	0.82
노인가구	비노인가구	9,416	82.32
	노인가구	2,023	17.68
장애노인가구	비장애노인가구	11,247	98.32
	장애노인가구	192	1.68

가구당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를 살펴본 결과, 노인 가구의 경우 노인의 수가 1인(67.16%), 2인(32.2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가구의 경우 장애인의 수가 1인(95.51%), 2인(4.4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 가구당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의 수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전체 노인 가구		2,022	100.00
노인 가구원 수	1인	1,358	67.16
	2인	652	32.25
	3인	11	0.54
	4인	1	0.05
전체 장애인 가구		312	100.00
장애인 가구원 수	1인	298	95.51
	2인	14	4.49

장애인가구의 특성을 비장애인가구, 장애등급 3-6급인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증장애인가구 그리고 장애등급 1-2급인 가족구성원이 있는 중증장애인가구로 구분하고, 장애인가구의 특성을 가구형태, 주택점유형태, 가구총소득, 가구총소득(최저생계비)의 분포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가구총소득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볼 때, 장애인가구의 비중이 가구총소득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된다.

〈표 6-3〉 장애인가구의 특성

(단위: %)

구분	비장애인/장애3-6급/장애1-2급				
	비장애	경증장애	중증장애	계(명)	
가구형태	부부단독가구	96.81	2.88	0.32	100.0 (2,095)
($\chi^2=540.44^{***}$)	부부미혼자녀가구	98.78	.82	0.40	100.0 (6,753)
	편부모 및 조손가구	97.06	1.82	1.12	100.0 (598)
	1인가구	99.30	.58	0.12	100.0 (1,002)
	기타가구	86.77	7.90	5.33	100.0 (987)
	소계	97.34	1.84	0.82	100.0 (11,437)
주택	자가	97.58	1.47	0.95	100.0 (7,831)
점유형태	전세	98.10	1.53	0.36	100.0 (1,974)
($\chi^2=89.86^{***}$)	월세	95.42	3.98	0.59	100.0 (865)
	기타	90.28	8.75	0.97	100.0 (209)
	소계	97.36	1.82	0.81	100.0 (10,879)
가구총소득	2천만 원 미만	96.36	2.64	1.00	100.0 (1,944)
($\chi^2=19.74^{**}$)	4천만 원 미만	96.97	2.11	0.91	100.0 (4,479)
	5천만 원 미만	97.76	1.46	0.78	100.0 (1,808)
	5천만 원 이상	98.16	1.25	0.59	100.0 (3,081)
	소계	97.32	1.86	0.82	100.0 (11,311)
가구총소득	최저생계비이하가구	95.81	2.25	1.94	100.0 (592)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120%	91.87	5.65	2.48	100.0 (404)
($\chi^2=76.40^{***}$)	최저생계비150%	96.24	2.92	0.83	100.0 (854)
	평균소득	97.35	1.93	0.72	100.0 (5,516)
	평균소득초과가구	98.29	1.09	0.62	100.0 (3,945)
	소계	97.32	1.86	0.82	100.0 (11,311)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노인가구의 특성을 해당 가구원의 요양등급에 따라 구분하고, 노인가구의 특성을 가구형태, 주택점유형태, 가구총소득, 가구총소득(최저생계비) 분포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6-4〉 노인가구의 특성

(단위: %)

구분		장기요양등급여부		
		등급 판정 외	등급 판정	계 (명)
가구형태 ($\chi^2=10.76^*$)	부부단독가구	98.77	1.23	100.0 (673)
	부부미혼자녀가구	97.15	2.85	100.0 (368)
	편부모 및 조손가구	97.18	2.82	100.0 (136)
	1인가구	100.00	0.00	100.0 (135)
	기타가구	96.84	3.16	100.0 (711)
	소계	97.77	2.23	100.0 (2,023)
주택점유형태 ($\chi^2=7.98^*$)	자가	98.01	1.99	100.0 (1,521)
	전세	97.07	2.93	100.0 (187)
	월세	98.96	1.04	100.0 (87)
	기타	93.83	6.17	100.0 (74)
	소계	97.80	2.20	100.0 (1,869)
가구총소득 ($\chi^2=1.38$)	2천만 원 미만	98.32	1.68	100.0 (639)
	4천만 원 미만	97.58	2.42	100.0 (729)
	5천만 원 미만	97.25	2.75	100.0 (228)
	5천만 원 이상	98.23	1.77	100.0 (386)
	소계	97.91	2.09	100.0 (1,982)
가구총소득 (최저생계비) ($\chi^2=3.16$)	최저생계비이하가구	97.31	2.69	100.0 (216)
	최저생계비120%	99.18	0.82	100.0 (127)
	최저생계비150%	97.64	2.36	100.0 (230)
	평균소득	97.58	2.42	100.0 (967)
	평균소득초과가구	98.70	1.30	100.0 (443)
	소계	97.91	2.09	100.0 (1,982)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2. 장애인과 노인 가구원의 돌봄 욕구

개인의 돌봄 욕구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기준 혹은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해 측정될 수 있다. 장애인의 돌봄 욕구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현재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1~6급), 노인의 돌봄 욕구에 대한 기준으로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요양등급(1~3급)이 대표적이다. 본 조사에서는 장애등급 및 요양등급을 조사함과 동시에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돌봄 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도움의 필요정도에 대한 5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도록 하였다.¹⁷⁾

우선 장애인 가구원의 장애등급을 통해 돌봄 욕구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먼저, 장애인가구원의 장애등급은 3급(21.42%)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6급(19.98%), 2급(17.4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 가구원의 장애등급을 중증(1~2급), 경증(3~6급)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1-3급에 해당되는 경증장애의 비율이 69.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원의 주관적인 도움 필요정도의 경우, 일부 도움이 필요한 경우(5점 척도의 3점)가 17.69%,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경우(4점)가 11.95%,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5점)가 14.77%로 나타나 일상생활수행에서 남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경우는 모두 44.41%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장애인 가구의 51.84%로 나타났으며 이때 도와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응답자의 가족 및 친척인 경우가 38.90%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정부의 서비스나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즉 외부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7.68%로 나타났다.

17) 자영업자의 복지서비스 실태조사에 대한 설문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돌봄 욕구가 돌봄 욕구를 가진 당사자 이외의 돌봄 욕구를 가진 자의 대리인에 의해 응답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6-5〉 장애인 가구원의 돌봄 서비스 욕구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장애등급	1급	39	12.67
	2급	54	17.47
	3급	67	21.42
	4급	39	12.57
	5급	42	13.63
	6급	62	19.98
	모름	3	0.96
	거절	4	1.31
	계	312	100.00
장애 정도 (경증/중증)	경증장애	211	69.17
	중증장애	94	30.83
	계	305	100.00
도움필요정도	①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119	38.30
	②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없이 혼자 할 수 있다	54	17.30
	③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55	17.69
	④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37	11.95
	⑤ 거의 모든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46	14.77
	계	312	100.00
도와주는 사람여부	있다	162	51.84
	없다	150	48.16
	계	312	100.00
주로 도와주는 사람과의 관계	응답자본인	35	21.54
	응답자의 가족 및 친척(동거, 비동거 모두 포함)	63	38.90
	외부 서비스(장기요양, 노인돌봄 등의 공공, 민간 서비스)	45	27.68
	가족원과 외부 서비스	18	11.15
	기타	1	0.73
	계	162	100.00

노인가구원의 돌봄 욕구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노인가구원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가구원을 살펴보면, 3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1.40%로 가장 높았다. 전체 노인가구에서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는 2.23%였다.

노인가구원의 도움 필요정도를 살펴보면, 일부 도움이 필요한 경우(5점 척도 중 3점)가 2.63%, 대부분 도움이 필요한 경우(4점)가 0.77%,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5점)가 0.93%로 일상생활수행에서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4.33%로 나타났다.

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가 8.66%로 나타났으며 이때 도와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응답자의 가족 및 친척인 경우가 58.04%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정부의 서비스와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즉 외부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3.14%로 나타났다.

〈표 6-6〉 노인 가구원의 돌봄 서비스 욕구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장기요양등급	1급	8	0.37
	2급	9	0.45
	3급	28	1.40
	등급없음	1,978	97.77
	소계	2,023	100.00
장기요양등급 여부	등급 없음	1,978	97.77
	등급 있음	45	2.23
	소계	2,023	100.00
도움필요정도	①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할수있다	1,764	87.22
	②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없이 혼자할 수 있다	171	8.45
	③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53	2.63
	④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15	0.77
	⑤거의 모든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19	0.93
	소계	2,023	100.00
도와주는 사람여부	있음	175	8.66
	없음	1,847	91.34
	소계	2,023	100.00
주로 도와주는 사람과의 관계	응답자본인	45	25.84
	응답자의가족및친척(동거, 비동거 모두 포함)	102	58.04
	외부서비스(장기요양 노인돌봄 등의 공공 민간서비스)	23	13.14
	가족원과 외부서비스	5	2.98
	기타	0	0.00
	소계	175	100.00

장애인가구 중 해당 가구원의 돌봄 실태를 도와주는 사람의 여부와 주로 도와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관적인 도움의 필요정도에 따라 도와주는 사람여부에 대한 응답을 살펴본 결과, ‘일부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 필요한 경우’ 즉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26.11%, 2.82%, 0%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움의 필요정도에 따라 ‘주로 도와주는 사람’을 살펴본 결과,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주로 도와주는 사람이 응답자의 가족 및 친척인 경우가 각각 53.36%, 42.7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주로 도와주는 사람이 외부서비스인 경우의 비중이 45.52%로 높게 나타났다.

〈표 6-7〉 장애인의 주관적인 돌봄 필요도와 장애등급 및 돌봄 실태

(단위: %, 명)

구분	도움의 필요정도					소계
	①	②	③	④	⑤	
도와주는 있음	12.24	44.56	73.89	97.18	100.00	51.84 (162)
사람여부 없음	87.76	55.44	26.11	2.82	0.00	48.16 (150)
($\chi^2=160.31^{***}$) 소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312)
주로 응답자 본인	48.66	34.75	17.46	14.58	15.12	21.54 (35)
도와주는 가족 및 친척	51.34	46.92	53.36	42.75	14.97	38.90 (63)
사람과의 외부서비스	0.00	14.15	17.91	36.12	45.52	27.68 (45)
관계 가족원+외부	0.00	4.18	11.27	3.29	24.40	11.15 (18)
($\chi^2=47.88^{***}$) 기타	0.00	0.00	0.00	3.27	0.00	0.73 (1)
소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62)

①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②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다

③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④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⑤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노인가구 중 해당 가구원의 일상생활수행에서 도움의 필요정도에 따라 ‘도와주는 사람의 여부’와, ‘주로 도와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주관적인 도움의 필요정도에 따라 도와주는 사람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일부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 필요한 경우’ 즉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각각 17.58%, 17.25%, 43.83%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도움의 필요정도에 따라 ‘주로 도와주는 사람’을 살펴본 결과,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주로 도와주는 사람이 가족 및 친척인 경우가 57.77%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와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주로 도와주는 사람이 외부서비스인 경우가 42.53%, 67.65%로 높게 나타났다.

〈표 6-8〉 노인의 돌봄 필요도와 장기요양등급 및 돌봄 상태

(단위: %, 명)

구분		도움의 필요정도					소계
		①	②	③	④	⑤	
도와주는 사람여부	있음	3.85	23.43	82.42	82.75	56.17	8.66 (175)
	없음	96.15	76.57	17.58	17.25	43.83	91.34 (1,847)
($\chi^2=631.06^{***}$)	소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23)
주로 도와주는 사람관계	응답자본인	38.16	21.58	24.47	0.00	0.00	25.84 (45)
	가족및친척	59.73	69.62	57.77	35.11	32.35	58.04 (102)
	외부서비스	2.11	7.59	13.50	42.53	67.65	13.14 (23)
($\chi^2=79.20^{***}$)	가족원+외부	0.00	1.21	4.26	22.36	0.00	2.98 (5)
	기타	0.00	0.00	0.00	0.00	0.00	0.00 (0)
	소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75)

①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②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다

③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④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⑤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제2절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이용현황

1.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본 조사에 응답한 자영업자 가구의 노인 및 장애인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과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가구 중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입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0.76%,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0.74%,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0.74%로 타 서비스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향후 서비스 이용의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방문간호서비스와 방문요양서비스의 경우의 서비스 이용의향이 각각 36.01, 35.70%로 높게 나타났다.

〈표 6-9〉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및 이용의향

구분	(단위: %, 명)	
	이용경험	이용의향
전체	100.0(1,976)	100.0(1,976)
노인요양시설입소서비스	0.76	26.96
노인전문병원	0.74	34.4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0.16	19.97
주간(야간) 보호서비스	0.44	24.01
단기보호서비스	0.25	26.66
방문요양서비스	0.67	35.70
방문간호서비스	0.74	36.01
방문목욕서비스	0.53	33.69

장애인가구 중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살펴본 결과, 재활병의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8.28%,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

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6.55%,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4.0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방문간호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의향이 각각 36.85%, 32.54%로 높게 나타났다.

〈표 6-10〉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및 이용의향

구분	(단위: %, 명)	
	이용경험	이용의향
전체	100.0(274)	100.0(274)
장애인생활시설서비스	1.51	20.40
재활병의원	8.28	30.74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40	14.53
주간보호서비스	2.99	28.58
단기보호서비스	1.01	26.49
활동지원서비스	4.09	32.54
방문간호서비스	6.55	36.85
방문목욕서비스	4.52	32.73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될 수 있으면 가정에서 해결하려고’에 응답한 비율이 28.40%로 가장 높았으며, ‘자격이 안 되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16.77%, ‘비용부담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은 15.95%의 순이었다.

장애인가구의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가정에서 해결하려고’라고 응답한 비율이 34.24%로 가장 높았으며, ‘비용부담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23.61%,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5.36%의 순이었다.

노인가구의 경우 요양등급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6-12〉와 같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는 경우 노인요양시설입소서비스, 노인전문병원, 주간(야간)보호서비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서비스의 이용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6-11〉 복지서비스 비용 사유

(단위: %, 명)

구분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전체	100.0(1,971)	100.0(272)
비용부담 때문에	15.95	23.61
자격이 안되서	16.77	14.16
해당 가구원이 원치 않아서	9.75	6.30
될 수 있으면 가정에서 해결하려고	28.04	34.24
서비스 질이 나빠서	0.58	0.66
서비스 기관이 가까이 없어서	0.10	0.64
바우처 사용이 어려워서	0.02	0.00
서비스 청구절차가 복잡해서	0.79	0.58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5.24	1.61
서비스 제공시간이 맞지 않아서	0.47	0.00
잘 몰라서	13.64	15.36
기타	8.67	2.84

〈표 6-12〉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구분	장기요양등급없음		장기요양등급판정		계(명)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노인요양시설입소서비스이용경험 ($\chi^2=48.18^{***}$)	0.75	99.25	10.72	89.28	100.0(2,023)
노인전문병원이용경험 ($\chi^2=1.37^*$)	0.72	99.28	1.63	98.37	100.0(2,02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용경험 ($\chi^2=0.02$)	0.07	99.93	0.00	100.00	100.0(2,022)
주간(야간)보호서비스이용경험 ($\chi^2=26.16^{***}$)	0.50	99.50	7.32	92.68	100.0(2,022)
단기보호서비스이용경험 ($\chi^2=0.16$)	0.36	99.64	0.89	99.11	100.0(2,023)
방문요양서비스이용경험 ($\chi^2=224.07^{***}$)	0.46	99.54	21.52	78.48	100.0(2,023)
방문간호서비스이용경험 ($\chi^2=16.23^{***}$)	0.81	99.19	6.82	93.18	100.0(2,023)
방문목욕서비스이용경험 ($\chi^2=11.57^{**}$)	0.52	99.48	3.65	96.35	100.0(2,023)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장애인가구의 경우, 1~2급 중증장애와 3~6급 경증장애로 구분하여 장애등급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중증장애인가구의 경우가 재활병의원,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방문간호서비스 이용, 방문목욕서비스 이용경험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6-13〉 장애등급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구분	중증(1-2급)		경증(3-6급)		계(명)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장애인생활시설서비스이용경험 ($\chi^2=0.99$)	2.92	97.08	1.20	98.80	100.0(304)
재활병의원이용경험 ($\chi^2=6.10^*$)	12.99	87.01	4.96	95.04	100.0(304)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용경험 ($\chi^2=0.47$)	2.42	97.58	1.20	98.80	100.0(305)
주간보호서비스이용경험 ($\chi^2=13.83^{***}$)	12.19	87.81	1.20	98.80	100.0(304)
단기보호서비스이용경험 ($\chi^2=1.65$)	4.05	95.95	1.20	98.80	100.0(304)
활동지원서비스이용경험 ($\chi^2=7.33^{**}$)	8.36	91.64	1.61	98.39	100.0(305)
방문간호서비스이용경험 ($\chi^2=24.96^{***}$)	20.80	79.20	1.75	98.25	100.0(305)
방문목욕서비스이용경험 ($\chi^2=11.04^{**}$)	10.89	89.11	1.20	98.80	100.0(304)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2.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 이용부담

노인가구가 정부의 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출한 본인 부담금과 민간서비스 구매비용을 도움의 필요정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도움의 필요정도 중에서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정부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으로 지출한 월평균비용이 256,168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서비스 구매비용은 도움의 필요정도 중에서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월평균 49,602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14〉 노인 가구원의 도움 필요정도에 따른 평균 서비스 구매비용

(단위: 원)

구분		본인부담액	민간 지출액	총액
도움의 필요정도 (5점 척도)	①	4,107	1,129	5,237
	②	5,713	18,651	24,364
	③	24,275	15,781	40,056
	④	256,168	30,012	286,181
	⑤	159,116	49,602	208,718
	계	8,151	3,670	11,821

①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②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없이 혼자 할 수 있다,

③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④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⑤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장애인가구가 정부의 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출한 본인 부담금과 민간서비스 구매비용을 도움의 필요정도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도움의 필요정도 중에서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정부의 복지서비스에 본인부담으로 지출한 월평균비용이 250,452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민간서비스 구매비용의 경우는 도움의 필요정도 중에서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월평균 478,273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15〉 장애인 가구원의 도움 필요정도에 따른 서비스 구매비용

(단위: 원)

구분		본인부담액	민간지출액	총액
도움의 필요정도 (5점 척도)	①	3,887	1,488	5,375
	②	42,522	0	42,522
	③	119,623	20,218	140,492
	④	72,517	8,265	81,773
	⑤	250,452	478,273	766,488
	계	73,139	75,771	150,286

①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②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없이 혼자 할 수 있다,

③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④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⑤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장기요양등급별 서비스 구매비용을 살펴본 결과, 3급이 본인부담액 98,503원과 민간지출액 19,192원, 총 117,696원으로 1급, 2급에 비해 평균 서비스 구매비용이 높았다. 그리고 이를 1~3급 장기요양대상과 장기요양 판정이 없는 대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1~3급 장기요양 대상의 경우가 평균 102,410원으로 장기요양판정이 없는 경우 9,755원 보다 92,655원 높게 나타났다.

〈표 6-16〉 요양등급별 서비스 구매비용

(단위: 원)

구분	① 1급	② 2급	③ 3급	등급판정자	등급판정 외
본인부담액	36,953	109,084	98,503	90,330	6,277
민간지출액	-	-	19,192	12,080	3,478
총액	36,953	109,084	117,696	102,410	9,755

장애등급별 서비스 구매비용을 살펴본 결과, 2급 장애인가구의 본인부담액이 158,048원, 민간서비스 구매비용이 309,199원, 총 491,680원으로, 1급 장애인의 경우 134,855원, 3급 장애인의 경우 190,749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1~2급 중증장애인과 3~6급 경증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1~2급 중증장애인의 경우가 평균 277,190원으로 3~6급 경증장애인 평균 서비스 구매비용인 16,846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7〉 장애등급별 서비스 구매비용

(단위: 원)

구분	1급	2급	3급	중증(1~2급)	경증(3~6급)
본인부담액	114,734	158,048	107,248	125,773	15,597
민간지출액	26,169	309,199	83,501	145,888	1,234
총액	134,855	491,680	190,749	277,190	16,846

제3절 요약 및 정책제언

자영업자 전체 가구 중 등록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2.72%, 65세 이상 노인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비중은 17.68%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및 노인가구의 특성에서 자영업자 장애인가구의 비중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와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저소득층 자영업자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주목된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서 장애발생률이 높은 경향을 보여줌과 동시에 장애인 가구의 추가적인 소득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장애인 및 노인 가구원의 돌봄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족 및 친척구성원이 돌봄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38.90%, 노인: 58.04%), 외부서비스의 비중은 (장애인: 27.68%, 노인: 13.14%)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장애인이나 노인의 돌봄 필요도가 중증인 경우(5점 척도의 4점~5점), 외부서비스의 비중이 가족서비스의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증인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으로 해석된다.

복지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자영업자 장애인 및 노인가구의 향후 서비스 이용 의향이 일반가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 14~36%, 노인: 19~35%). 따라서 자영업자가 복지서비스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복지시설 및 복지서비스 이용부담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가구는 월 평균 150,286원을(공공서비스 본인부담금: 73,139원, 민간서비스 구입액: 75,771원), 노인가구는 월 평균 11,821원을 돌봄 서비스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는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영업자 가구의 돌봄 욕구와 실태를 고려하는 복지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장애인 가구원의 주관적인 돌봄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돌봄의 욕구가 가장 높은 집단 즉 일상생활수행능력을 5점 척도로 묻는 질문에 5점으로 응답한 중증장애인의 비중이 14.77%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실시된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동일한 질문에 5점으로 응답한 장애인의 비중이 6.4%인 것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장애인 실태조사와 본 조사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거의 모든 일에서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비중이 자영업자 가구에서 일반 가구의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가구원을 도와주는 사람이 가구에 존재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장애인 가구의 51.8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2012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경우, 동일한 질문에 84.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가구에서 도움을 주는 이의 부재가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즉 돌봄 욕구가 높은 장애인 가구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부재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빈번한 자영업자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 공급을 효과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과 노인의 돌봄 욕구에 따라 정책적인 지원이 형평성 있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돌봄 비용이 장애인이나 노인의 돌봄 욕구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고 있었다. 노인 가구의 경우, 돌봄의 욕구를 5점 척도로 묻는 질문에 4점으로 응답한 그룹의 돌봄 비용이 (평균 286,181원) 5점으로 응답한 그룹 즉 돌봄의 욕구가 가장 높은 그룹의 돌봄 비용(평균 208,718원)보다 약 37%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된 이후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요양등급 1~3급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장애인 가구도 장애등급별로 돌봄 비용을 살펴보면, 2급 장애인가구의 본인부담액이 158,048원, 민간서비스 구매비용이 309,199원, 총 491,680원으로, 1급 장애인의 경우 134,855원, 3급 장애인의 경우 190,749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급 장애인의 돌봄 비용이 2급보다 낮은 것은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장애등급 1급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돌봄의 욕구가 높은 집단에 치중되어 있는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확대하여 돌봄의 욕구에 따라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영업자 가구의 현행 복지서비스에 의견을 고려하여 서비스 확충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경우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이 1~8%인 반면 향후 서비스 이용의향은 14~36%로 높게 나타났고, 노인 가구의 경우도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이 1% 미만인 반면 향후 서비스 이용의향은 19~35%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과 노인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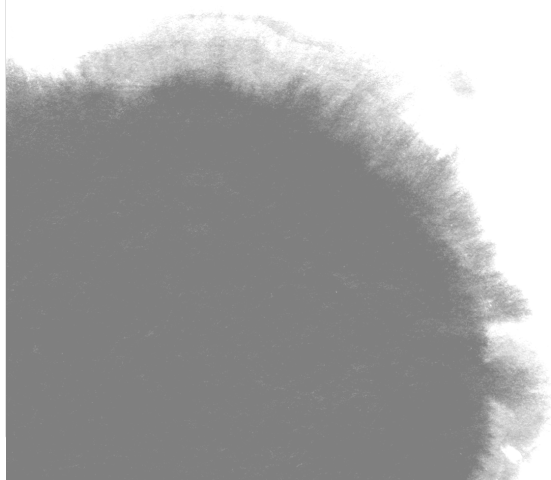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확충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¹⁸⁾

한편 장애인 가구와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 노인 가구는 ‘자격이 안 되어서(16.77%)’, ‘비용 부담 때문에(15.95%)’의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장애인 가구의 경우는 ‘비용 부담 때문에(23.61%)’, ‘잘 몰라서(15.36%)’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영업자 가구의 복지서비스를 확충하는 과정에서 노인가구의 경우는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접근을, 장애인가구의 경우는 서비스의 비용부담을 고려함과 동시에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18) 장애인가구와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및 향후 이용의향에 대한 기존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이용경험은 평균 2%수준으로 향후 이용의향은 10%미만 수준이었다. 2009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은 0.2-1.6% 수준이었고 향후 이용의향은 30-50% 수준이었다.

7장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



제7장 자영업자의 삶의 만족도

제1 절 행복도와 분야별 만족도

종사자 규모 5인 미만 자영업자의 전반적 행복도에서 부정적 응답의 비율은 23.4%로 나타났다. 전반적 행복도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의 불행도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행복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라서 유배우자에 비해서 기혼 무배우자(이혼, 사별 등)의 경우 불행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배우자에 비해서 미혼자의 경우도 불행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력이 높아질수록 불행감이 감소하고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불행감이 감소하고 있다. 가구형태에 따라서 특히 편부모 및 조손가구의 불행감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1인가구의 경우도 불행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 추세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불행감이 감소하고 있으며, 주택 점유형태별로 자가인 경우 불행감이 가장 낮고, 자가에 비해서 전세나 월세의 경우는 불행감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구형태 중 취약가구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그리고 주거 형태가 임대인 경우 불행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불행감이 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 한국종합사회조사(김상욱 외, 2010)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전반적 행복감에

서 부정적 응답비율이 12.5%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 불행하게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전 국민에 비해 자영업자가 약 11%p가 더 높게 나타난 점도 특징적이다.

〈표 7-1〉 전반적 행복도

(단위: %)

구분		매우 행복	다소 행복	별로 행복하지 않음	전혀 행복하지 않음	선택할 수 없음	계 (명)
전체		4.6	65.7	21.4	2.0	6.3	100.0(11,439)
성 ($\chi^2=8.85$)	남성	4.8	66.6	20.6	1.9	6.0	100.0(6,283)
	여성	4.4	64.6	22.4	2.0	6.6	100.0(5,156)
연령 ($\chi^2=296.79^{***}$)	40세 미만	9.2	73.2	11.8	0.9	5.0	100.0(1,476)
	40~50세 미만	5.8	68.0	17.9	1.7	6.5	100.0(3,275)
	50~60세 미만	2.9	64.2	24.7	2.2	6.0	100.0(4,285)
	60세 이상	3.3	60.6	26.4	2.5	7.2	100.0(2,397)
혼인상태 ($\chi^2=631.86^{***}$)	미혼	4.9	61.0	23.8	3.1	7.2	100.0(820)
	기혼유배우자	5.0	69.2	18.5	1.3	6.0	100.0(9,496)
	기혼무배우자	1.3	39.5	44.7	6.3	8.3	100.0(1,122)
학력 ($\chi^2=515.32^{***}$)	중졸 이하	1.9	55.0	31.4	3.5	8.2	100.0(2,483)
	고졸	3.6	67.0	21.2	1.7	6.4	100.0(6,070)
	대학졸 이상	9.1	72.2	13.3	1.2	4.3	100.0(2,885)
가구원수 ($\chi^2=305.60^{***}$)	1인	2.8	48.7	35.1	5.3	8.1	100.0(1,002)
	2인	3.2	64.9	25.1	1.0	5.9	100.0(2,443)
	3인	5.3	65.3	20.6	2.5	6.4	100.0(2,481)
	4인 이상	5.3	69.3	17.7	1.5	6.1	100.0(5,513)
가구형태 ($\chi^2=521.20^{***}$)	부부단독가구	3.4	68.7	21.9	0.7	5.4	100.0(2,095)
	부부미혼자녀가구	5.4	69.8	17.4	1.7	5.7	100.0(6,753)
	편부모 및 조손가구	2.6	41.7	42.4	3.6	9.6	100.0(598)
	1인가구	2.8	48.7	35.1	5.3	8.1	100.0(1,002)
	기타가구	5.2	63.1	21.9	1.8	8.0	100.0(987)
가구소득 ($\chi^2=376.13^{***}$)	2천만 원 미만	2.7	49.1	35.0	4.5	8.8	100.0(7,831)
	4천만 원 미만	3.9	65.2	22.6	1.6	6.7	100.0(1,974)
	5천만 원 미만	4.7	71.5	17.6	1.1	5.2	100.0(865)
	5천만 원 이상	7.0	73.5	13.7	1.2	4.5	100.0(209)
주택점유형태 ($\chi^2=568.14^{***}$)	자가	4.2	71	18.1	1.3	5.4	100.0(1,944)
	전세	7.4	58	26	2.8	5.8	100.0(4,479)
	월세	3.2	46.4	34.4	4.4	11.7	100.0(1,808)
	기타	5.9	59.3	26.5	2.1	6.1	100.0(3,081)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가족관계 만족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불만족의 비율이 3.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었으며,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불만족도가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30대에서는 가족관계 불만족정도는 1.4%에 불과한 반면, 40대에서 2.9%, 50대에서 4.4%,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6.2%로 증가하고 있지만 큰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

혼인형태 중에서 특히 기혼 무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미혼의 경우 가족관계 불만족정도는 4.0%, 유배우자의 불만족정도는 3.2%수준이지만, 기혼 무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 불만족정도는 16.1%로 크게 증가하였다. 기혼 무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의 불만족의 결과로 형성된 혼인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불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은 예상되는 결과이다. 학력수준이 올라갈수록 가족관계 만족도는 커지고 있고 이는 소득수준과의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가구형태에 따라서 특히 편부모와 조손가구에서 가족관계 불만족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부부단독가구의 가족관계 불만족도는 4.0% 수준이고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는 2.8%인 반면, 편부모 및 조손가구의 가족관계 불만족도는 14%에 이르고 있다. 이 결과 역시 편부모와 조손가구가 가족관계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구형태로서 이들에게 가족관계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 역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가족관계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족관계 만족도는 가족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예상되는 기혼 무배우자의 경우, 편부모 및 조손가구에서 불만족정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7-2〉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도 불만족도 아님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전체		9.4	64.8	21.9	3.5	0.4	100.0 (10,437)
성 ($\chi^2=16.36^{**}$)	남성	10.2	64.9	21.3	3.1	0.4	100.0 (5,814)
	여성	8.4	64.7	22.5	4.0	0.5	100.0 (4,622)
연령 ($\chi^2=377.09^{***}$)	40세 미만	18.6	66.9	13.1	1.0	0.4	100.0 (1,224)
	40~50세 미만	11.8	67.4	18.0	2.5	0.4	100.0 (3,040)
	50~60세 미만	6.7	64.5	24.5	3.8	0.6	100.0 (4,014)
	60세 이상	5.7	60.7	27.5	5.8	0.4	100.0 (2,153)
혼인상태 ($\chi^2=415.96^{***}$)	미혼	11.5	59.9	24.5	4.0	0.0	100.0 (355)
	기혼유배우자	9.6	66.6	20.6	2.8	0.4	100.0 (9,496)
	기혼무배우자	4.5	39.2	40.2	14.5	1.6	100.0 (586)
학력 ($\chi^2=431.70^{***}$)	중졸 이하	5.4	58.1	29.5	6.1	0.9	100.0 (2,173)
	고졸	7.7	66.3	22.4	3.4	0.2	100.0 (5,702)
	대학졸 이상	16.6	67.2	14.3	1.4	0.5	100.0 (2,561)
가구원수 ($\chi^2=139.06^{***}$)	2인	6.4	61.0	27.0	5.2	0.3	100.0 (2,443)
	3인	10.4	63.8	20.5	4.7	0.6	100.0 (2,481)
	4인 이상	10.3	66.9	20.2	2.2	0.4	100.0 (5,513)
가구형태 ($\chi^2=378.40^{***}$)	부부단독가구	6.8	64.7	24.6	3.7	0.3	100.0 (2,095)
	부부미혼자녀가구	10.7	67.4	19.1	2.4	0.4	100.0 (6,753)
	편부모 및 조손가구	5.5	43.4	37.1	12.8	1.2	100.0 (598)
	기타가구	8.2	60.3	26.0	4.8	0.7	100.0 (987)
주택점유형태 ($\chi^2=155.22^{***}$)	자가	9.1	67.8	19.9	3.0	0.2	100.0 (7,497)
	전세	12.0	58.8	24.1	3.7	1.4	100.0 (1,659)
	월세	8.5	53.8	31.0	5.9	0.8	100.0 (653)
	기타	10.4	59.3	24.4	5.6	0.3	100.0 (182)
가구소득 ($\chi^2=317.36^{***}$)	2천만 원 미만	7.6	52.5	30.8	8.3	0.8	100.0 (1,433)
	4천만 원 미만	9.0	62.9	24.1	3.4	0.5	100.0 (4,096)
	5천만 원 미만	9.1	69.6	18.1	3.0	0.2	100.0 (1,763)
	5천만 원 이상	10.8	70.7	16.5	1.6	0.3	100.0 (3,032)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결혼생활 만족도에서 불만족도는 전체적으로 3.6% 수준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다. 남성의 결혼생활만족도에서 불만족 정도는 2.9%인 반면, 여성의 불만족정도는 4.5%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결혼생활 불만족정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생활 불만족도가 다소 올라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큰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 30대의 경우 불만족정도는 1.0%였지만, 40대는 3.0%, 50대는 4.6%, 60세 이상은 3.8%로 나타나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력에 따라서 결혼생활 불만족정도는 학력수준이 올라갈수록 불만족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졸 이하의 경우 결혼생활 불만족정도는 6.3%, 고졸의 경우 3.3%,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2.2%로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결혼생활 불만족정도는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많으면 불만족정도가 감소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구원수가 2인 경우 결혼생활 불만족 정도는 4.2%인 반면, 가구원수가 3인인 경우 불만족 정도는 4.3%였고,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경우 3.0%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큰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 가구형태에 따라서 결혼생활 불만족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의미 있는 차이로 보기는 힘들다.

다만 주택의 점유형태에 따라서 결혼생활 만족도는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자가를 소유한 경우 결혼생활 불만족도는 3.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전세의 경우 결혼생활 불만족도는 4.9%로 나타났고, 월세의 경우 4.7%로 다소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가 소유자에 비해 전세 또는 월세 소유자의 불만족도가 약간 높게 나타난 것이다.

다른 한편 소득수준에 따라서 결혼만족도의 추세를 볼 때 소득수준이 올라가면 결혼 만족도역시 올라가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소득수준이 2천만 원미만인 경우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 불만족 정도가 7.5%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7-3〉 결혼생활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도 불만족 도 아님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명)
전체		9.4	60.1	26.9	3.2	0.4	100.0(9,496)
성 ($\chi^2=70.05^{***}$)	남성	10.3	62.3	24.6	2.5	0.4	100.0(5,432)
	여성	8.2	57.2	30.1	4.2	0.3	100.0(4,064)
연령 ($\chi^2=393.03^{***}$)	40세 미만	20.3	64.8	13.8	1.0	0.0	100.0(930)
	40~50세 미만	11.9	63.3	21.7	2.5	0.5	100.0(2,843)
	50~60세 미만	6.8	58.6	30.0	4.1	0.5	100.0(3,738)
	60세 이상	5.6	56.0	34.7	3.7	0.1	100.0(1,982)
학력 ($\chi^2=433.84^{***}$)	중졸 이하	4.1	52.9	36.8	5.8	0.5	100.0(1,920)
	고졸	8.4	60.5	27.9	3.0	0.3	100.0(5,292)
	대학졸 이상	16.3	65.2	16.4	1.7	0.5	100.0(2,283)
가구원수 ($\chi^2=76.71^{***}$)	2인	7.0	56.8	32.0	4.2	0.0	100.0(2,093)
	3인	11.1	59.7	24.9	3.8	0.5	100.0(2,106)
	4인 이상	9.7	61.6	25.7	2.6	0.4	100.0(5,297)
가구형태 ($\chi^2=77.96^{***}$)	부부단독가구	7.0	56.8	32.0	4.2	0.0	100.0(2,093)
	부부미혼자녀가구	10.2	61.3	25.1	2.9	0.5	100.0(6,531)
	편부모 및 조손가구	8.2	58.3	27.2	2.9	3.4	100.0(28)
	기타가구	9.1	58.9	28.7	3.0	0.3	100.0(841)
주택점유형태 ($\chi^2=72.11^{***}$)	자가	9.0	61.4	26.6	2.8	0.2	100.0(6,959)
	전세	11.9	58.0	25.3	3.6	1.3	100.0(1,496)
	월세	10.1	54.8	30.4	4.7	0.0	100.0(522)
	기타	9.7	65.2	21.1	4.0	0.0	100.0(116)
가구소득 ($\chi^2=204.08^{***}$)	2천만 원 미만	7.0	49.2	36.3	6.6	0.9	100.0(1,241)
	4천만 원 미만	9.1	58.9	28.2	3.6	0.3	100.0(3,698)
	5천만 원 미만	9.1	62.8	25.2	2.6	0.2	100.0(1,638)
	5천만 원 이상	11.0	64.9	22.3	1.6	0.3	100.0(2,826)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소득 만족도에서 전체적인 불만족도는 39.8%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남성 사업주의 소득 불만족도는 41.2%인 반면 여성 사업주의 소득 불만족도는 38.1%로 여성에 비해서 남성 사업주의 불만족도가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소득 만족도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30대의 경우 소득 불만족 정도는 28.1%로 나타났지만, 40대의 경우 불만족 정도

는 36.0%, 50대의 경우 44.4%로 높아지고, 60세 이상의 경우 43.9%로 나타났다. 특히 50대의 소득 불만족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 연령층의 지출이 일반적으로 가장 높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기혼 무배우자의 경우 소득 불만족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혼자의 경우 불만족 정도가 35.1%이고 유배자의 경우 38.0%였지만, 기혼 무배우자의 경우 소득 불만족 정도는 58.3%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기혼 무배우자의 경우 가구소득이 취약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력수준 역시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어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소득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이하 집단의 소득 불만족 정도는 50.7%로 높게 나타났다. 고졸의 경우 불만족 정도는 40.3%로 나타났고, 전문대졸 이상의 불만족 정도는 29.1%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 중에서는 편부모와 조손가구의 경우 소득 불만족 정도가 59.4%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주택 점유형태 중에서 월세의 경우 소득 불만족 정도가 61.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기혼 무배우자의 경우와 중졸 이하 학력집단, 편부모와 조손가구 집단, 그리고 월세 소유자의 경우 특히 소득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 이들 집단의 소득수준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 7-4〉 소득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도 불만족도 아님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전체		1.4	18.2	40.6	30.1	9.7	100.0 (11,439)
성 ($\chi^2=13.45^{***}$)	남성	1.3	17.4	40.1	31.0	10.2	100.0 (6,283)
	여성	1.5	19.2	41.2	28.9	9.2	100.0 (5,156)
연령 ($\chi^2=179.23^{***}$)	40세 미만	1.6	22.6	47.8	23.0	5.1	100.0 (1,476)
	40~50세 미만	1.7	19.3	42.9	27.7	8.3	100.0 (3,275)
	50~60세 미만	0.9	16.8	37.9	32.7	11.7	100.0 (4,285)
	60세 이상	1.6	16.6	37.9	32.9	11.0	100.0 (2,397)
혼인상태 ($\chi^2=213.92^{***}$)	미혼	0.7	17.0	47.1	25.7	9.4	100.0 (820)
	기혼유배우자	1.5	19.3	41.2	29.1	8.9	100.0 (9,496)
	기혼무배우자	0.9	10.1	30.7	41.2	17.1	100.0 (1,122)
학력 ($\chi^2=348.79^{***}$)	중졸 이하	0.9	13.1	35.2	36.1	14.6	100.0 (2,483)
	고졸	1.1	17.1	41.5	30.8	9.5	100.0 (6,070)
	대학졸 이상	2.4	25.0	43.4	23.2	5.9	100.0 (2,885)
가구원수 ($\chi^2=34.12^{***}$)	1인	0.9	14.3	39.9	32.4	12.5	100.0 (1,002)
	2인	1.3	18.0	42.1	29.8	8.8	100.0 (2,443)
	3인	1.6	19.4	38.0	30.6	10.3	100.0 (2,481)
	4인 이상	1.5	18.5	41.3	29.5	9.3	100.0 (5,513)
가구형태 ($\chi^2=191.32^{***}$)	부부단독가구	1.4	19.9	43.8	28.0	7.1	100.0 (2,095)
	부부미혼자녀가구	1.6	19.6	40.5	28.8	9.5	100.0 (6,753)
	편부모 및 조손가구	0.8	8.5	31.3	40.8	18.6	100.0 (598)
	1인가구	0.9	14.3	39.9	32.4	12.5	100.0 (1,002)
	기타가구	1.1	14.7	41.1	34.5	8.7	100.0 (987)
주택점유형태 ($\chi^2=400.68^{***}$)	자가	1.5	20.8	42.7	27.8	7.2	100.0 (7,831)
	전세	1.1	13.6	39.7	32.7	12.9	100.0 (1,974)
	월세	0.5	11.1	26.8	39.3	22.4	100.0 (865)
	기타	2.6	12.7	40.6	27.9	16.2	100.0 (209)
가구소득 ($\chi^2=891.10^{***}$)	2천만 원 미만	0.7	9.2	30.4	38.1	21.5	100.0 (1,944)
	4천만 원 미만	0.9	15.3	41.1	33.0	9.7	100.0 (4,479)
	5천만 원 미만	2.1	19.0	43.9	28.5	6.6	100.0 (1,808)
	5천만 원 이상	2.2	27.6	44.7	21.5	4.0	100.0 (3,081)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일 만족도에서 불만족 정도는 전체적으로 26.1%로 나타났다. 남성의 불만족 정도는 26.6%로 나타났고, 여성의 불만족 정도는 25.2%로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 만족도에서 불만족 정도는 다소 증가하였다. 30대에서 불만족 정도는 15.7%였지만, 40대의 불만족 정도는 23.2%였다. 그리고 50대의 불만족 정도는 29.7%였고, 60세 이상의 경우는 29.8%로 나타나 고연령층일수록 일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서 기혼 무배우자의 경우가 일 만족도에서 불만족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혼의 경우 일 불만족 정도가 19.8%였고 유배우자의 경우 불만족 정도가 25.2%였지만, 기혼 무배우자의 경우는 37.3%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저학력 계층에서 일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의 경우 일 불만족 정도가 35.3%로 나타났다. 고졸의 경우는 일 불만족 정도가 27.3%로 나타났고,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는 일 불만족 정도가 15.5%로 나타나 중졸의 경우가 고졸이나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일 불만족 정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형태에서는 편부모 및 조손가구의 경우 일 불만족 정도가 37.2%로 높게 나타났다. 주택 점유형태에서 월세의 경우도 역시 일 불만족 정도가 39.5%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일 불만족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소득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일 불만족 정도가 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 4천만 원미만의 계층에서는 26.8%로 불만족 정도가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일 만족도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기혼 무배우자의 경우 그리고 편부모 및 조손가구와 월세 가구의 일 만족도가 크게 낮은 상황이며 가구소득이 2천만 원 미만 계층의 경우도 일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 일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도 불만족도 아님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명)
전체		2.2	28.6	43.2	21.6	4.5	100.0(11,439)
성 ($\chi^2=16.32^{**}$)	남성	1.8	29.0	42.5	22.3	4.3	100.0(6,283)
	여성	2.7	28.0	44.0	20.6	4.6	100.0(5,156)
연령 ($\chi^2=259.23^{***}$)	40세 미만	3.7	40.2	40.4	13.7	2.0	100.0(1,476)
	40~50세 미만	2.7	31.0	43.1	19.5	3.7	100.0(3,275)
	50~60세 미만	1.3	25.2	43.9	24.3	5.4	100.0(4,285)
	60세 이상	2.4	24.1	43.8	24.5	5.3	100.0(2,397)
혼인상태 ($\chi^2=139.86^{***}$)	미혼	3.3	31.8	45.1	16.2	3.6	100.0(820)
	기혼유배우자	2.3	29.6	42.9	21.0	4.2	100.0(9,496)
	기혼무배우자	1.1	17.3	44.3	30.2	7.1	100.0(1,122)
학력 ($\chi^2=561.21^{***}$)	중졸 이하	1.3	20.3	43.2	28.1	7.2	100.0(2,483)
	고졸	1.5	25.9	45.4	22.8	4.5	100.0(6,070)
	대학졸 이상	4.5	41.2	38.7	13.4	2.1	100.0(2,885)
가구원수 ($\chi^2=24.58^{***}$)	1인	2.2	24.1	44.7	24.9	4.2	100.0(1,002)
	2인	1.8	27.4	43.5	22.4	4.8	100.0(2,443)
	3인	2.2	29.7	42.4	20.9	4.8	100.0(2,481)
	4인 이상	2.4	29.4	43.1	20.9	4.2	100.0(5,513)
가구형태 ($\chi^2=90.69^{***}$)	부부단독가구	1.8	28.8	43.9	21.4	4.1	100.0(2,095)
	부부미혼자녀가구	2.4	30.4	42.4	20.7	4.2	100.0(6,753)
	편부모 및 조손가구	1.6	19.6	43.6	25.9	9.3	100.0(598)
	1인가구	2.2	24.1	44.7	24.9	4.2	100.0(1,002)
	기타가구	2.4	24.9	45.9	22.2	4.7	100.0(987)
주택점유형태 ($\chi^2=220.50^{***}$)	자가	2.3	30.7	44.4	19.3	3.3	100.0(7,831)
	전세	1.9	27.6	39.3	23.8	7.4	100.0(1,974)
	월세	1.3	19.9	39.2	29.9	9.6	100.0(865)
	기타	3.8	21.8	48.5	21.3	4.5	100.0(209)
가구소득 ($\chi^2=573.33^{***}$)	2천만 원 미만	1.8	16.2	42.3	30.9	8.9	100.0(1,944)
	4천만 원 미만	1.7	26.0	44.6	23.3	4.5	100.0(4,479)
	5천만 원 미만	2.6	28.7	46.2	19.5	3.0	100.0(1,808)
	5천만 원 이상	3.1	39.8	40.4	14.5	2.2	100.0(3,081)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여가활동 만족도에서 전체적인 불만족 정도는 36.3%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여가활동 불만족의 정도는 36.9%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여가활동 불만족 정도는 42.3%로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가활동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여가활동 불만족 정도는 31.8%로 나타났지만, 40대의 여가활동 불만족 정도는 39.4%로 높아졌고, 50대의 여가활동 불만족 정도는 41.1%로, 60세 이상의 여가활동 불만족 정도는 40.6%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고연령층일수록 여가활동의 불만족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에서는 기혼 무배우자의 경우 특히 여가활동 불만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미혼의 경우 여가활동 불만족 정도가 32.8%였지만, 유배우자의 경우 여가활동 불만족 정도가 38.2%인 반면, 기혼 무배우자의 경우 여가활동의 불만족 정도가 53.3%로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저학력층의 여가활동 불만족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의 여가활동 불만족 정도는 49.2%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고졸의 경우 불만족 정도는 40.9%로 감소하고,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불만족 정도는 27.6%로 더욱 감소하고 있다.

가구형태에 따라서 편부모와 조손가구의 여가활동 불만족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부부단독가구의 여가활동 불만족 정도는 34.5%로 나타났고,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의 경우는 38.5%로 나타난 반면, 편부모 및 조손가구의 여가활동 불만족 정도는 54.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주택 점유형태에서 월세 가구에서도 여가활동 불만족 정도가 56.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가구소득 2천만 원 미만 계층에서도 여가활동 불만족 정도가 49.2%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에서 여가활동의 불만족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표 7-6〉 여가활동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도 불만족도 아님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 (명)
전체		1.5	20.0	39.1	30.7	8.6	100.0 (11,439)
성 ($\chi^2=45.67^{***}$)	남성	1.5	21.7	39.9	29.2	7.7	100.0 (6,283)
	여성	1.5	17.9	38.3	32.5	9.8	100.0 (5,156)
연령 ($\chi^2=81.38^{***}$)	40세 미만	1.8	26.2	40.2	26.3	5.5	100.0 (1,476)
	40~50세 미만	1.7	19.8	39.1	31.0	8.4	100.0 (3,275)
	50~60세 미만	1.2	19.3	38.3	31.1	10.0	100.0 (4,285)
	60세 이상	1.6	17.6	40.1	32.4	8.2	100.0 (2,397)
혼인상태 ($\chi^2=135.77^{***}$)	미혼	1.5	20.7	44.9	25.9	6.9	100.0 (820)
	기혼유배우자	1.7	20.9	39.2	30.0	8.2	100.0 (9,496)
	기혼무배우자	0.4	11.9	34.5	40.2	13.1	100.0 (1,122)
학력 ($\chi^2=367.88^{***}$)	중졸 이하	1.1	13.2	36.5	37.4	11.8	100.0 (2,483)
	고졸	1.2	18.9	39.0	32.0	8.9	100.0 (6,070)
	대학졸 이상	2.6	28.1	41.7	22.2	5.4	100.0 (2,885)
가구원수 ($\chi^2=34.24^{***}$)	1인	1.1	16.6	41.2	32.3	8.8	100.0 (1,002)
	2인	1.0	20.2	41.6	29.1	8.1	100.0 (2,443)
	3인	1.5	22.3	36.5	31.1	8.6	100.0 (2,481)
	4인 이상	1.8	19.5	38.9	31.0	8.8	100.0 (5,513)
가구형태 ($\chi^2=136.45^{***}$)	부부단독가구	1.1	22.2	42.0	27.4	7.1	100.0 (2,095)
	부부미혼자녀가구	1.9	21.2	38.5	30.2	8.3	100.0 (6,753)
	편부모 및 조손가구	0.3	10.3	35.3	39.8	14.3	100.0 (598)
	1인가구	1.1	16.6	41.2	32.3	8.8	100.0 (1,002)
	기타가구	1.2	16.4	37.6	34.4	10.5	100.0 (987)
주택점유형태 ($\chi^2=273.39^{***}$)	자가	1.6	21.7	41.2	29.0	6.5	100.0 (7,831)
	전세	1.2	19.2	36.0	30.6	12.9	100.0 (1,974)
	월세	1.0	13.0	29.3	39.2	17.5	100.0 (865)
	기타	3.6	15.2	34.3	36.9	10.0	100.0 (209)
가구소득 ($\chi^2=292.18^{***}$)	2천만 원 미만	0.8	13.3	36.6	36.0	13.2	100.0 (1,944)
	4천만 원 미만	1.3	17.9	38.6	32.7	9.4	100.0 (4,479)
	5천만 원 미만	1.5	20.6	42.6	28.3	7.0	100.0 (1,808)
	5천만 원 이상	2.2	26.9	39.3	26.2	5.4	100.0 (3,081)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전체 삶의 만족도에서 불만족 정도는 17.1%로 나타났다. 남성의 삶의 불만족 정도는 16.9%로 나타났고, 여성의 삶의 불만족 정도는 17.4%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로 볼 수는 없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불만족 정도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삶의 불만족 정도는 9.2%였지만, 40대는 14.9%, 50대는 19.6%, 60세 이상의 삶의 불만족 정도는 20.6%로 나타나 연령이 상승할수록 삶의 불만족 정도가 커지고 있다. 혼인상태에서 기혼 무배우자의 경우 삶의 불만족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미혼자의 삶의 불만족 정도는 19.0%였고, 유배우자의 삶의 불만족 정도는 14.4%였지만, 기혼 무배우자의 경우 39.9%로 증가했다.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 삶의 불만족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고졸자의 삶의 불만족 정도는 17.2%였고, 전문대 졸 이상은 9.1%였지만 중졸 이하의 삶의 불만족 정도는 26.3%로 나타나 학력이 낮은 집단의 삶의 불만족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작을수록 삶의 불만족 정도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일 경우 삶의 불만족 정도는 14.7%이고, 3인인 경우 16.8%, 2인인 경우 17.5%인 반면 1인 가구의 삶의 불만족 정도는 30.8%로 크게 증가한다. 1인가구의 삶의 불만족 정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가구 구성보다 크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가구형태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편부모 및 조손가구의 삶의 불만족 정도가 크게 나타난 점이다. 부부단독가구의 삶의 불만족 정도가 14.0%, 부부 및 미혼자녀 가구는 14.5%인 반면 편부모 및 조손가구의 삶의 불만족 정도는 33.5%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주택의 점유형태에 따라서는 자가나 전세에 비해 월세 가구의 삶의 불만족 정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2천만 원 미만 소득계층에서 삶의 불만족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2009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삶의 불만족 정도는 17.7%로 나타났다(김상욱 외, 2010), 본 연구의 자영업자 전체의 삶의 불만족 정도가 17.1%로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 7-7〉 전체 삶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도 불만족 도 아님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계(명)
전체		1.8	33.7	47.4	15.7	1.4	100.0(11,439)
성 ($\chi^2=3.93$)	남성	1.6	34.4	47.1	15.5	1.4	100.0(6,283)
	여성	1.9	32.9	47.8	16.0	1.4	100.0(5,156)
연령 ($\chi^2=214.26^{***}$)	40세 미만	2.6	45.1	43.1	8.8	0.4	100.0(1,476)
	40~50세 미만	2.3	35.6	47.2	13.4	1.5	100.0(3,275)
	50~60세 미만	1.2	31.1	48.2	18.0	1.6	100.0(4,285)
	60세 이상	1.5	29.0	48.8	19.3	1.3	100.0(2,397)
혼인상태 ($\chi^2=532.19^{***}$)	미혼	2.0	28.1	50.9	16.4	2.6	100.0(820)
	기혼유배우자	1.9	36.4	47.3	13.4	1.0	100.0(9,496)
	기혼무배우자	0.3	15.2	45.4	35.1	3.9	100.0(1,122)
학력 ($\chi^2=547.81^{***}$)	중졸 이하	0.9	22.7	50.1	23.6	2.7	100.0(2,483)
	고졸	1.3	32.6	48.9	16.0	1.2	100.0(6,070)
	대학졸 이상	3.5	45.6	41.8	8.5	0.6	100.0(2,885)
가구원수 ($\chi^2=248.34^{***}$)	1인	1.2	19.7	48.4	26.7	4.1	100.0(1,002)
	2인	1.1	32.5	48.9	16.7	0.8	100.0(2,443)
	3인	1.6	34.8	46.8	15.0	1.8	100.0(2,481)
	4인 이상	2.2	36.3	46.8	13.7	1.0	100.0(5,513)
가구형태 ($\chi^2=428.45^{***}$)	부부단독가구	1.1	35.7	49.2	13.4	0.6	100.0(2,095)
	부부미혼자녀가구	2.1	37.0	46.5	13.4	1.1	100.0(6,753)
	편부모 및 조손가구	0.7	16.5	49.5	29.8	3.7	100.0(598)
	1인가구	1.2	19.7	48.4	26.7	4.1	100.0(1,002)
	기타가구	2.0	31.6	47.7	17.5	1.1	100.0(987)
주택점유형태 ($\chi^2=375.91^{***}$)	자가	1.7	37.2	47.9	12.6	0.6	100.0(7,831)
	전세	1.6	31.1	44.6	19.7	3.1	100.0(1,974)
	월세	1.6	20.5	45.4	28.9	3.7	100.0(865)
	기타	4.0	21.0	51.7	21.0	2.2	100.0(209)
가구소득 ($\chi^2=669.32^{***}$)	2천만 원 미만	1.4	19.7	47.2	27.7	4.0	100.0(1,944)
	4천만 원 미만	1.3	31.5	49.4	16.8	1.0	100.0(4,479)
	5천만 원 미만	2.0	36.0	48.1	13.4	0.6	100.0(1,808)
	5천만 원 이상	2.5	44.2	44.4	8.1	0.7	100.0(3,081)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가족의 저녁식사 빈도를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는 ‘일주일에 몇 번’ 식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의 매일 가족이 같이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는 25.6%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몇 번’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는 36.4%, 일주일에 한 번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는 21.7%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도 16.3%나 되었다.

연령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50대의 경우 가족 저녁식사의 빈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거의 매일 가족과 저녁식사를 한다는 비율에서 50대의 경우 20%로 가장 낮게 나타나며,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가족 저녁식사를 한다는 비율도 1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에서는 유배우자가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의 경우 거의 매일 가족 저녁식사를 한다는 비율은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가족 저녁식사를 한다는 비율은 15.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기혼 무배우자의 경우 가족 저녁식사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가족 저녁식사를 한다는 비율은 26.9%로 다른 혼인 상태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주일에 한 번 가족 저녁식사를 한다는 비율도 30.9%로 다른 혼인상태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이 높은 경우 가족 저녁식사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가구원수가 클수록 가족 저녁식사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형태에서는 부부단독가구가 가족 저녁식사를 가장 자주하며, 편부모 및 조손가구의 가족 저녁식사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주택 점유형태에서는 월세 가구가 다른 형태에 비해 한 달에 한 번 이하 가족 저녁식사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저녁식사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표 7-8〉 가족 저녁식사 빈도

(단위: %)

구분		거의 매일	일주일에 몇 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하	계 (명)
전체		25.6	36.4	21.7	16.3	100.0(10,358)
성	남성	26.6	36.8	21.7	14.9	100.0(5,771)
($\chi^2=20.31^{***}$)	여성	24.4	35.8	21.8	18.0	100.0(4,587)
연령	40세 미만	28.6	37.9	19.3	14.2	100.0(1,210)
($\chi^2=259.47^{***}$)	40~50세 미만	23.1	37.0	24.9	14.9	100.0(3,027)
	50~60세 미만	20.5	37.4	23.0	19.1	100.0(3,980)
	60세 이상	37.2	32.9	16.0	13.9	100.0(2,134)
혼인상태	미혼	17.4	32.7	25.3	24.6	100.0(339)
($\chi^2=134.74^{***}$)	기혼유배우자	26.5	37.1	21.1	15.3	100.0(9,464)
	기혼무배우자	15.6	26.6	30.9	26.9	100.0(555)
학력	중졸 이하	32.1	32.2	17.8	17.9	100.0(2,154)
($\chi^2=96.13^{***}$)	고졸	23.1	37.6	22.6	16.7	100.0(5,665)
	대학졸 이상	25.9	37.3	23.0	13.7	100.0(2,538)
가구원수	2인	37.6	35.7	14.1	12.5	100.0(2,403)
($\chi^2=303.44^{***}$)	3인	24.6	36.8	22.9	15.6	100.0(2,462)
	4인 이상	20.9	36.5	24.5	18.2	100.0(5,493)
가구형태	부부단독가구	40.5	36.6	12.2	10.7	100.0(2,083)
($\chi^2=450.32^{***}$)	부부미혼자녀가구	21.7	37.5	24.0	16.8	100.0(6,724)
	편부모 및 조손가구	16.8	27.8	29.9	25.5	100.0(562)
	기타가구	26.4	33.3	21.3	19.0	100.0(986)
주택점유형태	자가	24.4	38.3	21.6	15.7	100.0(7,470)
($\chi^2=57.58^{***}$)	전세	25.7	33.6	23.4	17.2	100.0(1,640)
	월세	28.2	25.5	24.4	21.9	100.0(634)
	기타	27.8	29.7	23.4	19.2	100.0(174)
가구소득	2천만 원 미만	38.6	31.3	15.4	14.7	100.0(1,401)
($\chi^2=223.83^{***}$)	4천만 원 미만	27.1	36.8	21.7	14.4	100.0(4,068)
	5천만 원 미만	19.3	41.4	21.7	17.6	100.0(1,759)
	5천만 원 이상	21.3	35.9	24.6	18.3	100.0(3,019)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가족 여가활동의 빈도에서 자영업자의 가장 일반적 형태는 ‘일 년에 몇 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한번 이상 여가활동을 한다는 비율은 13.9%였고, 한 달에 한 번은 20.0%, 일 년에 몇 번은 34.4%, 일 년에 한 번은 12.8%, 일 년에 한 번 미만은 18.6%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대체로 고연령층의 여가활동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30대의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 여가활동 빈도가 19.8%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반면 60세 이상의 경우 일 년에 한 번 미만의 여가활동 비율은 24.2%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에 따라서 유배우자에 비해 기혼 무배우자의 경우 여가활동의 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배우자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여가활동을 하는 비율은 14.6%로 다른 혼인형태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반면 기혼 무배우자의 경우 일 년에 한 번 미만의 여가활동 비율은 33.6%로 다른 혼인형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저학력층의 여가활동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의 경우는 일 년에 한번 미만의 여가활동 비율이 26.8%로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여가활동 비율이 20.0%로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에서 부부단독 가구의 여가활동 빈도는 높은 반면 편부모 및 조손가구의 여가활동 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단독 가구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여가활동 비율이 16.8%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편부모 및 조손가구는 일 년에 한 번 미만의 여가활동 비율이 31.6%로 다른 가구형태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주택 점유형태별로 월세의 경우 일 년에 한 번 미만의 여가활동 비율이 30.0%로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 빈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천만 원 미만 계층의 일 년에 한 번 미만 여가활동 비율이 28.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7-9〉 가족 여가활동 빈도

(단위: %)

구분		일주일 에 한 번 이상	한 달 에 한 번	일 년 에 몇 번	일 년 에 한 번	일 년 에 한 번 미만	계 (명)
전체		13.9	20.2	34.4	12.8	18.6	100.0(10,358)
성 ($\chi^2=19.08^{***}$)	남성	14.7	20.9	34.5	12.4	17.5	100.0(5,771)
	여성	12.9	19.4	34.3	13.3	20.0	100.0(4,587)
연령 ($\chi^2=300.32^{***}$)	40세 미만	19.8	28.2	31.4	8.4	12.1	100.0(1,210)
	40~50세 미만	14.5	24.1	35.3	11.7	14.3	100.0(3,027)
	50~60세 미만	11.2	17.6	36.0	14.4	20.8	100.0(3,980)
	60세 이상	14.9	15.2	32.0	13.8	24.2	100.0(2,134)
혼인상태 ($\chi^2=180.38^{***}$)	미혼	5.0	15.7	32.9	15.3	31.1	100.0(339)
	기혼유배우자	14.6	20.8	34.8	12.4	17.3	100.0(9,464)
	기혼무배우자	7.6	13.0	28.4	17.4	33.6	100.0(555)
학력 ($\chi^2=460.52^{***}$)	중졸 이하	10.9	16.0	32.3	14.0	26.8	100.0(2,154)
	고졸	12.4	18.2	35.4	14.6	19.4	100.0(5,665)
	대학졸 이상	20.0	28.4	34.0	7.7	9.9	100.0(2,538)
가구원수 ($\chi^2=43.25^{***}$)	2인	15.6	19.9	30.9	13.1	20.5	100.0(2,403)
	3인	13.7	20.4	33.3	12.0	20.7	100.0(2,462)
	4인 이상	13.3	20.3	36.5	13.0	16.9	100.0(5,493)
가구형태 ($\chi^2=144.37^{***}$)	부부단독가구	16.8	20.7	31.7	12.8	18.0	100.0(2,083)
	부부미혼자녀가구	13.6	20.6	36.4	12.0	17.3	100.0(6,724)
	편부모 및 조손가구	7.5	12.9	30.9	17.0	31.6	100.0(562)
	기타가구	13.4	20.8	29.1	15.4	21.3	100.0(986)
주택점유형태 ($\chi^2=122.46^{***}$)	자가	13.4	19.9	36.7	12.8	17.1	100.0(7,470)
	전세	17.2	23.5	29.0	11.4	18.9	100.0(1,640)
	월세	13.5	17.4	27.1	12.1	30.0	100.0(634)
	기타	15.0	20.4	27.9	18.0	18.7	100.0(174)
가구소득 ($\chi^2=228.74^{***}$)	2천만 원 미만	11.4	14.2	29.4	16.3	28.7	100.0(1,401)
	4천만 원 미만	12.7	19.1	35.4	13.9	18.9	100.0(4,068)
	5천만 원 미만	15.2	22.6	34.4	11.8	16.0	100.0(1,759)
	5천만 원 이상	16.0	23.3	35.9	9.9	14.8	100.0(3,019)

* pr <0.05, ** pr <0.01, *** pr <0.001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 및 각 문항마다 무응답자가 달라 합이 불일치할 수 있음.

제2절 요약 및 정책제언

삶의 만족도는 한 사회의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5인 미만 자영업자의 경우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위하여 전반적 행복도, 분야별 삶의 만족도와 전반적 삶의 만족도, 그리고 여가생활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자영업자의 삶의 질에 대한 분석 결과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체적 수준에서 자영업자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특성집단에 따라서 차별적이며, 특히 취약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일부 집단의 경우는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우선 자영업자의 전반적 행복도는 전 국민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2009년 한국종합사회조사(김상욱 외, 2010) 결과와 비교해서 불행하게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전 국민에 비해 자영업자가 약 11%p가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형태 중 편부모 및 조손가구, 1인 가구 등 취약가구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 그리고 주거 형태가 임대인 경우 불행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불행감이 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가족관계 만족도의 경우 기존의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예상되는 기혼 무배우자의 경우, 편부모 및 조손가구에서 불만족정도가 크게 나타났고,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소득만족도에서는 편부모와 조손가구의 불만족 정도가 매우 높고, 월세의 경우 불만족 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혼 무배우자의 경우와 중졸 이하 학력집단도 소득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어 이들 집단의 소득수준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일 만족도의 경우는 기혼 무배우자의 경우 그리고 편부모 및 조손가구와 월세 가구의 일 만족도가 크게 낮은 상황이며 가구소득이 2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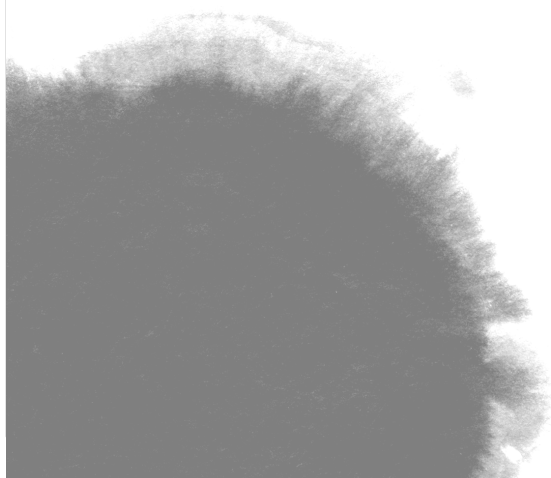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원 미만 계층의 경우도 일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만족도에서 전체적인 불만족 정도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편부모와 조손가구 및 저소득계층과 같은 취약계층에서 여가활동의 불만족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저녁식사 빈도에서, 학력이 높은 경우 가족 저녁식사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가구원이 많을수록 가족 저녁식사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구형태에서는 부부 단독가구가 가족 저녁식사를 가장 자주 하며, 편부모 및 조손가구의 가족 저녁식사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자영업자의 전반적 행복도가 크게 낮고, 편부모와 조손가구, 저학력 집단,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이 낮은 이유는 이들의 삶의 여건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일 것이다.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이유로 모두 정책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 특성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우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특히 취약 가족의 경우 전반적으로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다는 점은 제도의 불합리성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취약가족 정책의 대상에서 영세한 자영업자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8장

결론



제8장 결론

우리나라 취업자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30%수준까지 증가했었다. 그 후 점차 감소 추세로 전환하였고, 2003년 신용위기를 계기로 크게 감소하였고 다시 2006년부터 자영업자의 비중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자영업 부문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크지만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그 규모가 부담스럽다는 진단이 일반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너무 급격히 진행될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이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완만히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자영업 생활자들의 가계경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5인 미만 자영업 사업주에 대한 생활실태연구를 계획하여 2011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의 건강, 출산 및 양육 환경, 복지서비스와 노후준비 및 사회참여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태조사는 통계청의 2010년 전국사업체조사 대상 사업체 중에서 종사자규모 5인 미만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이중에서 11,802개 업체를 표본으로 추출하

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완료 후 분석 가능한 11,232개 표본을 확보하고 가중치를 적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5인 미만 자영업 사업주의 가구소득을 계층별로 규모를 추정하고 빈곤가구의 규모를 비교한 결과, 자영업자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빈곤율이 낮은 것은 자영업자의 특성상 사업체 경영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이로 인하여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높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가구의 빈곤율이 낮은 반면에 전반적인 소득수준은 근로자 가구의 소득수준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5분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 가구가 근로자 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 가구소득의 분포를 보면 평균값 이하에 대부분의 가구가 밀집되어 있고, 가구소득의 편차가 매우 크다.

가계지출에서 식료품비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며, 교육비와 기타 지출은 전체 소득계층에서 비슷한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에 의료비는 전체 소득계층이 지출액수가 유사하고, 따라서 보건의료비 지출의 비중은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출산행태를 분석할 결과 향후 자영업자의 출산수준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의 기대자녀수는 전체 가임기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이상자녀수는 전체 가임기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이상자녀수에서의 차이가 실제자녀수나 기대자녀수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자영업자가 장애요인들로 인하여 전체 여성에 비해 자녀 출산을 더 축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자영업이라는 근로형태의 장점이 실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도 고객관리 등의 차원에서 일정한 시간대에 근무를 하여야 하며, 출산이나 양육 초기에 휴직을 하여야

하는 등 일반적인 취업여성 혹은 맞벌이 부부와 같이 자영업 종사자들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임금 근로 등을 경험한 이후에 자영업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기의 후반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자영업의 근로형태 등 특수성을 감안한 보건의료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자영업자들 역시 자녀 양육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추가 출산을 주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수입이 적어 자녀 양육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의 출산수준이 생각보다 적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에 제대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그만큼 자녀 출산 및 양육 시에서는 더 많은 지출을 할 것이며 노후를 위한 저축 등도 부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출산과 양육을 마음 놓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들이 일-가정 양립제도와 노후소득보장제도에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의 건강과 관련하여, 본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자영업자의 건강수준이나 의료이용, 건강검진 수준, 민간건강보험 가입 등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표본추출 상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선별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대상 자영업자의 경우 비록 사업장 규모가 영세할지라도 각 가구의 주된 수입원일 가능성이 많고, 이들의 경우 타 가구원에 비해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상자의 특성 등에 맞게 더 세밀하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체계를 더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산층을 포함하는 일반국민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공급망 확대를 위해서 종전까지 정부가 추진해 오던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보건소가 추진 중인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의 대상자에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2년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건강보험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은 근로자와 사업주에 대해 보험료의 1/3~1/2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만 적용되고 있어서, 앞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건강보험 보험료를 포함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노후 준비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희망하는 은퇴연령은 일반 임금노동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력수준 및 가구 소득수준 등 자영업자의 사회적 계층에 따라 희망 은퇴 시점에서 차이가 보였는데 임금노동자의 경우와 달리 고학력,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저학력 저소득 자영업자에 비해 희망 은퇴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현재의 자영업을 유지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기간에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될 경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근로기간에 본인 스스로 노후소득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중 저소득층 역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수단은 국민연금제도이므로 노후소득대비 차원에서 공적소득보장제도에서 자영업자 중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활용할 의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활동 불안정 및 소득과약여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저조하고 제도 운영상으로도 한계가 있는 자영업자들은 국민연금을 가장 중요한 노후소득보장대책으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구총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업자 중 저소득층일수록 국민연금 제도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납부율이 낮고 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는 비중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에 이들이 노령층이 될 경우 무연금자 또는 저연금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한편 향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5인 미만 자영업자 중 국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면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비중은 50.5%로 나타났다. 따라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층소득보장체계 관점에서 사적연금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연금이 아직까지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축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의 여가와 관련하여, 노후에 희망하는 여가 욕구와 현재의 여가생활이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특별히 관광 및 야외나들이, 운동 및 스포츠 활동 등에 있어 욕구와 현실의 일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여가가 다른 여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용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여가 유형으로서 자영업자들이 여가에 할애할 시간이 길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욕구 불일치로 해석된다.

자영업자의 직업이동 경로를 살펴본 결과, 자영업 사업주의 임금근로

경험 비율은 60.8%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남성 사업주의 경우는 7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장차 기계조작·조립종사자의 경우 임금근로 경험 비율은 80.7%에 달해 숙련기술을 소유한 임금근로자의 자영업 전환 가능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운수업 사업주의 경우 임금근로 경험 비율은 83.5%에 달해, 임금근로를 오래 지속한 고연령층은 다른 산업보다도 운수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영업 시작 평균 연령은 36.5세이며 자영업 평균 종사기간은 13.4년으로 긴 편이며, 업종 전환 평균횟수는 0.55번에 불과하여 자영업자의 업종 전환 사례는 매우 적었다. 산업적 특징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업무와 관련되는 자영업의 경우 진입 연령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주로 고연령층이 운수업, 숙박음식업, 시설관리업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연도별 진입연령 비중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40대와 50대의 자영업 진입 비중이 그 전과 달리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

직업이동의 관점에서 자영업 진입의 주된 이유는 직장생활보다 높은 수입을 기대했기 때문(46.8%)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 취직의 어려움도(18.2%) 자영업 진입의 중요한 이유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취직이 어려워서 자영업을 시작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특성으로 자녀 양육 및 가사의 편의를 위해 자영업을 시작했다는 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높게 나타나,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이라는 우리나라 여성노동의 전형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자영업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5인 미만 자영업 사업주는 절반 이상이 이미 임금근로를 경험했으며, 특히 남성 사업주는 대부분 임금근로를 경험한 이후 자영업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였다. 40대와 50대의 자영업 진입이 확대되고 있고, 임금근로를 지속한 평균 기간보다 현

제까지 자영업을 지속한 평균 기간이 더 길며, 업종을 전환한 경우도 극히 드물고, 향후 폐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도 극히 드물었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의 임금근로 진입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자영업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사업주는 주로 경제상황의 악화 시점에 자영업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고, 임금노동시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탈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아마 이들은 스스로 임금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그리 높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자영업 노동시장에서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다시 비자발적으로 저임금 직종으로 재진입을 시도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자영업 노동시장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지금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금근로 전환 정책보다 자영업 사업체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대책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영업 부문의 규모축소 과정에서 급격한 구조조정은 가계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클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임금노동시장의 개선을 통해서 임금근로 전환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재의 사업체 운영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대책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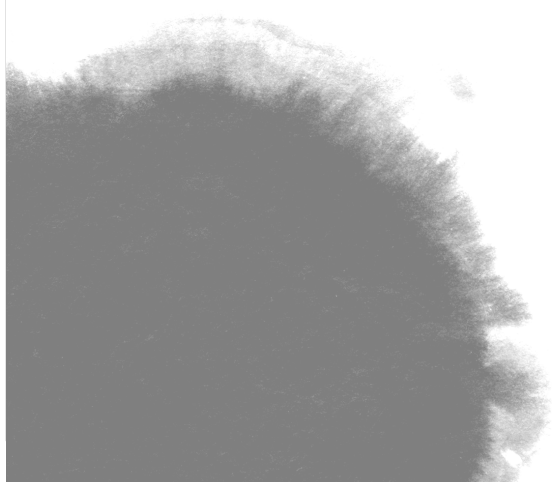


참고문헌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2009). 2008년 노인실태조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기초분석보고서.
- 국민연금공단(2012). 주요사업통계.
- 금재호·김기승·조동훈·조준모(2009).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 (I), 한국노동연구원.
- 김복순(2011). 자영업 노동시장의 최근 변화,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10월호: 7-18.
- 김상욱 외(2010).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2009,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성희 외(2012).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옥·이선행·김민수(2011). 2000년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미래전망. 여성 자영업자의 감소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명화 외(2009). 2008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계명대학교
- 방하남(2012). 고용보험 사각지대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3월호: 25-32.
- 류재우·최호영(1999).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에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2(1): 109-140.
- 서재만(2011). 자영업자 현황 및 정책방향, 국회예산정책처.
- 석상훈 외(2009).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생애 직업이력 및 연금이력 실태. 국민연금연구원.
- 윤석명(2012). 국민연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방안, 한

- 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3월호: 15-24.
- 윤석명 외(2012).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연금 등의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조덕(2012).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3월호: 33-49.
- 이병희(2012). 자영업 구조조정과 임금근로 전환의 노동시장 성과, 사회보장연구 28(1): 191-215.
- 이승렬 · 김종일 · 박찬임 · 이덕재 · 홍민기(2009). 자영업 노동시장 연구(Ⅱ),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렬 · 최강식(2007), 자영업 부문에 관한 한 일 비교연구, 노동정책 연구 7(4): 59-85.
- 전병유(2003),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26(3): 149-179.
- 정경희 외(2010).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수영(2005),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기은조사 여름호
- 통계청(2007). 국민여가활동조사.

100





부록

부록 1. '저출산·고령화대응 자영업자 복지수요 조사' 조사표

부록 2. 자영업자의 시간대 및 산업별 보육방법

A. 가구 일반 사항

A1. 선생님 댁의 가구원은 선생님을 포함해 몇 명입니까? 현재 기준으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원을 구분해 말씀해주세요. (비동거 가구원은 7번부터 기입)

가구원이란 생계를 같이 하면서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어져있는 가족구성원을 말합니다.

- 학업(학생), 군복무(군인), 입원, 요양(노인 등)을 위해 집을 잠시 떠나 있는 경우도 비동거 가구원으로 포함합니다.

-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가족(사실혼 등)이면 가구원으로 포함합니다.

A1-1. 가구원 수 (본인 포함 1명 이상)				전체	명	동거	명	비동거	명	
A1-2 가구원 번호	A1-3 사업주와의 관계 관계 코드	A1-4 성별	A1-5 출생년월 년 월	A1-6 혼인 상태	A1-7 교육수준 A1-7-1 학교	A1-7-2 상태	A1-8 취업여부 A1-8-1 취업 상태	A1-8-2 구직 활동 (A1-8-1의 ②만 응답)	A1-9 종사상 지위	A1-10 직종
A1-1 가구원수와 아래 일반 입력해야	아래 보기	①남 ②여	일력 기입	①배우자 있음 ②사별 (별거) ③미혼	①무학 (미취학)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 ⑤전문대학 ⑥대학교 ⑦대학원	①졸업 ②수료 ③중퇴 ④학력 ⑤휴학	최근 1주간 직업적인 목적으로 일한 경험	최근 4주간 직업적인 목적으로 일한 경험	①상용근로자 ②임시근로자 ③일용근로자 ④고용주 ⑤단독자영업 자(자영업자 아니라 해당 종사자)	아래 보기 ※사업주는 ① 관리자가 직종으로 분류
본인	사업주	10	() ()				1			
동거2	()		() ()							
동거3	()		() ()							
동거4	()		() ()							
동거5	()		() ()							
동거6	()		() ()							
비동거7	()		() ()							
비동거8	()		() ()							
비동거9	()		() ()							
비동거10	()		() ()							

A1-3. 사업주와의 관계

10. 사업주	20. 사업주의 배우자	03. 사업주 배우자의 할아버지	04. 사업주 배우자의 할머니
01. 사업주의 할아버지	02. 사업주의 할머니	07. 사업주 배우자의 아버지	08. 사업주 배우자의 어머니
05. 사업주의 아버지	06. 사업주의 어머니	13. 사업주의 셋째자녀	14. 사업주의 넷째자녀(15~다섯째 ...)
11. 사업주의 첫째자녀	12. 사업주의 둘째자녀	23. 사업주 셋째자녀 배우자	24. 사업주 넷째자녀 배우자(25~다섯째 ...)
21. 사업주 첫째자녀 배우자	22. 사업주 둘째자녀 배우자	33. 사업주 셋째자녀 배우자	34. 사업주 넷째자녀 배우자(35~다섯째 ...)
31. 사업주 첫째형제자매	32. 사업주 둘째형제자매	43. 사업주 배우자 셋째형제자매	44. 사업주 배우자 넷째형제자매(45~다섯째 ...)
41. 사업주 배우자 첫째형제자매	42. 사업주 배우자 둘째형제자매	53. 사업주 셋째형제자매 배우자	54. 사업주 넷째형제자매 배우자(55~다섯째 ...)
51. 사업주 첫째형제자매 배우자	52. 사업주 둘째형제자매 배우자	63. 사업주 배우자의 셋째형제자매 배우자	64. 사업주 배우자의 넷째형제자매 배우자(65~다섯째 ...)
61. 사업주 배우자의 첫째형제자매 배우자	62. 사업주 배우자의 둘째형제자매 배우자	131. 사업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132~둘째 ...)	141. 사업주 넷째 자녀의(141~다섯째 ...)
111. 사업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112~둘째 ...)	121. 사업주 넷째 자녀의 첫째 자녀(122~둘째 ...)	231. 사업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232~둘째 ...)	241. 사업주 넷째 자녀의(241~다섯째 ...)
211. 사업주 넷째 자녀의 첫째 자녀(212~둘째 ...)	221. 사업주 넷째 자녀의 둘째 자녀(222~셋째 ...)	997. 기타 친인척	
1111. 사업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1112. 사업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		

A1-9. 종사상 지위

1.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1년을 일하기로 계약한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함)	4. 고용주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한 사업주
2. 임시근로자 : 고용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5. 단독자영업자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없이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자영업)
3. 일용근로자 :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임금근로자	6. 무급가족 종사자 : 고용주나 단독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일급을 받지 않고 해당사업체에 종사하는 사실임금을 받은 임금근로자임

A1-10. 직종			
1. 관리자	: 정부, 기업, 단체의 고위 임원 직사급장 및 관리에 시간의 80% 이상 사용	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농림어업 전문(면)업무 종사자 농작업 숙련직, 임업숙련직, 어업 숙련직 등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자문·분석 및 기술업무 수행하는 직무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기술·이용 업무 직종기능직, 컴퓨터직, 기능직, 전기 기능직 등
3. 사무 종사자	: 문서처리, 주·회무로, 관리자, 전문가를 보조하는 업무 수행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기계 및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 식품, 섬유, 전기, 금속 기계조작 등
4. 서비스 종사자	: 대안보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광합, 이매용, 예식, 운송, 여가, 조리, 음식 등	9. 단순노무 종사자	: 수공업적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의 노력을 하는 업무
5. 판매 종사자	: 영업활동을 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 영업직, 약상 판매직, 방문판매, 노점 등	10. 군인	: 군인

B. 결혼·출산·양육

B0-1. 선생님께서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A1-6 본인의 혼인상태와 일치해야)

- ① 있음 ☐ B0-2로 이동 ② 없음 ☐ B5로 이동

B0-2. 선생님 부부 중 아내(사업자가 여성이면 본인, 남성이면 배우자)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입니까?

- ① 만 49세 이하 ☐ B1로 이동 ② 만 50세 이상 ☐ B5로 이동

B1. 선생님께서는 현재 배우자와 언제 결혼하셨습니다? () 년 () 월

B2. (응답자가 남성인 경우) 선생님의 현재 배우자께서는 지금까지 총 몇 명의 자녀를 낳으셨습니까?

(응답자가 여성인 경우)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총 몇 명의 자녀를 낳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낳은 자녀수는 결혼 횟수와 상관없이 여성이 지금까지 낳은 자녀수를 말하며, 사망·출가·비통거
자녀를 모두 포함합니다. () 명

B3. 선생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0명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⑥ 모르겠음

B4. 선생님께서는 향후 추가로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으십니까? 임신 중이라면, 태아를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있음 (명) ☐ B5로 이동 ② 없음 ☐ B4-1로 이동
③ 아직 결정하지 않았음 ☐ B5로 이동

B4-1. (추가 자녀계획이 없는 경우, B4의 ②만 응답) 추가 자녀 계획이 없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이 적어서 ② 자영업이라는 직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③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져서 ④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식료, 의류, 의료비 등)
⑤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사교육비 포함) ⑥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⑦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개인시간 또는 여가를 위해서 ⑦ 가정 내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지 않아서
⑧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⑧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⑨ 나이가 많아서 ⑨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건강문제 때문에
⑩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_____)

B5. 선생님께서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및 가구원)가 있으십니까?

① 있음 ☒ B6으로 이동

② 없음 ☐ B7로 이동

B6. 초등학교 저학년(3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주로 이용한 시설 또는 그 외 보육방법을 시간대별로 말씀해 주세요. 방향이 아닌 평일 기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위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①~⑳까지 칸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B6. 시설 보기 (아래 번호를 해당 칸에 기입해주세요)			
01. 어린이집	02. 유치원	03. 학교	04. 선그림
05. 학원1 : 방과후 이상 이용	06. 학원2 : 방과후 이하 특기(보습) 학원	07.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	08. 초등학교 방과 후 특기(특성)
09.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등 공적 기관	10. 문화센터 등 기타 사업기관	11. 베이비시터	12. 가사도우미
13. 엄마가 집에서 돌봄	14. 아버지가 집에서 돌봄	15. 엄마아빠가 집에서 돌봄	16. 엄마가 사업장에서 돌봄
17. 아빠가 사업장에서 돌봄	18. 엄마아빠가 사업장에서 돌봄	19. 아이의 형제, 자매	20. 혼자 있음
21. 그 외 동거가족	22. 친인척(조부모, 이모 등)	23. 이웃집	24. 기타()

		① 미취학 자녀(만0세~만6세)		②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B6-1. 가구원 번호		A12의 해당 가구원 번호 기입	()	()	()
B6-2. 만 연령		A15의 ☒ 생년월일 월치학아	()세	()세	()세
B6-3. 시간대별 보육 방법	새벽	① 0~5시			
		② 5~6시			
		③ 6~7시			
		④ 7~8시			
	오전	⑤ 8~9시			
		⑥ 9~10시			
		⑦ 10~11시			
		⑧ 11~12시			
	오후	⑨ 12~13시			
		⑩ 13~14시			
		⑪ 14~15시			
		⑫ 15~16시			
	밤	⑬ 16~17시			
		⑭ 17~18시			
		⑮ 18~19시			
		⑯ 19~20시			
		⑰ 20~21시			
		⑱ 21~22시			
		㉑ 22~23시			
		㉒ 23~24시			

B7. 선생님께서는 현재 고등학교 이하 자녀(및 가구원)가 있으십니까?

- ① 있음 ☐ B8로 이동 ② 없음 ☐ B10으로 이동

B8. 지난 1년 간 선생님 덕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신 총 비용을 월 평균액으로 적어주십시오.
보육시설(어린이집, 선교원 등) 이용료는 제외하고 말씀해주세요.

B8-1. 연령 구분		① 미취학	② 초등학생	③ 중학생	④ 고등학생
B8-2. 학교급별 자녀 수	합계 1명 이상 A1-6와 일치해야	()명	()명	()명	()명
B8-3. 사교육 여부	① 한다 ② 하지 않는다				
B8-4. 사교육 하는 자녀 수	B8-4 < B8-2	()명	()명	()명	()명
B8-5. 사교육비	월 기준	월()만원	월()만원	월()만원	월()만원

B9. 자영업 종사자로서, 학령기 이하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를 말씀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사업체 수입이 적어 양육비 부담이 크다 ② 사업체 수입이 적어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
③ 사업이 바빠서 학령기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기 어렵다 ④ 사업장이 지방이라 자녀와 떨어져 지낸다
⑤ 자녀를 봐줄 사람이 없어 자녀가 사업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⑥ 영업이 너무 늦게 끝나 자녀를 마주하기 힘들다
⑦ 자녀에게 긴급한 일이 있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볼 수 없다 ⑧ 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

B10. (유배우자만 응답: A1-6에 ①) 선생님과 배우자께서는 가사일을 하루 평균 얼마나 하십니까?
일을 하시는 평일(영업일) 기준으로 말씀해주세요.

B10-1. 본인 : () 시간 () 분
B10-2. 배우자 : () 시간 () 분

C. 건강

C1. 선생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음 ☐ C1-1로 이동 ② 없음 ☐ C2로 이동

C1-1. 최근 2년 동안 받으신 건강검진 유형을 모두 말씀해주세요.

- ① 본인부담 종합건강검진 ② 산업장 특수건강검진(유해물질 폭로 직종 종사자 대상)
③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④ 기타(구체적으로 기입:_____)

C2. 지난 2주 동안 만성·급성질환 및 사고·중독으로 몸이 아프거나 불편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C2-1로 이동 ② 없음 ☐ C3으로 이동

C2-1. 있었다면, 지난 2주 동안 며칠이었습니까? () 일 ☐ 14일 이상 나올 수 없음

C3. 지난 1년 동안 출산·질병·사고 등으로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 C3-1로 이동

② 없음 ☐ C4로 이동

C3-1. 있었다면, 지난 1년 동안 몇 번이었습니까? () 번

C3-2. 있었다면, 총 입원 일수는 며칠이었습니까? () 개월 () 일

C3-3. 있었다면, 의료기관 총 이용료는 얼마였습니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	----	---	---	---	---	---

 원

C4. 지난 2주 동안 입원하지 않고, 병원(치과 포함)이나 보건소,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 C4-1로 이동

② 없음 ☐ C5로 이동

C4-1. 있었다면, 지난 2주 동안 몇 번이나 되셨습니까? () 번

C4-2. 있었다면, 의료기관 총 이용료는 얼마였습니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	----	---	---	---	---	---

 원

C5. 지난 2주 동안 약, 건강식품, 위생용품 등을 사기 위해 약국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 C5-1로 이동

② 없음 ☐ C6으로 이동

C5-1. 있었다면, 지난 2주 동안 몇 번이었습니까? () 번

C5-2. 있었다면, 약국 이용료는 총 얼마였습니까?

십만	만	천	백	십	일
----	---	---	---	---	---

 원

C6. 지난 1년 동안 건강 상의 문제나 신체 혹은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제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 C6-1로 이동

② 없음 ☐ C7로 이동

C6-1. 있었다면, 지난 1년 동안 며칠이었습니까? () 일

C6-2. 일상생활에 제한을 가져온 구체적인 질환이나 장애는 무엇입니까? 모두 응답해주세요.

- | | | | |
|-----------------|---------|-----------------------|--------|
| ① 골절, 관절 부상 | ② 기타 사고 | ③ 관절염, 류마티스 | ④ 심장질환 |
| ⑤ 호흡문제, 폐질환, 천식 | ⑥ 뇌졸중 | ⑦ 당뇨병 | ⑧ 고혈압 |
| ⑨ 등, 목의 문제 | ⑩ 암 | ⑪ 치아 및 구강질환 | ⑫ 시력문제 |
| ⑬ 청각문제 | ⑭ 치매 | ⑮ 우울/불안/정서장애 | ⑯ 정신지체 |
| ⑰ 비만 | ⑱ 노령 | ⑲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_____) | |

C7. 지난 1년 동안 선생님께서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 C7-1로 이동

② 없음 ☐ C8로 이동

C7-1. 다음 중 어떤 이유로 본인이 원하는 때에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까?

- | | | |
|------------------|-----------------------|-------------|
| ① 돈이 없어서 | ② 시간이 없어서 | ③ 교통편이 불편해서 |
| ④ 병의원 예약이 힘들어서 | ⑤ 병원에서 오래 기다리기 싫어서 | ⑥ 증상이 가벼워서 |
| ⑦ 가게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 ⑧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_____) | |

C7-2. 병의원에 가지 않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까?

- ① 그냥 참았다 ② 집에 있던 상비약을 복용하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먹었다
③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였다 ④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C8. 평소 선생님의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나쁨 ⑤ 매우 나쁨

C9. 선생님은 어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민간보험이 아닌 국가 건강보험 체계를 의미합니다.

- ① 지역건강보험 C9-1로 이동 ② 직장건강보험 C9-1로 이동
③ 의료급여 1종 C10으로 이동 ④ 의료급여 2종 C10으로 이동 ⑤ 미가입 C10으로 이동

C9. 건강보험 가입 구분

- | | |
|------------|---|
| 1. 지식경제보훈 |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 |
| 2. 직장연금보훈 | · 1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된 직장가입자, 고용주 및 사업장과 교섭단체로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 3. 의료급여 1종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유족 제외), 장애인,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두통질환자보훈자, 북한이탈주민, 해외근로자보훈자, 임종환자(18세 미만), 향정신자, 자살생각 수급자(재해(난)신청심판결자)에 속한 경우(보통 외래, 입원 진료사 전액 무료) |
| 4. 의료급여 2종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민유족은 제외), 고용주 수급권자(잔업실업자), 18세 미만 아동(에 속한 경우(보통 외래 진료사 일부 본인부담) |
| 5. 미가입 | · 국가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유족(유족자) 또는 의무가입으로 주(주민)등록을 통해 등록(등록) 되어 있는 경우 수 없음) |

C9-1. 선생님께서는 지난 1년 간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를 미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C10. 선생님께서서는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암보험, 심혈관질환보험, 사고보장보험 등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십니까?

- ① 가입 ☐ C10-1로 이동 ② 미가입 ☐ D1으로 이동

C10-1. 그렇다면, 현재 민간 의료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십니까?

- ① 남부 중 **☞ C10-2로 이동** ② 연체 또는 미납 **☞ C10-2로 이동**
③ 완납 **☞ D1으로 이동**

C10-2. 가입하신 민간의료보험의 월 보험료 총액은 얼마입니까?

십	만	단	천	백	십	일
---	---	---	---	---	---	---

D. 주거

D1. 선생님의 현재 주거형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사업장이 배, 자가용 등 건물형태가 아니어도 별도 사업장으로 간주해 응답 부탁드립니다.

- ① 사업장과는 다른 별도의 건물에 주거공간이 있다 **☞ D1-1로 이동**
- ② 사업장과 주거공간이 붙어있지만, 주거공간이 사업용으로 쓰이지는 않는다 **☞ D1-1로 이동**
- ③ 사업장과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 D2로 이동**

D1-1. 선생님께서 거주하는 건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② 비주거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 D1-1-1. ① 상가 ② 공장 ③ 여관 ④ 기타()

D1-2. 선생님께서 거주하는 주택(비주거용 건물 포함)은 자가입니까, 월세입니까?

- ① 자가 ☐ D2로 이동 ② 전세 ☐ D1-2-1로 이동
 ③ 보증금 없는 월세 ☐ D1-2-1로 이동 ④ 보증금 있는 월세 ☐ D1-2-1로 이동
 ⑤ 사택, 지인 집 등 무상

D1-2-1. 선생님께서 거주하는 주택(비주거용 건물)의 전세금(또는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입니까?

사업장과 주택 가격을 구분하여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66666 표기.

단, 1 경영사업체 부문 12-1 사업장의 보증금과 월세에 총액을 기입합니다.

전세금(보증금)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	---	----	----	----	---

 원 월세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	---	----	----	----	---

 원

☐ D1-2의 ② 전세: 월세에 0원으로, ③ 보증금 없는 월세: 보증금 0원으로,

④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 0, 월세 > 0

D2. 선생님께서는 거주하는 곳 이외 다른 곳에 주택(비주거용 건물 제외)을 따로 보유하고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D3. 선생님 덕에서 사업장까지 출퇴근 방법은 무엇이며,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운수업 등 별도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 영업차량 등이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 방법과 걸리는 시간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장과 주거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의 ②③, ① 도로 이외 응답 불가하며, 시간은 0분~1분 등으로 응답해주시면 됩니다.

D3-1. 교통수단: ① 도보 ② 대중교통 ③ 자가용 ④ 그 외(자전거, 오토바이 등)

D3-2. 소요시간: () 시간 () 분

E. 노후 준비

E1. 선생님께서는 국민연금, 저축, 개인연금(생명보험 등 포함), 퇴직연금, 노후 대비 부동산 구입 등을 통해 현재 노후소득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① 있음 ☐ E2로 이동 ② 없음 ☐ E1-1로 이동

E1-1. (E1의 ②만 응답) 현재 노후소득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로도 충분해서 ② 자녀 부양에 의존할 예정이어서
 ③ 노후 준비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④ 당장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⑤ 아직 계획할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⑥ 별 다른 이유 없음
 ⑦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_____)

E2. 선생님께서 노후 소득 수단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공적 소득보장제도(국민연금, 공무원·사학·군인·별정직우체국직원 연금 등)
 ② 개인연금 등 민간연금 ③ 저축(예금 및 적금) ④ 부동산 및 주식투자
 ⑤ 자녀의 부양 ⑥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_____)

E3. 현재 선생님의 국민연금 가입여부는 어떤 상태입니까?

- ① 가입하고 있지 않음 ☐ E6로 이동 ② 가입하고 있음 ☐ E4로 이동
 ③ 노령연금 수급 중 ☐ E6으로 이동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을 말합니다. 이 때 실직, 사업 중단, 군입대, 학업, 휴직(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도 (지역)가입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는 무소득 배우자,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수급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함),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인 자를 뜻합니다.

E4. (E3의 ②만 응답) 현재 선생님의 국민연금 가입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 가입자(운영 사업장을 통해 가입) ② 지역 가입자 ③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E4. 국민연금 가입 구분

1. 직장 가입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가 해당되며,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지 동의를 얻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지역 가입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서 사업장을 통해 가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3. 임의가입 및 임의계속 가입 : 임의가입은 직장이나 지역가입자는 아니지만 미래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연금을 내고 있는 경우이며, 임의계속가입이란 만 60~65세이지만 수급권을 갖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E5. (E3의 ②만 응답) 선생님께서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십니까?

- ① 납부하고 있음 ☐ E6으로 이동 ② (3개월 미만) 납부하지 않음 ☐ E5-1로 이동
 ③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음 ☐ E5-1로 이동

E5-1. (E5의 ②, ③만 응답)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연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③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여건이 없을 것 같아서 ④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_____)

E5-2. (E5의 ②, ③만 응답) 선생님께서 지난 1년 동안, 1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E5-3으로 이동 ② 없음 ☐ E6으로 이동

E5-3. (E5-2의 ①만 응답) 소득활동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저소득과 불안정한 소득활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제도가 불안정하여 나중에 받지 못할 것 같아서
 ③ 국민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④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_____)

E6. 선생님께서 국민연금에 최초로 가입한 이후 현재까지 보험료를 얼마동안 내셨습니까?

☐ 현재 수급 중인 경우(E3의 ③번)는 ③번만 응답 가능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2년 미만 ③ 2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4년 미만 ⑤ 4년 이상

E7. 귀하께서는 향후 국민연금을 (계속) 낼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있음 ☐ E8로 이동 ② 없음 ☐ E7-1로 이동 ③ 연금 수급중 ☐ E8로 이동

E7-1. (E7의 ②만 응답) 국민연금 보험료 중에서 개인 부담금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면, 국민연금을 낼 의사가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E8. 현재 선생님께서서는 개인연금에 가입하셨습니까?

- ① 가입하고 있음 (가입 개수: _____ 개) ☐ E8-1로 이동
 ② 가입하고 있지 않음 ☐ E8-3으로 이동
 ③ 개인연금 수급 중 ☐ E9로 이동

E8. 개인연금 정의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회사 등이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강제 적용되는 공적소득보장제도가 아니라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금융 상품에 따라 저축수단을 말합니다. 즉, 개인이 상환보험회사나 은행 등이 금융기관과 계약해서 무금을 적립하여 그 적립금과 이자를 연금의 형태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종신연금), 변액연금보험(종신연금), 자산연계형연금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등 종신보험 중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일부상품

E8-1. (E8의 ①만 응답) 선생님께서 개인연금에 가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국민연금 등 공적제도만으로 노후대책이 불충분하므로
 ②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③ 다른 노후소득보장 준비수단보다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해서
 ④ 다른 노후소득보장 준비수단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⑤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_____)

E8-2. (E8의 ①만 응답) 선생님께서 내고 있는 개인연금의 월평균 보험료와 지금까지 납입기간을 모두 말씀해주세요.

구분	E8-2-1 월 평균 보험료	E8-2-2 납입 기간
① 개인연금1	월()원	()년 ()개월
② 개인연금2	월()원	()년 ()개월
③ 개인연금3	월()원	()년 ()개월

☐ 응답 후 E9로 이동

E8-3. (E8의 ②만 응답) 선생님께서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노후대비 방법으로 충분해서 ② 실제 노후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③ 납입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④ 개인연금에 대해 잘 모르겠어서
 ⑤ 개인연금의 안정성 또는 수익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⑥ 이미 나이가 많아서
 ⑦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_____)

E9. 선생님께서는 언제쯤 일을 그만하실(은퇴하실) 계획이십니까? 계획이 없으시다면 예상 나이를 말씀해주시시오.
만 ()세

E10. 선생님께서는 퇴직 후를 대비해 다음 각 영역에 대한 준비를 현재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구분	① 전혀 하고 있지 않다	② 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하고 있는 편이다	⑤ 많이 하고 있다
E10-1. 경제(소득, 생계)	①	②	③	④	⑤
E10-2. 건강	①	②	③	④	⑤
E10-3. 여가	①	②	③	④	⑤
E10-4. 사회활동(단체활동)	①	②	③	④	⑤

E11. 현재 선생님께서 하고 있는 여가 및 사회활동과, 퇴직 후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E11-1. (전체) 현재 해당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E11-2. (전체) 퇴직 후 해당 활동을 하고 싶으십니까?

구분	E11-1 현재 참여 정도	E11-2 퇴직 후 참여 의향
	① 하지 않음 ② 가끔 하고 있음 ③ 자주 하고 있음	① 하고 싶지 않음 ② 보통 ③ 하고 있음
① 문화예술관람 : 전시회, 미술관, 영화, 연예공연 관람 등		
② 문화예술활동 참여 : 미술, 서예, 사진, 노래교실, 무용, 악기 등		
③ 스포츠 관람 : 축구, 야구 등 직접 관람 (TV 시청 제외)		
④ 운동 및 스포츠 활동 참여 : 등산, 헬스, 조깅, 수영, 골프 등		
⑤ 관광 및 야외 나들이 : 해외 및 국내여행, 문화유적지, 놀이공원 등		
⑥ 취미오락 : 낚시, 소풍, 외식, 음악감상, 예선등물 등		
⑦ 교양학습 : 어학, 인문학강좌, 컴퓨터 강좌 등		
⑧ 자원봉사활동 : 사회복지관, NGO 등		
⑨ 종교활동 : 교회, 성당, 사찰 등		
⑩ 사교모임 활동 : 친구모임, 계모임, 동창회 등		

E12. 지난 3개월 간 선생님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취침 시간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입니까?

E12-1. 평일 : () 시간 () 분 E12-2. 휴일 : () 시간 () 분

E13. 선생님께서 희망하시는 여가 시간은 취침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E13-1. 평일 : () 시간 () 분 E13-2. 휴일 : () 시간 () 분

E14. 지난 3개월 간 선생님께서는 여가활동을 위해 월평균 얼마를 지출하셨습니까?

원

백만	십만	만
----	----	---

 원

E15. 현재 하고 계시는 사회단체 활동과, 퇴직 후 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E15-1. (전체) 현재 해당 단체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E15-2. (E15-1의 ①만 응답) 현재 해당 단체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고 계십니까?

E15-3. (전체) 퇴직 후 해당 활동을 하고 싶으십니까?

구분	E15-1	E15-2	E15-3
	현재 참여여부 ① 참여함 ② 참여하지 않음	참여 정도 (E15-1의 ①만)	퇴직 후 의향 ① 하고 싶지 않음 ② 보통 ③ 하고 있음
① 친목단체 : 계모임, 동창회, 경모임 등		연 () 회	
② 종교단체 : 교회, 성당, 절 등		연 () 회	
③ 문화활동단체 : 합창단, 연극, 영화 등		연 () 회	
④ 스포츠레저단체 : 산악회, 조깅구회 등		연 () 회	
⑤ 시민단체/사회단체 : 대한노인회 등 단체		연 () 회	
⑥ 이익단체/정치단체 : 정당, 직능단체 등		연 () 회	
⑦ 봉사단체 : 자원봉사활동 등		연 () 회	
⑧ 학습단체 : 노인대학,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연 () 회	

F. 노인·장애인 돌봄

F1. 선생님을 포함해 선생님 덕의 가구원(동거, 비동거 포함) 중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습니까?

① 있음 ☐ F2로 이동

② 없음 ☐ Part G로 이동

F2. 선생님을 포함해 선생님 덕의 가구원(동거, 비동거 포함) 중 노인과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노인이 경우는 장애인으로 포함해 주십시오. ☐ 둘 중 하나는 1명 이상 나와야

F2-1. 노인 : () 명

F2-2. 장애인 : () 명 ☐ F2-2-1. 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 노인 : () 명

☐ F2-2-2. 본인 해당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F3. 선생님 덕 노인 및 장애인 가구원의 도움 필요 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애인 또는 노인이 2분 이상 계산 경우, 해당 가구원 각각에 대해 순서대로 가구원 번호 순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 F2의 명수와 아래 응답 명수 동일해야

F3-3. (노인 응답: F2-1≥1이나 F2-2-1≥1) 해당 가구원의 장기요양등급은 무엇입니까?

장애인이면서 노인(F2-2-1≥1)은 장애인란에 기입합니다.

F3-4-5. (장애인 응답: F2-2≥1) 해당 가구원의 F3-4. 장애유형과 F3-5. 장애등급은 무엇입니까?

F3-6. 해당 가구원께서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남의 도움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합니까?

F3-7. 해당 가구원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F3-8. (F3-7의 ①만 응답) 해당 가구원은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받습니까? 가장 많이 도와주는 사람 1명만 말씀해 주세요.

F3-1. 대상 구분		① 노인		② 장애인	
F3-2. 가구원 번호		()	()	()	()
F3-3. 장기요양등급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장기요양 인정 없음				
F3-4. 장애유형	☐ 아래 보기 참조	☒	☒	☒	
F3-5. 장애등급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	☒	☒	
F3-6. 도움 필요 정도	①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다 ②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다 ③ 일부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④ 대부분의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⑤ 거의 모든 일에 남의 도움이 필요하다				
F3-7. 도와주는 사람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F3-8. 주로 도와주는 사람 관계 (F3-7의 ①만 응답)	① 응답자 본인 ② 응답자의 가족 및 친척(동거, 비동거 모두 포함) ③ 외부서비스(장기요양, 노인돌봄 등 국가·민간 포함) ④ 가족·친척·외부서비스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F3-4. 장애유형							
01. 지체장애	02. 뇌병변장애	03. 시각장애	04. 청각장애	05. 언어장애	06. 지적장애	07. 자폐성장애	08. 정신장애
09. 심장장애	10. 심장장애	11. 호흡기장애	12. 간장애	13. 인면장애	14. 장루·요루장애	15. 간질장애	16. 만성 알콜 및 약물중독
17. 기질성 뇌동추진	18. 기질성뇌신경성장애	19. 소화기장애	20. 비뇨기장애	21. 치매	22. 만성통증	23. 기타 알	24. 기타 장애

☞ F4-5번은 가구원 중 노인이 있는 경우(F2-1≥1)만 응답

F4. 다음은 노인의 돌봄을 위한 정부 지원 복지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F4-1. (전체) 지난 1년 동안 동안 본인 또는 가구원 중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

F4-2. (전체) 앞으로 해당 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분	F4-1. 이용경험		F4-2. 향후이용 의향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노인요양시설 입소서비스				
② 노인전문병원				
③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④ 주간(야간) 보호서비스				
⑤ 단기보호 서비스				
⑥ 방문요양 서비스				
⑦ 방문간호 서비스				
⑧ 방문목욕 서비스				

F4. 노인 복지 서비스 구분

1. 노인요양시설	: 치매나 중증 등의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요양을 제공하는 요양시설
2. 노인전문병원(치매병원 등)	: 치매나 중증과 같은 질병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
3.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치매나 중증 등의 질환을 가진 어르신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시설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생활편의와 요양제공시설
4. 주간(야간) 보호서비스	: 낮시간이나 밤시간에 가족이 보호가 어려운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보호서비스
5. 단기보호서비스	: 단기간동안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어르신을 보호하여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6. 방문요양 서비스	: 가정으로 방문해 간병이나 가사를 도와주는 서비스
7. 방문간호 서비스	: 간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간호 처치를 해주는 서비스
8. 방문목욕 서비스	: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해드리는 서비스

F4-3. (F4-1의 ①부터 ⑧까지의 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한 경우)

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출한 본인 부담금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서비스 비용 중 본인 부담금 월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	----	---	---	---	---	---

 원

F4-4. (F4-1에 ②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선생님께서 노인 돌봄을 위한 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비용부담 때문에 | ② 자격이 안 돼서 |
| ③ 해당 가구원이 원치 않아서 | ④ 될 수 있으면 가정에서 해결하려고 |
| ⑤ 서비스 질이 나빠서 | ⑥ 서비스 기관이 가까이 없어서 |
| ⑦ 바우처 사용이 어려워져서 | ⑧ 서비스 청구절차가 복잡해서 |
| ⑨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 ⑩ 서비스 제공시간이 맞지 않아서 |
| ⑪ 잘 몰라서 | ⑫ 기타(구체적으로:) |

F5. 위의 정부 지원 서비스 이외에 지난 1년 동안 노인 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개인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기타 추가적인 민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음 ☞ F5-1로 이동

② 없음 ☞ F6으로 이동

F5-1. 노인 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민간 서비스 이용에 지출한 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월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	----	---	---	---	---	---

 원

☞ F6-7번까지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F2-2≥1)만 응답

F6. 다음은 장애인의 돌봄을 위한 정부 지원 복지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F6-1. (전체) 지난 1년 동안 본인 또는 가구원 중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 있습니까?

F6-2. (전체) 그럼, 앞으로 해당 복지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분	F6-1. 이용경험		F6-2. 향후 이용 의향	
	① 있음	② 없음	① 있음	② 없음
① 장애인 생활시설				
② 재활병의원				
③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④ 주간보호 서비스				
⑤ 단기보호 서비스				
⑥ 활동지원 서비스				
⑦ 방문간호 서비스				
⑧ 방문목욕 서비스				

F6. 장애인 복지 서비스 구분

1.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시설
2. 재활병의원	: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활병, 의원, 복지관에서 이용하는 재활서비스는 제외
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지역사회 내에 있는 일반주택가에서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도록 하고 능숙치 못한 일을 지원해주는 주거프로그램
4. 주간보호 서비스	: 낮 시간 동안 가족이 보호가 어려운 장애인을 돌봐드리는 서비스
5. 단기보호 서비스	: 단기(간동) 가족이 보호가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하고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6. 활동지원 서비스	: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7. 방문간호 서비스	: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간호 처치를 해주는 서비스
8. 방문목욕 서비스	: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해드리는 서비스

F6-3. (F6-1의 ①부터 ⑧까지의 서비스를 하나라도 이용한 경우)

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지출한 본인 부담금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서비스 비용 중 본인 부담금 월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	----	---	---	---	---	---

 원

F6-4. (F6-1에 ②가 하나라도 있는 경우) 선생님께서 장애인 돌봄을 위한 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비용부담 때문에 | ② 자격이 안 돼서 |
| ③ 해당 가구원이 원치 않아서 | ④ 될 수 있으면 가정에서 해결하려고 |
| ⑤ 서비스 질이 나빠서 | ⑥ 서비스 기관이 가까이 없어서 |
| ⑦ 바우처 사용이 어려워져서 | ⑧ 서비스 청구절차가 복잡해서 |
| ⑨ 원하는 서비스가 없어서 | ⑩ 서비스 제공시간이 맞지 않아서 |
| ⑪ 잘 몰라서 | ⑫ 기타(구체적으로:) |

F7. 위의 정부 지원 서비스 이외에 지난 1년 동안 장애인 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개인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기타 추가적인 민간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음 ☞ F7-1로 이동

② 없음 ☞ Part G로 이동

F7-1. 장애인 가구원을 돌보기 위해 민간 서비스 이용에 지출한 비용은 월 평균 얼마입니까?

월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	----	---	---	---	---	---

 원

G. 삶의 만족도

G1. 선생님의 요즘 생활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 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행복하다 ② 다소 행복하다
 ③ 별로 행복하지 않다 ④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⑤ 선택할 수 없다

G2. 현재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다음의 각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 혹은 불만족스러우십니까?

구분	① 매우 만족스럽다	② 다소 만족스럽다	③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④ 다소 불만족스럽다	⑤ 매우 불만족스럽다	⑥ 비해당
G2-1. 가족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A1-1~① 모두)
G2-2. 결혼생활	①	②	③	④	⑤	⑥ (A1-4~②③ 모두)
G2-3. 소득	①	②	③	④	⑤	
G2-4. 일	①	②	③	④	⑤	
G2-5. 여가활동	①	②	③	④	⑤	
G2-6. 전체 삶	①	②	③	④	⑤	

G3. (A1-1 동거 ≥ 2만 응답) 선생님과 선생님께서 함께 사시는 가족은 얼마나 자주 저녁식사를 같이 하십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몇 번 정도 ③ 일주일에 한 번 정도 ④ 한 달에 한 번 정도
 ⑤ 일년에 몇 번 정도 ⑥ 일 년에 한 번 정도 ⑦ 일년에 한 번 미만

G4. (A1-1 동거 ≥ 2만 응답) 선생님과 선생님께서 함께 사시는 가족은 얼마나 자주 여가활동을 같이 하십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몇 번 정도 ③ 일주일에 한 번 정도 ④ 한 달에 한 번 정도
 ⑤ 일년에 몇 번 정도 ⑥ 일 년에 한 번 정도 ⑦ 일년에 한 번 미만

H. 직업경력

H1. 선생님께서는 다른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임금근로(정규, 계약, 일시 포함)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음 ☒ H1-1로 이동 ② 없음 ☒ H2로 이동

H1-1. 임금근로를 처음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년 () 월

H1-2. 임금근로를 마지막으로 끝낸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 년 () 월 ② 현재도 임금근로 중

H1-3. 선생님께서 임금근로자로서 근무한 총 기간은 얼마입니까? () 년 () 월

H2. 자영업을 처음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년 () 월

H3. 자영업의 업종 변화 횟수는 몇 회입니까? () 회
☒ 사업체가 아닌 업종 기준(예: PC방 → PC방(X), PC방 → 식당(O))

H4. 자영업자로서 근무한 총 기간은 얼마입니까? () 년 () 월

16. 선생님께서 운영하는 사업체의 지난 1년 간 월 평균 매출액과 사업비용, 순이익은 얼마입니까?

본인의 월급, 임금, 경비, 투자비, 재료비 등이 사업비용에 포함되며, 매출액에서 이를 제외한 것이 순이익입니다.

※ 사업비용= 본인 및 직원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직원 사회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을 포함합니다.

※ 순이익= 매출액에서 사업비용을 제외한 이익(순이익이 적자일 경우, 첫째 칸에 - 표시 기입)

16-1. 월 평균 매출액: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	---	----	----	----	---

16-2. 월 평균 사업비용: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	---	----	----	----	---

16-3. 월 평균 순이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	----	---	----	----	----	---

※ 3. 순이익 = (1. 매출액 - 2. 사업비용)

17. 선생님께서 운영하는 사업체의 지난 해 세금은 얼마였습니까?

17-1. 소득세 또는 법인세:

천만	백만	십만	만
----	----	----	---

17-2. 부가가치세:

천만	백만	십만	만
----	----	----	---

18. 선생님께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현재 기준으로 전체 몇 명입니까?

☞ 해당 종사자 수가 없을 경우, 0명으로 기입

☞ 가로, 세로 세부 항목 함께 일치해야 함

구분	18-1 합계	18-2 고용주	18-3 상용 근로자	18-4 임시/일용 근로자	18-5 단독 자영업자	18-6 무급가족 종사자
①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② 남	()명	()명	()명	()명	()명	()명
③ 여	()명	()명	()명	()명	()명	()명

18. 종사상 지위

1.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1년을 일하기로 계약한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됨)
2. 임시근로자 : 고용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3. 일용근로자 :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임금근로자

4. 고용주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
5. 단독자영업자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자영업자) 파트너·무급가족 종사자 포함과 함께 일하는 사람
6. 무급가족 종사자 : 고용주나 단독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이적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임금을 받으면 임금근로자임)

구분	19-1 사업체 가입여부	19-2 본인포함 가입 종사자 수 (19-1의 ①합)	19-3 보험료 총액
	① 가입 ② 미가입	* 19-1=①합 경우 반드시 1명 이상 * 각각은 전체수(19-1)보다 적어야	지난 1개월 사업장 부담 보험료 총액
① 건강보험		()명	총액()원
② 고용보험		()명	
③ 산재보험		()명	
④ 국민연금		()명	

- ① 있음 ② 없음

111. 선생님께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 ① 대형할인점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 ② 경기 하락
③ 경쟁업체 난립 ④ 종업원 구인 문제
⑤ 세금(부가세, 소득세 등) 문제 ⑥ 자금 부족
⑦ 수입산 급증으로 인한 어려움 ⑧ 기타(구체적으로 기입:)

1. 소득, 지출 및 재산

☞ 다음부터는 동거, 비동거 가구원 등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경제상태를 파악, 사업체가 아닌 가구의 재정 상태를 파악

J1. 선생님 댁(본인과 동거, 비동거 등 나머지 가구원 전체)의 지난 1개월 간 월평균 생활비를 말씀해주세요.
가정생활을 위한 비용만 기입하며, 사업용도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나가는 지출 금액은 모두 제외하고, 가구 지출만 포함

☞ 생활비는 저금이나 저축 등을 제외하고, 실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

☞ 총 지출은 나머지 전체 항목 합과 같아야 함

구분			① 응답자 개인금액					② 본인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 금액				
J1-1. 임금 및 보험	①국민연금	본인부담 보험료만 포함, 사업장 부담분은 제외	월	백만	십만	만	원	월	백만	십만	만	원
	②개인연금	개인회 민간 연금	월	백만	십만	만	원	월	백만	십만	만	원
	③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보험료만 포함, 사업장 부담분은 제외	월	백만	십만	만	원	월	백만	십만	만	원
	④민간건강보험	민간 가입 보험	월	백만	십만	만	원	월	백만	십만	만	원
	⑤고용보험	본인부담 보험료만 포함, 사업장 부담분은 제외	월	백만	십만	만	원	월	백만	십만	만	원
구분			전체									
J1-2. 보건의료비		입원비, 외래진료비, 약값, 수술비, 건강진단비, 보건외비용등(인정) 등	월	천만	백만	십만	만	원				
J1-3. 교육비	①광교육비	등록금, 납입금, 교재비, 수학여행비 등 공교육의 전체	월	천만	백만	십만	만	원				
	②사교육비	학원비, 유치원비, 도서관, 어학연수비 등 사교육의 전체	월	천만	백만	십만	만	원				
	③성인학원	성인학원이나 기타 학원 교육비	월	천만	백만	십만	만	원				
J1-4.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술, 담배를 제외한 주식, 부식, 간식, 제사비용 등	월	천만	백만	십만	만	원				
J1-5. 세금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합계(12월분 등)의 아닌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 포함 X 사업체 관련 세금 제외	월	천만	백만	십만	만	원				
J1-6. 기타 소비지출		복도, 자녀 용돈, 송금액, 보험료, 교통통신비, 의복비, 광통신도비, 할서 등 X 저축 제외	월	천만	백만	십만	만	원				
J1-7. 총 생활비		생활비 전체 위 합계	월	천만	백만	십만	만	원				

J2. 선생님 댁(본인과 동거, 비동거 등 나머지 가구원 전체)의 현재 기준 총 부채와 연간 이자 총액을 말씀해주세요. 가구로 들어오는 연간 전체 소득을 항목별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총 부채는 사업체 명목이 아닌, 개인 명목(본인+가구원)의 부채만을 포함하며, 상환이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부채에는 소유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미리 전세금이나 보증금 받은 금액도 포함됩니다.

구분		① 응답자 개인부채					② 본인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 부채										
J2-1. 총 부채	금융기관 대출(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사채, 카드빚, 전세(임대) 보증금 받은 돈, 저당, 미리 탄 계돈 등	현재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원	현재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원
J2-2. 연간 이자	부채로 인해 발생한 연간 총 이자(주거 관련 부채로 인한 이자 포함)	연간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원	연간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원

324 •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J3. 선생님 댁(본인과 동거, 비동거 등 나머지 가구원 전체)의 지난 1년 간 연간 소득을 말씀해주세요. 가구로 들어오는 연간 전체 소득을 항목별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 사업전체 소득이 아닌 가구의 소득, 응답자 개인소득과, 응답자를 뺀 나머지 가구원의 소득을 구분해 기재
 ☞ 응답자 본인은 반드시 사업소득 나열해야 하며, 나머지 가구원 중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업소득에, 임금근로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기재
 ☞ 사업소득은 사업체의 매출액이 아니라, 사업주가 가구로 가져가는 소득을 의미

구분		① 응답자 개인소득						② 본인 제외 나머지 가구원 소득									
J3-1. 사업소득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가구로 가져가는 소득 사업장에서 쓰는 개인 경비, 종돈, 포함 × 농림어업분야는 J3-3에서 기재	연간	실액	백	천	백만	실만	만	원	X							
J3-2. 근로소득	운영하는 사업장 외 임금근로 소득 월급을 받아 가구로 가져가는 소득	연간	실액	백	천	백만	실만	만	원								
J3-3. 농업소득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의 사업소득	연간	실액	백	천	백만	실만	만	원								
J3-4. 재산소득	자속 이자, 주식 배당금, 임대료 등	연간	실액	백	천	백만	실만	만	원								
J3-5. 국민연금	국민연금에서 받은 급여 × E3제 ⑤은 반드시 0원 이상	연간	실액	백	천	백만	실만	만	원								
J3-6. 특수직역연금	공무원, 사학, 군인, 국제조직원 연금 등에서 받은 급여 × E3제 ⑤은 반드시 0원 이상	연간	실액	백	천	백만	실만	만	원								
J3-7. 기타 사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서 받은 급여	연간	실액	백	천	백만	실만	만	원								
J3-8. 기초생활보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 소득 일부 월급 제공받는 경우 포함	연간	실액	백	천	백만	실만	만	원								
J3-9. 사적이전소득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사회단체나 친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	연간	실액	백	천	백만	실만	만	원								
J3-10. 공적이전소득	장여수당, 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국가 지원 수당 × 기초생활 J3-8에 기입	연간	실액	백	천	백만	실만	만	원								
J3-11. 기타소득	통역, 상속, 경조금, 보상금, 보험금, 부동산 매매차익 등 기타 소득	연간	실액	백	천	백만	실만	만	원								
J3-12. 총 소득	각 소득 합계	연간	실액	백	천	백만	실만	만	원	연간	실액	백	천	백만	실만	만	원
J3-13. 가구 총 소득	① 개인 총 소득 + ② 나머지 가구원 총 소득	연간	실액	백	천	백만	실만	만	원	연간	실액	백	천	백만	실만	만	원

J4. 선생님 댁(본인과 동거, 비동거 등 나머지 가구원 전체)의 현재 기준 재산현황을 말씀해주세요. 모든 가구원 명의 기준 시가 총액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 ☞ 사업체의 보유 자산이 아닌, 가구 자산만 포함하며, 시가 총액 기재
 ☞ 법인명의 자산(법인사업체의 영업용 자동차 등)은 비포함

J4-1. 소유 부동산	①아파트/단독주택	자가 주택 시가 총액	시가	실액	백	천	백만	실만	만	원		
	②주택외 건물토지	자가 건물 토지 시가 총액	시가	실액	백	천	백만	실만	만	원		
J4-2. 점유 부동산	전세, 월세 보증금, 관리비, 사업설비, 비닐하우스, 양식장 등		시가	실액	백	천	백만	실만	만	원		
J4-3. 농축산물·농기계	가축, 농기계 등 보유하고 있는 농축산물, 농기계의 시가 총액		시가	실액	백	천	백만	실만	만	원		
J4-4. 자동차(비영업용)	보유 자동차 시가 총액	보유 대수		대	시가	실액	백	천	백만	실만	만	원
J4-5. 금융 자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계통, 계약금 등 보유 금융 자산 총액		전체	실액	백	천	백만	실만	만	원		
J4-6. 기타 자산	귀금속, 그림 등 기타자산 (개인사업자의 영업용 자동차도 기입)		시가	실액	백	천	백만	실만	만	원		

응답을 위해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부록 2. 자영업자의 시간대 및 산업별 보육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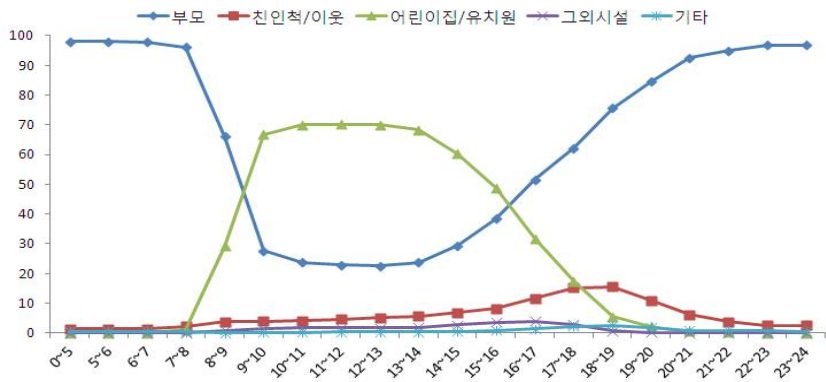
〈부록표 1〉 미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전 산업)

(단위: %)

구분	0~5시	5~6시	6~7시	7~8시	8~9시	9~10시	10~11시	11~12시	12~13시	13~14시	14~15시	15~16시	16~17시	17~18시	18~19시	19~20시	20~21시	21~22시	22~23시	23~24시
0~6세 (N=1,275)																				
부모	98.0	98.0	97.9	96.2	66.1	27.7	23.7	22.9	22.6	23.8	29.4	38.5	51.5	62.2	75.6	84.6	92.6	94.9	96.8	96.9
친인척/이웃	1.4	1.4	1.4	2.3	3.8	3.9	4.1	4.7	5.2	5.6	6.9	8.2	11.6	15.2	15.6	11.0	6.1	3.8	2.5	2.5
어린이집/유치원	-	-	0.1	1.1	29.2	66.7	70.1	70.2	70.0	68.3	60.3	48.8	31.7	17.5	5.5	2.3	0.5	0.3	-	-
그외시설보육	-	-	-	-	0.8	1.5	1.8	1.8	1.8	1.9	2.7	3.6	3.9	2.9	0.7	0.2	-	-	-	-
기타	0.6	0.6	0.6	0.4	0.1	0.2	0.2	0.3	0.4	0.4	0.6	0.9	1.4	2.2	2.5	1.9	0.9	0.9	0.7	0.6
0~2세 (N=376)																				
부모	97.5	97.5	97.4	95.0	79.0	64.2	60.1	57.9	57.2	57.3	57.3	59.9	64.1	68.3	76.2	84.3	91.7	94.6	96.9	96.9
친인척/이웃	2.5	2.5	2.5	4.6	7.8	10.3	11.5	13.4	14.3	14.4	14.3	14.7	16.3	18.9	18.5	12.0	7.8	4.9	3.1	3.1
어린이집/유치원	-	-	0.1	0.4	12.0	24.1	26.9	27.3	26.9	26.7	26.4	23.2	17.0	9.1	3.6	2.3	0.1	-	-	-
그외시설보육	-	-	-	-	1.2	1.2	1.2	1.2	1.2	1.2	1.6	1.9	1.5	2.2	0.4	-	-	-	-	-
기타	-	-	-	-	-	0.2	0.2	0.2	0.3	0.3	0.3	0.3	1.1	1.4	1.4	1.4	0.5	0.5	-	-
3~6세 (N=899)																				
부모	98.2	98.2	98.1	96.7	60.8	12.4	8.5	8.4	8.2	9.8	17.8	29.6	46.2	59.7	75.4	84.7	92.9	95.1	96.7	97.0
친인척/이웃	1.0	1.0	1.0	1.3	2.1	1.2	1.0	1.0	1.4	1.9	3.8	5.5	9.6	13.7	14.4	10.6	5.4	3.3	2.3	2.3
어린이집/유치원	-	-	0.1	1.3	36.3	84.5	88.1	88.1	88.0	85.7	74.5	59.5	37.8	21.0	6.3	2.3	0.7	0.5	-	-
그외시설보육	-	-	-	-	0.6	1.6	2.0	2.0	2.0	2.1	3.1	4.3	4.9	3.2	0.9	0.3	-	-	-	-
기타	0.8	0.8	0.8	0.6	0.2	0.3	0.3	0.4	0.4	0.4	0.8	1.1	1.6	2.5	3.0	2.1	1.0	1.1	1.0	0.8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부록그림 1] 0~6세 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전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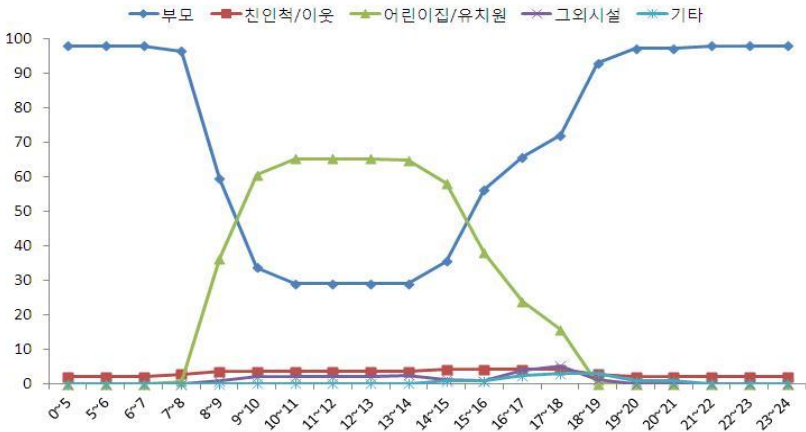
〈부록표 2〉 미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농림광공업)

(단위: %)

구분	0~5시	5~6시	6~7시	7~8시	8~9시	9~10시	10~11시	11~12시	12~13시	13~14시	14~15시	15~16시	16~17시	17~18시	18~19시	19~20시	20~21시	21~22시	22~23시	23~24시
0~6세 (N=93)																				
부모	97.9	97.9	97.9	96.4	59.4	33.7	29.0	29.0	29.0	29.0	35.5	56.2	65.6	71.9	92.9	97.1	97.1	97.8	97.8	97.8
친인척/이웃	2.1	2.1	2.1	2.8	3.6	3.6	3.6	3.6	3.6	3.6	4.2	4.2	4.2	4.2	2.8	2.1	2.1	2.1	2.1	2.1
어린이집/유치원	-	-	-	0.7	36.2	60.5	65.2	65.2	65.2	64.7	58.0	37.9	23.9	15.6	-	-	-	-	-	-
그외시설보육	-	-	-	-	0.8	2.1	2.1	2.1	2.1	2.5	1.3	0.8	4.0	5.3	1.2	-	-	-	-	-
기타	-	-	-	-	-	0.1	0.1	0.1	0.1	0.1	0.9	0.9	2.3	3.0	3.0	0.9	0.9	0.1	0.1	0.1
0~2세 (N=33)																				
부모	93.4	93.4	93.4	90.9	71.8	71.3	71.3	71.3	71.3	71.3	71.3	79.0	79.0	79.0	90.6	92.9	92.9	92.9	92.9	92.9
친인척/이웃	6.6	6.6	6.6	9.1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9.0	6.6	6.6	6.6	6.6	6.6
어린이집/유치원	-	-	-	-	16.5	16.5	16.5	16.5	16.5	16.5	16.5	8.9	8.9	8.9	-	-	-	-	-	-
그외시설보육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3~6세 (N=60)																				
부모	100.0	100.0	100.0	98.9	53.8	16.7	9.9	9.9	9.9	9.9	19.4	45.9	59.5	68.7	94.0	98.9	98.9	100.0	100.0	100.0
친인척/이웃	-	-	-	-	-	-	-	-	-	-	0.8	0.8	0.8	0.8	-	-	-	-	-	-
어린이집/유치원	-	-	-	1.1	45.1	80.3	87.1	87.1	87.1	86.4	76.7	50.9	30.7	18.6	-	-	-	-	-	-
그외시설보육	-	-	-	-	1.2	3.0	3.0	3.0	3.0	3.7	1.9	1.2	5.8	7.6	1.8	-	-	-	-	-
기타	-	-	-	-	-	-	-	-	-	-	1.2	1.2	3.1	4.2	4.2	1.1	1.1	-	-	-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부록그림 2] 0~6세 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농림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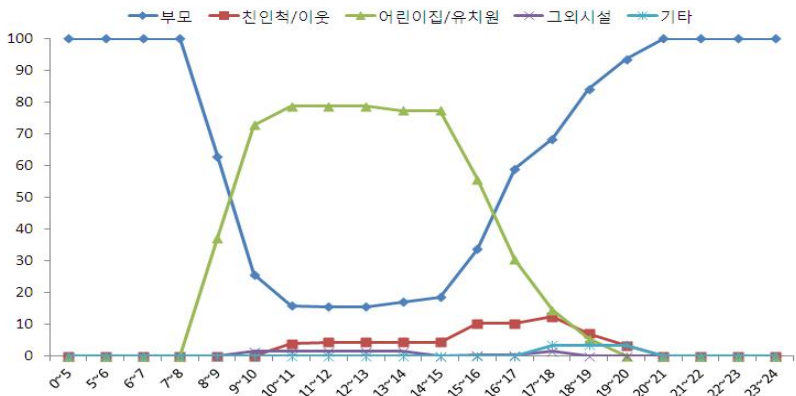
〈부록표 3〉 미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전기하수건설텐)

(단위: %)

구분	0~5시	5~6시	6~7시	7~8시	8~9시	9~10시	10~11시	11~12시	12~13시	13~14시	14~15시	15~16시	16~17시	17~18시	18~19시	19~20시	20~21시	21~22시	22~23시	23~24시
0~6세 (N=60)																				
부모	100.0	100.0	100.0	100.0	62.9	25.7	15.9	15.5	15.5	17.0	18.5	33.7	59.0	68.4	84.1	93.5	100.0	100.0	100.0	100.0
친인척/이웃	-	-	-	-	-	-	3.8	4.3	4.3	4.3	4.3	10.3	10.3	12.3	7.1	3.2	-	-	-	-
어린이집/유치원	-	-	-	-	37.1	72.8	78.7	78.7	78.7	77.2	77.2	55.6	30.4	14.5	5.4	-	-	-	-	-
그외시설보육	-	-	-	-	-	1.5	1.5	1.5	1.5	1.5	-	0.3	0.3	1.4	-	-	-	-	-	-
기타	-	-	-	-	-	-	-	-	-	-	-	-	-	3.4	3.4	3.4	-	-	-	-
0~2세 (N=20)																				
부모	100.0	100.0	100.0	100.0	92.8	70.4	51.0	49.5	49.5	54.6	54.6	54.6	54.6	66.8	87.8	87.8	100.0	100.0	100.0	100.0
친인척/이웃	-	-	-	-	-	-	12.9	14.4	14.4	14.4	14.4	15.9	15.9	22.4	6.6	6.6	-	-	-	-
어린이집/유치원	-	-	-	-	7.2	29.6	36.1	36.1	36.1	31.0	31.0	29.5	29.5	5.1	-	-	-	-	-	-
그외시설보육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5.7	5.7	5.7	-	-	-	-
3~6세 (N=40)																				
부모	100.0	100.0	100.0	100.0	50.3	6.8	1.1	1.1	1.1	1.1	3.3	24.9	60.8	69.1	82.5	95.9	100.0	100.0	100.0	100.0
친인척/이웃	-	-	-	-	-	-	-	-	-	-	-	8.0	8.0	8.0	7.4	1.7	-	-	-	-
어린이집/유치원	-	-	-	-	49.7	91.1	96.7	96.7	96.7	96.7	96.7	66.6	30.7	18.5	7.7	-	-	-	-	-
그외시설보육	-	-	-	-	-	2.2	2.2	2.2	2.2	2.2	0.0	0.5	0.5	2.0	-	-	-	-	-	-
기타	-	-	-	-	-	-	-	-	-	-	-	-	-	2.4	2.4	2.4	-	-	-	-

주: 무응답/로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부록그림 3] 0~6세 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전기하수건설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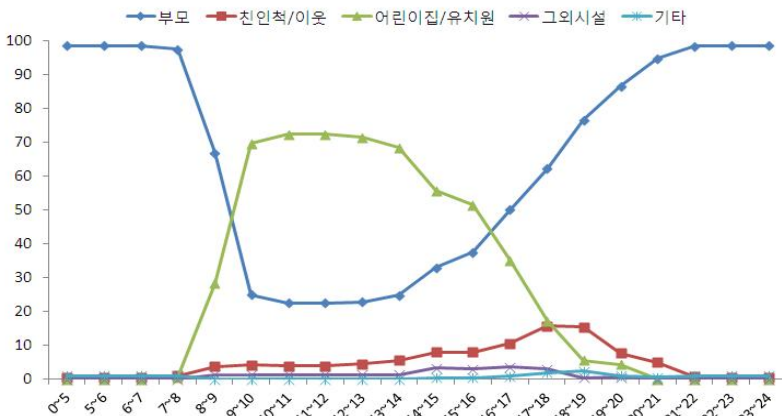
〈부록표 4〉 미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도소매업)

(단위: %)

구분	0~5시	5~6시	6~7시	7~8시	8~9시	9~10시	10~11시	11~12시	12~13시	13~14시	14~15시	15~16시	16~17시	17~18시	18~19시	19~20시	20~21시	21~22시	22~23시	23~24시
0~6세 (N=163)																				
부모	98.5	98.5	98.5	97.4	66.8	24.9	22.5	22.5	22.8	24.7	32.9	37.4	50.0	62.2	76.5	86.5	94.6	98.3	98.5	98.5
친인척/이웃	0.5	0.5	0.5	1.0	3.7	4.2	3.9	3.9	4.5	5.6	7.9	7.9	10.6	15.7	15.3	7.6	4.9	0.7	0.5	0.5
어린이집/유치원	-	-	-	0.6	28.2	69.5	72.3	72.3	71.4	68.4	55.6	51.4	35.0	17.2	5.5	4.3	-	-	-	-
그외시설보육	-	-	-	-	1.3	1.3	1.3	1.3	1.3	1.3	3.2	2.9	3.5	3.0	0.4	0.6	-	-	-	-
기타	1.0	1.0	1.0	1.0	-	-	-	-	-	-	0.4	0.4	0.9	1.9	2.3	1.0	0.5	1.0	1.0	1.0
0~2세 (N=46)																				
부모	98.3	98.3	98.3	96.5	68.9	55.6	55.6	55.6	56.7	56.7	56.7	56.7	62.1	63.0	69.5	82.4	91.7	98.3	98.3	98.3
친인척/이웃	1.7	1.7	1.7	3.5	11.4	13.6	13.6	13.6	14.5	14.5	14.5	14.5	15.5	21.2	22.8	11.6	8.3	1.7	1.7	1.7
어린이집/유치원	-	-	-	-	15.1	26.2	26.2	26.2	24.2	24.2	24.2	24.2	17.8	7.9	6.3	6.0	-	-	-	-
그외시설보육	-	-	-	-	4.6	4.6	4.6	4.6	4.6	4.6	4.6	4.6	4.6	7.9	1.4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3~6세 (N=117)																				
부모	98.6	98.6	98.6	97.8	65.9	12.8	9.4	9.4	9.4	12.0	23.5	29.8	45.2	61.9	79.3	88.2	95.8	98.3	98.6	98.6
친인척/이웃	-	-	-	-	0.7	0.5	-	-	0.5	2.1	5.3	5.3	8.6	13.5	12.3	6.0	3.6	0.3	1.4	1.4
어린이집/유치원	-	-	-	0.8	33.4	86.7	90.6	90.6	90.0	85.9	68.0	62.2	41.8	20.9	5.2	3.6	-	-	-	-
그외시설보육	-	-	-	-	-	-	-	-	-	-	2.7	2.2	3.0	1.1	-	0.8	-	-	-	-
기타	1.4	1.4	1.4	1.4	-	-	-	-	-	-	0.5	0.5	1.3	2.6	3.2	1.4	0.6	1.4	-	-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부록그림 4] 0~6세 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도소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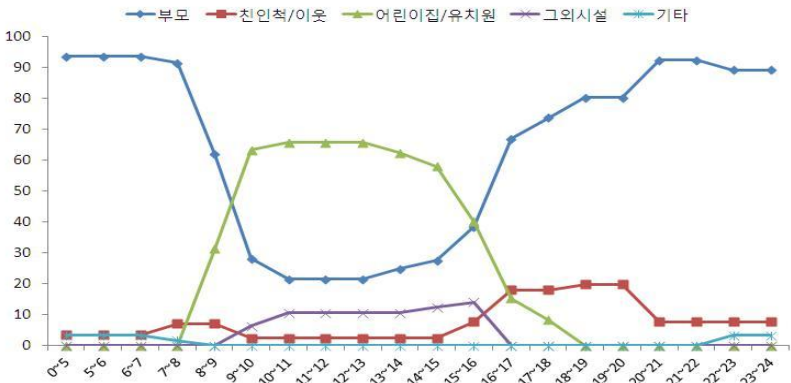


〈부록표 5〉 미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운수업)

		(단위: %)																			
구분	0~5시	5~6시	6~7시	7~8시	8~9시	9~10시	10~11시	11~12시	12~13시	13~14시	14~15시	15~16시	16~17시	17~18시	18~19시	19~20시	20~21시	21~22시	22~23시	23~24시	
0~6세 (N=55)																					
부모	93.4	93.4	93.4	91.4	61.8	28.1	21.5	21.5	21.5	24.8	27.5	38.4	66.8	73.7	80.2	80.2	92.3	92.3	89.1	89.1	
친인척/이웃	3.4	3.4	3.4	7.0	7.0	2.3	2.3	2.3	2.3	2.3	2.3	7.7	17.9	17.9	19.8	19.8	7.7	7.7	7.7	7.7	
어린이집/유치원	-	-	-	-	31.3	63.2	65.6	65.6	65.6	62.3	57.9	40.0	15.2	8.3	-	-	-	-	-	-	
그외시설보육	-	-	-	-	6.3	10.6	10.6	10.6	10.6	12.3	14.0	-	-	-	-	-	-	-	-	-	
기타	3.2	3.2	3.2	1.6	-	-	-	-	-	-	-	-	-	-	-	-	-	-	3.2	3.2	
0~2세 (N=18)																					
부모	96.8	96.8	96.8	86.5	67.7	52.4	52.4	52.4	52.4	52.4	60.9	81.5	81.5	86.5	86.5	96.8	96.8	96.8	96.8	96.8	
친인척/이웃	3.2	3.2	3.2	13.5	13.5	3.2	3.2	3.2	3.2	3.2	3.2	8.2	8.2	13.5	13.5	3.2	3.2	3.2	3.2	3.2	
어린이집/유치원	-	-	-	-	18.8	44.4	44.4	44.4	44.4	44.4	35.9	10.3	10.3	-	-	-	-	-	-	-	
그 외 시설보육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3~6세 (N=37)																					
부모	91.6	91.6	91.6	94.0	58.7	15.5	5.3	5.3	5.3	10.4	14.5	26.6	59.2	69.7	77.0	77.0	89.9	89.9	85.1	85.1	
친인척/이웃	3.6	3.6	3.6	3.6	3.6	1.8	1.8	1.8	1.8	1.8	1.8	10.1	23.0	23.0	23.0	23.0	10.1	10.1	10.1	10.1	
어린이집/유치원	-	-	-	-	37.8	73.1	76.8	76.8	76.8	71.7	65.0	42.1	17.8	7.3	-	-	-	-	-	-	
그외시설보육	-	-	-	-	9.6	16.1	16.1	16.1	16.1	18.7	21.3	-	-	-	-	-	-	-	-	-	
기타	4.8	4.8	4.8	2.4	-	-	-	-	-	-	-	-	-	-	-	-	-	-	4.8	4.8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부록그림 5] 0~6세 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운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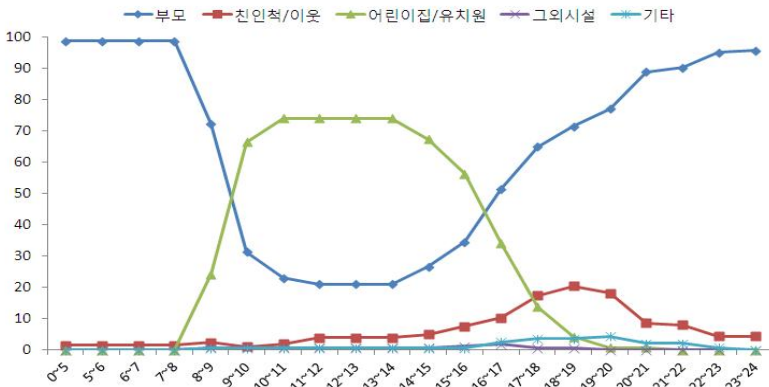
〈부록표 6〉 미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숙박음식업)

(단위: %)

구분	0~5시	5~6시	6~7시	7~8시	8~9시	9~10시	10~11시	11~12시	12~13시	13~14시	14~15시	15~16시	16~17시	17~18시	18~19시	19~20시	20~21시	21~22시	22~23시	23~24시
0~6세 (N=125)																				
부모	98.6	98.6	98.6	98.6	72.1	31.3	23.0	20.9	20.9	20.9	26.5	34.4	51.4	64.9	71.4	76.9	88.8	90.1	94.9	95.6
친인척/이웃	1.4	1.4	1.4	1.4	2.4	1.0	1.9	3.9	3.9	3.9	4.9	7.5	10.2	17.3	20.3	18.1	8.5	7.9	4.4	4.4
어린이집/유치원	-	-	-	-	24.2	66.4	73.9	73.9	73.9	73.9	67.3	56.3	34.0	13.7	4.2	0.7	0.7	-	-	-
그외시설보육	-	-	-	-	0.7	0.7	0.7	0.7	0.7	0.7	0.7	1.2	1.8	0.6	0.6	-	-	-	-	-
기타	-	-	-	-	0.6	0.6	0.6	0.6	0.6	0.6	0.6	0.6	2.5	3.5	3.5	4.4	2.0	2.0	0.7	-
0~2세 (N=39)																				
부모	100.0	100.0	100.0	100.0	88.2	78.7	61.3	54.8	54.8	54.8	54.8	56.9	61.2	68.3	76.0	81.0	88.3	88.3	97.4	97.4
친인척/이웃	-	-	-	-	-	-	2.8	9.3	9.3	9.3	9.3	9.3	9.3	16.9	17.9	14.0	9.5	9.5	2.6	2.6
어린이집/유치원	-	-	-	-	11.8	21.3	35.9	35.9	35.9	35.9	35.9	33.8	25.7	9.8	1.1	-	-	-	-	-
그외시설보육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3.9	5.0	5.0	5.0	2.1	2.1	-	-
3~6세 (N=86)																				
부모	97.9	97.9	97.9	97.9	64.7	9.6	5.4	5.4	5.4	5.4	13.5	24.0	47.0	63.3	69.3	75.0	89.0	91.0	93.8	94.7
친인척/이웃	2.1	2.1	2.1	2.1	3.6	1.5	1.5	1.5	1.5	1.5	2.9	6.6	10.6	17.5	21.5	19.9	8.1	7.1	5.3	5.3
어린이집/유치원	-	-	-	-	29.9	87.1	91.3	91.3	91.3	91.3	81.7	66.7	37.9	15.5	5.6	1.0	1.0	-	-	-
그외시설보육	-	-	-	-	1.0	1.0	1.0	1.0	1.0	1.0	1.0	1.8	2.7	0.9	0.9	-	-	-	-	-
기타	-	-	-	-	0.9	0.9	0.9	0.9	0.9	0.9	0.9	0.9	0.9	1.8	2.8	2.8	4.1	1.9	1.9	1.0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부록그림 6] 0~6세 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숙박음식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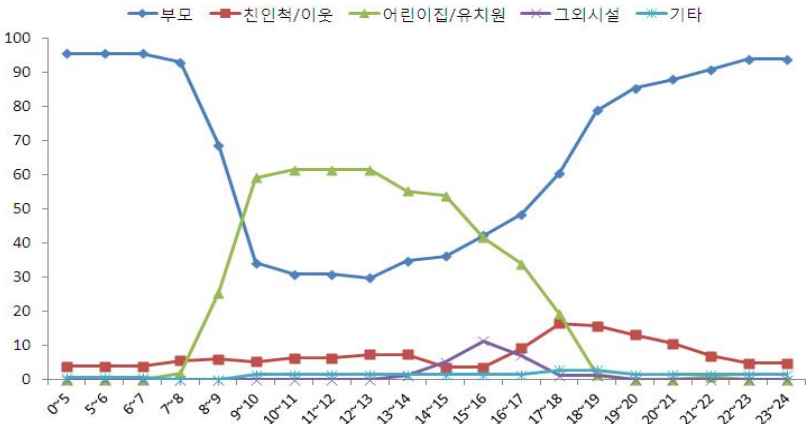
〈부록표 7〉 미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금영부동산시설관리업)

(단위: %)

구분	0~5시	5~6시	6~7시	7~8시	8~9시	9~10시	10~11시	11~12시	12~13시	13~14시	14~15시	15~16시	16~17시	17~18시	18~19시	19~20시	20~21시	21~22시	22~23시	23~24시
0~6세 (N=93)																				
부모	95.5	95.5	95.5	92.8	68.6	34.2	30.8	30.8	29.7	34.8	36.1	42.2	48.3	60.4	78.8	85.3	87.8	90.7	93.7	93.7
친인척/이웃	3.9	3.9	3.9	5.5	6.0	5.2	6.3	6.3	7.3	7.3	3.5	3.5	9.2	16.4	15.7	13.1	10.6	6.9	4.8	4.8
어린이집/유치원	-	-	-	1.7	25.3	59.1	61.4	61.4	61.4	55.1	53.8	41.5	33.9	19.2	1.5	-	-	0.9	-	-
그외시설보육	-	-	-	-	-	-	-	-	-	1.2	5.1	11.3	7.1	1.2	1.2	-	-	-	-	-
기타	0.6	0.6	0.6	-	-	1.5	1.5	1.5	1.5	1.5	1.5	1.5	1.5	2.8	2.8	1.5	1.5	1.5	1.5	1.5
0~2세 (N=27)																				
부모	87.8	87.8	87.8	83.4	83.4	72.2	68.8	68.8	65.5	65.5	65.5	65.5	65.5	70.0	78.2	84.5	84.5	84.5	87.8	87.8
친인척/이웃	12.2	12.2	12.2	14.7	14.7	14.7	18.1	18.1	21.4	21.4	9.2	9.2	21.4	24.4	21.8	15.5	15.5	15.5	12.2	12.2
어린이집/유치원	-	-	-	1.9	1.9	13.1	13.1	13.1	13.1	13.1	13.1	13.1	13.1	5.6	-	-	-	-	-	-
그외시설보육	-	-	-	-	-	-	-	-	-	-	12.2	12.2	-	-	-	-	-	-	-	-
기타	-	-	-	-	-	-	-	-	-	-	-	-	-	-	-	-	-	-	-	-
3~6세 (N=66)																				
부모	99.0	99.0	99.0	97.2	61.8	16.5	13.1	13.1	13.1	20.5	22.4	31.3	40.3	55.9	79.1	85.7	89.4	93.6	96.4	96.4
친인척/이웃	-	-	-	1.2	2.0	0.8	0.8	0.8	0.8	0.8	0.8	0.8	3.5	12.7	12.8	12.0	8.4	2.9	1.3	1.3
어린이집/유치원	-	-	-	1.6	36.2	80.4	83.9	83.9	83.9	74.7	72.8	54.8	43.5	25.6	2.2	-	-	1.3	-	-
그외시설보육	-	-	-	-	-	-	-	-	-	1.8	1.8	10.9	10.4	1.8	1.8	-	-	-	-	-
기타	1.0	1.0	1.0	-	-	2.2	2.2	2.2	2.2	2.2	2.2	2.2	2.2	4.0	4.0	2.2	2.2	2.2	2.2	2.2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부록그림 7] 0~6세 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금영부동산시설관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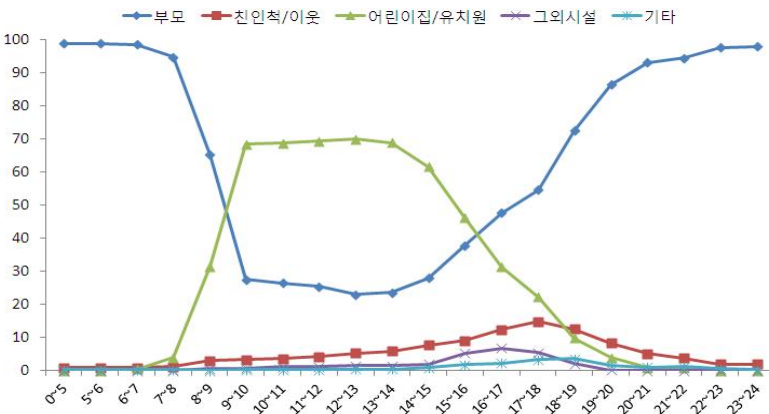
〈부록표 8〉 미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단위: %)

구분	0~5시	5~6시	6~7시	7~8시	8~9시	9~10시	10~11시	11~12시	12~13시	13~14시	14~15시	15~16시	16~17시	17~18시	18~19시	19~20시	20~21시	21~22시	22~23시	23~24시
0~6세 (N=422)																				
부모	98.8	98.8	98.4	94.6	65.1	27.5	26.4	25.3	23.0	23.5	28.0	37.8	47.6	54.6	72.4	86.4	93.0	94.3	97.5	97.8
친인척/이웃	0.8	0.8	0.8	1.2	2.9	3.3	3.5	4.1	5.3	5.8	7.7	9.0	12.3	14.7	12.5	8.2	5.1	3.7	1.9	1.9
어린이집/유치원	-	-	0.4	3.8	31.4	68.4	68.6	69.2	69.8	68.8	61.5	46.1	31.3	22.2	9.7	3.9	0.9	0.8	-	-
그외시설보육	-	-	-	-	0.5	0.7	1.2	1.2	1.5	1.5	1.9	5.3	6.7	5.4	2.0	0.1	-	-	-	-
기타	0.3	0.3	0.3	0.3	0.0	0.2	0.2	0.2	0.4	0.4	0.9	1.8	2.2	3.2	3.5	1.4	1.0	1.2	0.6	0.3
0~2세 (N=112)																				
부모	98.2	98.2	97.4	95.7	86.5	67.9	69.2	64.8	60.0	59.8	59.8	62.6	66.0	69.2	80.1	86.8	92.9	95.3	97.5	97.5
친인척/이웃	1.8	1.8	1.8	2.5	4.7	7.6	8.5	10.8	13.9	14.6	14.6	16.8	17.8	17.4	13.7	9.3	6.6	4.7	2.5	2.5
어린이집/유치원	-	-	0.8	1.8	8.8	24.5	22.3	24.5	25.2	24.7	24.7	18.3	13.8	11.8	5.3	3.0	0.5	-	-	-
그외시설보육	-	-	-	-	-	-	-	-	-	-	-	1.4	1.4	0.7	-	-	-	-	-	-
기타	-	-	-	-	-	-	-	-	0.9	0.9	0.9	0.9	0.9	0.9	0.9	0.9	-	-	-	-
3~6세 (N=310)																				
부모	99.1	99.1	98.8	94.2	57.5	13.1	11.3	11.3	9.9	10.6	16.7	29.0	41.0	49.4	69.7	86.3	93.0	93.9	97.6	97.9
친인척/이웃	0.5	0.5	0.5	0.7	2.3	1.7	1.7	1.7	2.3	2.7	5.2	6.2	10.3	13.8	12.0	7.8	4.5	3.4	1.7	1.7
어린이집/유치원	-	-	0.3	4.6	39.5	84.0	85.0	85.0	85.6	84.4	74.6	56.0	37.4	25.9	11.2	4.2	1.1	1.1	-	-
그외시설보육	-	-	-	-	0.7	0.9	1.7	1.7	2.0	2.0	2.6	6.7	8.6	7.0	2.7	0.2	-	-	-	-
기타	0.5	0.5	0.5	0.5	0.0	0.3	0.3	0.3	0.3	0.3	0.9	2.1	2.6	4.0	4.4	1.6	1.4	1.6	0.8	0.5

주: 무응답/로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부록그림 8] 0~6세 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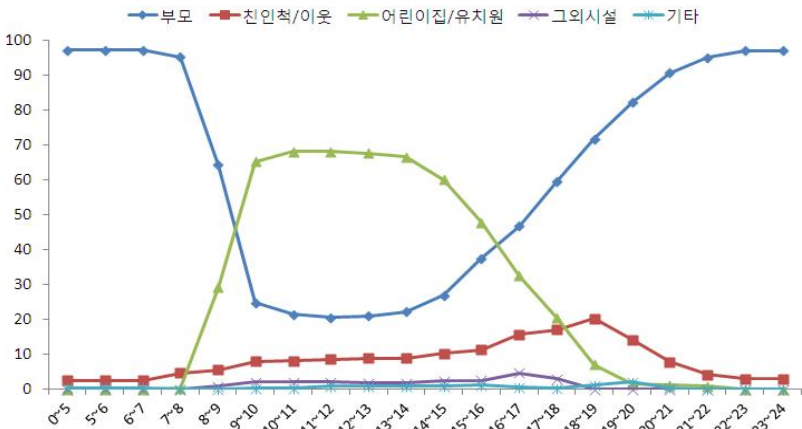


〈부록표 9〉 미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

																					(단위: %)			
구분	0~5시	5~6시	6~7시	7~8시	8~9시	9~10시	10~11시	11~12시	12~13시	13~14시	14~15시	15~16시	16~17시	17~18시	18~19시	19~20시	20~21시	21~22시	22~23시	23~24시				
0~6세 (N=264)																								
부모	97.1	97.1	97.1	95.1	64.3	24.8	21.5	20.5	21.0	22.2	26.8	37.5	46.7	59.5	71.6	82.1	90.6	95.0	97.0	97.0				
친인척/이웃	2.5	2.5	2.5	4.7	5.5	7.9	8.1	8.6	8.8	8.8	10.2	11.3	15.7	17.1	20.2	14.2	7.8	4.1	3.0	3.0				
어린이집/유치원	-	-	-	0.3	29.2	65.1	68.1	68.1	67.6	66.5	60.0	47.7	32.5	20.3	7.0	1.5	1.2	0.9	-	-				
그외시설보육	-	-	-	-	0.9	2.0	2.0	2.0	1.7	1.7	2.3	2.5	4.7	2.9	-	-	-	-	-	-				
기타	0.4	0.4	0.4	-	-	0.2	0.3	0.9	0.9	0.9	0.8	1.1	0.5	0.2	1.2	2.1	0.4	-	-	-				
0~2세 (N=81)																								
부모	96.6	96.6	96.6	92.6	81.5	56.2	54.1	52.7	52.7	52.7	52.7	55.8	56.6	66.0	70.5	83.1	91.9	96.6	96.6	96.6				
친인척/이웃	3.4	3.4	3.4	7.1	9.7	21.9	22.5	23.9	23.9	23.9	25.6	25.6	28.3	25.1	24.5	15.0	8.1	3.4	3.4	3.4				
어린이집/유치원	-	-	-	0.2	8.8	21.3	22.4	22.4	22.4	22.4	21.0	17.9	14.4	8.3	4.4	1.2	-	-	-	-				
그외시설보육	-	-	-	-	-	-	-	-	-	-	-	-	-	-	-	-	-	-	-	-				
기타	-	-	-	-	-	0.7	0.9	0.9	0.9	0.9	0.7	0.7	0.7	0.7	0.7	0.7	-	-	-	-				
3~6세 (N=183)																								
부모	97.3	97.3	97.3	96.1	57.0	11.4	7.6	6.8	7.5	9.1	15.7	29.6	42.4	56.7	72.0	81.7	90.1	94.4	97.2	97.2				
친인척/이웃	2.1	2.1	2.1	3.6	3.8	2.0	2.0	2.0	2.4	2.4	3.6	5.2	10.3	13.7	18.3	13.9	7.7	4.4	2.8	2.8				
어린이집/유치원	-	-	-	0.3	37.9	83.8	87.6	87.6	86.9	85.2	76.6	60.4	40.2	25.5	8.1	1.7	1.7	1.2	-	-				
그외시설보육	-	-	-	-	1.3	2.8	2.8	2.8	2.4	2.4	3.3	3.5	6.6	4.2	-	-	-	-	-	-				
기타	0.6	0.6	0.6	-	-	-	-	0.8	0.8	0.8	0.8	1.3	0.5	-	1.5	2.8	0.6	-	-	-				

주: 무응답/로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부록그림 9〕 0~6세 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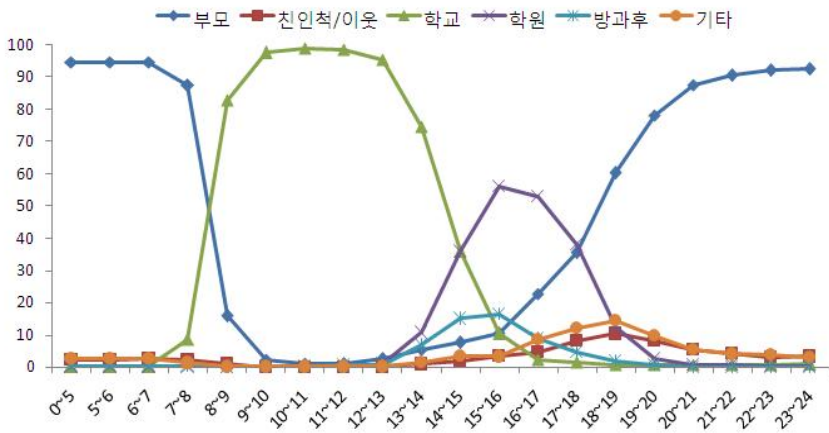
〈부록표 10〉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전 산업)

(단위: %)

구분 (N=750)	0~5 시	5~6 시	6~7 시	7~8 시	8~9 시	9~10시	10~11시	11~12시	12~13시	13~14시	14~15시	15~16시	16~17시	17~18시	18~19시	19~20시	20~21시	21~22시	22~23시	23~24시
부모	94.4	94.5	94.4	87.3	15.8	2.2	1.1	0.9	2.5	5.5	7.6	10.4	22.7	35.5	60.2	78.0	87.4	90.4	92.0	92.4
친인척/이웃	2.4	2.4	2.5	2.4	1.1	-	-	-	0.2	0.9	2.0	3.5	4.7	8.3	10.3	8.2	5.5	4.3	3.2	3.3
학교	0.2	0.2	0.2	8.6	82.8	97.5	98.7	98.5	95.4	74.5	35.9	10.4	2.2	1.6	0.7	0.7	0.8	0.8	0.6	0.9
학원	-	-	-	-	-	-	-	-	0.9	10.8	35.8	56.0	53.0	37.9	12.5	2.6	0.7	0.6	0.3	0.3
방과후	0.3	0.3	0.3	0.3	0.0	0.1	0.1	0.5	0.8	6.8	15.1	16.4	8.9	4.7	1.9	0.8	-	-	-	-
기타	2.6	2.6	2.6	1.3	0.2	0.2	0.2	0.2	0.2	1.5	3.6	3.3	8.5	12.1	14.4	9.7	5.5	4.0	3.9	3.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부록그림 10〕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전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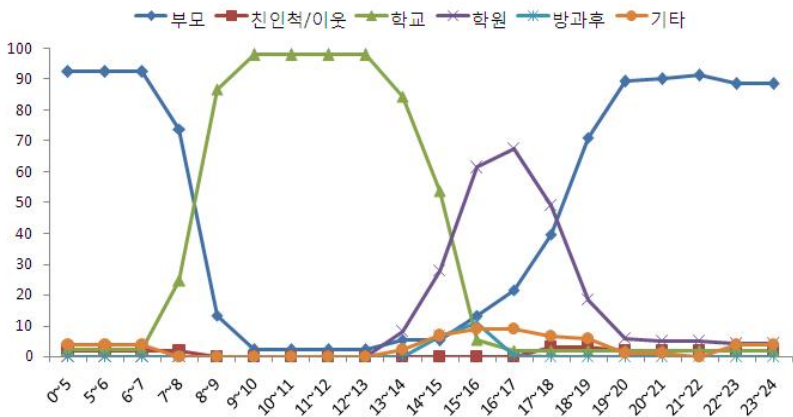
〈부록표 11〉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농림광공업)

(단위: %)

구분 (N=52)	0~5 시	5~6 시	6~7 시	7~8 시	8~9 시	9~ 10시	10~ 11시	11~ 12시	12~ 13시	13~ 14시	14~ 15시	15~ 16시	16~ 17시	17~ 18시	18~ 19시	19~ 20시	20~ 21시	21~ 22시	22~ 23시	23~ 24시
부모	92.3	92.3	92.3	73.6	13.3	2.1	2.1	2.1	2.1	5.4	5.2	13.4	21.5	39.5	70.9	89.2	90.0	91.2	88.4	88.4
친인척/이웃	1.8	1.8	1.8	1.8	-	-	-	-	-	-	-	-	-	3.1	3.1	1.8	1.8	1.8	1.8	1.8
학교	2.1	2.1	2.1	24.6	86.7	97.9	97.9	97.9	97.9	84.3	53.6	5.5	1.8	1.9	1.9	1.9	1.9	1.9	1.9	1.9
학원	-	-	-	-	-	-	-	-	-	8.1	27.8	61.3	67.4	49.0	18.5	5.9	5.1	5.1	4.1	4.1
방과후	-	-	-	-	-	-	-	-	-	-	6.7	10.8	0.2	-	-	-	-	-	-	-
기타	3.8	3.8	3.8	-	-	-	-	-	-	2.2	6.8	9.0	9.0	6.5	5.7	1.2	1.2	-	3.8	3.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부록그림 11〕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농림광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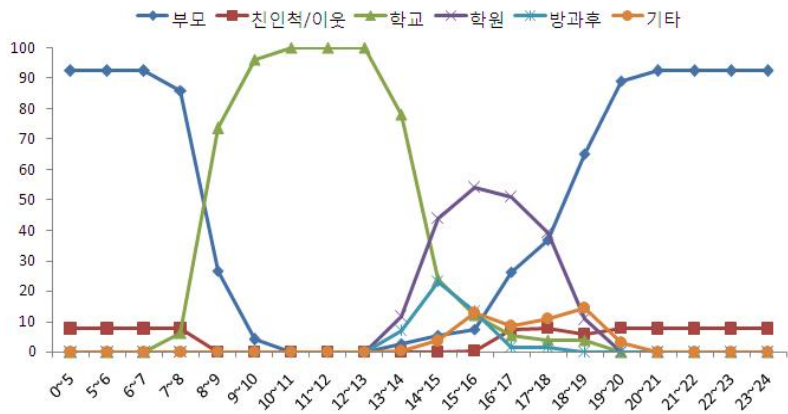


〈부록표 12〉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전기하수건설텍)

		(단위: %)																			
구분 (N=50)	0~5 시	5~6 시	6~7 시	7~8 시	8~9 시	9~10 시	10~11 시	11~12 시	12~13 시	13~14 시	14~15 시	15~16 시	16~17 시	17~18 시	18~19 시	19~20 시	20~21 시	21~22 시	22~23 시	23~24 시	
부모	92.4	92.4	92.4	86.0	26.5	4.0	-	-	-	2.8	5.4	7.3	26.3	36.8	65.2	88.9	92.4	92.4	92.4	92.4	
친인척/이웃	7.6	7.6	7.6	7.6	-	-	-	-	-	-	-	0.4	7.4	7.7	5.7	7.9	7.6	7.6	7.6	7.6	
학교	-	-	-	6.3	73.5	96.0	100.0	100.0	100.0	78.1	23.7	12.1	5.5	3.8	3.8	-	-	-	-	-	
학원	-	-	-	-	-	-	-	-	-	11.6	43.9	54.0	50.9	39.3	10.8	-	-	-	-	-	
방과후	-	-	-	-	-	-	-	-	-	7.1	23.2	13.3	1.5	1.5	-	-	-	-	-	-	
기타	-	-	-	-	-	-	-	-	-	0.4	3.7	12.8	8.4	10.9	14.4	3.1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부록그림 12〕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전기하수건설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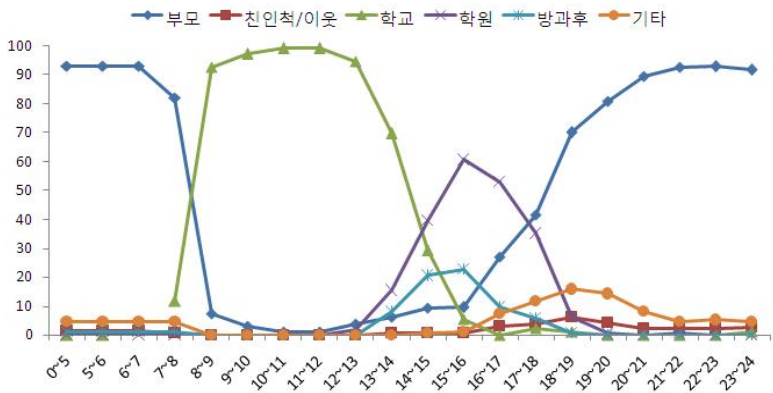
〈부록표 13〉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도소매업)

(단위: %)

구분 (N=91)	0~5 시	5~6 시	6~7 시	7~8 시	8~9 시	9~ 10시	10~ 11시	11~ 12시	12~ 13시	13~ 14시	14~ 15시	15~ 16시	16~ 17시	17~ 18시	18~ 19시	19~ 20시	20~ 21시	21~ 22시	22~ 23시	23~ 24시
부모	92.9	92.9	92.9	81.9	7.4	3.0	1.0	1.0	3.9	6.2	9.4	9.6	27.1	41.5	70.0	80.9	89.4	92.5	92.7	91.6
친인척/이웃	1.4	1.4	1.4	0.7	-	-	-	-	-	0.7	0.7	0.7	3.1	3.8	6.2	4.2	2.3	2.1	2.1	2.8
학교	-	-	-	11.7	92.6	97.0	99.0	99.0	94.4	69.6	29.2	5.4		2.3	1.0	-	-	-	-	1.0
학원	-	-	-	-	-	-	-	-	1.7	15.4	39.5	60.6	53.0	35.0	6.2	0.5	-	0.7	-	-
방과후	1.1	1.1	1.1	1.1	-	-	-	-	-	8.1	20.5	22.7	9.6	5.8	0.8	-	-	-	-	-
기타	4.7	4.7	4.7	4.7	-	-	-	-	-	-	0.7	1.0	7.3	11.7	15.8	14.3	8.3	4.7	5.2	4.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부록그림 13]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도소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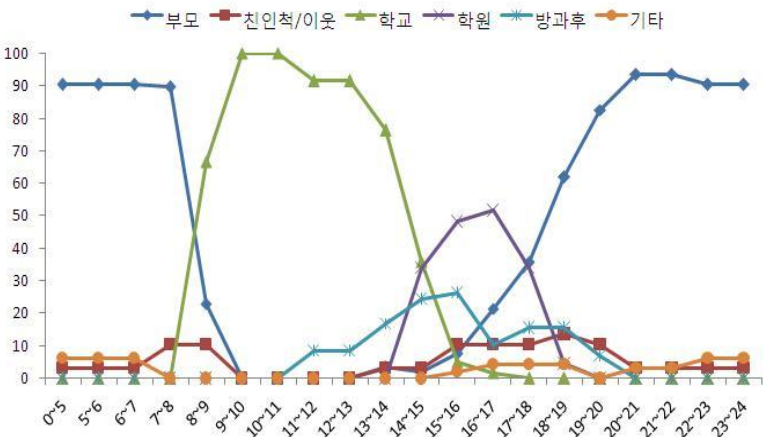
〈부록표 14〉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운수업)

(단위: %)

구분 (N=27)	0~5 시	5~6 시	6~7 시	7~8 시	8~9 시	9~ 10시	10~ 11시	11~ 12시	12~ 13시	13~ 14시	14~ 15시	15~ 16시	16~ 17시	17~ 18시	18~ 19시	19~ 20시	20~ 21시	21~ 22시	22~ 23시	23~ 24시
부모	90.4	90.4	90.4	89.6	23.0	-	-	-	-	3.4	2.2	7.6	21.5	35.8	61.9	82.6	93.5	93.5	90.4	90.4
친인척/이웃	3.3	3.3	3.3	10.4	10.4	-	-	-	-	3.3	3.3	10.4	10.4	10.4	13.7	10.4	3.3	3.3	3.3	3.3
학교	-	-	-	-	66.7	100.0	100.0	91.5	91.5	76.3	36.0	5.0	1.6	-	-	-	-	-	-	-
학원	-	-	-	-	-	-	-	-	-	-	34.0	48.2	51.7	34.0	4.6	-	-	-	-	-
방과후	-	-	-	-	-	-	-	8.5	8.5	17.0	24.5	26.5	10.5	15.6	15.6	7.0	-	-	-	-
기타	6.3	6.3	6.3	-	-	-	-	-	-	-	-	2.2	4.3	4.3	4.3	-	3.2	3.2	6.3	6.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부록그림 14〕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운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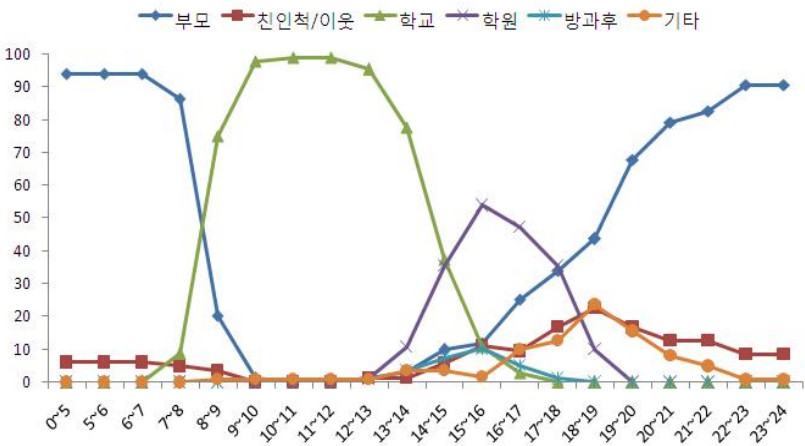


〈부록표 15〉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숙박음식업)

		(단위: %)																							
구분 (N=78)	0~5 시	5~6 시	6~7 시	7~8 시	8~9 시	9~ 10시	10~ 11시	11~ 12시	12~ 13시	13~ 14시	14~ 15시	15~ 16시	16~ 17시	17~ 18시	18~ 19시	19~ 20시	20~ 21시	21~ 22시	22~ 23시	23~ 24시					
부모	93.9	93.9	93.9	86.4	20.3	1.2	-	-	1.3	3.0	9.9	11.9	25.3	33.9	43.7	67.7	79.1	82.5	90.6	90.6					
친인척/이웃	6.1	6.1	6.1	4.9	3.7	-	-	-	1.3	1.3	5.9	11.2	9.5	16.9	22.7	16.7	12.7	12.6	8.6	8.6					
학교	-	-	-	8.7	75.0	97.8	99.0	99.0	95.3	77.6	37.3	10.9	2.9	-	-	-	-	-	-	-					
학원	-	-	-	-	-	-	-	-	1.2	10.8	35.6	54.0	47.3	35.5	10.0	-	-	-	-	-					
방과후	-	-	-	-	-	-	-	-	-	3.7	7.5	10.2	5.1	1.2	-	-	-	-	-	-					
기타	-	-	-	-	1.0	1.0	1.0	1.0	1.0	3.7	3.7	1.8	10.0	12.6	23.7	15.6	8.2	4.9	0.8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부록그림 15〕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숙박음식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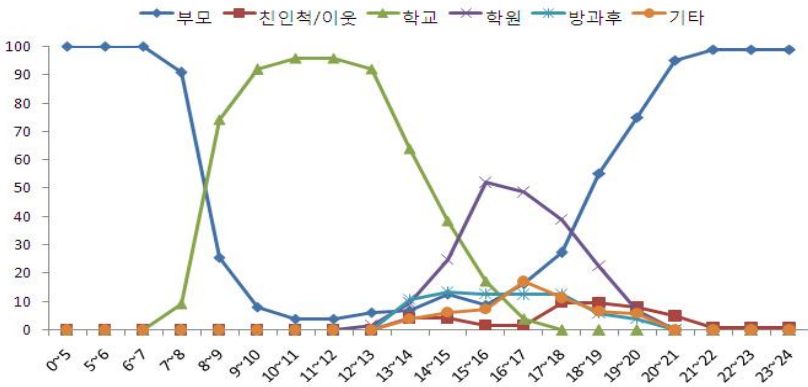
〈부록표 16〉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

(단위: %)

구분 (N=71)	0~5 시	5~6 시	6~7 시	7~8 시	8~9 시	9~10 시	10~11 시	11~12 시	12~13 시	13~14 시	14~15 시	15~16 시	16~17 시	17~18 시	18~19 시	19~20 시	20~21 시	21~22 시	22~23 시	23~24 시
부모	100.0	100.0	100.0	90.8	25.7	8.1	4.1	4.1	6.3	7.1	12.8	8.9	16.3	27.4	55.3	74.9	95.1	99.0	99.0	99.0
친인척/이웃	-	-	-	-	-	-	-	-	-	4.2	4.2	1.6	1.6	9.6	9.6	8.1	4.9	1.0	1.0	1.0
학교	-	-	-	9.2	74.3	91.9	95.9	95.9	92.1	64.0	38.6	17.3	3.8	-	-	-	-	-	-	-
학원	-	-	-	-	-	-	-	-	1.6	9.7	24.8	52.1	48.6	39.0	22.6	6.9	-	-	-	-
방과후	-	-	-	-	-	-	-	-	-	10.9	13.5	12.6	12.5	12.5	5.9	4.1	-	-	-	-
기타	-	-	-	-	-	-	-	-	-	4.1	6.3	7.5	17.1	11.4	6.7	6.0	-	-	-	-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부록그림 16]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금융부동산시설관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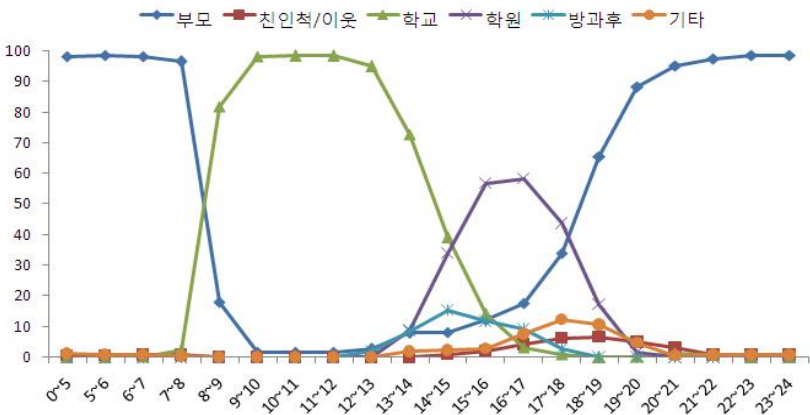


〈부록표 17〉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단위: %)																			
구분 (N=231)	0~5 시	5~6 시	6~7 시	7~8 시	8~9 시	9~ 10시	10~ 11시	11~ 12시	12~ 13시	13~ 14시	14~ 15시	15~ 16시	16~ 17시	17~ 18시	18~ 19시	19~ 20시	20~ 21시	21~ 22시	22~ 23시	23~ 24시	
부모	98.3	98.7	98.3	96.5	18.1	1.8	1.6	1.6	2.6	8.0	8.2	12.2	17.6	34.1	65.6	88.3	95.1	97.5	98.5	98.5	
친인척/이웃	0.5	0.5	0.7	0.7	-	-	-	-	-	-	0.9	2.2	4.2	6.3	6.6	4.9	3.2	0.7	0.7	0.7	
학교	-	-	0.2	2.3	81.9	98.2	98.4	98.4	95.0	72.8	39.1	14.1	3.2	1.0	-	0.3	1.2	1.0	-	-	
학원	-	-	-	-	-	-	-	-	0.3	8.8	33.9	56.8	58.2	43.7	17.3	1.7	-	-	-	-	
방과후	-	-	-	-	-	-	-	-	2.1	8.5	15.5	11.8	9.1	2.6	-	-	-	-	-	-	
기타	1.1	0.8	0.8	0.4	-	-	-	-	-	1.9	2.3	2.9	7.6	12.3	10.6	4.8	0.5	0.8	0.8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부록그림 17〕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기술교육보건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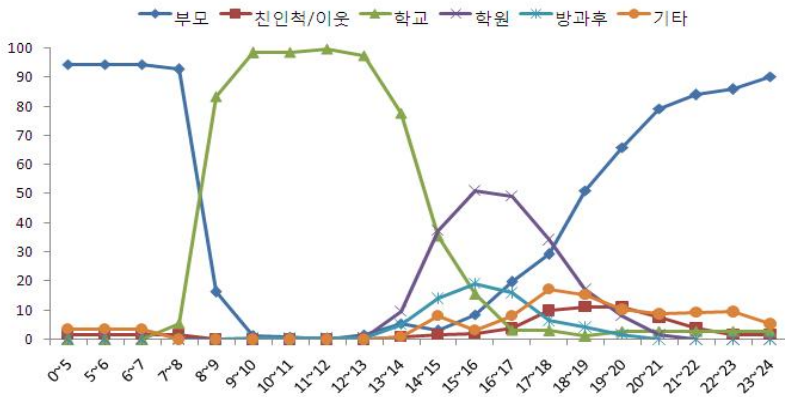
〈부록표 18〉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

(단위: %)

구분 (N=150)	0~5 시	5~6 시	6~7 시	7~8 시	8~9 시	9~ 10시	10~ 11시	11~ 12시	12~ 13시	13~ 14시	14~ 15시	15~ 16시	16~ 17시	17~ 18시	18~ 19시	19~ 20시	20~ 21시	21~ 22시	22~ 23시	23~ 24시
부모	94.5	94.5	94.5	92.7	16.3	1.2	0.9	-	1.6	5.4	3.1	8.6	19.8	29.2	51.0	65.8	79.2	84.0	85.9	90.1
친인척/이웃	1.8	1.8	1.8	1.8	-	-	-	-	-	1.0	1.8	2.2	3.8	9.9	11.3	11.3	7.6	4.0	1.8	1.8
학교	-	-	-	5.5	83.4	98.4	98.6	99.6	97.5	77.8	35.6	15.6	3.3	3.0	1.1	2.8	2.8	2.8	2.8	2.8
학원	0.1	0.1	0.1	0.1	0.3	-	-	-	0.4	9.7	37.3	51.1	49.1	34.2	17.1	8.2	1.8	-	-	-
방과후	-	-	-	-	-	0.4	0.4	0.4	0.4	5.1	14.1	19.1	15.9	6.4	4.2	1.8	-	-	-	-
기타	3.6	3.6	3.6	-	-	-	-	-	-	0.9	8.1	3.3	8.1	17.2	15.4	10.2	8.7	9.2	9.5	5.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무응답/모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가중치 적용한 결과임.

[부록그림 18] 취학자녀 시간대별 보육방법 (출판통신예술개인서비스업)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2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연구 20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연구 2011-03	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연구 20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비아
연구 20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연구 2011-06	소바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농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연구 20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연구 20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연구 2011-09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김동진
연구 20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방안	황나미
연구 20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2011-12	노후준비 실태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연구 20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연구 2011-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연구 20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연구 2011-16-1	선진국의 아동사래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연구 20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고경환
연구 20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연구 20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2011-17-4	2011 보건복지제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연구 2011-17-6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원종욱
연구 20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연구 2011-18	공정사회를 위한 천서민정책 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20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연구 20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연구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20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 -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29	장애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혜규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민간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자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판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함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4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42	취약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사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이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건강보장체계의 New Paradigm 전환에 따른 기반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 자산 분포와 노후빈곤 가능성 분석	남상호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31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조사통계 선진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림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안락수정 사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연구 2012-47-10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연구 2012-47-1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연구 2012-47-12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현창)
연구 2012-47-13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림
연구 20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연구 2012-47-15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 M시 종적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16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17	노인장기요양욕구필요도측정방식개발	이윤경
연구 2012-47-18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정경희
연구 2012-47-19	복지용구사업시장규모추계와활성화방안	김대중
연구 2012-47-20	저출산현상의동태적분석을위한지역사례조사	박종서
연구 2012-47-21	백세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이윤경
연구 2012-47-22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이삼식
연구 2012-47-23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각국의 활기찬고령화(active ageing)정책을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II)	오영희

6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47-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경희
연구 2012-47-26	출산력시계열자료 구축 및 분석	신창우·이삼식
연구 2012-47-2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공적 전달체계 개편 방안: 공적전달체계의 수직적편제와 수평적배열의 재구조화	정홍원
연구 2012-47-28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이만우)
연구 2012-47-29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0	농업인의 노후준비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연구 2012-47-31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박종서
연구 2012-4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6년 및 2011년 결과 보고서 -	오영호
연구 2012-49-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이상영
연구 2012-49-2	지방자치단체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김동진
연구 2012-49-3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최은진
연구 2012-49-4	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	최은진
연구 2012-50-1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전방안	김남순
연구 2012-50-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	김정선
연구 2012-51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빈곤정책	홍석표
연구 2012-52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3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2-5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알자리확충 전략II: 영유아돌봄 및 초등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2-54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연구 2012-55-1	2012년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한국의복지실태	최현수
연구 2012-55-2	2012년한국복지패널심층분석: 인구집단별생활실태와복지육구의동태분석	남상호
연구 2012-56-1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정영호
연구 2012-56-2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김대중
연구 2012-57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2-58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년차)	이연희
연구 2012-59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이상영
연구 2012-60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황나미
연구 2012-61	사회보장 재정주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원종욱
연구 2012-62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신영석
연구 2012-63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윤강재
연구 2012-64	우리나라의 자살급증 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영
연구 2012-6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정립 방향 -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	고경환
연구 2012-66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김혜련
연구 2012-67	보건복지 지표·지수 연구	남상호
연구 2012-68	2012년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 운영보고서	김승권
협동 2012-1	2012년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신호성
협동 2012-2	2012년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호